

建築士

大韓建築士協會誌 DECEMBER 1982. No. 165
KOREA ASSOCIATION OF REGISTERED ARCHITECTS

에도
이다!

물연 내외장재

기능에 있습니다.

을 지니고 있습니다.
입니다.
식처럼 녹슬지 않습니다.

에서 만들어낸 단단한 일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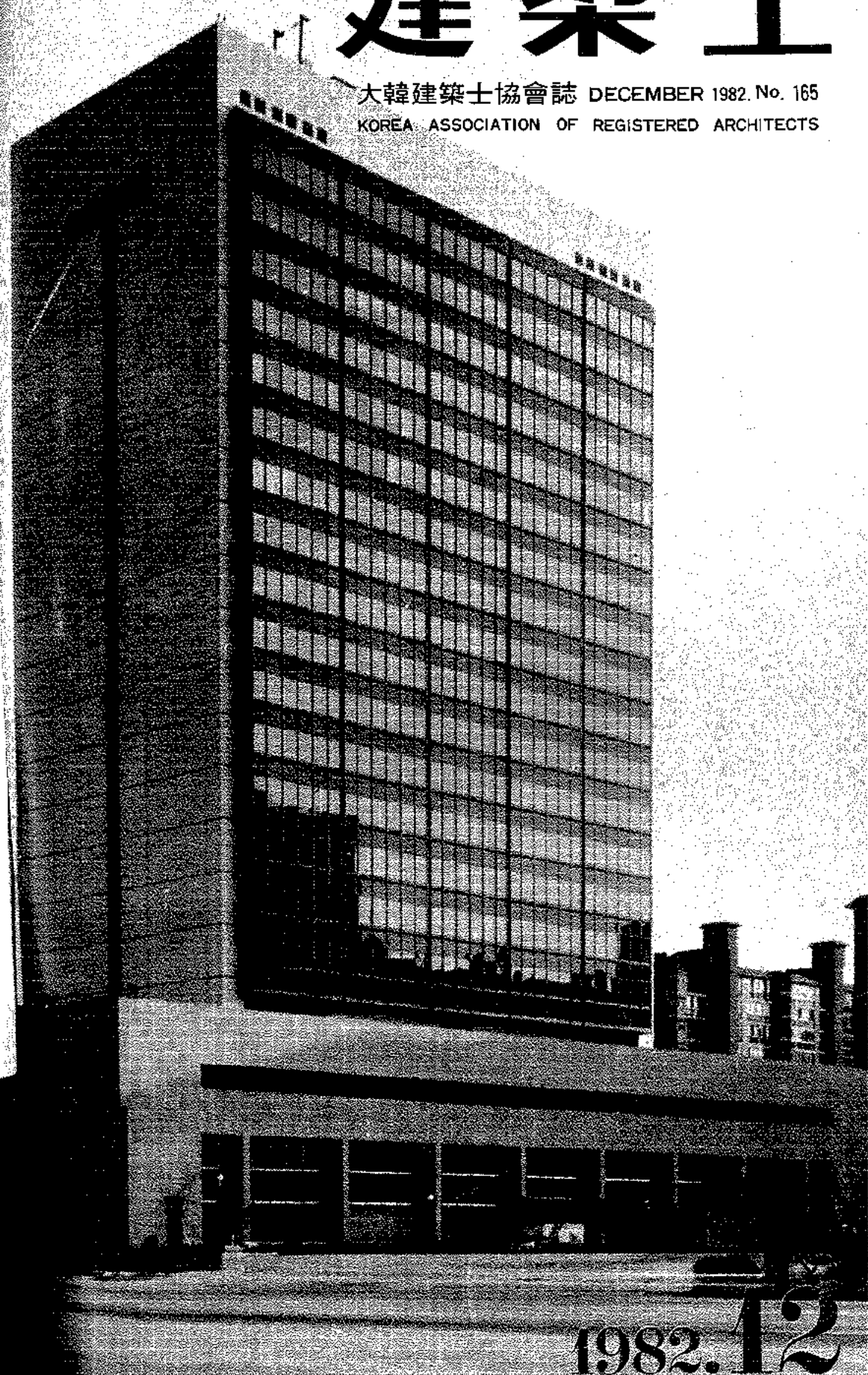
적인 내외장용 미장재입니다.

과학적으로 배열하여

필수 기능인 단열, 흡음, 방음,



외장재



198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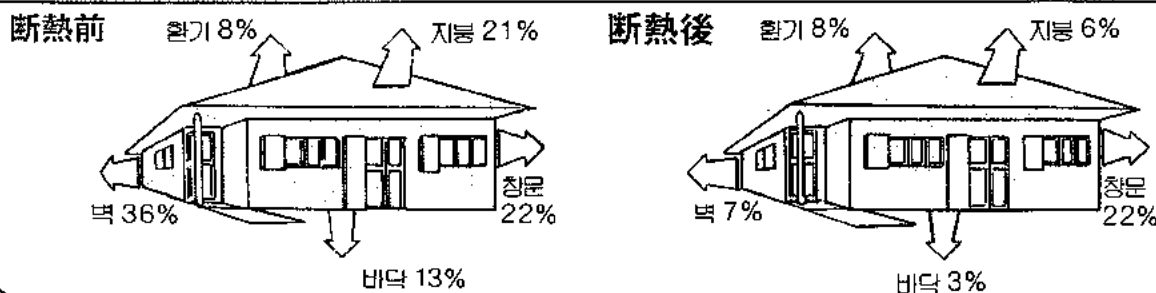
여름을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이것이 바로 새로운 스티로폼입니다.

스티로폼은 독일의 BASF가 발명한 발포성 폴리스티렌의 상표명으로서 세계 각국에서 백색 난연성 건축용 단열재로서 에너지절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외 각국에서는 건축용으로 백색 스티로폼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회 효성 바스프도 건축용 스티로폼 원료로서 異物質인 色素를 첨가하지 않은 순수한 백색 스티로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一般住宅의 断熱前後 熱損失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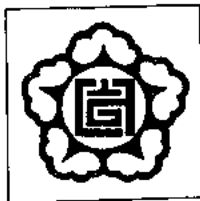
원료제조원



暁星바스프(株)
HYOSUNG-BASF CO., LTD.

BASF

본사 · 서울중구서소문동21-1 (효성제2빌딩) ☎771-13
공점 · 경남울산시상개동472-1 (석유화학공업단지) ☎73-9873~5
연락사무소 · 부산 ☎67-4111~2, 대구 ☎252-4131~5



月刊 建築士

December 1982. No. 165

U. D. C. 69/72(054-2) : 0612(519)

発行所：大韓建築士協会 / 서울特別市 鍾路區 瑞麟洞89 / 郵政番号：110
光化門郵便局 私書函 第795番 / 電話 723-9491 ~ 2, 723-4287, 724-1045
発行人 兼 編輯人：具 珉 容 / 登録番号：第24-1251 / 登録：1967.3.23
発行：1982.12.15 / 非売品 / 印刷人：金 允 坤 (福祉文化社 / 265-7323)

KOREA ASSOCIATION OF REGISTERED ARCHITECTS

目次

1982.12

論 壇 “送旧迎新的 時点에서” 朴商浩 2

特 輯 送年回顧 / 1982年の 建築界

“分水嶺으로 기록돼야 할 해” 姜明求 9

“内的成熟이 아쉬웠던 해” 金熙春 10

“많은 일들로 점철된 한해” 張起仁 10

“多事多難했던 지난 한해” 崔昌奎 11

프 리 즈 独立紀念館 建立을 앞두고

“超克과 挑戰” 朴英昊 14

“空港建築에 대한 小考” 吳壽永 16

✓空氣調和設備의 체크리스트 孫章烈 39

會員設計作品 27

● 사립학교 교원연금 관리공단 (주·정림건축) 金正澈 28

● 효성빌라 (가나건축연구소) 禹南龍 30

● 한국청년회의소 (한협도시건축연구소) 朱英三 32

● 동화면세점 (건축연구소 원일) 李忠彦 34

● 반공소년 이승복기념관 (국남건축사사무소) 李國男 36

● 善竹會館 (건축연구소 楊) 俞元在 38

伝統建築 和順 雙峰寺의 三層殿 申榮勲 43

建築設計事務所의 經營〔完〕：連載 46

建設業에 있어서의 設計VE〔Ⅱ〕：連載 54

인테리어 디자인의 實際〔Ⅲ〕：連載 朴 弘 21

COE研修를 마치고 손영진 78

海外作品 두개의 학교 / ● School At Aviano 66

● School At Maniago. ITALY

濟州島 / 건축기행 朴商浩 50

□ 협회소식 3 □ 건축행정상담 72

□ 건축계뉴스 62 □ 건축자재해설 75

□ 회원동정 94

분류번호 建築士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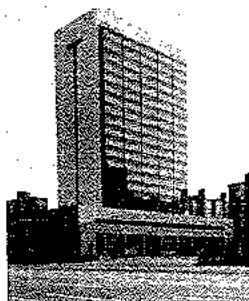
도서번호 통권 제 165 호

구입년월일 19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지부

編纂委員會

委員長 朴商浩
委 員 李明浩
“ 姜健熙
“ 朴勇煥
“ 李榮一
“ 金漢根
“ 金基哲
“ 姜哲求
“ 趙東榮



표지설명：사립학교교원
연금관리공단
설계：金正澈

“送旧迎新의 時点에서”

朴 商 浩 — 本誌編纂委員長

이제 다사다난했던 1982년을 보내며 자성(自省)과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맞이 하는 시점에서 지난 한해 동안의 건축사계(建築士界)를 돌아본다.

지난 60년대 후반부터 공업입국으로 출발해서 74년의 오일쇼크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접어들어서는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79년 말부터 하향세를 보이기 시작한 경제지표는 80년과 81년에 이르러서는 그 심도(深度)를 더 했고, 최근에 와서야 다소 안정기조를 띄고 밝은 상황세를 보이고 있다.

□ 전문직으로서 자질향상 필요

이러한 그간의 흐름은 지난 70년대에 이르러 새로운 가치체계(價值體系)의 변혁이 이루어졌으며 우리 건축사들에게는 직능(職能)의 이상상(理想像)으로 미루어보아 질(質)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 것이다. 특히 건설부문의 수출증대에 따른 설계용역 업무증가는 국제수준급의 질적(質的) 요구와 건축사 자질향상, 신기술과 공법, 새로운 설계기법 등 전문직으로서의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더우기 현대건축의 특질은 목적의 다층화와 다양화에 수반되어 그 존재 영역이 확대되며 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과 전자공학의 발달로 설계, 구조, 직산업무 등의 진산화와 양(量)에서 질, 단순에서 복합, 다층(多層), 다차원적인 기능을 건축물은 수용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도심의 재개발사업과 정비사업, 복합용도의 상업적건물, 나아가 지역단위 단위의 집단도시건축설계 등이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러나 금년 10월말 현재의 건축투자현황은 해외부문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3%가 증가했으며 국내의 경우는 1.9%의 증가에 그쳤다. 한편 건축허가면적은 36.9%가 늘어났으며 그중 주거용이 52.3%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상업용 28.3%가

증가했다. 반면 공업용은 11.3%의 감소현상을 보였다.

이같은 추세로 볼 때 우리 건축사가 눈을 돌려야 할 곳은 해외용역부문이며 국내는 여전히 주거용 실체와 도시산업용건물, 나아가 차츰 증가추세에 있는 복합건물 등이 관심의 대상이 되리라 믿는다.

□ 풍성했던 건축관계 일들

이러한 건축사계의 사회객관적 요구 속에서 지난 한해의 중요행사나 사건 등을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민천(民展)으로 이관되어 처음으로 개최된 대한민국건축대전은 유례없는 많은 응모로 질과 양면에서 풍성한 기록을 남긴 행사였고, 올림픽조직위건물 현상설계는 당선작없이 우수작만을 선정발표했고 모든 국민의 관심사였던 독립기념관건립 발의는 이제 그 위치를 확정한 초기단계에 있어 건축계의 적극적인 자문과 참여가 기대된다.

또 국제무역박람회 개최는 건축사의 전시, 조형, 실내장식분야에 관한 관심도 결여에 반성을 느끼게 한 것이었으며, 한강종합개발사업 착수는 공해와 생태계 등 자연개발과 인공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바라는 마음이며, 그 밖에 중앙청의 박물관화 논의를 비롯해 각 지방청사, 문화회관 등의 설계경기가 있었고 건축행정면에서도 건축법개정과 설계시공인관발수방식의 수정 등 검토가 있었다는 회소식도 있다. 반면 국민의 이목을 끌었던 부동산투기의 재연과 지하철 및 가스누설로 인한 사고 등은 하나의 반성의 계기가 되고 있다.

한편 학술문화부문에서는 건축학회가 마련한 봄·가을의 세미나(특히 에너지 건축에 대한 외국 학자들의 초청강연등)개최와 지난 5월 에너지관리공단이 주최한 「한국·덴마크에너지절약 및 지역난방심포지움」 개최로 도시건축과 관련된 지역난방에 대한 진지한 토의와 발표가 있었다.

또 우리 건축사들에게 하나의 영양

소가 되었던 헨리·무어의 조각전, 페루국보전시회, 피카소 작품전, 이태리 현대건축전 등이 기억될만한 문화행사였다.

이상과 같은 국가적인 건축관계 관심사 외에 협회가 수행한 일들을 돌아보면, 처음으로 시도한 회원작품순회전시는 규모나 내용면에서 새로운 형태의 행사였으며 그 성과 역시 컸다고 하겠다. 다만 여선상 국한된 지방 외에는 순회를 못한 점이 아쉬웠으며, 회지(會誌)칼라특집을 4월과 9월 2회에 걸쳐 발간할 수 있었다. 아울러 월별(月別)로 용도별 설계작품을 특집으로 꾸며 발간하고자 계획했으나 만족할만한 지면이 되지 못한채 연말을 맞았다.

□ 會誌 통한 적극적인 참여 기대

생각해보면 회지에 관련한 자방회원들의 참여가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며 좀더 적극적인 참여가 아쉬웠다. 그밖에 건축관계 자료 도서관을 마련하고자 시도했으나 노력만큼 대가가 없는 채로 새해의 속세로 안고 가게되어 새삼 안타까움을 느낀다.

각종 건축관계 연구분과위원회는 발족과 더불어 징지작업이 마무리 되어 가는 단계에 있다. 이는 1인1분과 위원화도 연구하는 회원으로의 유도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이며, 회원각자가 전문분야를 꾸준히 연구해서 개인의 실력축적은 물론 나아가 협회를 중심점으로 한 협조체제구축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이 되는 불문이다.

또한 설계업무도 시설별로 전문화 내지 세분화되어 분야별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사회 객관적인 현상임에 비추어 볼 때 각자의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노력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바를 하겠다.

모쪼록 지난 한해를 거울삼아 맞이할 새해가 보람있는 한해가 되기를 빌며, 건축사지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

新旧會長 離就任式 가져

歷代會長團·新旧任員·支部長참석

新旧회장의 이취임식이 지난 3일 본회 회의실에서 역대회장단을 비롯해 신규임원 및 각 시도지부장, 그리고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상오 10시에 거행된 이날 이취임식에서 먼저 具琬會전임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2년간 회원여러분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전제하고 “협회의 장구한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협조체제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후 “신임회장의 역량으로 보다 충실한 협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임 金枝泰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그동안 협회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여 발전을 계속해 왔다고 말하고 보다 새로운 협회상구현과 회원을 위한 회원의 협회로 가꾸는 데에는 모든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협회는 회원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해 충분한 수용태세를 갖추고 모든 회원과 함께 생각하고 실천하는 협회로 만들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이취임식에 이어 신규임원을 비롯해 각 시도지부 신규지부장 연석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협회운영에 대한 신



구임원의 의견 교환을 비롯 각 지부의 당면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이어서 오후에는 이취임기념 리셉션

이 뉴서울호텔에서 열렸다.

한편 이취임식에 앞서 지난 1일에는 신규회장의 업무인수인계가 있었다.

定期理事会 개최

新任理事등 全任員참석

제11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9일 본회 회의실에서 金枝泰회장 주재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지난 10월29일의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6명의 신임이사를 비롯한 전체 임원이 참석한 것만큼 정기이사회였다.

金枝泰회장의 개회인사에 이어 이날 이사회에서는 임원승인의 건을 비롯한 7개의안이 의결되었다. 특히 의안중 지부총회에서 건설부에 의해 본회정관



이 개정승인 후에 선임승인한다는 조건부로 선출한 지부감사는 정관개정이 승인됨에 따라 일괄승인키로 의결했다.

한편 윤리위원회 및 편찬, 건축연구

위원회의 위원장에는 金映植이사가 윤리위원장에 새로 선임되었으며 그밖에 편찬위원회(위원장朴商浩)와 건축연구위원회(위원장宋鶴祥)위원장은 유임되었다.

市道支部 定期總會 盛了

13個支部別로 開催

지난 10월29일 본회 제17회 정기총회에 이어 13개 시도지부 총회가 11월 한달동안 지부별로 각각 개최되었다.

시도지부별 정기총회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지부

11월23일 5백25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있었던 서울지부 총회는 상오 10시부터 시작되었다.

개회선언에 이어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가 있었으며 81년도 정기총회 회의록승인, 82년도 주요업무 및 경과보고, 8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보고가 차례대로 진행되었다.

끝으로 지부장을 비롯한 간사와 감사 등 임원선출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임기만료된 金枝泰지부장 후임에는 吳雄錫(신조건축연구소)회원이 피선되었으며, 간사에는 張城鎭(삼도건축) 姜純一(필·선진건축)회원이 선임되었

고, 李世勲(아세아합동건축) 韓鍾彦(남성건축연구소)회원이 감사로 각각 선출되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그간 지부임원으로써 협회발전에 공도가 큰 전임 간사 金一榮(농신건설공사·본회이사) 金洪柱(서울종합건축) 徐千植(삼일건축)회원에게 각각 공로패를 수여한데 이어 서울지부가 운영하는 건축행정상담실에서 회원 및 시민을 상대로 상담역을 맡아 수고한 서울시 건축지도와 신 방우씨와 안 상구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부산지부

부산 시내 조선비치호텔 회의실에서 열린 부산지부 정기총회는 다른 지부와 같이 자율정화전의대회를 겸해 개최되었다.

11월26일 상오 10시부터 2백22명의 소속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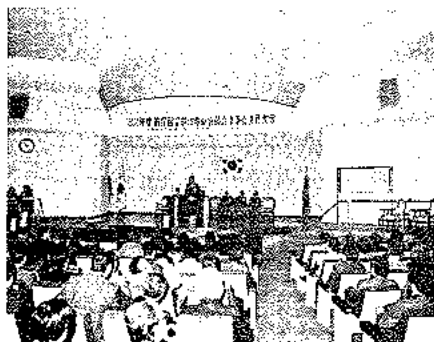
날 총회는 새로 제정된 건축사헌장 낭독과 자율정화실천결의문 채택에 이어 張起秀지부장의 개회사와 金枝泰신임 회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어서 전회회의록승인과 업무보고, 83년세출예산보고 등이 순서대로 진행되었으며 계속해서 부의안건 처리에 들어갔다. 부의안건에서는 임원개선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임기가 만료된 지부장 및 간사와 감사선출이 있었으며 대의원 10명에 대한 개선도 있었다. 신임 지부장에는 黃在濤(충부산건축)회원이 선출되었으며 감사 2명에는 權景旭(한미건축) 朴忠明(우일건축)회원이 선임된데 이어 李承熙(화신설계) 張潤煥(삼익건축)회원이 감사로 선출되었다.

□대구지부

95명의 소속회원과 내빈다수가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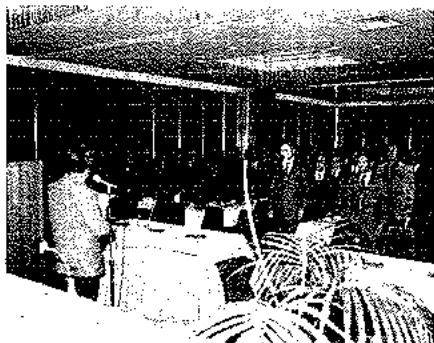
□서울지부총회



□서울 / 공로패수여



□서울 / 감사패수여



□부산지부총회



□대구지부총회



□경기지부총회

한 가운데 지난 11월29일 상오 10시부터 시작된 대구지부총회는 약3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주요업무보고와 새해 세출예산보고 등이 있었으며 부의안전으로는 임원개선이 있었다.

임원개선에서는 간사에 李秉一(국동건축) 林門基(유진종합건축)씨 등이 피선되었으며 대의원에는 尹鉉(노시종합설계)회원을 비롯해서 모두 5명의 회원이 각각 선출되었다.

□인천지부

지부회의실에서 34명의 회원과 내빈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월19일 개최되었다.

정화결의대회를 겸한 이날 총회에서는 결의문채택과 건축사원장 낭독이 있었으며 이어서 진회회의록승인, 주요업무보고, 새해예산결산보고 등이 있었다.

한편 임원개선에서는 간사에 李秉武(동양현대합동설계) 회원이 유임된데 이어 李泰洪(제일종합건축)회원이 신임간사에 피선되었으며 劉南烈(경기건축사합동) 蔡洙憲(재물포건축사합동) 회원 등이 각각 감사에 선임되었다.

□경기지부



□충남지부총회



□경북지부총회

지난달 25일 수원시내 동해장에서 열린 경기지부 정기총회에는 소속회원 13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결의문채택과 건축사원장 낭독에 이어 주요업무보고와 83년도세출예산보고 등이 있었으며 이어서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이 있었다.

임원개선에서는 李錫九 지부장 후임에 林龍洙(한성종합건축공사) 회원이 피선되었으며 간사 3 명에는 吉哲均(홍익유림합동건축) 崔勝元(배을삼양건축) 崔源高(서부합동건축)회원 등이 선출되었다. 한편 감사에는 李昌垣(아성종합건축) 金春經(우신건축) 회원과 광명분소장에 金平先(영신남양건축)회원이 선임되었다. 또 대의원에는 모두 9 명 가운데 6 명이 새로 선출되었다.

□강원지부

제17회 강원지부 정기총회는 지난 11월27일 어린이회관 회의실에서 상오 11시부터 개최되었다.

83년도 사업계획안승인과 수지에산안보고에 이어 임원개선에 들어갔다. 임원개선에서는 李國男지부장이 유임되었으며 간사 및 감사, 태백분소장 등이 새로 선임되었다.

신임 간사에는 黃基禎(삼화건축) 회



□전북지부총회



□경남지부총회

원이, 감사에는 趙奎植(국일종합건축) 朴世振(박전측설계) 회원이 각각 선출되었다. 또 朴在國(신기건축설계) 회원이 태백분소장에 선임되었다.

□충북지부

지부회의실에서 지난달 30일에 개최한 충북지부 총회에는 회원을 비롯한 관제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주요업무보고에 이어 83년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승인 등 안전이 처리되었으며 이어서 임원개선이 있었다.

吳世炯지부장이 유임된데 이어 延寬欽(연홍종합건축)회원이 신임 간사에 선출되었으며 감사에는 李容鐵(청주제일건축) 李知熙(이지훈건축)회원이 각각 선임되었다.

□충남지부

대전중앙관광호텔에서 열린 충남지부 정기총회에는 85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4일 상오 10시30분부터 시작되었다.

의식개혁결의대회를 겸한 이날 총회에서는 83년도 세출예산보고와 주요업무보고에 이어 임원개선이 있었다.

개선내용은 柳根洵지부장과 康祐植, 宋昇鎬간사가 각각 유임되었으며 李英



□전남/감사패수여



□제주지부총회

淳(유성건축)회원이 새로 간사에 선출됐고 金潤煥(김윤환건축) 朴贊榮(신라종합건축)회원이 감사에 피선되었다. 한편 치안분소장에는 許延旭(허정욱·이원회건축) 서상분소장에는 李濟英(대흥건축) 부여분소장 權百淳(권백순건축)회원이 각각 선임되었다.

□전북지부

전북애향회관회의실에서 개최된 전북지부총회에는 모두 46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11월25일 상오 10시30분부터 시작되었다.

거래질서확립설의대회를 겸해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주요안전처리와 지부 임원선출이 있었다.

지부장을 비롯한 임원개선에서는 文尙植지부장 후임에 金炯直(동서종합건축)회원이 피선되었으며 감사에는 河禮述(유천건축) 金光煥(진주건축)회원이 선출되었다. 또 대의원에는 전임 지부장이었던 文尙植(대도건축)회원이 선임되었다.

□전남지부

지난달 18일 상오 10시부터 시작된 전남지부총회에는 94명의 회원과 내빈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전남도 禹起炫공보계장 등 4명의 유

공 공무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데 이어 洪鍾植전임간사 외 5명의 회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어서 주요안전처리와 임원개선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金煥植지부장 후임에 林在植(금성종합설계공사)회원이 선출되었으며 朴永憲(무등건축 설계)회원이 감사에, 金成鉉(시대·태화합동건축) 吳甲濶(전남합동건축)회원이 감사에 각각 선임되었다. 한편 대의원에는 3명의 회원이 새로 선임되었다.

□경북지부

11월 27일에 열린 경북지부총회에는 소속회원과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주요업무보고와 세출보고에 이어 임원개선이 있었다. 임원개선에서는 孫在守지부장이 유임된데 이어 감사에는 金永兌(태창건축)회원이 선출되었으며 安好一(합동건축)회원이 분소장에 선임되었다. 그밖에 임원 및 대의원은 모두 유임되었다.

□경남지부

11월26일 개최된 경남지부정기총회에는 모두 86명의 소속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오 11시부터 시작되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주요안전처리와 거

제 및 양산분소설치를 결의한데 이어 지역간업무분침 및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밖에 지부장을 비롯한 지부임원개선이 있었다. 개선했 임원은 지부장에 李鍾泰(한진건축설계사)회원이 피선되었고, 감사에는 李康鎭(화성건축) 白雄吉(밀양합동설계) 金基喆(삼천포건축)회원이 선임되었으며 李相采(아라건축) 趙得來(태성건축)회원이 감사에 선출되었다.

□제주지부

제주칼호텔회의실에서 열린 지난 11월18일 정기총회에는 소속회원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3시부터 시작되었다.

주요업무보고와 83년도 수지에산안보고, 신년도 사업계획승인에 이어 임원 및 대의원개선에 들어갔다.

신임임원에는 金守賢지부장 후임에 高英重(대성건축)회원이, 감사에는 金石崙(김석윤건축) 金昌祐(우신건축) 文子源(동진건축)회원이, 서귀포분소장에는 李世院(서귀포합동)회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감사에는 康堯俊(동진건축) 金白教(진일건축)회원이 선출되었다. 신임 대의원에는 朴鎭厚(동원종합건축)회원이 선임되었다.

‘서울시건축상’ 수상자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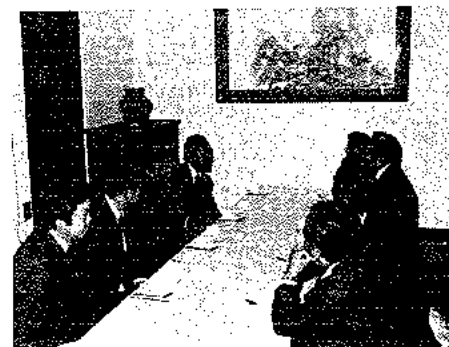
서울지부 축하기념모임 겸해

서울지부는 지난 6일 오후 82년도 서울시건축상을 받은 회원들을 초청해서 축하모임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있었던 시상식에는 유상을 받은 金正湜(주 정림건축)회원 등 6명의 수상자 전원이 참석, 金聖鎰서울시장으로부터 직접 상장과 부상을 받고 약 40여분만에 걸쳐 환담을 나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초청 간담회에는 수상자 외에 심사를 맡은 金熙春(서울대 명예교수)교수와 李明浩(중앙대 공대학장)교수 등도 참석 건축계 공동관심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심사위원장이었던 金熙春교수는 그간의 경과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출판작품들이 매우 우수했으며 서울시의 건축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고 심사평을 했다. 한편 金正湜회원은 금상 수상소감에서 “국기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우선 고맙고 아름다운 서울시를 만드는 데 동참할 수 있는 건축사로서의 소망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가 바람직스럽다”고 말하고 “건축사로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은 회원들이 뜻을 모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수상자명단: 건축계뉴스참조)



會員補修교육 실시 윤리함양교육도 서울등 3개 지역에서

본회 회원을 대상으로하는 건축사보수 교육이 지난달 11일부터 3일간 실시되었다.

서울을 비롯한 대구, 전주 등 3개 지역에서 각각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본회 회원과 건축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건설부가 집행하고 본회가 준비한 이번 교육의 주요내용은 건축관계법개정해설과 건축사윤리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교재와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실시되었다.

□ 보수교육을 받는 본회 회원들



日, 建築士일행 本會來訪 愛知建築士會 소속 회원

일본 애지현(愛知縣)의 애지건축사회에 소속된 회원 11명이 지난달 24일 본회를 방문했다.

청년부에 소속된 이들 일본건축사들은 정기적인 해외시찰 여행차 우리나라를 방문한 기회에 이날 본회를 찾은 것이다.

金基濤 부회장은 이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회 내방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우리나라 건축계 현황과 본회회원의 활동 상황 등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는 건축사자격취득에 따른 한일간의 비교를 비롯해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비교, 주택사정과 공법에 관한 의견교환 등이 있었다.

金一榮 이사도 참석한 이 자리에서 이들 일행은 올 립경기장인 잠실운동장

교육담당은 건설부 남 일건축과장이 건축법령(건축법, 동시행령, 시행규칙) 및 건축사법령 개정요지와 건축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의 시행주진 등을 맡았으며 본회장 기인회원(삼성건축대표)이 건축사 윤리 함양에 관한 정신교육을 담당했다. 그밖에 정의사회구현을 위한 의식개혁지침과 3대 부정심리추방과 관련된 슬라이드교육을 실시했다.

지역별 교육현황은 한양대학교 강당에서 있었던 11일의 서울지역 교육에 서울지부회원을 비롯 인천, 경기, 강원, 제주회원 등이 참석했으며 12일의 전주지역 교육에는 충남북지부회원과 전남북지부회원, 또 13일의 대구지역 교육에는 대구지부소속회원과 부산, 경남북지부회원 등이 참석했다.

을 보고 규모와 시설에 놀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獨立紀念館 誠金기탁 대구지부 의식개혁교육도



대구지부(지부장 金在佑)는 의식개혁추진교육과 독립기념관건립 성금기탁을 지난달 10일과 18일에 각각 실시했다.

대구 건축사회관에서 있었던 의식개혁추진교육에는 소속회원 1백17명이 참석, 3대 부정심리 추방을 위한 의식교육이 있었으며 18일 오후에는 회원 1백66명의 성금을 모은 2백만원 을 대구매일신문사에 기탁, 독립기념관건립사업에 쓰도록 했다.

日本 建築界·초청견학 경기지부 회원 10명 귀국

경기지부(지부장 林龍洙) 회원 10명은 지난달 4일부터 14일간 일본을 방문하고 귀국했다.

일본 오이다정회장의 초청으로 한일간의 건축기술교환 및 태양열건축 등 새로운 건축기술을 연구 견학한 이들 일행은 체재기간 중 일본의 여러 지방의 건축물도 돌아보았다.

일행명단은 다음과 같다.

△조명호 △박영익 △이용덕 △이종훈 △유기조 △신성만 △우서관 △박용목 △김태익 △신현범(이상10명)

淨化·意識改革간담회 충남지부 두차례에 걸쳐



충남지부(지부장 柳根洙)는 사회정화 및 의식개혁의 활성화를 위해 두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일 지부회의실에서 연 1차 간담회에는 대전지부회원을 비롯 대전시청, 중구청, 동구청 관계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10일에 있었던 간담회에는 천안, 서산, 부여분소 관내회원 32명이 참석해서 정화 및 의식개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新任 支部長 프로필》

다음은 지난 11월중 각 시도 지부별로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신임 지부장의 프로필을 간추린 것이다. <여기에 소개되지 않은 지부는 유임 및 임기중인 지부임>



☑ 吳雄錫서울지부장

- 1930. 12. 10일생 서울
- 서울공대 건축공학과 졸업
- 기술사자격 취득
- 건축가협회이사
- 건축 3 단계 설계경기운영위원장
- U. I. A 한국대표(72년)
- 본회 이사·편찬위원장 역임
- 건축학회 이사
- (주)원 엔지니어링설립
- 신조건축 대표(현)



☑ 黃在湊부산지부장

- 1922. 11. 21일생 부산
- 부산공립직업학교 건축과 졸업
- 고송토건(주) 건축부
- 대성건설사 근무
- 삼성공업사 건축부



☑ 林龍洙경기지부장

- 1925. 8. 16일생 서울
- 일본 시바우라공고 건축과 졸업
- 평양철도건설사업소 건축기사
- 미 극동사령부 부산건설공병단
- 건설부·총리실·정보부근무
- 유네스코회관건축 총감독
- 경기지부간사
- 한성종합건축공사 대표(현)



☑ 全炯直전북지부장

- 1946. 11. 18일생 전북
- 전주공고 건축과 졸업
- 인주성건축연구소근무
- 조선대 전문대학 졸업
- 전주시 건축심의위원
- 전주시 도시행정 모니터요원
- 완주군 특정건축물 심의위원
- 동서종합건축사무소 대표(현)

☑ 林在植전남지부장

- 1937. 2. 20일생 전남



- 전남대공대 건축공학과
- 김한성건축연구소근무
- 일본산업시찰
- 금성중학설계공사 대표(현)



☑ 李鍾泰경남지부장

- 1939. 3. 22일생 경남
- 동아대공대건축공학과 졸업
- 한국비료공업(주)
- 동울산로타리클럽창립회원
- 적십자청년봉사대 울산지부회원
- 한진건축설계사 대표(현)



☑ 高英重제주지부장

- 1938. 12. 5 일생 제주
- 동아대 공대 건축공학과 졸업
- 제주도청 서무과
- 복제주군청 재무과
- 제주도 교육위원회
- 제주도지부 간사·대의원 역임
- 대성건축설계사무소 대표(현)

건축설계보조원취업안내

본회 서울지부에서는 회원사무소에서 일할 설계보조원 취업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신고 접수합니다.

- 구비서류 / 이력서 · 경력서 각 1 통
- 마 감 / 매월 20일 까지
- 제 출 처 /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지부 사무국
- TEL 723-6258-8059

1982年の建築界

- 姜明求 / 중앙대 명예교수
- 金熙春 / 서울대 명예교수
- 張起仁 / 삼성건축 대표
- 崔昌榮 / 신진건축 대표

〈가나다順〉

“分水嶺으로 기록해야 할 해”

姜明求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정신적으로 새출발해야

지난 한해도 옛것과 새로운 것이 엮갈린채 많은 일들이 그치지 않고 지나간 해였다.

건축계도 그간의 침체 속에서 나름대로 어려움을 극복키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고, 그만큼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올해는 올림픽유치와 독립기념관건립 계획 등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자부심과 희망을 준 해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들은 기술적인 면에서 보다 정신적인 면에서 이제야 말로 새로운 출발을 위해 잃어버렸던 자신을 다시 돌이켜 보며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건축의 이념과 목표를 재정리하는 계기가 될 건축계의 하나의 분수령이 되어야 할 것이다.

6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현대건축은 양적인 면에서도 급속한 경제 성장과 맞물려 많은 발전을 했으나 한 측면에서 보면 피상적인 발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겠다.

얼마 안되는 주목을 끝마친 건축을 제외하고는 정작 창조적인 한국의 새로운 현대건축이 시작된 것도 바로 82년부터 점차 일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것은 건축계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전반에 걸친 한국의 知的안정과 향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근세기인 85년 전에 건립된 독립문이 나 68년 전에 준공된 한국은행본점, 52년 전에 세워진 현 신세계백화점, 45년 전 화신백화점이나 불과 16년 전의 조흥은행본점 등을 보는 우리들의 눈은 무척이나 오래된 역사적 유물로 착각될 때도 있다. 이는 얼마 되지않은 세월의 흐름이었으나 현시점에서 돌이켜 볼 때 불과 10여년 동안 그 얼마나 우리나라의 새로운 건축이 눈부시게 발전되었는지, 너무나 짧은 시일 안에 이루어진 것과의 비교에서 오는 현상일 것이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우리에게 무의미한 일은 버리고 새것을 찾는 자기반성의 시간이 소리없이 다가온다. 이러한 自省의 눈으로 우리나라 근대건축계를 볼 때, 해방까지는 외국의 건축문화를 모방하기에 바빴던 일본의 서양식 건축양식이 그대로 침투되어 재판되었으며 해방 이후에는 정치적 불안으로 그러한 건축마저 敵産으로 유지에만 급급하던 답보상태였고, 그나마 6·25로 파괴되고 말았다. 따라서 모든 건축자재생산도 중단되었고 건축이라야 겨우 미군수물자에 의존한 보수공사 정도였다.

□ 세계를 리드하는 자세필요

그러다가 60년도부터는 부족하고 미숙한 국산 건축자재도 일부 생산되기 시작했으며 부족한 자재 등은 수입에 의존하여 우리나라도 현대건축에 눈을 뜨면서 외국의 현대건축문화가 정식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대건축양식과 공법, 자재 등을 미처 소화도 되기 전에 막바름듯 받아들이기에만 바빴던 그 시절에 새로운 건축이나 그밖에 다른 것도 새롭기만 하면 일단 외국것을 모방한 것이라는 선입견이 생길만큼 건축도 급진적으로 변화

해서 외관상으로는 국제화된 발전양상을 보였다.

그러다가 70년대에 접어들어 한국과 외국이라는 한정된 지역성을 벗어나 세계화라는 국제적 감각의 시대로 돌입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점차적으로 외국것의 모방이라는 선입견도 차츰 없이게 되었다.

□ 88년 대비한 건축계 정진기대

80년대에 들어 한국인들의 이러한 국제감각은 세계인의 공동된 감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외국의 현대건축이 시대에 따라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 건축도 현대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세계인 공유의 건축양식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하나의 세계적인 유행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조류 속에는 창조와 모방이라는 이율배반적인 요소가 그 시대를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무턱대고 유행을 가법게 볼 수만도 없으며 반대로 범용만을 고수하는 것도 대국적인 관점에서 국제화된 시대를 사는 우리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 여긴다.

앞으로 바라가는 그동안 단시일 안에 이룩한 발전을 바탕으로 이제부터는 세계를 리드하는 우리의 건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며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믿는다.

이제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이 기화가 우리나라 건축문화를 만방에 과시할 절호의 찬스로 알고 이를 위해 보다 빼어난 작품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건축계의 정진이 있기를 바라며 이런 뜻에서 지난 10월에 건축 3단체가 공동주선해서 열렸던 제1회 대한민국건축대전은 좋은 밑거름이 되리라 믿는다. (*)

“內的成熟이 아쉬웠던 해”

金 熙 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20세기 말에 접어든 현재, 변전하고 있는 建築思潮의 경향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모든 文化가 正(正)·반(反)·합(合)의 과정을 거쳐 발전하는 것이라고 볼 때 建築文化의 발전도 어떤 사실이 있으면 이것에 반발하는 사실이 나타나고, 이것들이 서로 統合 融和되어 다음의 새로운 사실로 이어져 가면서 전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한편 建築이란 인간의 모든 定住活動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實體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지역의 自然 및 人文의 제반 時代背景이 종합되고 응결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建築의 本質에 관하여 建築史家 기디온(S. Giedion)은 〈한 時代의 성격은 建築에 가장 반영된다〉고 하였다.

하여튼 近代建築의 발전은 通念적으로 산업혁명을 전후한 시기에 두게 되며, 이 무렵 宗教改革과 新大陸의 발견과 함께 西歐는 본격적인 근대화의 旅程에 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商團과 工業地帶를 중심으로 급격한 都市化가 야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建築의 영역에도 몇가지 근본적인 변화를 낳게 되었다.

그 변화의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大

別될 수 있다. 그 하나는 새로운 産業社會의 요망에 부응하는 새로운 建築像을 모색하고자 하는 방향이며, 이에 대하여 다른 한가지는 反産業主義의이고 復古의인 과도기적사실(Transient Facts)로서 나타난 건축의 여러가지 경향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多樣한 이즘(ism)과 建築運動(Movement)의 亂立時代라고 요약할 수 있다.

□ 現代建築思潮의 흐름

그러나 결국 기디온이 일컫는 바 構成的事實(Constituent Facts)로서의 前者의 경향은 20세기 建築理念의 모태로 이어지고, 後者の 경향은 前者에 대한 反作用的 역할밖에 나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脫近代主義의인현대건축의경향으로서 1960년대의 아키텍그램 메타볼리즘(Archigram Metabolism) GEAM 등의 전위적인 건축가 그룹이 모색하는 경향적 건축과 70년대 이후 미국은 중심으로 하는,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Post Modernism)은 하나의 뚜렷한 理念을 갖는 이즘이라기 보다는 부언가 과거와 달라져야 하겠다는 現代建築의 原點을 향한 歐美 新進建築 世代들의 다양한 이념일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벤츄리(R. Venturi)의 著 書가 비로소 그 理論의 근거를 제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어쨌든 20세기 후반은 통일된 建築理念으로 집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극도의 개인주의·감상주의 그리고 神奇性의 표방 등, 저마나의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념의 難解한 건축적 표현과 그럴싸한 설명들은, 商業主義의인 경쟁이 극심한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노력의 결과로서 한

때 유행하였다가 없어지는 뿌리없는 理念일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의 建築은 미국 사회에서 환영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몇개의 건축이 미국 건축가의 설계에 의해 건설 중에 있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온 意志 중의 하나는 近代建築에서 상실되었던 것, 즉 建築 및 都市의 제반 環境과 그것이 속한 시대와 지역 그리고 그속에 담겨어지는 현실의 인간이, 그 환경과 맺는 심리적·기능적·상징적인 연쇄관계에 관하여 인간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노력일 것이다. 또한 그것은 人間歡迎을 의도적으로 定住環境 속에 회복시키고자 하는 반성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하면 都市設計의 분야에 있어서도 과거 巨匠들의 都市理念, 그리고 전후 영국 등의 新都市開發에서 절과된 개발우선주의의 非人間的인 都市像을 반성하고, 새로운 개발보다는 오히려 기존도시의 歷史性과 人本性의 회생에 관심을 주고자 하는 경향으로 생각되며 미국의 케빈 린치(Kevin Lynch)를 중심으로 하는 學派의 연구태도는 이러한 모색의 결과라고 보여진다.

□ 시대적요청 인식필요

韓國建築은 그 전통성이 계승될 충분한 培養液을 섭취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內的成熟이 성취될 겨를도 없이 항상 外的인 移植만이 불타닥쳐 어떻게 그것에 적응할 것인가에 급급할 뿐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다가올 時代의 요청을 인식하고 확장된 意味의 建築을 다룰 수 있는 建築士가 배출되기를 기대하면서 온 한해를 마무리 짓는다. 〈*〉

키우고 또한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다짐을 해보는 것이다.

□ 熱과 誠을 다한 한해

建築界도 活性化를 위해, 당국을 비롯하여 무언가 이루어 보고자 誠과 熱을 다하는때에 우리 모두가 힘썼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루어진 것도 없고 所望스러운 실마리가 잡히지 아니한 듯하다. 그러나 기대한 과업들이

“많은 일들로 점철된 한해”

張 起 仁
삼성건축

82년도 저물어 새해가 멀지 않았다. 덧없이 흐르는 세월이 無心하다고나 할까, 보탬이 없는 나날을 지내온 듯하다.

늘이져 보던 올 한해 동안 수많은 큰일들이 우리 앞에 던져졌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經濟不況 속에서 그래도 잘살아 보겠다는 의지와 기대를 걸었다. 그리하여 좌절할 수가 없어 이 한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새해의 꿈을

우리에게 던져진 것만은 사실이다.

아시아게임과 세계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되었다. 장하다 아니할 수 없다. 또 서울의 한강이 아름다운 자연을 곁들여 훌륭하게 꾸며진다고 한다. 이 또한 해제를 불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곰곰히 생각해 보면 어렵기 그지없는 일들이다. 올림픽을 위한 설비도 갖춰져야 하겠지만 보다 많은 사람이 운집하여도 지장이 없을 交通路와 광장, 그리고 휴게장소들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어야 할지 문제이기만 하다.

한강을 살리는 것도 理想的인 사업이라 생각하지만, 강변에 접근하기 조차 힘들게 고속화 아닌 고속도로가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해서 강변에 내가 설 자리는 어디며 유유히 거닐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고 살펴보기도 한다. 때문에 옛 江山과 같이 만들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오늘날 사는 우리들의 과제인 것이다.

□ 협회발전 두드러져

대한건축사협회는 날로 커다란 발전을 보이고 있다. 회원 여러분과 함께 내일을 다지면서 무한한 가능성과 기대를 절이 본다. 그것은 우리의 주변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或者는 이를 좋지않게 여기는 일도 있다. 그러나 선진외국의 예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에게 이루어 놓아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해석되기도 한다. 왜냐 하면 先人들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아 버렸다면 우리들은 할 일을 잃고 말기 때문이다.

선진외국의 학생들은 힘들여 공부해야만 先人이 이룩해 놓은 것을 따를 수 있고, 앞시가기 위해서는 무척이나 힘든 고통이 따른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는 무엇이든 하면 된다고나 할까? 역시 어려우면서도 할 일이 많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라고 되새겨 본다.

그동안 具琬會회장님은 임직인과 더불어 협회발전을 위해 부진 애썼고, 그 공 또한 커 이 기회에 찬사를 드린다. 일부에서는 회원들의 비위와 그에 따른 벌칙이 심하다는 역정을 내기도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협회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 회원 각자가 自重과 信實을 다하여 대처해 나간다면 협회의 보다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번 총회도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화기에애한 가운데서 진행되어 具琬會회장에게 滿期退任이라는 영광을 주었고, 建築業務에 성실하고 지부운영에 골몰하시던 분이 반장일치로 신임 회장에 薦舉選任된 것은 우리 회원 모두가 慶賀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서울支部長의 選任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보람차게 진행되었다고 여겨진다.

서울지부의 복지회장님도 오랜 동안

서울 회원의 복지를 위하여 심혈을 쏟아 주었고 또 많은 해택을 우리 회원들에게 안겨 주었다. 그러면서도 後日을 위하여 복지에 더욱 힘쓰시겠다니 마음든든한 바 다시 賀頌하는 바이다. 각 지부총회도 원활히 끝났다고 들었다. 모든 지부회원들에게 慶賀를 드리며 더욱 發心하여 영광된 길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빈다.

성황리에 마친 건축전시회와 성실하게 이어져 오는 會誌의 발간 또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회원 여러분의 記錄을 위하여, 그리고 後進들의 지도를 위하여 전시회와 회지에 보다 많은 참여를 기대하여 본다.

□ 참된 삶을 위한 礎石돼야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보다 좋은 내일을 위하여 刻苦精勵하여 先驅하는 예지와 창조하는 슬기, 그리고 겨레를 묶는 용기와 尚德의 기풍을 가꾸는 일이다.

세계적인 建設技術의 발전은 미처 따라가기도 힘들만큼 多種多樣하고 명찰출을 모른다. 이에 대처하는 능력은 뜻이 있고 몸이 가는 곳에서 갖추어 지리라 믿으며 회원 여러분의 정진에 기대를 거는 바 크다. 이러한 점을 自覺하고 꾸준히 노력할 때 보다 좋은 공간·환경·건축은 조성되리라 믿으며, 우리들의 능력과 용기가 세상을 일깨워 참된 삶의 터전 위의 礎石이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서 이 해의 마지막을 장식해 본다. (*)

“多事多難 했던 지난 한해”

崔 昌 奎
신진건축

우리는 한해의 발미에서 우리의 생활이나 사회의 상황들을 돌아보고 지난일을 반성, 닦아올 일들을 새로운 자세로 맞아들여 각자의 생업에 임하게 된다.

지난 82년의 우리 건축계를 검토했

게 회고해보고 새로 맞이할 83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 보면 82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 건축계는 지난 어느해 보다 다사다난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 침체와 모색과 관망의 해

첫째로는 침체된 경제여건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침체와 모색, 관망의 해라고 간주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서 정부의 진정한 민주화로의 의지로서 지방자치를 전제로 한 행정구역의 변동이라든가 인구증가에 따른 지방도시의 승격 등에 따른 새로운 행정건물 청사(廳舍)가 도처에서 신축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신축건물의 설계에

있어서 어떤 곳은 일반공개현상설계나 혹은 지난 81년도에 유행했던 소수의 지명 사무소에 대한 지명현상설계, 또는 지명설계 등으로 거의 종결되었다.

이런 일들은 작품심사에도 거의 한정된 인사들로서 심사위가 구성되었다는 점이고 한결같이 권위주의의 상징인양 대개가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다(전례대로). 이러한 설계경기의 실패는 우리들이 오랜 시간을 갖고 노력해 왔듯이 구태의연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것은 건축 3단체가 합의한 “한국건축현상설계 경기운영위원회”의 회칙이나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시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건축작품심사가 반드시 학술적이거나 이론적인 것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

각하는 사회나 또는 우리 건축인들의 의식이 문제라고 생각하며 발주처의 독주·독선은 없었는가 하는 것도 한번쯤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다.

□ 아쉬웠던 몇가지 일들

민주사회에서 특히 공공건물이 특정한에게만 기회가 부여된다든가 권위가 자연스럽게 강행된다든지, 선의의 경쟁문호가 좁아진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83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일반 공개설계경기가 상식화되고 심사위원 구성에도 제야건축가가 참가해야만 하겠고 특히 국가적이거나 그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는 외국인 건축가를 심사위원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적하다. 또 응모요령도 엄정공평이 생명인 경기인 만큼 경기운영위의 규정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수작품이 응모되고 그중에서 선택한다면 과거와 같이 불미스런 일들이 없어질 것으로 믿는다.

다음은 건축관계 법규의 잦은 개정에 관한 것으로 이는 지난 82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과정이 견잡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변동이 있었다. 한 예로서 일괄수수방식(턴키베이스)과 관련된 특별법으로 그동안 점차적으로 건설업체 자체 내에서 기피하는 본질적인 모순이 파생돼 차츰 호지부지해지고 있다. 좀더 확고부동한 법규제정이 건축계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올림픽/독립기념관과 건축계

두 번째로는 88올림픽이 물고온 충격울 들지 않을 수 없다. 올림픽을 위한 시설은 기존시설도 많지만 앞으로 건설할 시설도 많이 있다.

월여 전에 현상공모로 일단락이 된 조직위원회 건물 외에도 선수촌·기자촌·프레스센터 등등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건립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조직위원회 건물 현상공모에서 심사위(전문위)가 뽑은 작품을 조직위(비전문가)에서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결국 당선작이 없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전문가가 선정한 작품이 어떤 이유이든 인정받지는 형편이라면 과연 이러한 현상공모는 사실상 필요없는 것이 아닐 수 없으며 이는 앞으로

있을 현상공모에도 적지않은 우려가 예상된다.

올림픽이 단순히 스포츠의 경연장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문화가 한자리에 더붙어 평가를 받는 계기라는 점에서 그 의의는 크며, 특히 그 장소가 우리나라라는 점에서 더욱 건축이 갖는 의의는 색다르다.

세째로 몇해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복부인·콘손 등 유행어가 올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은 하나의 오점이 아닐 수 없다.

건설업이 궁극적으로 이윤추구에 목적이 있겠으나 국민경제에 준 악영향은 너무 컸다. 그 이유는 81년부터 계속된 불경기가 82년에도 여전했다는 간접적인 영향도 그것이고, 그로 인해 건축계도 그 여파가 미쳐 설계사무소의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감원이나 기구축소가 불가피했으며 심지어는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네째로는 해방후 40여년 동안 생각지도 않았던 독립기념관건립이 일본교과서 왜곡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범국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따라 기념관의 위치·규모·건축양식 등에 관한 일반의 여론이 비등한데 비해 가장 관계가 깊은 건축계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의견표시가 없이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이다. 마땅히 전문가적 입장에서 종합된 의견이 정립되어 제시되어야 함이 당연하겠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앞서 말한 올림픽조직위의 처사나 또는 지금까지 국가적인 대규모 건조물에 대한 처사들의 전례를 보아 발언할 의욕을 잃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선정, 규모, 양식의 결정이나 기본계획이 전문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비전문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는 풍토가 안타까운 일이다.

건축문화가 건축가와 무관한 사항이라는 뜻이 되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건축계는 회의적인 태도로 관망하고만 있는 형편에 있는 것 같다.

다섯째, 이상과 같은 안타까운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일도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제1회 대

한민국 건축대전이 그것이다.

이전까지 판에 의해 국전의 한부분으로 열렸으나 그것이 금년부터 민간단체에서 열리게 되어 그간의 불협화음을 일소에 부치고 새출발을 하게 되어 큰 다행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아직도 보조금문제 등으로 완전한 자립을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출품작품이 그전(20점 정도)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점으로 미루어 보면 그만큼 민간단체로 넘어온 것을 쓴 다행으로, 건축계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실 늦은 감은 있으나 건축계의 한 축원이 풀린 셈이다. 큰 잔치를 치문 현재 마무리할 몇가지문제가 들는 이로 하여금 아쉬움을 갖게 하지만 완전한 민선의 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여섯째, 우리나라 건축계의 국제화는 필연적이며 이미 많은 활약을 하게 되었다. 건축가들의 국제회의 참석이나 해외여행의 기회가 차츰 늘어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적극참여할 여지 마련필요

특히 근자에는 공산국가에서 개최되는 건축관계회의 등에 참석할 수 있었다는 것은 괄목할 일임에 틀림없다. 이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유치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그만큼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차후 더욱 분발해야 할 일이다. 당국에서도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 지난 한해 동안 건축계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모든 일들이 사회 전반적인 복잡다난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되며 한편으로는 우리 건축인들에게도 어떤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

불성실이나 연대감없는 방관, 이기적인 불참여, 소극적인 발언의지의 결여등이 있다고 볼 때 지난 한해의 회고라기보다도 반성의 자료로서 받아들여야 마땅할 것이라고 여긴다.

□83년에 바라는 몇가지

이런 의미에서 지난해를 망성하면서 새로 올 1983년에 어떤 기대나 희망 같은 것이 없을 수 없다. 건축계 전체의 소망이 아닐지라도 필자개인으로 몇가지 새해의 희망과 기대를 걸어본

다면, 첫째 건축분야의 일관성있는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해 장관급의 건축청 창설을 바란다.

건축이 하나의 전문분야면서도 전문가보다도 비전문인의 견해가 우선한 다든지 각종 건축에 관계되는 고시, 변허, 허가에 이르기까지 크게는 국토개발이나 기획, 국가적인 대규모행사의 기본계획에 전문분야로서의 참여가 가능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안되고 있어 이의 실현을 위해서도 건축청의 창설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미국의 국무성과 A·I·A와의 밀접한 관계나 한국의 N·C·D·C의 조직이나 직책을 살펴보아도 우리의 현실에 꼭 필요한 기구라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우리 건축인들이 먼저 자

작하고 실천해야 할 일이지만 공공건물이나 시설의 공개설계경기의 법제화이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도 작가의 저작권이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한 이유가 된다. 특히 이 문제에는 제재가 반드시 있다. 즉 공평무사한 심사규정이다. 현행 건축 3단체 설계경기운영위원회의 제반규정을 우선 인정하고 서서히 개선해 가면서 궁극적으로는 U·I·A의 국제설계규정에 까지 이른다는 목표가 선포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국제사회생활에 적응해서 공존하는 일이 될 것이고 많은 우수작품들이 응모될 줄 믿는다. 외국에 비해 우리의 경우 응모작수가 너무 적었던 것은 모두 이러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건축이란 그 사회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말은 건축이 생성되는 풍토와 분위기를 중시하는 말이라고 할 때 우리 사회 상황이 민주화되면 민주적인 건축이 이루어지고 사회가 발전하면 결국은 사이비나 우한 건물밖에 생겨나지 않는다고 보며, 우리는 지난해를 회고해서 반성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건축계의 풍토정화에서부터 힘쓰고 나아가 법규나 기구의 재정비는 물론 전체 건축인들의 연대감을 가진 성실한 발언과 참여가 이루어져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발언, 질문, 제안의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고 또 한해가 저물어 가는구나 생각하니 안타깝기만 하다.

<*

회원 (준회원) 가입 안내



건축사법 제33조 제 2 항 및 당 협회 정관 제 7조 제 2 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하지 아니한 분으로서 본 협회 준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분은 아래 소정 양식에 의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접수기간 : 1983. 1. 4부터
2. 자격기준 : 건축사면허소지자 (종전 2급 포함)
3. 접수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각시도 지부
4. 제출서류

- 가. 입회원서 1매 (당회 소정양식)
- 나. 준회원 카드 2매 (당회 소정양식)
- 다. 반명함판사진 2매와 증명사진 2매

5. 기타 자세한 문의는 당 협회 총무부나 각지부 총무과로 직접 문의바랍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89
(전화 723-9491~2)

“超克과 挑戰”

朴 英 昊

(의전건축연구소)

□ 精神의 結晶体로서의 건축물

건축작품을 평가하는 경우 작품에 나타난 精神面의 優劣을 들어 評價基準을 삼는 경우를 본다.

지출한 사람과 송고한 理想의 사람, 타락한 사람과 聰慧한 哲人, 이 상반되는 사람들의 작업 결과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으리라는 예상이 가능하면 적어도 그런 基準이 근거없는 것만으로 批評받을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中世 基督教建築을 극찬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그러한 점을 쉽게 수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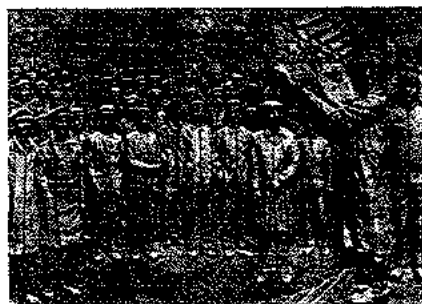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생활하던 시절에 敎會堂을 짓는 일에 慾氣나 邪心을 앞세울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한 연유로 회화를 하는 사람이나 일을 主管하는 사람, 실체나 시공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渾然一體가 됨으로써 절작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들의 송고한 이상과 念願으로 이루어진 結晶体인 것이기 때문이다. 闘技場이나 淫亂遊興場에 비하여 修道院이나 不具者福祉施設이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다. 반면 아유스비츠 受容所와 같은 建物이 실사 아름다움과 적절한 기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좋게 평가할 수는 없다. 아름답다는 표현조차 '우순한' 이야기가 된다. 不道德한 사람들, 非人間的인 사람들의 기획물이기 때문이다.

自由와 平和를 사랑하는 선량한 많은 사람들의 所望과 念願을 뒷받침하여 태어나려 하는 것은 그것의 의미를 작별히 할 수 있다는 데 일차적 의의를 지니게 된다. 高麗人藏經은 字体의 아름다움과 제작의 정교한, 내용의 정확함이 世界 으뜸이라 한다. 이것은 바로 國難을 이기려는 민족의 한결같은 염원 속에 이루어진 데 그 까닭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獨立紀念館에 보내는 저마다의 聲援으로 봐서 그것이 으뜸이 될 수 있는 소지를 가능하

게 함을 일차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 더하면 더다

돌아켜 생각한다면 온갖 정성을 바치는 것이 중요한 일이긴 하겠지만 거기에 비하여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도 허다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더하면 더다> (或益之而損)라는 老子的 警句를 새삼스럽게 한다. 모든 것은 언제나 줄이려고 하면 불어 나고 더해 주려고 하면 도리어 줄어 든다는 말이다. 바꾸어 말한다면 잘하라고 성화를 바친다면 더 못하게 된다는 의미를 암시한다. 衆人의 온갖 열성과 요구 기대를 어떻게 소화하여 紀念館 속에 투입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일을 생각한다면 設計·企劃하는 사람의 力量을 운위하기에 앞서 아예 주눅이 들지 않도록 두둑한 뱃심부터 길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부어 넣으려는 요구사항이 너무 많이 와닿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따져보면 獨立紀念館도 하나의 建築物이다. 건축가의 日常에서 처럼 잘하는 사람이 그가 하던대로 잘하면 되는 것인지 모른다. 하나의 건축물로서의 설계과정과 특별히 다를 리 없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는 이런 이야기조차 찬사요 군더더기가 뭘든지 모르지만 좀더 차분한 마음으로 日常의 設計로 돌아가는 것이 어쩌면 좋은 결과를 낳을지도 모르겠다는 인상마저 들게 한다. 이것이야말로 건축인의 본모습을 보여 줄 전호의 찬스, 槓桿이래 처음 갖는 기회라는 強迫觀念이 우리로 하여금 전에 없던 용기를 부리게 한다거나 어떤 雜多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욕심을 부리게 한다 면 평상시보다 못한 결과가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몇몇 외국의 예를 보면서 그러한 感想에 사로잡히게 된다.

□ 主題表現의 가능성에 대하여

音樂·文學·美術 등은 그 자신을

위한 藝術世界의 具現이 가능한 모양이다. 이를테면 音樂을 위한 음악이라든가, 文學을 위한 문학, 또는 美術을 위한 미술이라고 말하는 경우다. 소위 대중가요나 대중문학과 같이 불리우고 읽히기만을 위한 경우도 있겠으나 그 자신의 藝術世界만을 위하여 創作되는, 이른바 絶對音樂이라든가 純粹文學, 일련의 抽象·前衛美術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에 비하여 建築의 경우는 일단 使用目的을 지닌 이상 건축만을 위한 建築이란 생각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건물과 함께 이루어지는 생활을 빼어 내고서 이야기되는 建築物의 이미지·內容·哲學·思维 등은 도대체 無意味한 것이 되어 버리고 만다.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생활이라는 것조차 한치도 빼어 낼 수 없음을 느끼게 된다. 생활이 없어지는 순간 그것은 이미 건축물이 아닌 工作物이나 콘크리트 塊體와 진배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것에 의하지 않고서도 건물에 意味를 붙여 넣을 수 있다면 內容으로서의 생활을 도려내었을 때도 그 意味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 生活이 遊離된 유행의 집으로서의 콘크리트 塊體에서 그런 의미가 어떻게 탄생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건축물에 어떤 思维를 붙여 넣고자 할 때는 쓰임새로나 생활의 일부로서 體得될 수 있도록 하는 외에도 달리 더 좋은 방법이 없음을 느끼게 된다.

요컨대 外樣이나 構造·材料·규모·조형감·비용만에 의지하여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形而上學的인 면이나 갖가지 哲學을 다 表出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간혹 建築에 있어서의 象徵性을 생각하게 된다. 이를테면 勝戰紀念館과 같은 경우는 병면·입면·볼륨·창호문양 등에 <V>字를 사용함으로써 그런 意味를 지니게 한다던가, 圖書館은 책 모양으로 집을 짓는다던가 하는 착상에 얼마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建築物이 생활과 관련하여 갖게 되는 큰 意味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변죽만 울리는 결과가 될 것이며 차라리 勝戰紀念館이나 圖書館이라고 크게 써서 걸어두는 것만 못한 일차원적인 着想이 되어 버리고 만다. 그것은 차라리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이나 한다고

할까. 구구한 설명에 의하지 않고는 그 事變을 알 길이 없다.

□안으로부터 뚫리는 새로운 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그것이 復古的인가 未來指向의 인가 하는 경우를 생각하게 된다. 단순히 現實에 머무르려 하지 않는다면 이 두 경우에 대하여 서로 가치를 견주어 봄이 우선한 일일뿐지도 모른다.

어떤 이는 어느 時代, 어느 狀況이건 두개의 相反되는 現象이 混淆되어 존재함을 믿으려 할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역사의 進運과 같이 어떤 週期를 지나고 반복되는 자연스러운 歷史現象으로 파악하려 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러 주장이 다 옳다 하더라도 어느 것이 더 좋은 文化現象이나에 대한 정당성을 선뜻 찾을 수도 없는 것 같다. 그럴 것이 이러한 것들이 개인의 취향이나 자기 世界觀, 또는 특정 집단의 관습에 의한 것이라면 간섭의 대상으로 삼는 것마저 불유쾌한 일인지도 모른다. 당신은 고전음악을 듣지 왜 대중가요나 듣느냐는 식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일은 설불리 개인의 취향이나 자기 世界, 作家의 世界觀만을 우선하여 앞세울 성질은 아니라 생각된다. 가급적 韓國建築文化의 卓越性을 공히 인정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거니와 世界文化에 대한 공헌에 일익을 다할 수 있도록 名分을 설정할 수 있다면 더욱 더 다행스러운 일일 것이다.

물론 作家의 世界觀이 위의 사항을 다 包容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미의 世界觀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建物로서의 디자인과 꼭 一致함을 생각할 수는 없다. 아울러 그러한 世界觀마저도 어느 순간에 뒤엎어 버리고 싶은 人間的인 客氣의 잠재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일에 앞서는 노파심도 무리는 아닌 것 같다.

어느 한면에 치우침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경우마다 옳은 것들 뿐이었다. 復古主義者가 祖上의 업을 물아보았다 하여 그만이 愛國者인 것처럼 稱頌된다던가, 未來主義者가 理想郷을 잘 편다고 해서 아이디어가 다던가, 또는 現實主義者가 말로 현실의 狀況을 누구보다 더 잘 파악하

고 있다고 칭찬되는 경우를 흔히 보아 왔다.

文化를 새롭게 수용하거나 형성해 가는 데서 두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주어진 자기 것만을 고수하여 한치도 새로운 것의 침투를 허용하지 않는, 이른바 鎖國主義와 같은 경우가 되겠으며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개방하여 自由放任함으로써 맹목적으로 수용하거나, 아니면 조금씩 좋다고 생각되는 것만 취사선택하는 개방적·선별적인 형태의 文化形成이다.

우리는 兩者의 결점과 피해를 알고 있다. 우리는 첫번째의 피해자이기도 하며 두번째의 피해자이기도 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토인비(A. J. TOYNBEE)의 견해는 이러한 점을 수습하기에 앞서 傾聽하여 볼만 하다. 스스로 앞을 보고 있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옆을 보고 옆사람 흉내를 내는 것, 아무라 잘 되어도 신동치 않으며 잘못되면 서로 맞지 않



는 요소의 不調和한 것, 過去再興의 착상을 현재를 원할히 운영해 가는 일에 종속시키려는 모순 등으로 지적하는 批判的 견해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피해의 아픔을 새삼스럽게 한다.

이러한 견해를 주목한다면 이들을 초월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에서의 모색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우리는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길, 鎖國的인 것도 復古的인 것도 未來的인 것도 現實主義的인 것도 選別的인 것도 盲目的인 것도 아닌 어떤 다른 길을 생각하게 된다. 그것은 그의 말대로라면 <사도 바울과 같은 길>이다 <원기 生命力이 있는 새로운 내부로부터의 다이내믹한 힘이나 創造的인 운동의 출현에 의해 挑戰되는 경우> 이들에 구애받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시점에서 獨立紀念館의 個性의 主題를 생각한다면 그러한 拘礙로부

터 벗어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紀念館의 의미를 한층 더 명료하게 부각시키는 효과를 지닐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런 名分이 의도적인 企圖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실제 디자인으로 提示되지 않는 한 우매한 추상적 論理의 오류에 빠져들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前提이건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면 이를 충분히 살려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보장되어야 한다.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나 激勵·辟援하는 사람과 실제 設計하는 사람의 긴밀한 관계를 새삼 눈휘할 것은 아니지만 이를테면 相互間에 大義名分을 저버리지 않도록 협력함으로써 그 관계를 더욱 더 깊은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方案과 같은 것이다. 간섭이나 감독이란 지나친 표현이겠지만 적어도 그런 의미를 지닌 관계를 최악의 상태에서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항상 잘하려고 하면서도 한번도 잘한 적이 없는 입장이라면 이런 背水의 작오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뜻을 지니고 배어난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共感할 수 있는 社會文化的 배경은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建築物이 文化環境의 產物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 存立의 가능성도 역시 그 母社會 속에서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질 좋은 文化環境을 토대로 하지 않고서는 설사 좋은 것이 태어난다 하더라도 偏見과 誤謬, 뜻없는 사람들의 無關心 속에 다시 사라져 버릴뿐지도 모른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나가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갈 필요를 느끼게 된다.

갈수록 점점 산중이다. 캄캄한 가운데 한줄기 빛을 기대하는 것과 같은 막연한 작업일뿐지도 모른다. 또 실지 그러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아예 名分을 떠나면 서까지 그 일을 수행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적어도 우리가 가려야 할 일들을 알기만 해도 새로운 도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天然의 眞理, 굳센 生命力을 지닌 眞實된 것, 순수한 創意力, 是非에 얽매이지 않는 超克, 이러한 것들에 관한 우리로부터 成功의 可能性을 결코 앗아갈 것 같지는 않다.

空港建築에 대한 小考

吳壽永 — (주)교우건축

PLANNING OF AIR-PORT TERMINAL

Oh, Soo Young — Kyo-u Architects & Engineers

1. 서 언

한 시대의 건축은 그 시대의 문화적 시대상을 반영해 주는 하나의 언어로서 건축기술의 유산이며 창작의지의 결실이라고 한다.

또한 많은 선배들의 노력으로서 한 시대가 누릴 수 있는 기술집약적 체험이기도 한 것이다.

공항건축... 축적된 기술과 경험이 없었던 우리에게 이 프로젝트는 긴장감과,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는 긍지를 함께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불과 10여년 전인 1970년대 초반에도 공항건축설계를 경험한 기술자가 부족하다해서 국제입찰로 외국설계용역업체에게 막대한 외화를 지불하고 시공했던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우리 손으로 우리 실정에 맞고, 우리 몸에 맞는 공항을 설계할 수 있다는 하나의 시험장에 들어서 있으며 또한 우리의 것은 우리가 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는 우리 건축인에게 큰 사명감과 책임을 안겨 주었으며 이로 인한 우리의 노력도 한층 증진될 수 있었다.

그동안 수집한 막대한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수행한 공항건축의 이론과 실재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고자 한다. 다만 안보상 계획과정 및 계획도를 실지 못함을 유감으로 여긴다.

2. 배 경

1903년 12월 17일 라이트형제가 처음으로 동력비행기를 하늘에 띄우면서 80여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해온 세계 항공사를 돌이켜 보면서 우리나라의 항공발전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1949년 9월 1일 첫 민항(NWA)이 우리나라에 들어온지 불과 30여년이 지났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지금은 세

계항공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최신향 공기로 세계를 키머하고 있다.

그중에도 순수한 민항의 역사는 짧은 기간에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결과이며 세계적인 항공기이용 인구의 증가추세에 따른 소산이기도 하다.

우선 공항의 터미널은 한 나라의 관문으로 그 나라의 얼굴이기도 하다. 따라서 규모가 커야 하며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재반여전이 함축성있게 조화된 성숙미를 보여줘야 하며 건물은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되어야 한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정부의 재반여건상(한정된 예산 및 시행기간 등) 현 김포국제공항의 확장이 불가피하게 됨으로 인하여 88년 올림피아대회시 항공수요에 대비하되 1990년대 외 항공수요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효율성을 살리느냐 하는 것이 시행당국의 최대 관심사고 우리의 임무이기도 했다. 따라서 그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공항시설을 간단하게 구분하면 첫째, 항공기가 도착하기 위해서는 활주로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도착한 항공기가 머무를 수 있는 격류장(繫留場)과 셋째,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정사(대기실)가 있어야 한다. 비제는 여객들이 신속안전하게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주차장을 비롯한 지상 교통수단이 있어야 한다. 상기 사항들의 구체적인 규격이나 상세한 시설기준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건축분야의 청사(대기실)에 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3. 시 험

공항청사(AIRPORT PASSENGER TERMINAL)는 기능성이 뛰어나

야 하며 차츰 대중 교통수단화되어 감에 따라 완공 목표년도인 1988년에는 더욱 이용 인구가 증가될 것이다.

따라서 공항은 단위시간 내에 대량의 여객처리를 신속, 안전,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국제선청사지역은 청사 외에도 부속 건물들의 대형화 및 세분화로 인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메인빌딩은, 나라의 관문으로서 상징적 건축표현이 요구되고 있다.

많은 여객을 한정된 시간 안에(평균 30~50분) 소화하기 위해서는 여객의 흐름이 쉽게 유도될 수 있도록 기능적인 평면계획이 되어야 한다.

선진외국의 예나 국내 기존 공항청사의 형태를 기본으로 계획에 접근하는 소극적 방법도 제시할 수 있으나 그 사대가 요구하는 적정한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가상하여야 할 불가피한 조건들이 있어 기준설정이 건설시기 및 국가여건에 의하여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평면계획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간단히 요약하면

① 직접적 요소

가. P/D(peak hour) PASSENGER VOLUME

나. 여객에 대한 승객비율

다. 국가정책(출입국절차, 통관절차, 보안절차 등)

라. 수화물 휴대량

마. 지형(입지조건)

② 간접적 요소

가. 터미널 형태

나. 동선의 형태

다. TRANSIT PASSENGER(통과여객)

라. 체크인 카운터 형태

등이 있으며 상기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 직접적 요소

㉞ P/H PASSENGER VOLUME (시간당 최대여객수) PEAK HOUR란 수요가 최대집중을 보이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공항에서 이 시간에 발생하는 수요에 따라 시설소요량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설계시간(DESIGN HOUR)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설용량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시설이 갖는 기본용량(BASIC CAPACITY)과 부하되는 수요의 P-ATTEN 및 제공코자 하는 서비스수준(LEVEL OF SERVICE) 사이의 관계가 규명되어야 하며 PEAK HOUR는 이 3요소 중 수요에 관한 사항이며 규모결정의 기초가 된다.

또한 이때의 수요는 공항의 거의 모든 시설에 대한 실용용량(PRACTICAL CAPACITY) 산출의 기본을 이룬다.

상기와 같은 개념하에 과거 수송설계, 미래의 수송전망, 세계적 항공여객 이동추세, 항공기의 발달, 국제정세, 경제적 성장률 등 각종 여건 등을 분석, 검토하여 목표년도 P/H의 P-PASSENGER, CARGO, 항공기 등 수요분석에 따른 결과로 산출될 수 있다.

㉟ 여객에 대한 송영객의 비용

송영객의 내 여객비용은 청사규모 산정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중의 하나이다.

이는 사회여건 및 국민의식 구조에 의하여 형성되는 듯하다. 항공여행이 일반화되고 있는 구미의 공항은 그 비율이 미미하나 우리는 그 반대로 대단한 비율이다. 현장조사에 의하면 평균 1 : 5 이상을 상회하며 최대 1 : 30 이상의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항공여행이 일반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 목표년대에는 1 : 3 이하로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㊱ 국가정책

국가마다 그 나라의 실정에 따라 정책여건은 다양하다. 출입국절차, 검역, 세관의 통관절차와 한국적 특수여건인 남북분단으로 인한 보안검색절차는 많은 체크·포인트를 필요로 하여 청사의 면적증대 및 대단위 검색공간이 요구되는 것이다.

㊲ 수하물 휴대량

외국의 경우 계산기준은 중간 정도의 화물량으로 1 : 1.5 정도이나 우리나라는 1 : 2.5 이상이 되고 있다.

㊳ 지형(입지여건)

지형이 '특히' 공항건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위공간의 대량화에 기인한다. 점보기 1대의 주기면적은 약 5천평방미터이며 여객의 최대적재량은 450명, 이륙시의 무게는 약 325톤이다. 이는 곧 동시에 항공기가 수대이상 청사에 접촉될 경우 주기장의 제공, 단위시간 내의 대량여객처리, 송영객의 상대적 수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거대한 면적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고저(Level)에 대한 이용계획이 따라야 한다.

(2) 간접적 요소

㉞ 터미널 형태

여객의 규모에 기준한다면 LINEAR TYPE는 적당치 않다. ANNUAL PASSENGER 1천만 정도면 PIER 또는 SATELLITE TYPE이 선택되어야 할 것이나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 타입은 정부방침에 의해 제일단계에서 LINER TYPE으로 확정되었다.

참고로 여객청사의 형태별 분류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청사의 형태별 분류

○ 형태별 분류

○ 청사는 주기(駐機) 형태에 따라

A. TRANSPORTER TYPE (OP-EN TYPE)

B. LINEAR TYPE

C. PIER TYPE (FINGER TYPE)

D. SATELLITE TYPE

E. UNIT TYPE

으로 구분되며 각 형태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A. TRANSPORTER TYPE



(1) 탑승의 규제 및 풍우음에 대한 여객보호에 무리

(2) 보행 및 BUS를 이용한 탑승방식

(3) 여객 및 화물동선의 분리가 어렵다.

(4) 송영객처리에 무리가 있다.

(5) 건설 및 운영비가 저렴하다.

(6) APRON의 항공기 지상이동이 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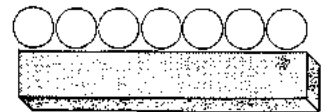
(7) APRON의 확장이 용이

(8) 고정 SERVICE 시설 설치가 어렵다.

(9) 비교적 소규모 형태의 공항이다.

예) ZURICH 공항·종래의 구미 각 공항

B. LINEAR TYPE



(1) 풍우음에 대한 여객보호 및 탑승용이

(2) CONCOURSE를 이용한 탑승방식이다.

(3) 여객 및 화물동선이 난이하다.

(4) 송영객 처리에 무리가 없다.

(5) 건설 및 운영비가 저렴하다.

(6) APRON의 융통성 및 항공기 지상이동 용이

(7) 고정 SERVICE 시설 설치가 용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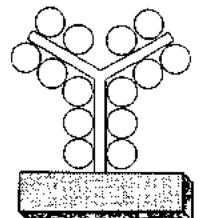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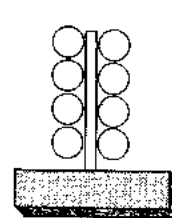
(8) 검색기능이 집중되므로 혼잡 우려

(9) 소규모의 공항에 적합

예) 김포국제선청사·PARIS REVORTIE 공항·NARITA

국제선청사

C. PIER TYPE (FINGER TYPE)



(1) 풍우음에 대한 여객보호 및 탑승용이

(2) CONCOURSE를 이용한 탑승방식임.

(3) 여객 및 화물 동선이 난이하다.

(4) 송영객의 처리에 무리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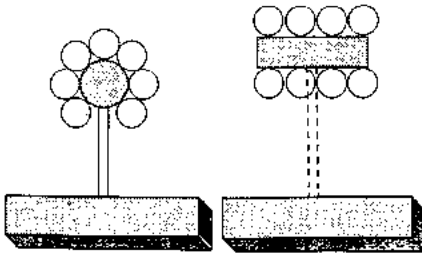
(5) 건설비는 TRANSPORTER TYPE보다 고가임.

(6) APRON의 융통성 및 항공기 지상이동이 난이하다.

- (7) APRON 확장이 난이하다.
- (8) 고정 SERVICE 시설 설치가 용이하다.
- (9) 소규모 공항에 적합하다.

예) MAR-SEILLES-NARITA
국제선청사(2차계획)·St.
LOUIS NEW YORK 국제
선 ARRIVAL TERMINAL·
SINGAPORE CHANGRI
공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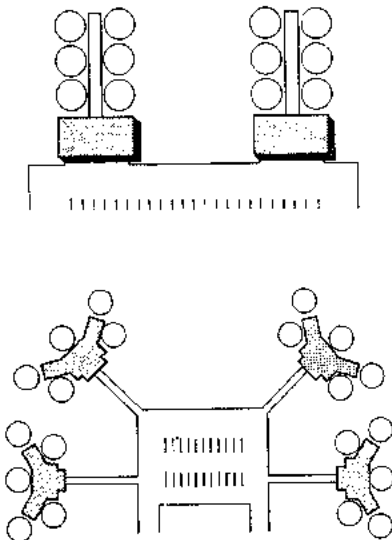
D. SATELLITE TYPE



- (1) 풍우음에 대한 여객보호우수·탑승용이
- (2) 터미널과 SATELLITE를 연결하는 지하도 필요
- (3) 여객 및 화물동선에 무리없음.
- (4) 승객의 처리에 무리가 따름
- (5) 건설비가 고가임.
- (6) APRON의 융통성 및 항공기의 지상이동이 용이. 확장성 없음.
- (7) 고정 SERVICE 시설 설치가 용이하다.
- (8) 대규모 공항에 적합하다.

예) LOSANGELES·PARIS 살
드블 공항·NEW YORK 국
제 T. W. A

E. UNITE TERMINAL 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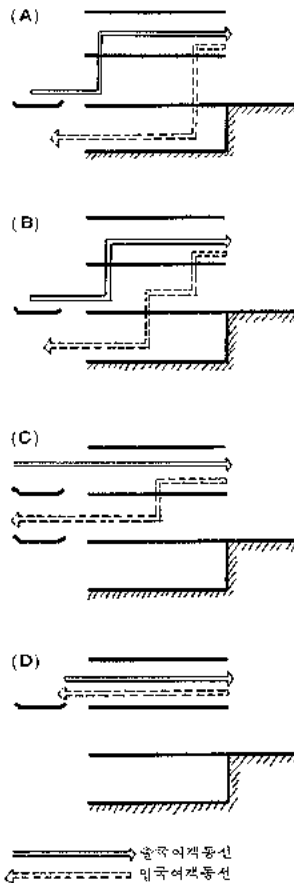
- (1) 노선별 항공사별 청사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2) A~D의 혼합방식 TERMINAL 기능
- (3) 여객의 집중복잡화를 방지할 수 있다.

- (4) 각 청사의 형태에 따라 운영방식이 상이함.
- (5) 건설비가 과다하다.

㉔ 동선의 구분

지형 및 출입국여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각각 분석하면



- (A) 현 청사 동선형태임. 출국에는 무리가 없으나 입국시 2개층을 진입하는 것이 여객에게 불편을 주며, C. I. Q의 동일층배치로 혼잡함.

- (B) 현 청사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입국시 중간층에 QUARANTINE & IMMIGRATION 기능을 두어 혼잡을 방지할 수 있음.

- (C) 출입국별로 ACCESS ROAD를 분리하면 여객동선에는 무리가 없으나 현 청사와 연결관계, 공사비과다, 1층 사용계획에 무리가 있음.

- (D) 3층면적이 지나치게 비대해짐. 층별 균형을 유지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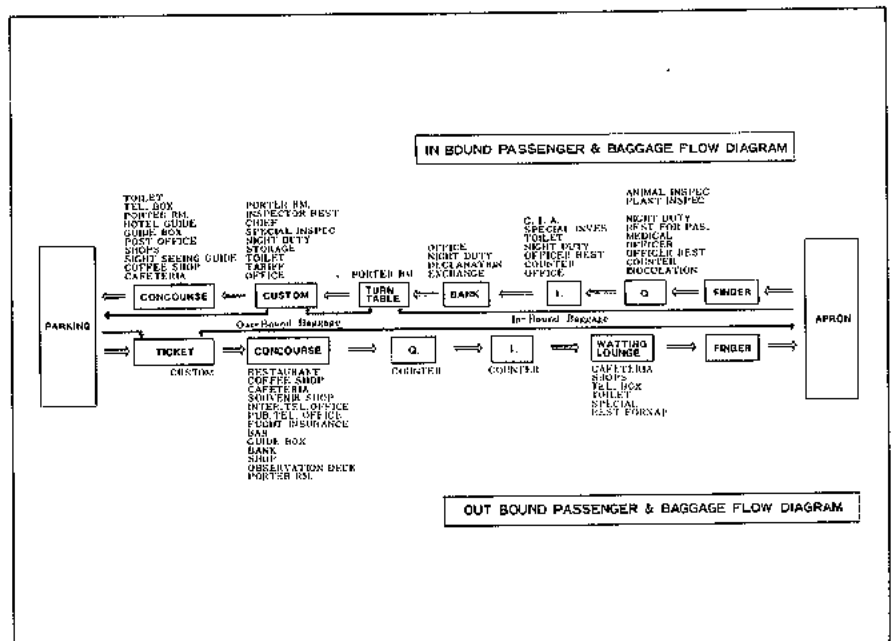
본 계획에서는 상기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B)의 방식을 선택했음.

참고로 여객동선의 분류와 흐름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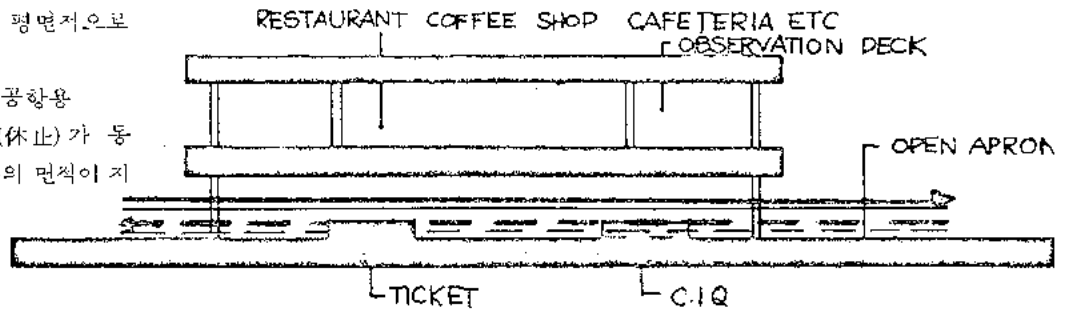
□ 동선의 분류

청사의 동선은 규모·주기(駐機) 형태, OCCUPANCY LEVEL에 따라 흐름을 달리하나 IN 및 OUT BOUND의 PASSENGER와 BAGGAGE 동선을 분리한다는 개념은 동일하다.

동선의 변화형태와 형태변 특성을 비교하면 <표1> 및 <그림 1~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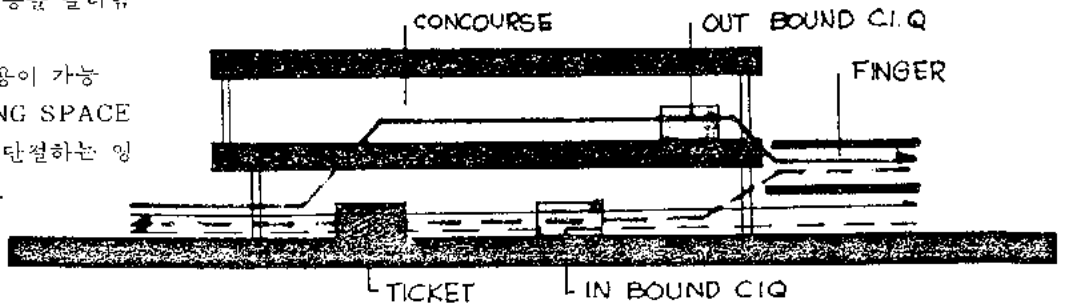


- 여객 수화물 동선을 평면적으로 처리
- 단순 경제적 소규모 공항용
- PROCESS와 휴지(休止)가 동선에서 처리됨으로써 1층의 면적이 지나치게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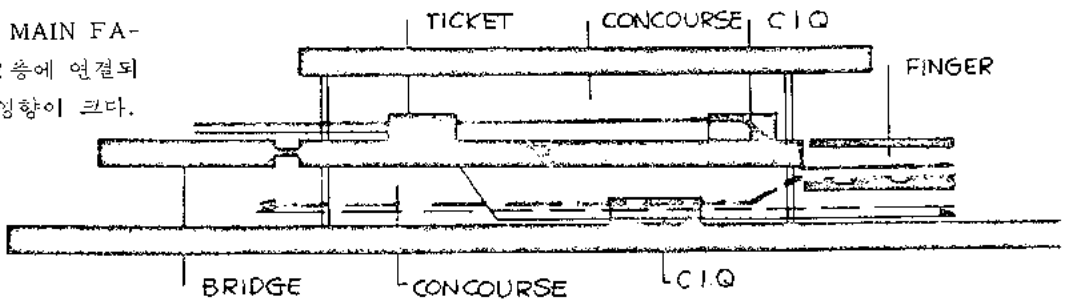
- 차량과 사람의 동선이 전혀 분리되지 않으나 IN BOUND FLOW와 OUT BOUND FLOW는 층을 달리함으로써 분리

- 대형기 탑승고의 사용이 가능
- TICKET CHECKING SPACE가 IN BOUND의 동선을 단절하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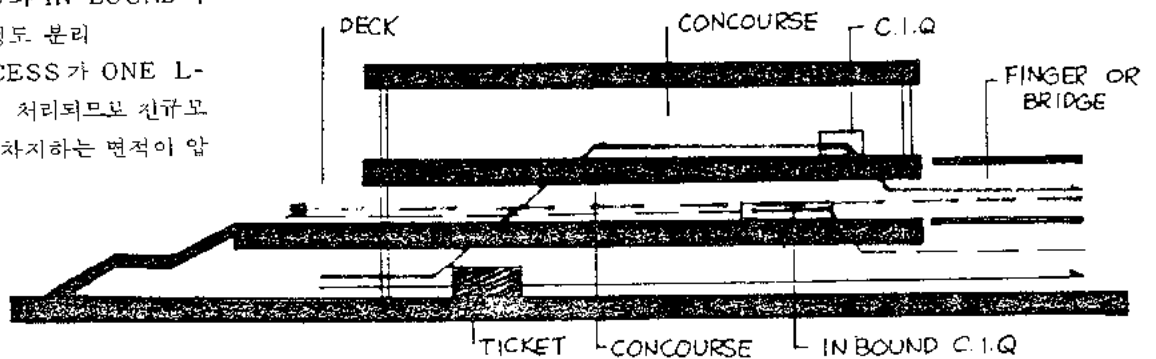
- 모든 동선의 해결과 분리를 위하여 가장 배려가 잘된 이상적인 동선 분리 TYPE

- 이의 성취를 위하여 MAIN FACADE를 가로 지르고 2층에 연결되는 BRIDGE는 조형적 영향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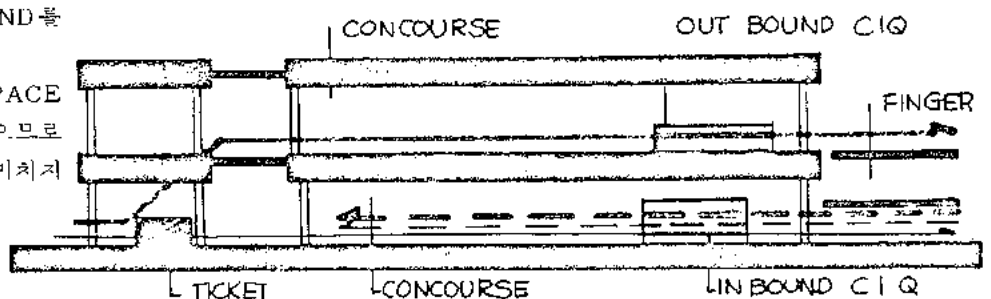
- OUT BOUND와 IN BOUND의 차량동선을 어느 정도 분리

- 2개의 PROCESS가 ONE LEVEL 즉 2층에서 처리되므로 건규모에 대하여 2층이 차지하는 면적이 압도적으로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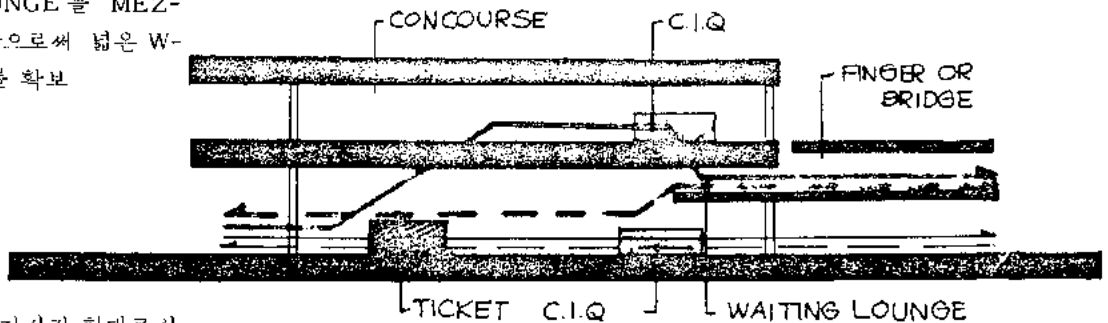


- OUT BOUND와 IN BOUND를 위한 차량동선을 명확히 구분

- TICKET CHECKING SPACE는 주건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므로 IN BOUND FLOW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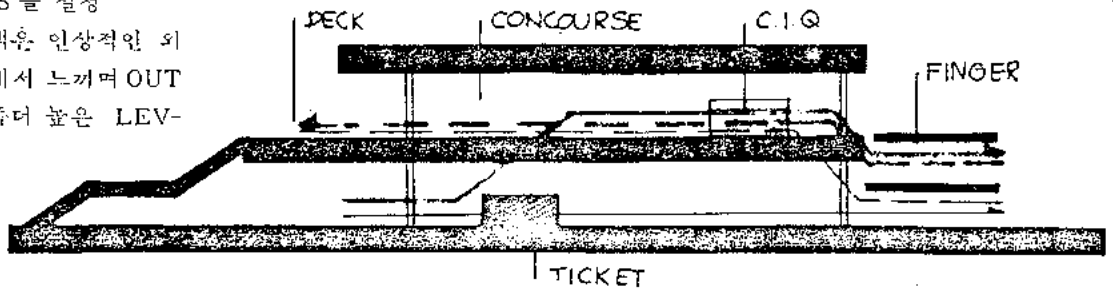


○ WAITING LOUNGE를 MEZZANINE 층에 설정함으로써 넓은 WAITING LOUNGE를 확보



○ 〈그림-40〉을 발전시킨 형태로서 MEZZANINE 층의 LEVEL에 IN BOUND의 PROCESS를 설정

○ IN BOUND 여객은 인상적인 외부공간을 DECK 위에서 느끼며 OUT BOUND의 공간은 좀더 높은 LEVEL에 있게 된다.



㉔ T/S 여객

충공과의 향로개설시를 대비하여 HOLDING LOUNGE 및 T/S 여객용 AMENITY를 확대 배치했다.

㉕ 체크인 카운터 타입

(A) ISLAND TYPE : 대규모공항 청사에 적합하나 평면형태가 종으로 길어져 여객처리단위가 높아지고 여객과 송영객을 분리할 수 없다.

(B) ENDLESS TYPE : 동선이 길어지며 여객처리 능률이 저하되는데 단점이 있으나 여객과 송영객을 분리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고 BAGGAGE SECURITY 기능이 우수하다.

4. 입면형태

1) 전통성 : 한국적 상징

2) 기능성 : 자연채광, 환기, 공간성

3) 조화성 : 기존건물

상기와 같은 전제하에 전통적인 부드러운 곡선의 곡면지붕 형태를 기존 청사와 동일한 CONCEPTION으로 처리하여 전체적인 조화를 강조했고, 기능적으로는 최대한 자연채광을 실내로 유도하였으며 곡선의 지붕형태는 내부의 공간성과 평면기능에 일치하도록 했다. 청사입면은 장대한 유리벽면으로 처리하여 단순명쾌한 현대건축미의 표출을 시도했다.

청사형태는 평면기능의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각부분의 타당성이 검토되

었으며 이는 세계의 공항건축 추세와 동일한 개념임을 밝히 둔다.

1950년~1960년대의 미국공항을 대표하는 National Airport, Dulles의 T.W.A, PAN America, St. Louis (YAMASAKI)는 당시 미국의 Multi-Nationalism이 팽배하던 시대의 전형적인 그리스 신전양식을 표현한 건물로 심볼, 장대(柱), 호화로움 건물의 뜻이 강하다. 항공여행이 일반화된 오늘날에는 “여객의 유도사스름이 명쾌하고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개념과는 거리가 있는 건물들이다.

현재의 공항건축추세는 평면기능이 우선하며 외부형태는 그 기능을 포용하는 한 메체로 존재한다는 주장이며 이는 최근에 완공된 Singapore Changri공항, 미국 TWA국내선청사, 일본의 나리타공항, 올림픽게회시를 대비하여 건설 중인 미국 LA의 새국제선청사 등의 입면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건물바닥평면의 면적이 약 3만평방미터의 거대한 건물을 전통적인 외관형태로 다루는데는 많은 고충이 있었으며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다.

5. 구조계획

방대한 퍼브릭 스케이스의 공간처리 난점은 가능한 무주공간(無柱空間) 처리와 그에 합당한 구조적 해결이다.

본 계획에서는 POST TENSION 구조를 선택하여 평면기능성 제고 및 경제성과 본격적으로 일반적인 건축구조 개념의 혁신을 시도했다.

6. 예산성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건물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비용이다. 충분한 예산과 충분한 시간은 건축가에게 결자를 남겨주는 기본요소이다. 우리나라 모든 건축물이 대부분 마찬가지로 이였으나 특히 정부의 예산사정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런 사정에 맞춰 규모축소라는 뼈아픈 바를 감수해야 했고, 조정된 규모에 상관없이 필요한 기능을 담아야 하는 고충도 있었다.

7. 결 론

본 공항이 완공되는 87년~88년의 공항수요 추정이 생각대로 맞아서 오는 88년 유람대회여객의 여객수송 및 우리나라 항공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금도 본 설계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관계관 및 각 전문분야별 교수, 박사님들 그리고 구조, 기계, 외장, 전기설비 등 담당자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그간의 수고와 고충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드리고 공항건축 분야의 기술축적의 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인테리어 디자인의 歷史①

(古代에서 로코코樣式까지)

朴 弘 — 건축가 · 中央大교수

人間의 住居는 衣·食과 함께 人類生存과 역사를 같이하여 왔다. 인간의 住居史가 그랬듯이 인테리어 디자인 (Interior Design)도 유구한 人類歷史를 통하여 변천되어 온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생활하는 風土條件·社會組織·文化的 배경과 그것에서 기인되는 生活樣式의 변화에 따라 그 나름의 독특한 양식을 전개시켜 시대적 遺産으로 문화적 자취를 남겨 온 것이다.

이 후에서는 古代 이집트에서부터 20세기까지의 주요한 樣式의 변천을 고찰함으로써 지난간 歷史를 더듬어 보고 그 근본적 原理를 탐구함으로써 보다 나은 내일의 생활을 계획하기 위함이나.

1. 이집트 (Egypt)

풍요로운 나일강의 범람과 太陽의 혜택을 이집트는 일찌기 기원전 3,000년경에 國家가 세워지고 파라오 (Pharaoh)라 부르는 王을 비롯하여 貴族들은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여 왔다. 넓은 땅에 樹林이나 庭園으로 둘러싸인 邸宅에서 살았던 貴族이나 支配階級은 室内에서 의자를 사용하였던 반면 庶民들은 바닥에 앉는 생활을 해야 했다. 더구나 專制國家인 이집트는 社會階級에 따라서 室内의 生活方式이 달

랐음을 알 수 있었으니, 예전대 第18王朝의 투탄카아멘 (Tut-ankh-a-men)의 墳墓에서 王이 소유하고 있던 金箔에 鍍이나 寶石을 장식에 사용한 王座, 작은 의자·결상·침대·상자 등이 발굴되었음을 들 수 있겠다. 의자나 침대의 다리에는 動物意匠이 사용되었는가 하면 家具의 표면에는 彫刻이나 象眼이 사용되고 가구는 그것을 소유하는 사람의 地位나 權威를 나타내는 상징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2. 그리스 (Greece)

西歐文化의 발상지랄 수 있는 그리스는 B.C. 6세기경까지만 해도 이집트에서 移入된 이집트風의 장식적인 家具가 대부분이었으나 B.C. 5세기경 自由市民社會가 이룩되고 中庭形式의 쾌적한 住居가 보급됨에 따라 합리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다.

마치 韓屋의 〈口〉字 집집은 안마당에 回廊을 두루고 居室·寢室·主婦室·書庫·客用室과 노예방 등을 배치한 합리적인 주택이 완성된 것이다. 따라서 室内의 裝飾과 設備은 간소화되어져서 생활에 필요한 의자·스툴·卓子·Couch나 Chest家具 등 극히 필요한 가구만을 실내에 備置하고는 했다. 그중에서도 〈크리스모스〉(Klismos)라는 女性用的 작은 의자나 식

사 때 쓰는 Couch 등은 표면의 장식을 제외하고 본다면 생활상의 機能性을 중요시한 디자인적 우수함을 엿볼 수 있다.

3. 로 - 마 (R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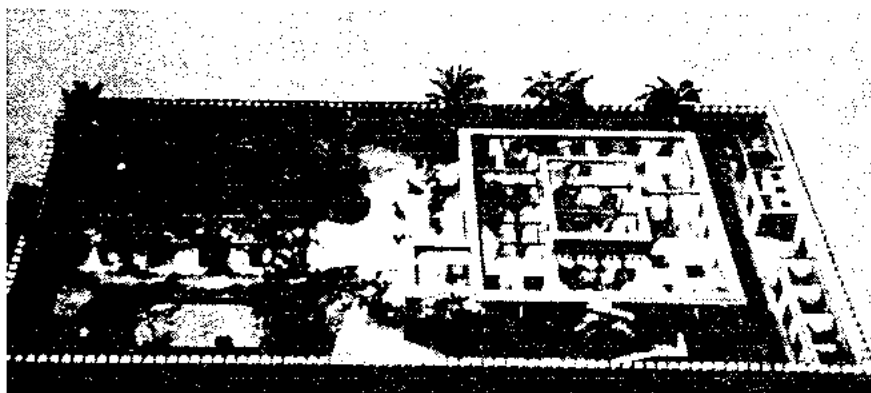
아테네文化의 優位를 인정한 로마人들은 헬레니즘時代의 希臘의 住宅形式은 물론, 그들의 기술과 美術의 모든 形을 모방했다. 이러한 경향은 住居나 家具에도 적용되어 彫刻과 裝飾을 가미한 호화로운 古代樣式의 室内나 家具를 완성했다.

폼페이의 住宅遺構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바닥에 깐 大理石의 〈모자이크〉라든가 벽면을 장식한 飾柱나 프레스코畫가 神話를 主題로 하여 화려하게 처리되었다. 家具에는 木材 이외에도 브론즈나 大理石이 사용되어 로마의 室内나 家具의 樣式은 지배계급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적 형식이 되어 있다.

4. 中世 (The Middle Ages)

로마帝國이 붕괴됨에 따라 古代의 安테리어나 家具의 전통을 잃게 되었다. 北部地方에서 移住한 게르만民族은 封建制度나 Christ教를 토대로 하여 古代와는 다른 社會組織을 만들어 놓았다. 유럽에서는 12세기경까지 사

(1) 「아마루나」에 있는 貴族住宅(復元模型) 18王朝 (이집트)



(2) 國王의 권위를 상징하는 투탄카아멘의 王座 (이집트)



회의 불안이 계속되었으므로 領主들은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두터운 城壁 안에 <키이프>라 부르는 城館을 세웠는데 이것은 住宅이라기 보다는 마치 작은 城과 같은 것이었고 큰 홀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이 영위되고 있었다. 당시에는 가구의 종류도 적고 領主가 사용하는 침대와 의자, 家族이 사용하는 스톨, 식사용의 架脚式 테이블과 결상, 옷이나 연장을 넣어두는 箱子 정도의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13세기를 경계로 하여 領主의 주택은 생활만을 위한 住居形式을 나타내게 된다. 삼엄했던 城壁은 헐려지고 생활상에서의 機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例外에도 領主家族의 일상생활을 위한 방들은 물론이려니와 食品 또는 食器庫, 부엌이라든가 使用人室 등이 실비되었다. 물론 室內의 바닥이나 벽에는 화려한 용단이나 벽걸이가 놓여짐으로 해서 室內은 장식적인 양상으로 변모되고 있었다.

Gothic時代 家具의 특징은 거꾸집침 널판붙임의 구조로 建築과 같이 垂直을 강조하는 디자인이 主調를 이루고 있다. 表面에는 주름모양·당굴무늬·포도모양의 무늬 등이 彫刻되고 家具의 크기는 大形이 되었다. 領主가 사용하는 호화로운 장식의 등받이가 높은 의자·長椅子·침대 등은 權威를 상징하는 성격의 것이었다.

日常用 의자는 Stool이며 中世의 의자는 두껍이 날린 箱子로서 앉는다는 機能과 물건을 넣어두는 收納機能을 겸하고 있다. Chest라 부르는 收納用箱子는 결상·침대·테이블·트렁크에도 이용되었던 가장 중요한 家具 중의 하나였다.

5. 르네상스(Renaissance)

<르네상스>란 再生이라는 의미의 이탈리아語에서 유래하는 말로서 人間의 自由를 존중하고 古代文化를 再生시키고자 일어난 운동을 르네상스라 부르고 있다.

그것은 Christ教會와 封建制度에 의한 支配體制에서 벗어나서 文化의 창조는 물론 政治·經濟·生活樣式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전개된 改革運動이다. 15세기 초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이 운동이 시작되어 國內은 물론 프랑스·핀랜드·독일과 영국 등 유럽諸國으로 보급되었다. 르네상스樣式은 各國의 風土·民族性·文化·生活樣式 등의 조건에 따라 각기 특색있는 樣式으로 발전되었다.

① 이탈리아 — 15세기 초에 이탈리아 토스카나地方의 首都인 피렌체(지금의 프로펜스)에서 르네상스運動이 일어났다. 建築家 부르넬레스키(Filippo Brunelleschi)에 의해 설계된 市中央에 위치한 꽃의 聖母寺院의 무우드라 보는 古代 로마樣式的 復興이 르네상스樣式的 심벌인 것이다. 이 樣式은 나중에 로마나 베네치아(지금의 Venice)에 전하여 지고 16세기에는 유럽全域에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都市의 부유한 貴族은 팔라조(Palazzo)라 부르는 石造의 호화邸宅을 지었다. 그 실내에는 飾柱나 格子形 천정으로 장식되고 요스요스에 古代彫刻으로 장식을 하고 보자이크 붙임의 大理石 바닥에 화려하게 쓴 용단을 깔았다.

르네상스時代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貴族社會의 지위나 권력을 나타내기 위한 Symetry와 Proportion이 강조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家具의 배치방법도 철저하게 對稱적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삼았다.

家具의 표면장식에 彫刻·象牙細工·象牙眼, 그리고 石膏에 조각을 하고 色이나 塗金을 하는 기법 등이 사용되었다. 르네상스時代의 家具는 收納用 상자, 架脚式의 대형卓子, 방석과 등받이를 아름다운 천으로 쓴 결상, 단테椅子나 <사보나로라>(Savonarola)라 부르는 X形의 다리를 가진 아름다운 의자, 스가벨로(Sgabello)라 부르는 작은의자, 장식선반·침대 또는 기도대 등의 종류가 있다. 의자나 침대는 소유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므로 그 장식은 호화로운 극치를 이루고 있다. 이 이탈리아의 르네상스樣式은 얼마후 프랑스와 핀랜드地方으로 보급되었다.

② 프랑스 — 15세기 후반 프랑스와 1世時代에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양식을 받아들여 퐁테블로宮(Fontaine-bleau)의 建築이나 실내장식에 그 樣式을 사용했다. 루이13世時代는 이탈리아에서 쓰여진 장식을 배경하고 정확한 프리오오션을 갖고 세련된 프랑스 나름의 르네상스樣式을 만들어 냈다. 특히 椅子와 테이블의 디자인은 탁월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

③ 英國 — 영국은 헨리 8世時代에 이탈리아의 르네상스樣式이 전해져 소박한 Gothic樣式은 점차로 쇠퇴하여 버리고 말았다. 엘리자벳女王時代에 르네상스樣式은 인테리어나 家具디자인 분야에서 지배적인 경향을 보였다. 格子붙임의 고딕風 의지는 箱子에 의한 경쾌한 四脚式의 의자로 바뀌고 시이트나 등받이도 천으로 감싸게 되었다. 침대는 멜론形의 기둥과 캐노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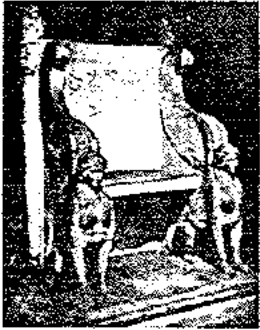
(3) 그리스女性이 사용한 <크리스모스>(B. C. 4세기경)

(4) 식사와 휴식에 사용된 <크리네>라는 寢椅子(그리스)

(5) 식당에 설치된 食卓과 寢椅子(폼페이, 로마)



(6) 大理石製의 〈소리울〉(王座)
1세기 (로마)



(7) 中世의 領主가 사용했던 권위를 상징하는
(하이백)의자 (프랑스)



(8) 르네상스時代 이탈리아貴族의 침실. 中央은
침대, 좌측에는 彫刻되어 호화로운 長椅자와
(단테)의자가 놓여 있다.
15세기 (후로렌스, 이탈리아)



를 두른 호화스런 엘리자벳樣式이 유행했다.

6. 바로크 (Baroque Style)

〈바로크〉란 이탈리아語의 Barocco, 즉 〈찌그러진 眞珠〉라는 뜻에서 유래한 것으로 스페인語의 Barrueca에서 연유되었다고 한다. 르네상스의 디자인이 對稱적이고 靜的인 古典樣式에 충실한 구성인데 반하여 〈바로크〉스타일은 불규칙하고 動的인 동시에 生命力이 가득찬 17세기 유럽의 美術工藝에 적용된 樣式의 명칭이다.

① 이탈리아 — 르네상스 말기에 기교에 젖은 예술가들이 엄격한 古典의 범주에서 빠져 나오려는 시도가 바로크樣式을 낳았고 그 발흥의 중심은 이탈리아의 로마였다. 로마法皇은 가톨릭敎會의 권위를 세계에 나타내기 위해 바티칸法皇宮에 웅대한 聖베드로 大聖堂을 세웠다.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寺院의 큰 〈돔〉(Dome), 建築家 베르니니 (Giovanni Lorenzo Bernini)에 의한 호화스런 조각과 색채로 된 인테리어와 그 광장의 다이내믹한 空間構成은 대표적인 바로크樣式을 나타내고 있다.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것같은 디자인의 호화로움은 17세기 가톨릭敎會의 인테리어에 한하지 않고 王侯나 貴族의 邸宅室內나 가구에도 나타나는 공통된 성격이었다. 특히 家具디자인에서는 大形衣裳櫃·食器선반 등의 正面裝飾에 비틀어 놓은 것같은 기둥이라든가 格式에 벗어나고 두꺼운 浮彫法이 쓰인다는 점이 바로크의 특징이다.

② 프랑스 — 이탈리아에서 비롯된 바로크樣式은 17세기 후반 프랑스

의 루이14世時代에 베르사유宮殿의 庭園·建築·室內의 종합적인 디자인에서 훌륭하게 완성되었다. 루이14세는 프랑스의 國威와 王의 권력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 베르사유 (Versailles)에 웅대한 宮殿을 세웠으나 王宮의 실내장식과 가구장비품을 제작하기 위해 1663년 王立고블랭工場을 설립하고 織物工場 외에 家具工場도 併設했다. 여기에는 당시 프랑스의 名工들이 많이 모여 들었는데 美術裝飾家인 〈샤르르 브루랭〉(Charles Lebrun)은 공장자배인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이탈리아의 後期르네상스나 바로크樣式을 연구하고 그러한 意匠을 베르사유宮殿의 室內나 家具 디자인에 응용했다.

바닥에는 大理石 외에 나무가 사용되고 벽면에는 고블랭織을 붙이고 실내에는 바로크의 힘찬 장식효과가 강조되었다. 베르사유宮殿 중앙에 있는 루이14세의 침실은 王이 謁見에 사용하는 公式応接室의 벽면 中央에 金箔과 고블랭織으로 장식된 권위의 침대가 놓여 있다. 이 室內裝飾은 르브랭의 설계로서 프랑스의 바로크樣式을 대표하는 傑作으로 평가되고 있다.

王室家具의 장식은 짙은 靑색에 龜甲·眞鍮·象牙 등의 象眼이나 金도금의 부론즈表裝으로 이뤄져 있다. 이런 호화로운 가구를 루이14世樣式이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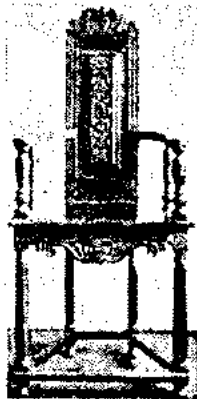
③ 英國 — 1660년의 王政復古時代로 부터 프랑스의 바로크樣式이 移入되고 다시 荷蘭의 바로크樣式이 도입되어서 上流階級 지택의 실내나 가구의 流行樣式이 되었다. 영국에서는 이 양식을 William and Mary Style이라 부르고 있다. 이때쯤 프랑스 루

(9) 〈단테〉의자, 16세기 후반(이탈리아)





(10) 뫼텐부르우궁, 후랑소와 1세의 갤러리 16世紀(프랑스)



(11) 婦人用의자
16世紀(프랑스)



(12) 엘리자벳스樣式의 침대, 16世紀(영국)

이14세의 宮廷建築家인 <다니엘 마로> (Daniel Marot)가 영국에 亡命하여 루이14世樣式의 의자·탁자·침대 등의 화려한 프랑스의 바로크樣式을 유행시킨 것은 주목되는 일이다.

7. 로코코 (Rococo Style)

① 프랑스 — 18世紀 초로부터 建築·室内·家具 등의 디자인으로 새로운 樣式이 유행했다. 美術史上으로는 이것을 <로코코>樣式이라 하고 프랑스에서는 루이15世樣式이라고도 한다.

<로코코>란 베르사이유宮園에 만들어진 환상적인 바위동굴을 장식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로카이유> (Rocaille)라 부르는 人工의 貝殼裝飾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語의 頭文字 <Rock>과 <Cockleshell>로부터 그 語源을 찾게 된다. 아울러 바로

크의 動的이고 男性的인 아름다움에 비하여 로코코스타일은 로카이유와같이 우아하고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양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로코코樣式은 부드러운 曲線이 디자인 構成의 主調가 되고 있다.

루이14世 시대에는 格式을 중요시하여 형식에 젖은 宮庭生活이 영위되어 왔으나 루이15世 시대에는 귀족들은 딱딱한 궁정생활을 버리고 자유로이 享樂的인 생활을 하기 위해 파리郊外에 <샤뜨> (Chateau)나 <패빌리언>이라 부르는 산뜻하고 맵서있는 邸宅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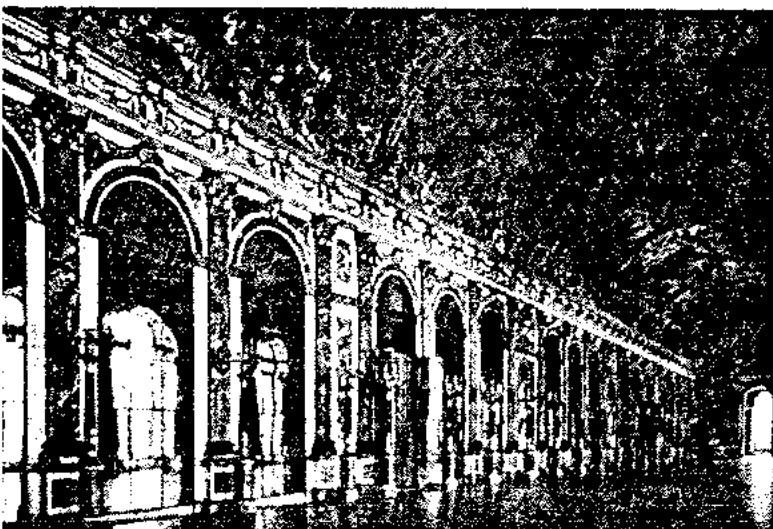
로코코樣式의 실내는 차가운 大理石 바닥 대신에 나무결이 아름다운 쪽매마루장기를 좋아했고 벽면에는 플라스터를 바르고 아칸서스나 花草紋樣의 장식을 하여 曲線이 주는 자유스

러움과 부드러움을 만적했다. 바로크室内의 무거운 飾柱나 직선적인 딱딱함이 제거되고 벽에서 천정으로의 이어짐도 曲面으로 처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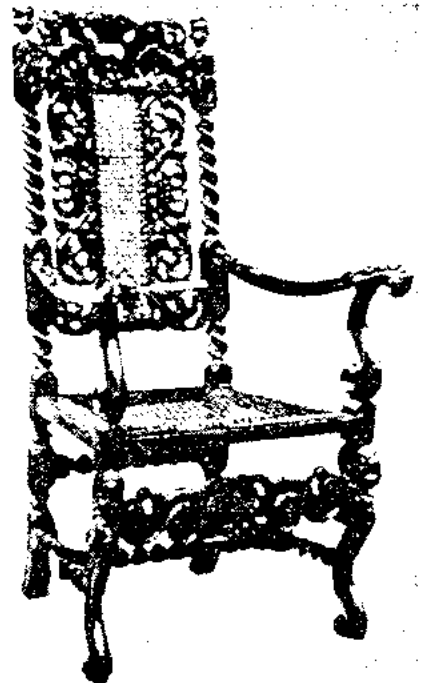
바닥에는 花草모양의 絨단을 깔고 실내전체가 官能的인 아름다움도 만들었다. 또한 이 시대의 거택은 외부의 장식보다도 실내의 장식이나 가구설비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부드와르> (Boudoir)나 <알코브> (Alcove)라 부르는 上流婦人의 私室은 그 실내장식과 가구장비에서 최고도로 세련된 취미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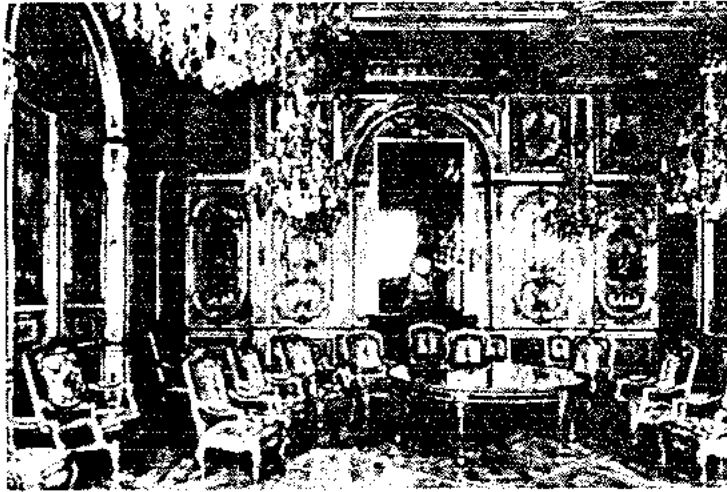
로코코의 家具는 曲線에 의해 구성되었다. 걸상은 <캐브리얼> (Cabriole)이라하는 曲線脚을 사용하고 걸상에서 등받이에 이르는 椅子전체가 女體와 같이 아름다운 형태를 나타내며 시이

(13) 베르사이유宮의 <미러·홀> (프랑스)



(14) 바로크樣式의 의자(영국)





(15) 퐁텐부르우종의 숭배실, 로코코様式(프랑스)

와 貴族들의 회합이나 이탈리아行 旅行熱 등이 제기가 되어 室内나 家具디자인이 復古調의 경향을 띄움을 뜻한다. 따라서 실내나 가구의 디자인은 曲線에서 直線으로 바뀌고 다시 엄격한 프러포오션이 중시되었는데 이것을 루이16世樣式이라고 부르고 있다.

의자나 탁자의 다리는 끝이 뾰족한 直線形이 되고 그 장식에 흠을 파내는 彫刻이 사용되거나 寄木細工法이 유행했다. 장 앙리 리이즈발(Jean Henri Riesener : 1734 - 1806)이나 다비트 렌트겐(David Roentgen : 1743 - 1807) 등은 寄木붙임이 뛰어난 家具作家였다.

특히 18세기 중엽부터 중국의 漆技法이 도입되고 가구의 표면을 金과 銀가루를 칠기의 표면에 뿌려서 그림을 그리는 裝飾技法이 유행했다.

② 英國 —— 영국에서의 로코코樣式은 1740년대에 프랑스에서 수입됨이 그 시발이었다. 한 안樣式을 거쳐 가구 작가인 토마스 치펜데일(Thomas I. Chippendale)은 루이15世樣式을 바탕으로 市民生活에 적합하도록 實用性에 중점을 두고 장식을 배제함으로써 독자적인 치펜데일樣式을 완성했다. 또한 建築家인 로버트 아담(Robert Adam)은 古代그리스나 로마의 意匠을 모방한 古典樣式의 室内나 家具를 유행시켰다. 그 樣式을 이은 家具作家 헤플화이트(George Hepplewhite)나 셰라톤(Thomas Sheraton)은 實用性和 아름다움을 통일한 近代樣式의 家具로 발전시켰다.

트나 등받이도 꽃모양의 꼬블랭織으로 싸여 있고 시이트의 편안함과 형태의 아름다움이 훌륭하게 조화되어 藝術의 경지에 이르렀다.

침대의 종류에는 貴婦人이 사용하는 alcove 침대·폴로베이즈침대·王妃의 침대 등이 있고 王이나 貴族이 사용하는 것에는 권위의 침대, 王冠의 침대, 天使의 침대, 도르코침대 등이 있다. 이밖에 실내의 벽면을 장식하는 콘솔形 탁자·食卓·化粧테이블·책상·옷장 등 上流階級の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家具의 종류는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

18세기경부터 실내와 가구의 디자인에 있어서 新古典主義(Neo-classicism)라 부르는 새로운 양식이 유행했다. 이것은 古代로마遺跡의 발굴, 독일의 美術史家인 빈켈만의 古美術연구



(16) 토마스 티펜데일이 제작한 椅子, 1755년경(영국)

* 建築宣言文 / 秩序(order)란... 중에서

디자인이란 秩序속에서의 형태 - 만들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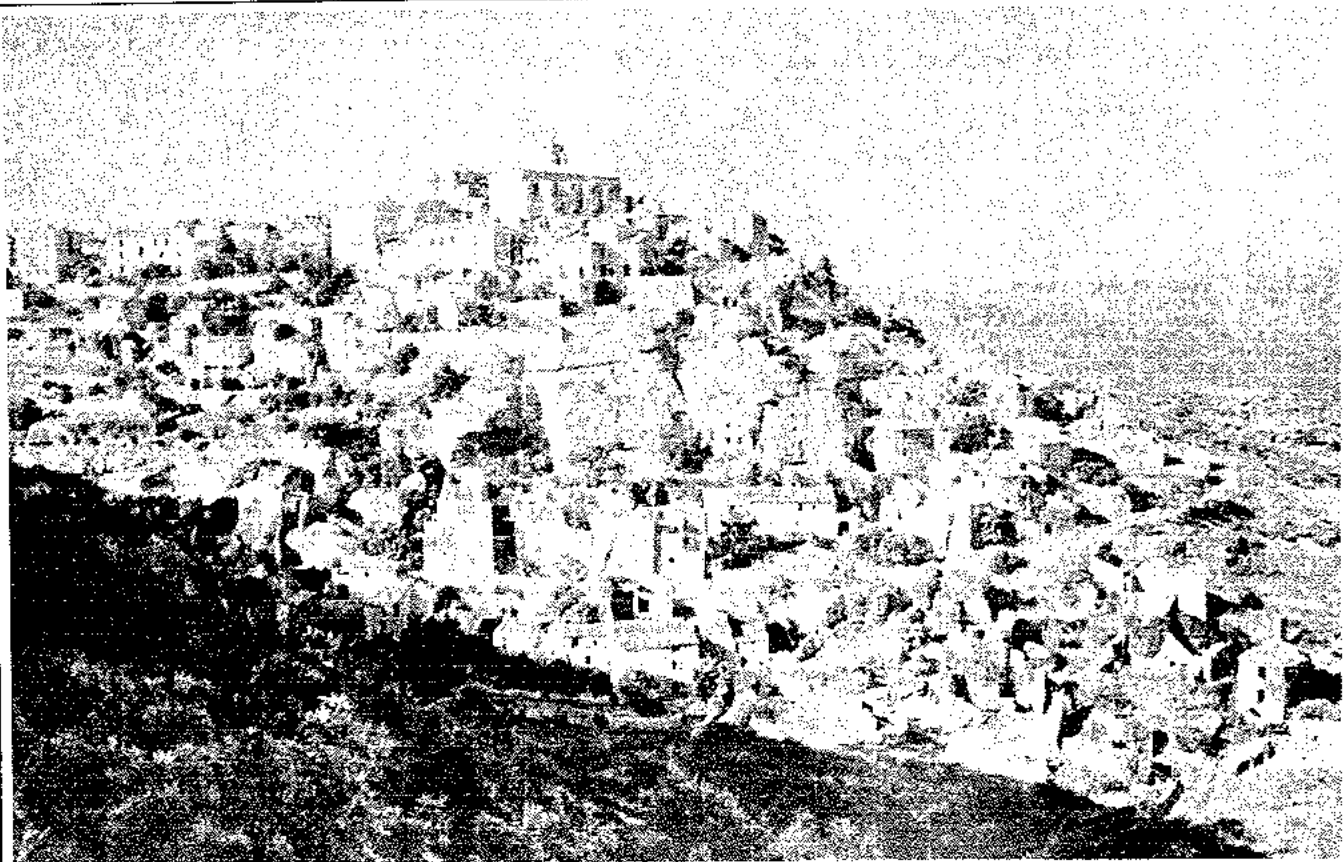
형태는 구조의 시스템에서 발생한다.

성장은 구조이다.

秩序속에 창조력이 있다.

디자인속에 수단이 있다 - 무엇을 어디에, 얼마만큼 언제

□ 루이스 I. 칸 (Louis I. Kahn)



連載〔7〕

잃어버린 古代都市

Ⅷ. 햇빛에 말린 벽돌로 만든 都市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난 이래 수십 만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의 수렵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農耕牧畜을 기반으로 한 定住生活에 들어간 것은 인류사상 참으로 획기적인 혁명적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메소포타미아란 티그리스江과 유프라테스江에 둘러 싸인 나라를 의미한다.

이 두 강의 풍부한 물량과 土砂에 의해 이루어진 비옥한 沖積土, 거기가 밝은 태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햇빛받은 자연환경이 메소포타미아의 땅에 농경목축 생활을 정착시켰으며 나아가서는 세계 最古의 도시문명의 탄생을 촉진하였다.

그러나 自然資源이 풍부한 메소포타미아에도 한가지만은 혜택받지 못한 것이 있었다. 그것이 건축용 石材인 것이다. 그리하여 메소포타미아 文明의 직접적인 담당 역할을 하였던 슈메르인이나 셈인은 쉽게 손에 잡히는 粘土

를 이용하여 햇빛에 말린 벽돌이라는 독특한 建築材料를 만들었다.

그러나 바빌론의 도시는 메로도투스 이후 그 소재가 알려져 있었으나 고고학적 발굴이 시작된 것은 1850년의 니네베를 발굴한 레야드의 시도가 최초였다. 그후 오늘날과 같이 바빌론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1899년으로부터 실로 18년간의 긴 세월을 걸쳐 로베르트 코르더와이가 지휘하는 〈독일 오리엔트學會〉에 의한 조직적인 발굴에 의해서였다.

東洋最大의 도시였던 바빌론도 지금은 水脈을 바꾼 유프라테스의 하상으로 되어 매몰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부가도네자르 2세시대에 建造된 궁전의 자취가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다.

두께 2미터 이상에 이르는 햇빛에 말린 벽돌로 쌓아 올린 壁體는 비나 風化 혹은 낮과 밤의 심한 온도차에 의해서 문사 그대로 원래의 粘土로 되돌아 가려고 하고 있다. 바빌론이 벽돌로 만들어져 있는 한, 언젠가는 긴

흙의 구렁으로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야말로 수천년이 지난 오늘날 사람의 손에 의해 햇빛에 말린 벽돌이 원래의 자연으로 되돌아 가고 있는 현실적인 사실이 여기에 있다. 더불어 마감재의 조각으로서 장식되었던 소성벽돌이 오늘날 촌락의 마을사람들에 의해 파헤쳐지고 재사용되었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바빌론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람은 원래 土地를 떠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대 그리스·로마에 있어서의 都市는 전설과 파괴를 몇번이고 되풀이 해 왔다는 사실은 폼페이의 발굴에서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생대·신석기시대 등 먼 옛날의 穴居居住의 자취 위에 몇십층의 부락이 만들어진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는 진보·발전한다기 보다는 輪廻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心象)

會員設計作品

사립학교 교원연금 관리공단

金正澈 - 주 · 정림건축

WELFARE CENTER FOR TEACHERS OF PRIVATE SCHOOLS

Kim, Jung Chul-Jung Lim Architects & Engineers

효성빌라

禹南龍 - 가나건축연구소

HYO-SUNG VILLA

Woo, Nam Yong-Ka Na Architects & Engineers

한국청년회의소

朱英三 - 한협도시건축연구소

KOREA JC BUILDING

Ju, Young Sam-Han Hyoup Architects & Engineers

동화면세점

李忠彦 - 건축연구소 원일

DONG HWA ARCADE

Lee, Chung Eun-Wonil Architects & Engineers

반공소년 이승복기념관

李國男 - 국남건축사무소

YOUTH OF ANTI-COMMUNIST LEE SEUNG BOK MEMORIAL

Lee, Kuk Nam — Kuk Nam Architects & Engineers

善竹會館

俞元在 - 건축연구소 場

SUN JOOK BUILDING

Yoo, Won Jai-Jang Architects

사립학교 교원연금 관리공단

金正澈 — 주·정림건축/건축사

WELFARE CENTER FOR TEACHERS OF PRIVATE SCHOOLS

Kim, Jung Chul — Jung Lim Architects & Engineers/Architect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 1040

대지면적 : 9,917 m²

건축면적 : 3,511.17 m²

연면적 : 41,519.15 m²

규모 : 지하 3층 · 지상 20층 · 옥탑 2층

구조 : 철골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설비 : 중앙집중식 냉난방 · 열회수장치

주요 마감재 : P.C 커튼월 및 유리 커튼월 · 화강

석 건축물임

설계담당 : 최태웅 · 김광출 · 송교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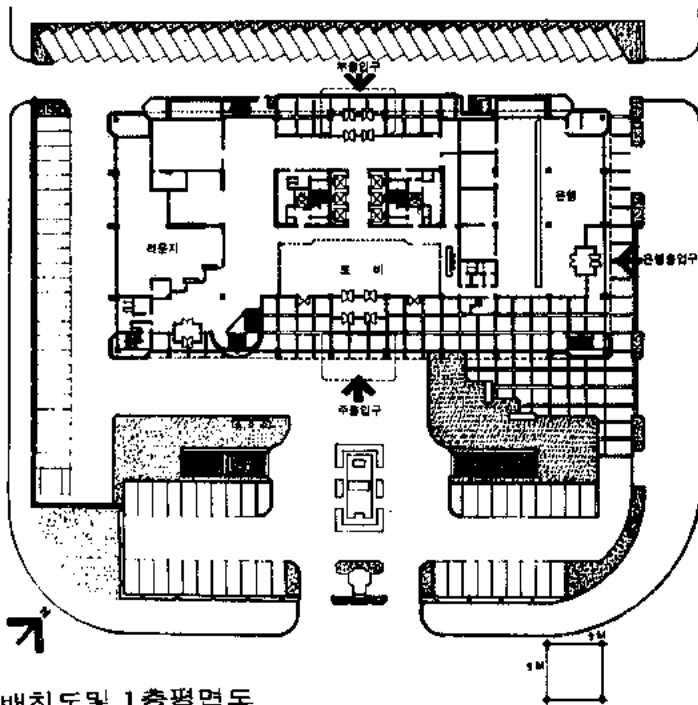
◆ 設計概要

여의도地域の 획일적이며 규격화된 Grid型의 건물형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석조 저층부와 유리질의 고층부를 대비시켜 보았다. 저층부에는 회관 기능으로서 필요한 복합시설을 수용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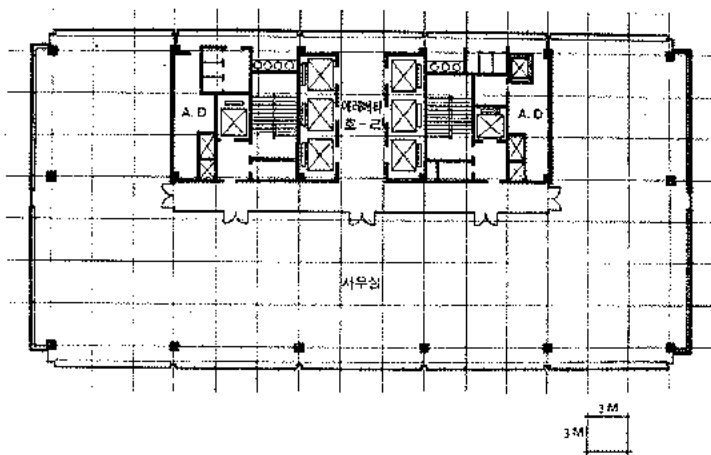
고층부에는 임대 오피스를 배치함으로써 수직동선의 단순화와 유지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오피스部分은 P.C 콘크리트 월과 알루미늄 커튼 월의 대비효과를 통해 경쾌하고 생동감 있는 조형미를 추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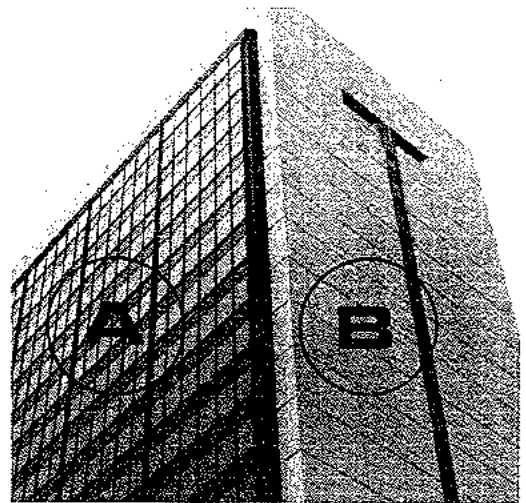
보았으며 경질 고무판을 이용하여 P.C 콘크리트 월의 새로운 가능성을 시도해 보았다. 또한 AL 커튼 월의 디테일을 단순화하고 실내환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F.C.U와 외부유리의 접속부에 Air·Vent를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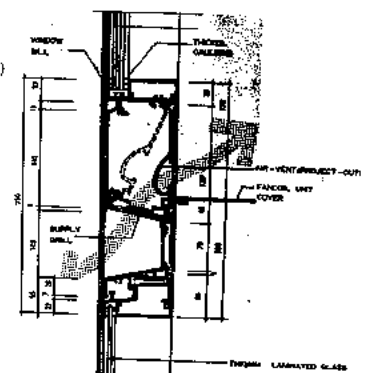
배치도 및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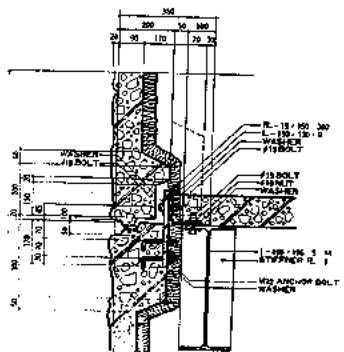
기준층평면도



DETAIL A
유리커튼월 환기구
상세도 (AIR-VENT)



DETAIL B
PC 커튼월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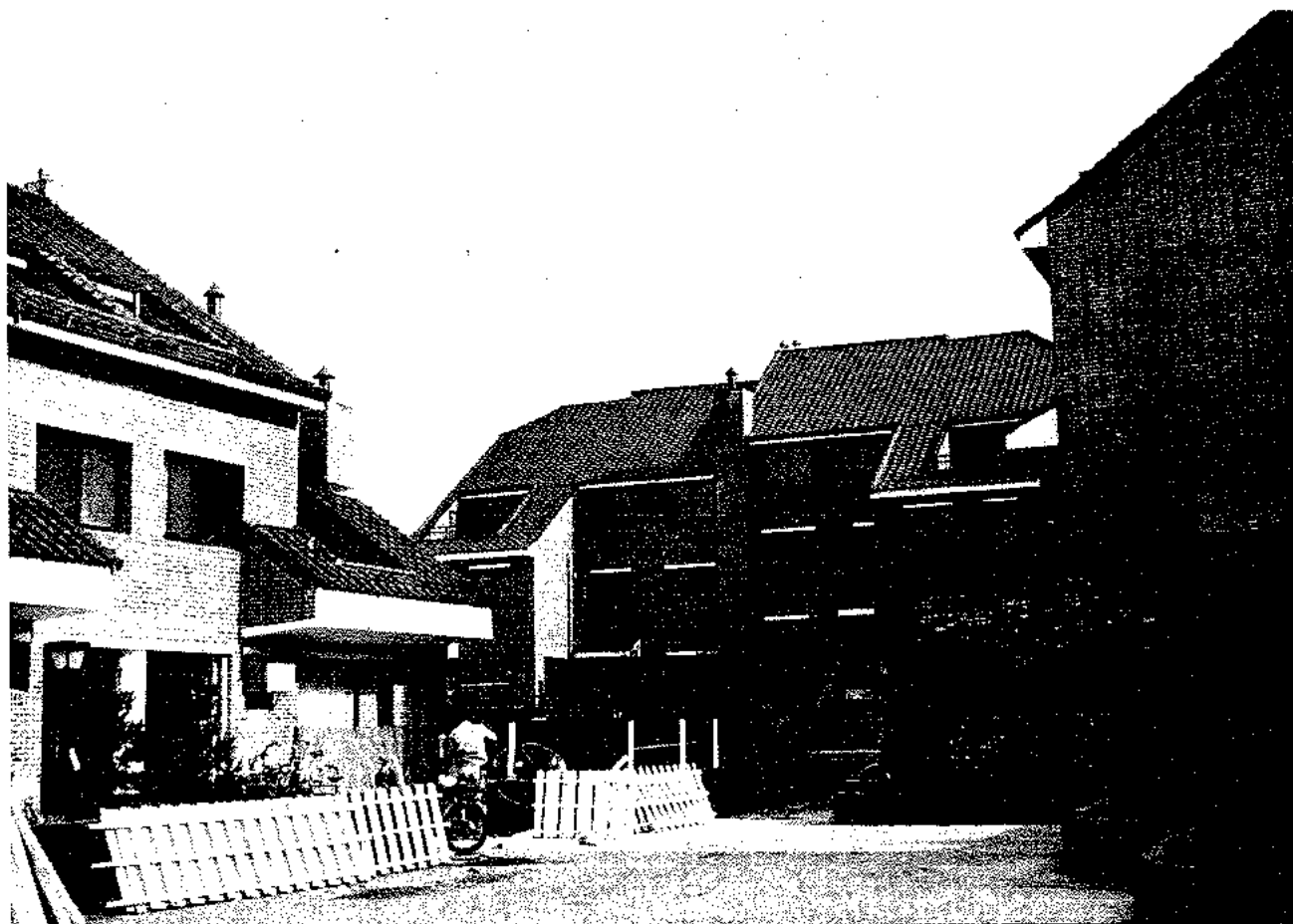


효성빌라

禹 南 龍 — 가나건축연구소 / 건축사

HYO-SUNG VILLA

Woo, Nam Yong — Ka Na Architects & Engineers / Architect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산 1

대지면적 : 3,973.44 m²

건축면적 : 1,225.08 m²

연면적 : 4,214.81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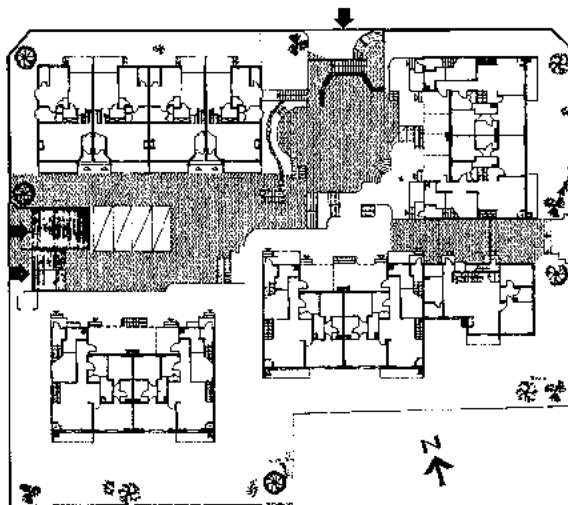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설계담당 : 서경원

구조담당 : 신종순

설비담당 : 이능화

전기담당 : 지병섭



배치도 및 1층평면도

◆設計概要

주거지의 토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아파트단지의 건설도 이제 대단위 토지의 부족으로 한계에 부딪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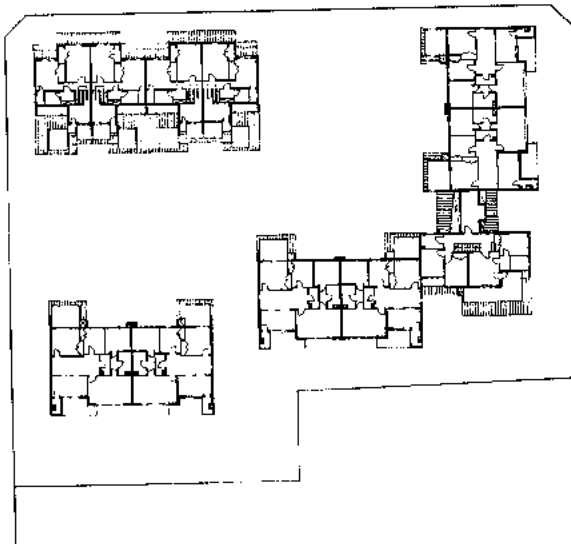
이러한 시점에서 단독주택과 아파트단지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로서 연립주택이 부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거가

갖추어야 할 여러 요소 중에서도 생활 공동체로서의 마을을 형성할 수 있고, 공동관리 시스템 등의 편익을 갖춘과 동시에 단독주택이 갖는 다양한 형태와 개별성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연립주택의 활성화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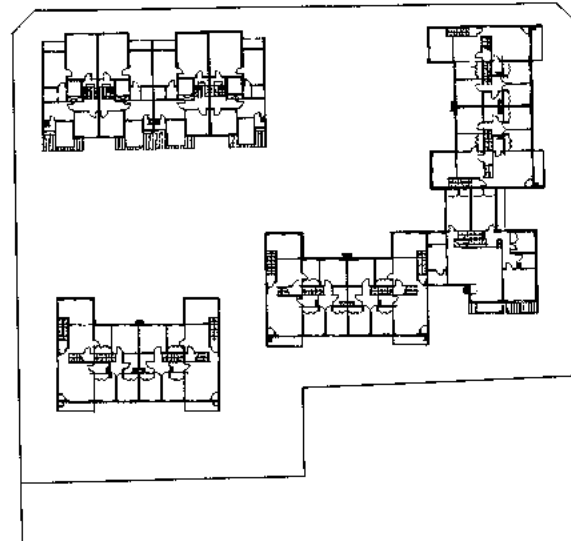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단지전체가 하나의 마을로 느껴질 수 있는 공간

을 형성하는 문제와, 각 세대로서는 단독주택과 다름없는 개성·다양성을 갖춘 주거로 만들고자 하는 데에 가장 주안점이 두어졌다.

이러한 시도가 의욕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현된 데에는 주택사업자로서의 모험심과 열의있는 건축주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특기하지 않을 수 없다.



3층평면도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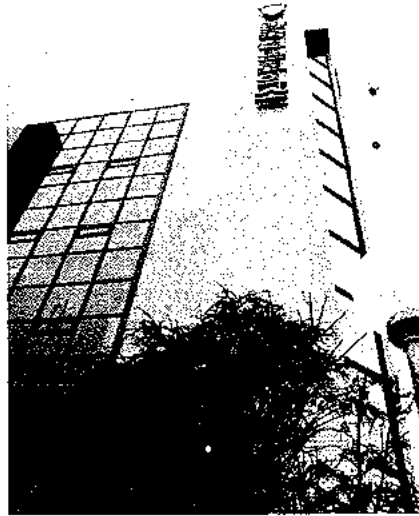


한국 청년회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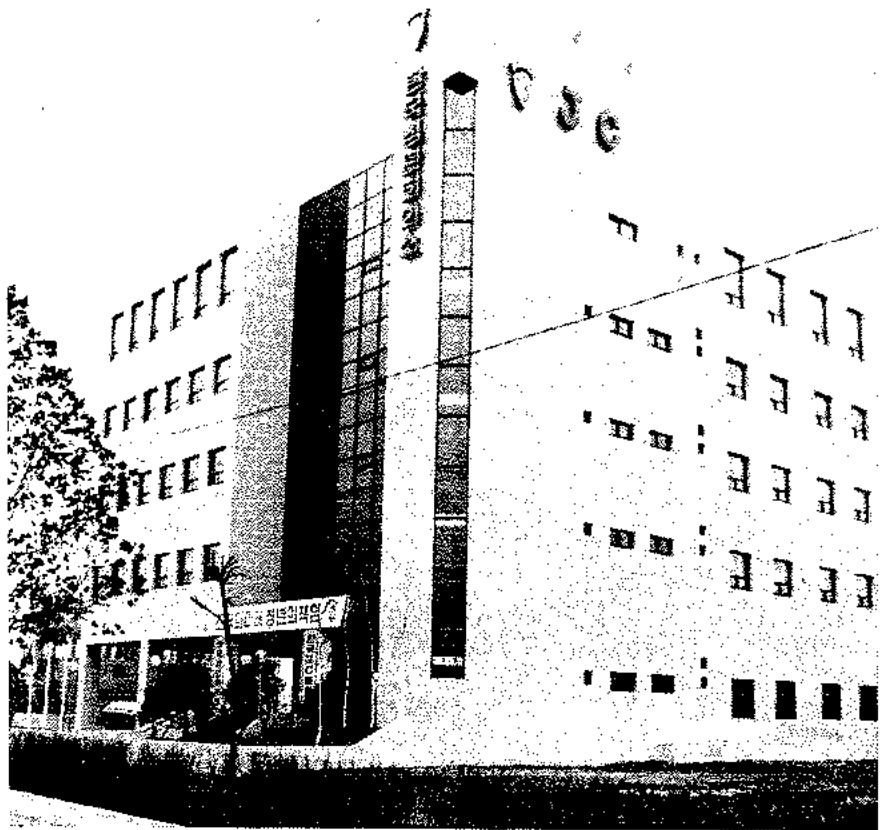
朱 英 三 — 한협도시건축연구소 / 건축사

KOREA JC BUILDING

Ju, Young Sam — Han Hyoup Architects & Engineers / Architect



소재지 : 서울 성동구 군자동
 대지면적 : 1,120m²
 건축면적 : 559m²
 연면적 : 3,356m²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設計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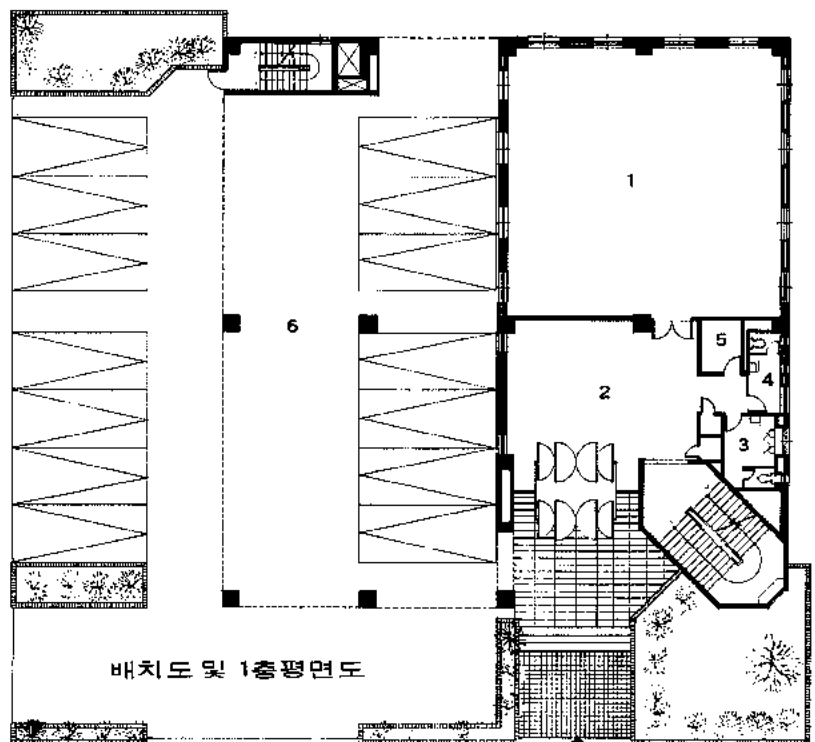
JC는 범세계적인(84개국·회원수 60만명) 단체이며, 회관은 84개국 중 한국이 두번째로 자체 힘에 의해 건립되었다.

JC가 추구하는 이념은 개인의 존엄성과 지도역량 개발, 세계와의 우정 그리고 지역사회의 개발이 목표이며, 따라서 극히 미래지향적인 청년들의 단체이다.

이러한 단체의 총본산인 본 회관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한정된 대지에 어떠한 성격을 나타낼 것인가를 놓고 고심하였다. 결국 건축법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설계에 임하였다.

그리고 허허벌판 위에 세워지는 건물이 앞으로 건립될 많은 건물들에게 조금이나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 또한 컸다.

건물의 기능면은 JC의 기구개편에 따라 항상 변동될 수 있도록 3m 모듈의 이동 칸막이를 설치해 보았다.



배치도 및 1층평면도

• 배치도 및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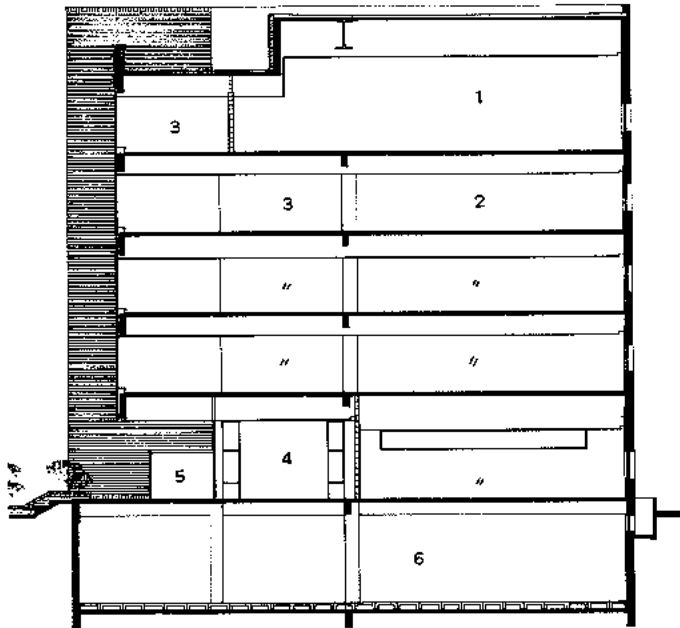
- 1 - 사무실
- 2 - 로비
- 3, 4 - 화장실
- 5 - 관리실
- 6 - 주차장

• 2 - 4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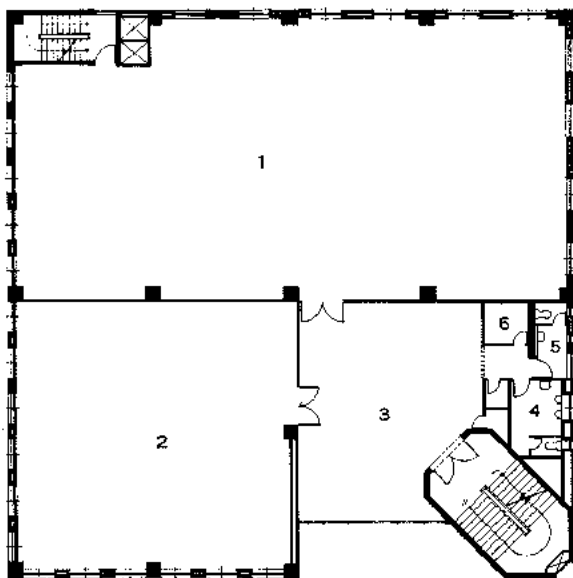
- 1, 2 - 사무실
- 3 - 홀
- 4, 5 - 화장실
- 6 - 탕비실

• 5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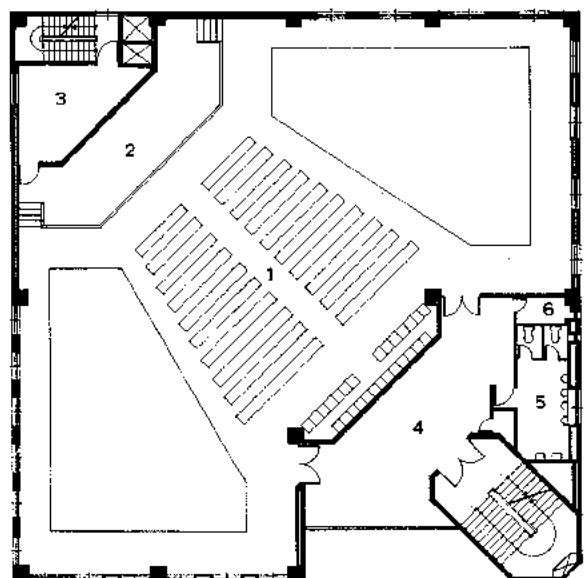
- 1 - 강당
- 2 - 무대
- 3 - 준비실
- 4 - 홀
- 5 - 화장실
- 6 - TAN실



일반단면도



2 - 4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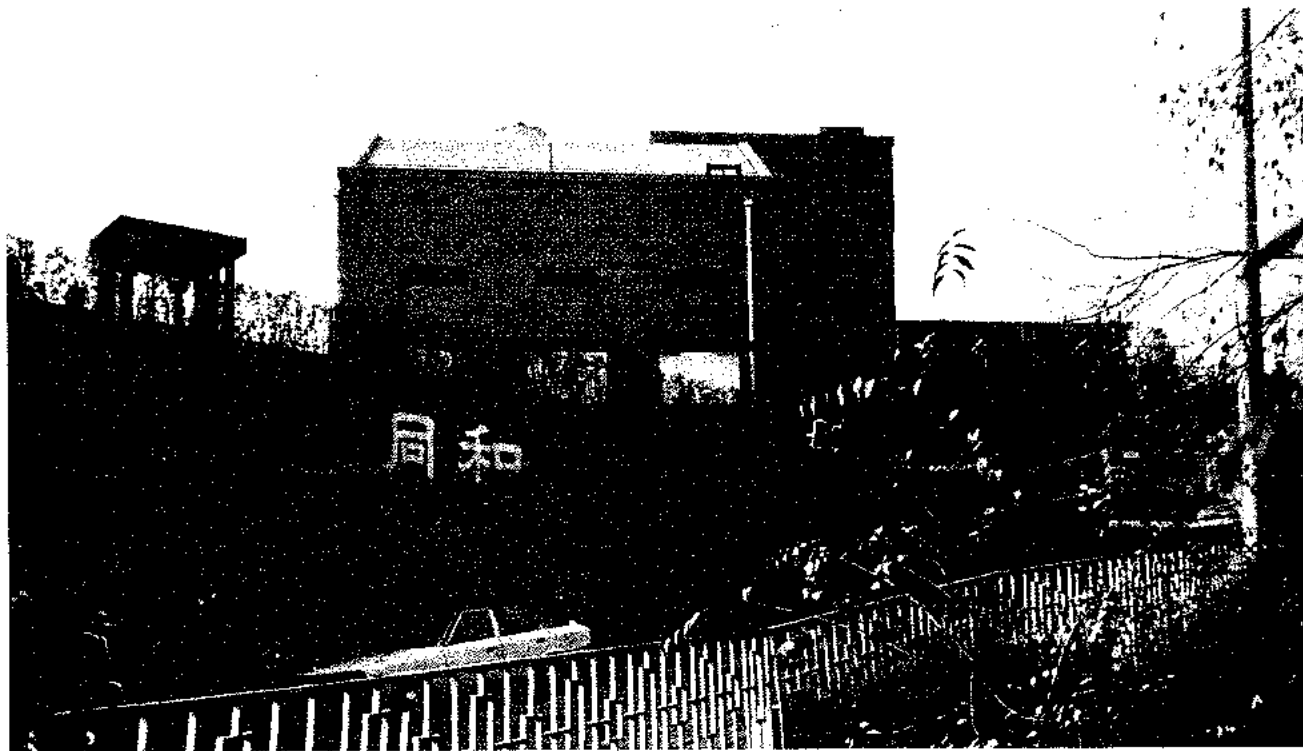
5층평면도

동화면세점

李 忠 彦 — 건축연구소 원일 / 건축사

DONG HWA ARCADE

Lee, Chung Eun — Wonil Architects & Engineers / Architect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사직동 262

대지면적 : 636.70m²

연면적 : 1,305.55m²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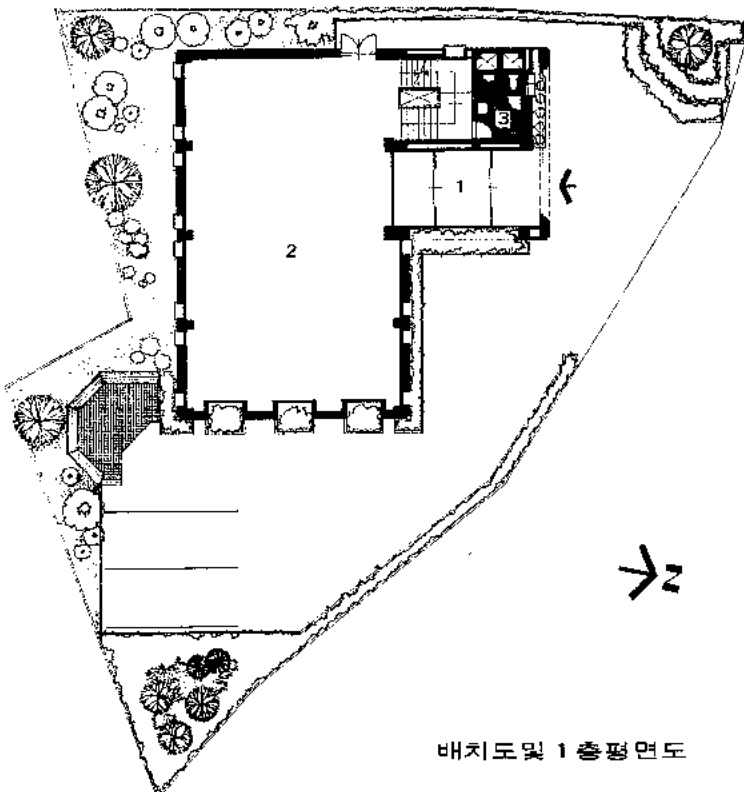
구조 : 적벽돌 치장쌓기

◆ 設計概要

가파르지 않은 도로를 끼고 돌면서 연출되는 작은 벽돌城은 주위의 고풍 어린 자연경관과 좋은 앙상블을 이룬다.

외국인 전용 아케이드로서의 건물 성격과 사직공원이 품고 있는 산과 물과 나무와 문화재들의 만남은 어쩌면 당연한 사실일는지 모른다.

건물의 기능을 고려하여 골조라인 옆으로 길게 낸 작은 창문과 코어部分의 시원한 코너 창은 벽돌性의 지루함을 없애주며, 엔트런스部分의 육중한 아치는 건물전체에서 풍기는 강한 직선의 단순함을 해결해 주고 있어 이 작은 벽돌城은 무리없이 그곳에 서 있다.



배치도 및 1층평면도

● 배치도 및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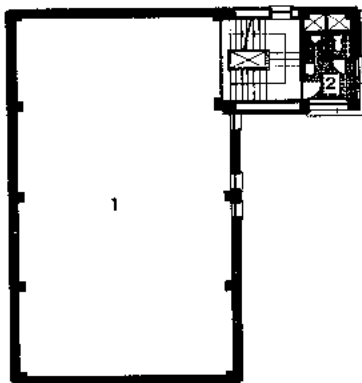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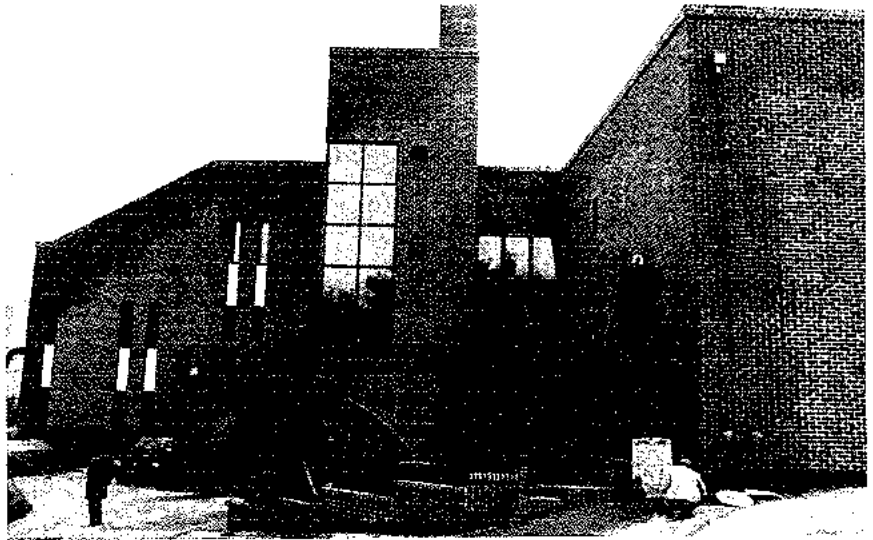
- 1 - 현관홀
- 2 - 매장
- 3 - 화장실

●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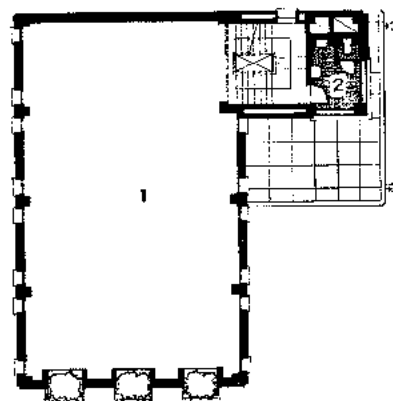
- 1 - 매장
- 2 - 화장실

● 3층평면도

- 1 - 매장
- 2 - 화장실



3층평면도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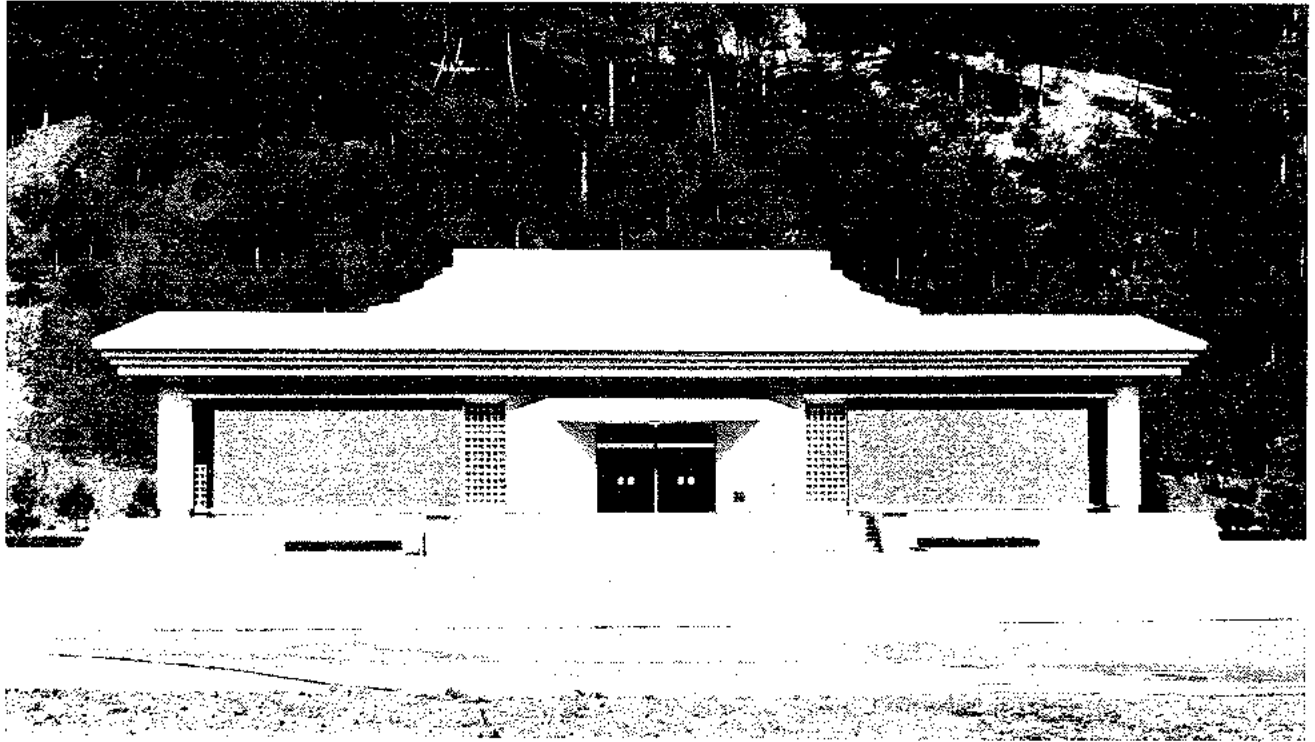


반공소년 이승복기념관

李 國 男 — 국남건축사무소 / 건축사

YOUTH OF ANTI — COMMUNIST LEE SEUNG BOK MEMORIAL

Lee, Kuk Nam — Kuk Nam Architects & Engineers/Architect



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노동리

건축면적 : 672 m²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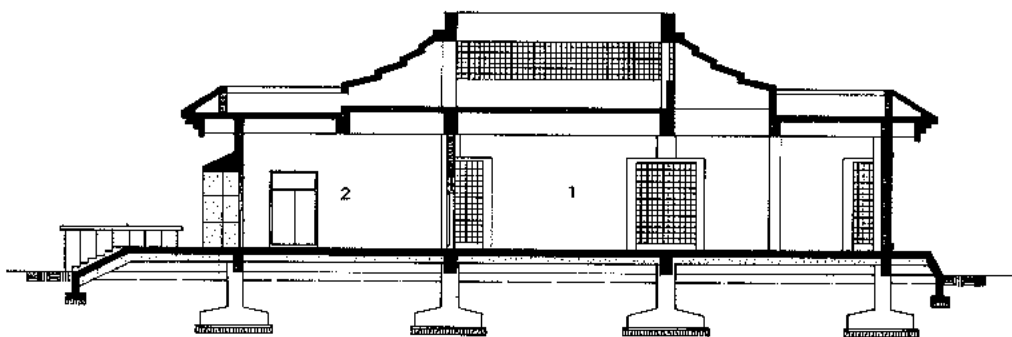
◆ 設計概要

반공소년 이승복군의 유적을 기리기 위한 반공교육장으로서의 기념관이 생전에 다니던 학교에 인접하여 단지화 되었다.

기념관에서 흔히 인용되는 희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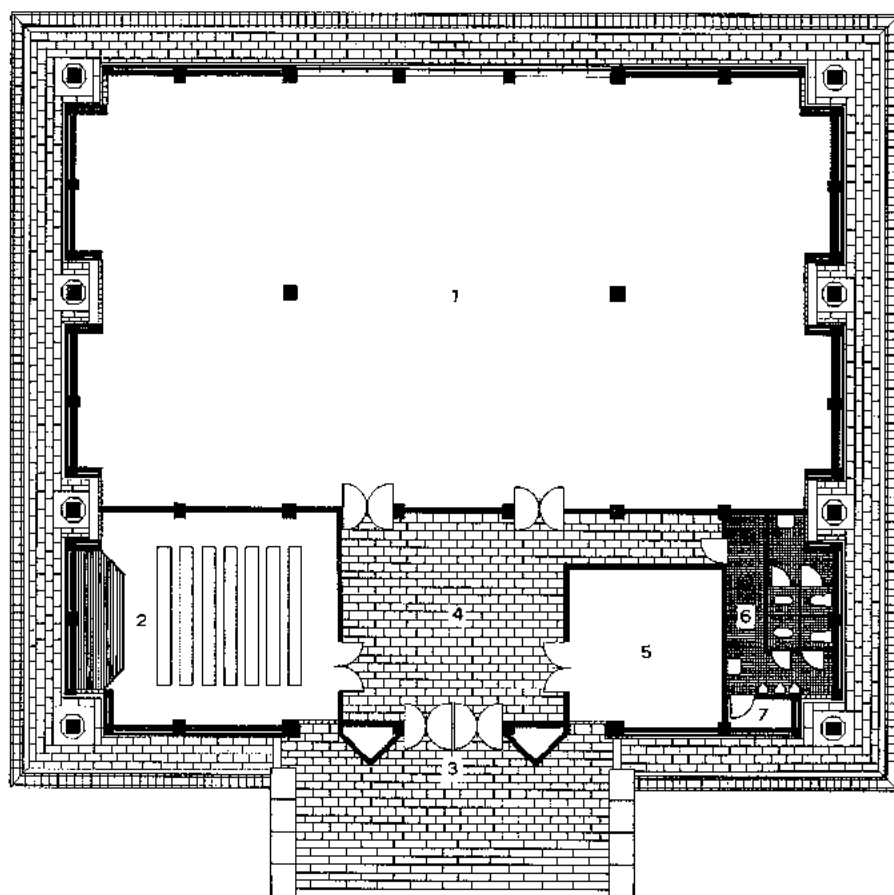
설치는 많은 평수를 요구하므로 벽면과 기둥과의 이격 배치로서 강직한 기둥을 강조해 보았다. 따라서 육중한 지붕면도 충분히 감당케 되었다.

물론 내부의 전시실 천장은 틈 라이트 설치로서 자연채광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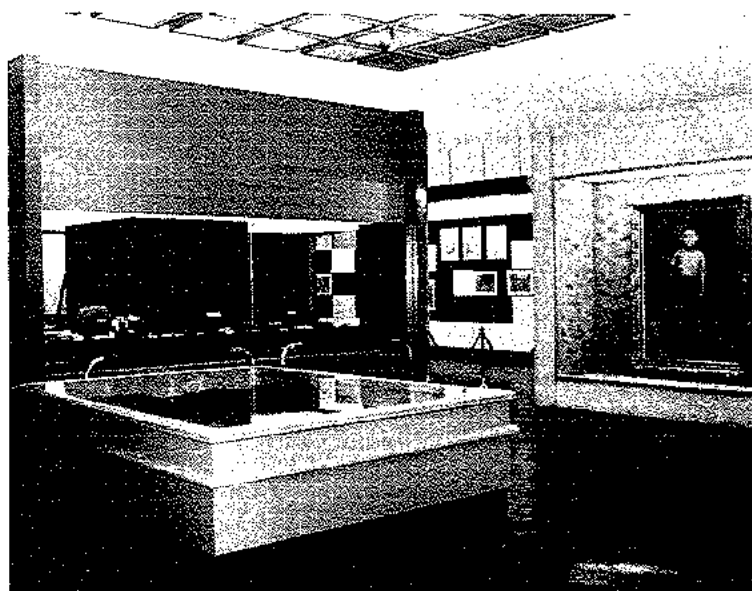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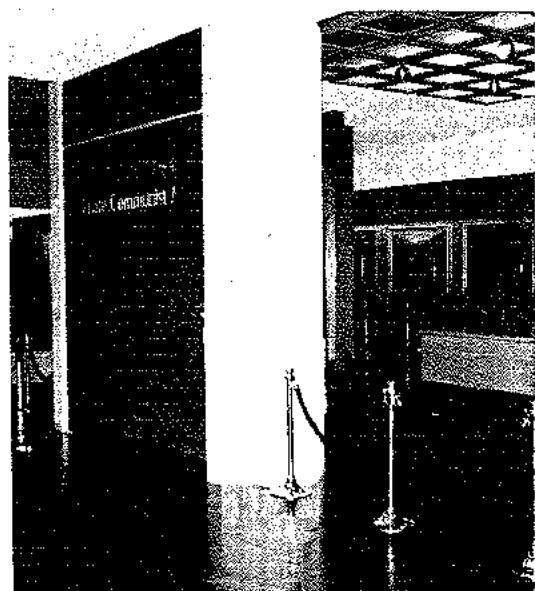


단면도

- 단면도
- 1 - 전시실
- 2 - 소강당
- 평면도
- 1 - 전시실
- 2 - 소강당
- 3 - 현관
- 4 - 원광홀
- 5 - 관리실
- 6 - 화장실
- 7 - 비품창고



평면도



善竹会館

俞 元 在 — 건축연구소 場 / 건축사

SUN JOOK BUILDING

Yoo, Won Jai — Jang Architects / Architect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창신동 329

대지면적 : 458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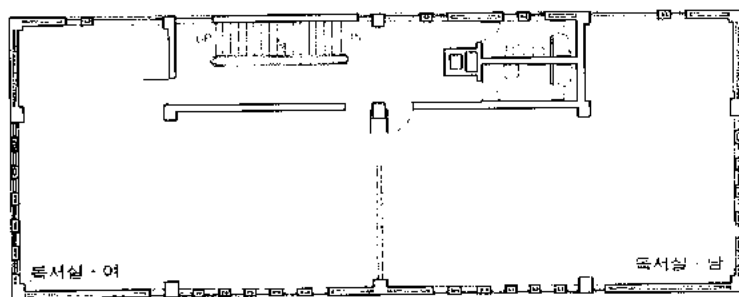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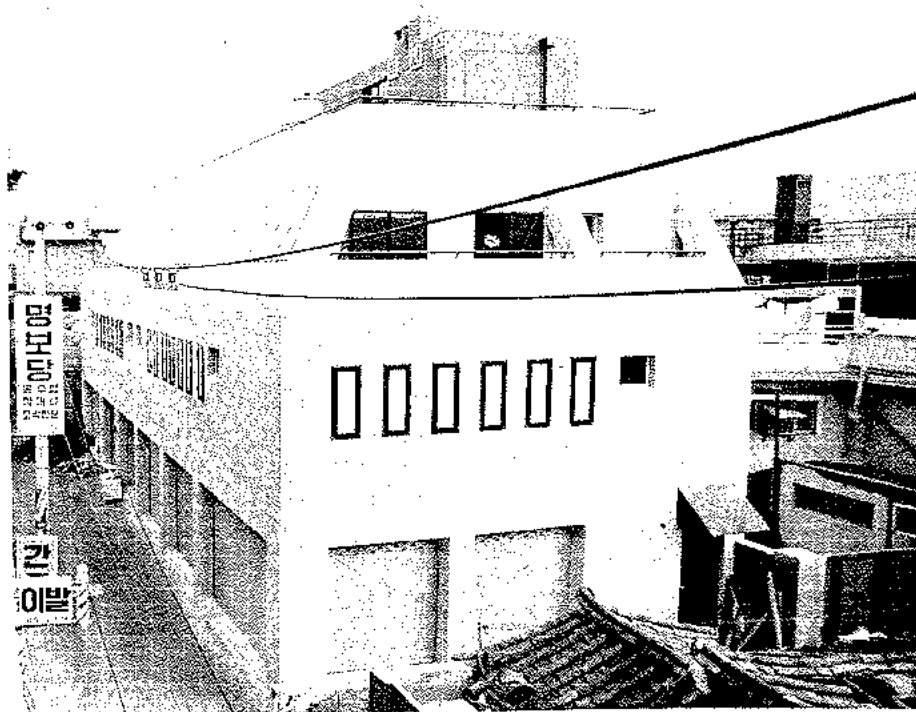
건축면적 : 216m²

연면적 : 817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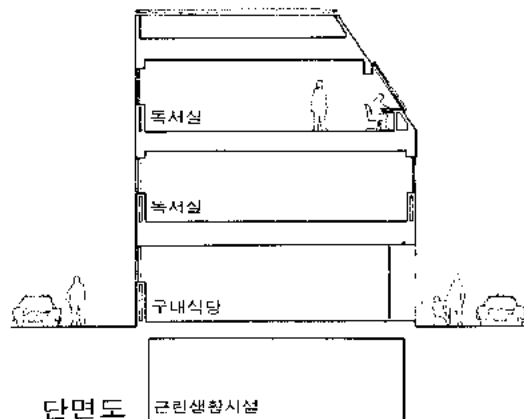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장재료 : 자기질 외장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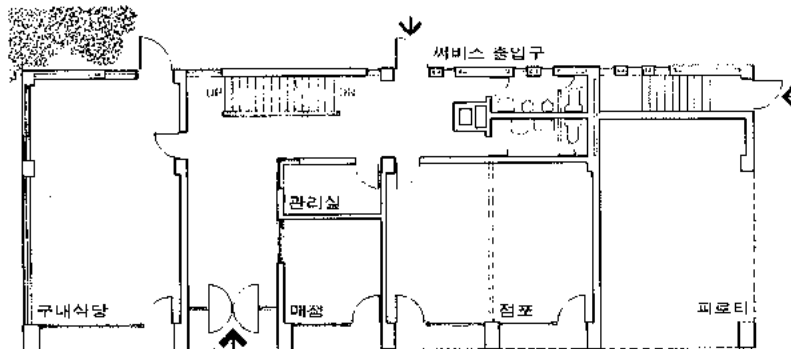
설비 : 팬 코일 냉난방



2층 평면도



단면도



1층 평면도



空氣調和設備의 체크리스트

孫 章 烈 — 漢陽大學 敎授 · 工學博士 (분회 설비분과 · 에너지분과위원)

THE CHECKLIST FOR AIR CONDITIONING DESIGN

Sohn, Jang Yeul — Han Ya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1. 기본설계단계

인간생활양식의 변천에 따라 건물의 기능이 복잡 · 다양해 지며 건물기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설비도 건물의 요구에 따라 발전하여 그 종합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있다.

우수한 건축물을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건축과 건축설비와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인식하고 기본계획단계에서부터 설비기능을 염두에 두고 설비설계과정을 파악하면서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건축설비 중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 공기조화설비 설계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건축설계자 · 설비설계자의지도용 또는 자기용 체크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번 호에는 기본계획단계에 한한다.

1. 건축 기본계획 도면의 확인

건축의 기본계획과 동시에 공조설비의 기본계획도 시작하여야 하며 설비설계자는 건축 기본도면을 통하여 건축설계자의 의도를 이해하여 건물과 공조설비의 기본적 융합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 기본계획 도면에 대한 불확실한 점 · 의문점이 있으면 건축설계자에게 문의하여 반드시 이해하여야 한다. 건축설계자는 설계의 의도가 설비설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는가를 확인한다.

2. 현지조사 및 관계법규 검토

공조설계를 위한 현지조사를 적당한 시기에 실시하고 조사표에 정확하게 기입한다.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표 1>과 같다.

<표 1> 현지조사의 실시사항

파 악 사 항	세 부 조 사 사 항
대지 · 주변도로사정	주소 · 지번 기존설비 · 매설관의 유무 · 전파장애 가능성 · 지질 · 지하수위
환경조건	기상조건(외기온습도 · 풍향 · 풍속 · 일사량) 하천의 범람 등으로 인한 침수가능성 · 공해 · 대기오염 의 정도 주변건물에의 소음 · 풍압의 영향
도시시설 · 공익시설	상하수도의 유무 방류장소의 유무와 수질기준치 등 전력공급 상황과 인입위치 GAS 공급 상황과 인입위치 전화공급회선 상황 지역냉난방 등의 유무
인접건물 상황	건물용도와 형상 주위건물에의 인영(日影)관계 배기구 · 외기도입구의 조사 굴뚝 · 냉각탑 · 저유조통기관 등의 위치 · 높이조사 주변의 우물상황

관계법규로는 건축관계법규 · 소방관계법규 · 각종건축물마다의 법규 · 환경관계법규 · 에너지관계법규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검토하고 정보를 정리하여 둔다. 특히 방재에 관한 법규는 빈번히 개정되므로 최신의 것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건축주 · 사용자의 의사 확인

건축주 · 사용자의 설비에 관한 요구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恒溫恒濕室 · Clean Room · 無菌室 · 전자계산기실, 그밖의 특수한 설비의 경우에는 건축주 및 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계에 반영한다.

4. 설비시스템의 계획

시스템의 계획과 선정에 있어서는 건축주의 예산에 따라 설비의 수준을 결정하고 경제성 비교를 실시하여 그 건물에 가장 알맞는 경제적인 시스템으로 한다.

① 공조시스템

공조시스템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음을 들 수 있으며 이것에 의하여 선택의 판단을 하게된다.

㉓ 건물의 용도와 규모

㉔ 종합설비 및 설비비

㉕ 실내환경의 수준

㉖ 건물내부의 사용상황(사용시간 · 운전시간 등)

㉔ 공조를 위하여 이용하는 면적

공조시스템의 결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것은 비교적 장면적이 큰 건물에서는 外周部(Perimeter Zone)의 남쪽은 中間期(봄·가을) 및 冬期에 냉방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内周部(Interior Zone)는 4계절을 통하여 냉방의 요구가 있으므로 이 부하에 대응하여야 한다.

공조시스템의 결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㉕ 외주부 부하의 대응방법

㉖ 중간기·동기의 냉방부하 대응방법

㉗ 임대용 건물의 용도별 Zoning에 대한 고려

㉘ 공조 Zoning의 검토

㉙ 열원시스템과의 균형

㉚ 건축계획과의 균형

대표적인 공조시스템의 특징은 표 2와 같다.

〈표 2〉 이외에도 여러가지 시스템을 생각할 수 있으므로 그 건물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② 熱源시스템 및 熱源機器

열원시스템은 유지관리상의 문제·경제성을 고려하여 건물의 연간 부하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가스 등의 요금제도, 장래의 에너지 공급에 관한 전망 등을 포함한 에너지 공급사정을 조사하여 시스템 결정에 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공조의 열원으로 가스를 별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는 많이 보급 사용될 전망이다.

蓄熱시스템·熱回收시스템 등도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이란 점에서 앞으로 적절히 연구·개발하여 채용되어야 할 것이다.

열원기기도는 냉동기, 보일러와 주변기기를 들 수 있는데 냉동기의 경우 동력비의 연간계산을 할 때에 COP(成績係數=Coefficient of Performance)의 변동에 주의를 요한다. 외기온이 내려가면 냉각수온이 내려가므로 증발온도를 일정하게 하면 COP는 커진다.

$$COP = \frac{T_1}{T_2 - T_1} \quad T_1: \text{증발온도} \quad T_2: \text{응축온도}$$

각종 냉동기의 개요는 〈표 3〉과 같다.

〈표 2〉 각종 공조시스템의 특징

공 조 시 스 템	특 징
외주부: 팬코일 4관식 내주부: 가변공량방식 (VAV방식)	매우 우수한 공조방식이며 간막이가 자유로움. 대규모 사무소건물 등에 적합
외주부: 팬코일 4관식 내주부: 중앙공급 단일덕트방식+Block 별 재열	외주부의 작은실에 대하여서 문제가 없으나 내주부의 작은실에 대하여서는 약간 문제있음. 대규모 사무소건물에 적합
외주부: 팬코일 2관식 내주부: 중앙공급 단일덕트방식	일반사무실에서 사용되는 방식. 중간기·동기에 남쪽의 냉방요구에 대응하도록 고려할 필요있음.
2중덕트방식	복합용도건물에 적합 각실단위로 부하요구에 대응가능 중·대규모건물에 적합 에너지 손실이 많음.
각층유니트방식 (외주부유니트없음)	각층단위의 Zoning은 가능하나, 내주부·외주부의 구분 불가함. 주요용도별 Block 구분에는 재면에 의한 제어 필요.
중앙공급 단일덕트방식	비용이 저렴하나 온도분포상 문제가 있음. 남쪽에 개구부가 큰 건물에는 부적합. 중소규모의 사무소건물에 적합
팬케이유니트방식	소규모건물에 적합 각용도별로 분산시키면 사용이 간편한 면도 있음.

〈표 3〉 각종 냉동기의 개요

종 류	공조용의 용량 (USRT)	특 징 · 용 도
왕 복 식 냉 동 기	1/4~180	압축비가 높은 경우에 적합하고 냉동 및 증소용량(100USRT 이하)의 공조에 적합하며 가격이 저렴 진동이 심하므로 방진장치가 필요 용량제어가 어렵고 제어범위가 좁다.
터-보식 냉 동 기	30~3,000	대량의 가스압축에 적합하여 대용량의 공조 및 냉동에 사용 소음이 크다. 용량제어가 용이하고 제어범위가 넓다. 100USRT 이하에서는 왕복식에 비하여 가격이 비싸나 제어성이 뛰어나다.
흡 수 식 냉 동 기	50~1,000	증기 또는 고온수가 열원으로 압축용 전력은 불필요. 공조용 용량제어범위 10~100% 소음·진동이 없고 受電용량은 작아도 좋으나 機器가 크고 냉각탑도 커진다.

보일러의 연간 기름 소비량의 계산은 값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에서 카탈로그의 효율을 사용하면 각종 보일러의 개요는 〈표 4〉와 같다.

③ 환기시스템
실의 용도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시스템을 결정한다.

다.
다.
다.

㉑ 실의 용도에 따라 급기의 냉각·가열의 필요성

① 폐열의 회수 가능성 여부

㉒ 자연환기 시스템의 이용

환기는 기계(송풍기)에 의한 강제 환기와 실내외의 풍압 또는 온도차에 의한 자연환기로 나눌 수 있으며 이것을 조합하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환기방법을 구별한다.

제 1 종 환기: 급기-강제환기·배기-강제환기

제 2 종 환기: 급기-강제환기·배기-자연환기

제 3 종 환기: 급기-자연환기·배기-강제환기

제 4 종 환기: 급기-자연환기·배기-자연환기

④ 자동제어 시스템

공조시스템, 열원시스템 등과 균형을 맞추어 계획한다.

각종 제어방식의 특징은 <표 5>와 같다.

5. 부하 및 風量의 概略計算

① 부하계산의 概算

부하계산은 건물과 공조설비와의 정교확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건물의 세부적인 설계가 완성되지 않으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으나 기본설계단계에서 계략적인 계산은 가능하다.

냉방부하의 概略値는 실의 용도·向 등에 따라 다르나 <표 6>에 몇 종류의 실의 냉방부하 개략치를 소개한다.

② 공조풍량의 概算

표 7은 ASHRAE에 의한 풍량의 개략치이다.

吹出공기온도차가 크면 송풍량이 커지고 야프트 면적도 커지니 安全側이긴 하나 덕트·송풍기도 따라서 커지므로 설비비·운전비의 면에서 불경제적이다.

취출공기 온도차가 너무 크면 냉방시에는 Draft현상, 난방시에는 氣流滯留현상이 일어나며 취출구에 결로가 생길 우려도 있다.

6. 건축 및 기타설비와의 관계

① 기계실

기계실의 위치는 건물의 용도·규모·열원시스템·공조시스템·기타설비 시스템 등의 영향을 받으며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표 4> 각종 보일러의 개요

종 류	능력범위 (1,000Kcal/h)	특 징	적 용
鑄鐵製보일러	110~1,500	주철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분해·반입·조립이 간단하고 증설도 할 수 있다. 鋼製에 비하여 부식이 적다.	소중규모 건물에서 주로 난방전용으로 사용
貫流보일러 (증기발생기)	100~2,500	고압·소용량의 보일러로서 전자동화 되어 사용 강제순환식으로 보유허량이 적어 시동시간이 짧다.	난방과 급기의 공용의 경우에 사용
炉筒煙管보일러	400~9,500	보일러 몸체내부에 연료를 연소시키는 연통과 연소가스를 위한 연관으로 구성 대용량·고압에는 부적당	중·대규모건물로 10,000m ² 이상에 사용
水管보일러	1,000~18,000	수많은 水管으로 전열면이 구성된 보일러로 대용량 고압에 적당 자연순환식과 강제유동식이 있다.	대규모건물, 지역난방등에 사용. 특히, 증기압력 10kg/cm ² 이상의 난방, 급기 병용의 고압수에 사용

<표 5> 각종 제어방식의 특징

	전 기 식	전 자 식	공 기 식	공기, 전자식
精 度	별도종지않음	양 호	보 통	양 호
조작속도	신 속	신 속	보 통	보 통
가 격	저 령	고 가	고 가	고 가
적용예	중소규모건물	중소규모건물	대규모, 조작부가 많을때	높은 정밀도를 요구할 때

<표 6> 냉방부하의 개략치

(* 일본건축학회편: 건축설계자료집성 6)

실 의 종 류			단위면적 당 부하 (kcal/m ² h)	단위 면적당의 냉방부하산출 조건				
				환기회수 (회 / h)	창면적/ 바닥면적 (%)	10m ² 당 의재실자 (人)	조 명 비 고 (W/m ²)	
일 반 사 부 실	부 창	최상층	125	1	0	2	20	
		중간층	90					
	남 향	최상층	140	1	20	2	20	
		중간층	100					
	서 향	최상층	200	1	20	2	20	
		중간층	145					
일 반 상 점	출입 많음	155	2	40	3	40	直射없음	
	출입 적음	135	1					
호 텔 객 실 병 원 입 원 실	남 향	100	1	20	1	20		
	서 향	145						

크기는 경우에 따라 다르겠으나 연면적에 대한 비율로 대략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 ㉠ 공조·환기설비관계……4~6%
 - ㉡ 급배수·위생설비관계……0.5~1%
 - ㉢ 전기설비관계……2~3%
- 다음의 공조·위생관계 기계설비의 산출식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M = 137 + 0.032A \quad (A \geq 6000m^2)$$

$$AM = 0.37 A^{0.78} \quad (A < 6000m^2)$$

A : 연면적 (m²)
AM : 기계실면적 (m²)

② 機器類의 배치

냉동기·보일러·공조기·펌프·송풍기 등은 평면·단면을 동시에 체크하면서 적절히 배치한다. 동시에 조작반·헤더·대형 자동밸브류·서비스면 적도 있어서는 안된다. 공조설비 면적이 가장 많이 차지하여 공조기의 단면적은 풍속에 의하여 알 수 있는데 풍속은 2.5m/sec로 산출하는 것이 부당하다.

$$A = V / (3600 \times 2.5)$$

A : 공조기의 단면적 (m²)
V : 풍량 (m³/h)

배치계획이 완료되면 기기류의 반입·반출계획을 확인하고 개라의 바닥하중을 구조설계자에게 알린다.

옥상에 설치하는 기기류나 배기구 등에는 소음방지의 체크를 한다.

덕트·파이프 샤프트의 위치와 크기는 공조시스템에 따라 달라지며 건축설계자와 설비설계자가 충분히 의논하여 적절히 설정한다. 샤프트 면적은 연면적에 대하여 대략 2~3%이다.

③ 굴뚝·냉각탑

난방을 하지 않는 계절에도 급탕을 위하여 보일러를 사용할 경우에 매연을 흡입하지 않도록 냉각탑·외기도입

실 의 종 류				단위면적	단위 면적당의 냉방부하산출 조건				비 고
				당 부하 kcal/m ² h	환기회수 (회 / h)	창면적 / 바닥면적 (%)	10m ² 당 외재실자 (人)	조 명 (W/m ²)	
식	좁은 창	환 기 팬	남향	165	1	40	6	20	주방의 발열량포함안되었음
		사용안함	서향	190					
		환 기 팬	남향	225	4				
		사 용	서향	250					
당	넓은 창	환 기 팬	남향	110	1	40	6	20	
		사용안함	서향	260					
		환 기 팬	남향	250	4				
		사 용	서향	320					
공 장				100	1	10	2	20	

〈표 7〉 공조풍량의 개략치

건 물 종 류	吹出口 위치	표준풍량 (m ³ /m ² h) 및 환기회수	
		난 방 시	냉 방 시
주 택	벽면 하부 (수평吹出)	8~16 (3~6 회/h)	—
	벽면 하부 (상향吹出)	8~16 (3~6 회/h)	16~24 (6~9 회/h)
	벽면 상부 (수평吹出)	13~24 (5~9 회/h)	16~24 (6~9 회/h)
사무실·상점·식당	벽면 상부 (수평吹出)	13~22 (5~8 회/h)	16~33 (6~12 회/h)
극장·공회당	벽면 상부 (수평吹出)	30~60 (5~10 회/h)	30~72 (6~12 회/h)

구와 보일러 굴뚝과의 거리·높이 관계를 충분히 검토한다. 굴뚝과 보일러실의 관계는 배치상 무리가 없는가를 체크한다.

④ 건축설비·공조설비 및 기타설비의 調整사항

기본설계단계에서 건축설계자·공조설비 설계자·기타설비 설계자가 최종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항목과 같다.

- ㉠ 기계실의 위치·크기·층고

- ㉡ 샤프트의 위치·크기

- ㉢ 외기도입구·배기구의 위치·概略 크기

- ㉣ 梁貫通의 크기와 1Span 당의 개수

- ㉤ 概略動力용량

- ㉥ 概略공사범위

〈본 게재 내용은 본회 설비연구분과위원회 연구자료임〉

和順 雙峰寺의 三層殿

申 榮 勳 — 文化財委員會 專門委員

1

1962년 여름에 태풍이 大作하였다. 전에 없었던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쳐서 여러가지 피해를 입힌 중에 우리의 木造建築物에도 큰 損傷을 입혔다. 그중에 宝物 第163號로 지정되어 있는 全羅南道 和順郡 梨陽面 甌里의 雙峰寺 大雄殿도 지붕이 돌아가는 큰 상처를 당하였다. 나는 1962년 8월 25일에 시작되었던 金堤의 金山寺 彌勒殿(三層建物)의 應急工事を 끝내자마자 이 雙峰寺로 옮겨 大雄殿(上樑文에서는 三層殿이라 하였다. 이하 三層殿이라 指稱함)의 해체공사를 지켜보았다. 工事監督官이라는 직함이다. 文敎部長官의 명의로 발령하고 和順郡의 教育課(이 시기는 5·16革命 이후 教育委員會가 폐지되고 郡教育課라 하여 行政하였었다.)가 主管하여서 施工의 主務는 教育課가 처리하였다. 따라서 工事監督官의 소속은 文敎部 文化財管理局의 專門委員이지만 給料는 和順의 教育課에서 工事期間 동안 지불하는 제도였다. 그래서 틈 있을 때마다 和順郡片에 들러야 하였는데 이로 인한 웃지 못할 사건이 일어났다.

5.16軍事革命 이후 화폐개혁이 단행된 직후여서 和順郡에서의 工事發注로는 첫 사업일뿐 아니라 당시로서는 和順郡內의 最高額數가 랭크된 사업이고, 더구나 庶政刷新을 지표로 삼고 있어서 監督官의 動靜을 주시하였다. 和順郡片에 들렀다가 나오면 눈에 쓰일만큼 미행하는 기미가 감지되었다. 늘 이 지경이었다. 어느날은 이 미행자를 따돌리기로 작정하고 同行하였던 사람과 짜고 작전을 수립하였다. 지금은 光州에서 和順間은 터널이 뚫려 大型의 버스가 수시로 오고가지만 그때만 해도 터널도 없었고 버스로

배우 드문드문하여 기차를 이용하는 쪽이 편리하였다.

나는 同行과 더불어 기차시간이 아직 남았는데도 기차역으로 나갔다. 미행자가 누군인지를 알아내기 위함이다. 아직 시간이 이른 기차역은 한산하여서 서두른 미행자는 곧 우리들 눈에 정체를 들어 내었다. 和順警察署의 형사라 하였다.

줄을 서서 기차표를 샀다. 光州行표를 산 것이다. 저녁 통근열차가 되어서 제법 駅構內는 붐빈다. 기차는 느리게 발차하기 시작한다. 열은 반대편으로 뛰어 내렸다. 그리고 숨었다. 미행자는 기차에 탄채 光州로 가고 있었다. 그 바람에 우리 둘은 밤 늦게야 걸어서 光州에 도착하였고 지쳐서 슬며시는 제각은 포기하고 말았다.

和順에서 雙峰寺로 가자면 光州에서 始發하거나 경유해 오는 宝城行의 기차를 타고 가는데 完행은 梨陽驛다운 간이역에 서지만 보통급행은 梨陽驛에만 선다. 여기에서 내려면 꼬박 30리길을 걸어 山行하여야 된다. 두 시간이 넘는 길을 現場 사람들을 위하여 구입한 부식들을 무겁게 들고 걷는다. 더러 짜증도 나지만 그래도 그 길을 한달에도 몇번씩 왕복을 하였다.

雙峰寺는 궁벽한 설이어서 당시에는 境內에 建物도 이 三層殿과 極樂殿· 寮舍가 있을 뿐이고 이영을 이은 虛間 같은 건물도 一棟 더 있었을 뿐이었다. 寺僧은 오직 한사람, 어머니를 모시고 집을 지키고 있었다. 일년에 어쩌다 外地人이 찾아드는 그런 한적한 절이다. 그러나 雙峰寺는 新羅統一期の 末期에는 아주 著名한 절로 九山禪門 중의 하나이며 서기 798년에 탄생하여 825년에 唐나라에 유학하고 847

년에 귀국하여 景文王을 불법에 歸依시킨 澈鑑禪師가 駐錫하던 곳이다. 868년에 禪師께서 入寂하시자 門徒들은 浮屠(塔)와 塔碑를 세웠는데 이 浮屠는 國宝 第57號로, 塔碑는 宝物 第170號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다. 三層殿 이웃의 이 石造物들은 아주 귀중한 9세기의 作品이며 더구나 浮屠에 표현된 木造建築樣式의 존재로 인하여 이들은 더욱 珍重되고 있어 이 방면의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면 으레 찾아가는 巡禮處의 한 곳이 되어 있다. 이 石造浮屠에 대하여 간단한 논문을 1963년도 『考古美術』(考古美術同人會刊行的 會誌)에 발표한 바 있다. (『澈鑑國師浮屠의 木造樣式』 同誌 4卷1號 形狀을 설명한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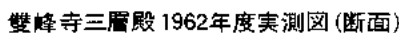
2

三層殿은 流砂로 매몰되었을 정도로 낮은 외벌맷돌 위에 세워졌다. 외벌맷돌은 화강석을 다듬은 장대석 외벌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쪽 중앙에 石階가 설치되어 있다. 整然한 신라시대 구조물이다.

매몰되어 있는 이 맷돌을 1962년도 공사시에 발굴해서 찾아내었는데 맷돌의 남쪽 마당에는 門址로 보이는 遺構가 또 있었다. 이는 우리가 찾아내어야 할 성격의 것이 아니므로 매몰된 상태로 묻어두었는데 이것은 장차 寺域을 탐색하는 기회에 정밀하게 발굴조사 되어야 할 것이다.

맷돌 위의 三層殿은 初層도 二層도 三層도 正面 側面이 一間인 單間の 규모이다. 初層은 굽은 기둥을 큼직하게 써서 꾸몄다. 前面壁을 全面開放하고 四分閣(창살로 꾸민 문짝이 좌우에 각 두짝씩, 네짝으로 구성된 것.

다포계의 공포가 배설되어 도리를



三層殿은 체감된 모습이나 구조된

형상에서 塔婆와 같은 감각을 지녔다. 木造의 塔婆인 것이다. 石造한 塔婆에서도 三層의 것은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결국 三層殿의 三層木塔이라 할 수 있다.

文獻에 木造塔에 관계된 기사들이 많다. 그러면서도 현존하는 木塔이 없다. 木塔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石塔을 통하여 推想하여 볼 수 있을 뿐이다. 황룡사 九層塔이나 四天王寺·皇德寺의 木塔들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의 궁금증을 풀어줄 遺構들이 없다. 겨우 澈監國師浮屠 등에 표현된 木造樣式 등의 단편적인 자료가 얻어질 뿐인데 이런 三層殿이 존재하므로 해서 木塔의 제작기법과 중심 刹柱의 구성법을 찾아 볼 수 있게 된다. 木塔의 한 예는 또 범주사 捌相殿에서 살펴볼 수 있다.

三層殿의 構成法式은 특이하다. 밖에서 보아서는 感知할 수 없는 法式이 内部에 발휘되어 있다.

추녀는 아다시피 앞머리가 도리 밖으로 돌출하여 허공에 떠있게 結構된다. 추녀는 지붕구성의 中樞로 기와이는 落水面의 荷重을 떠받는 역할을 한다. 이 무거운 추녀 앞머리를 앞으로 거꾸러트리지 않게하기 위하여 추녀 뒷몸을 길게 잡아 그 뒤쪽을 눌러준다. 衡半을 이루게 함이다. 저울대 같이 하려는 것이다. 머리가 뒷몸에 같은 무게를 실어줌으로 해서 結構에 무리가 없게 하자는 法式이다.

三層殿에서는 單間의 柱間이 좁으므로 前出한 추녀머리에 비하여 추녀 뒷몸을 길게 만들 여유가 없다. 그만큼 머리쪽이 무겁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교정할 필요가 요망되었다. 그래서 大木은 중심에 刹柱를 설치하는 지혜를 짜내었다.

刹柱는 擦柱라고도 하고 心柱라고도 부르는데 『三國遺事』에 보면 황룡사 九層塔에도 이 刹竿(柱)이 설치되었던 모양이다. 현재의 遺址에서도 중앙에 心礎石이 있는 집(이 心礎石은 거대한 岩石인데 최근 發掘期間 동안 필요에 의하여 解體하게 되었을 때 포항제철에 의뢰하여 200돈 크레인을 빌어다 겨우 들어 내었다. 이 心礎石에는 舍利裝置하였던 舍利孔이 있다. 舍利裝置는 나쁜 사람들이 盜取하여 갔고, 그 일부의 잔재들이 수습된 바

있었다.)에서 그것이 확인되는데 木塔에 心柱를 설치함은 옛부터의 法式이었다.

三層殿에서는 大木의 지혜로 이 心柱를 空中에 띄웠다. 心礎石을 두고 心柱를 세우는 法式 대신에 心礎를 없애고 心柱를 初層 천장 위쪽에 밑둥이 위치하도록 허공에 띄우고 그 心柱에 각 추녀의 뒷몸을 박았다. 初層에서 三層까지의 추녀, 各層 네개씩의 추녀 뒷몸이 모두 心柱에 삽입되게 하였다. 이렇게 結構하면 추녀머리가 밑으로 내려가려는 무게로 추녀뒷몸이 치솟게 되므로 心柱가 허공에 떠오르게 된다. 心柱의 자체무게와 三層屋蓋를 받드는 荷重을 실은 무게로 추녀 뒷몸을 눌러주게 되어서 드디어 衡半이 이루어지며 心柱는 공중에 떠서 적절하게 무게의 안배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놀라운 지혜인 것이다.

지금 三層의 지붕은 팔작지붕의 모양이다. 원래의 塔이라면 모듬지붕이 되어 相輪을 떠받칠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解體時에 조사된 바로는 지금의 팔작지붕은 後代의 변형이라고 밝혀졌다. 原形은 팔작지붕이 아니었다. 아니었다면 보편적인 법식에 따라 相輪部를 받을 수 있는 지붕모습이 원래의 것이었다고 理解할 수 있게 된다.

4

처음 이 집을 시은 사람은 누구일까. 언제쯤 지었던 것일까. 첫번 지은대로 수백년 지탱하기란 어려운 노릇일테니 틀림없이 고쳤을 터인데 그것은 어느 시대였을까? 하는 궁금증은 집을 볼 때 느끼는 의문이다. 알고싶고 알아내고 싶은 충동에 손바닥에 땀이 땀다. 三層殿 수리시에도 이 호기심을 발휘하였다.

解體에 앞서 정확한 實測을 先行하였다. 金周泰·俞門龍팀이 1962년 10월 1일부터 착수하여 1개월간 실시하였다. 지금 널리 퍼진 實測圖面이 이때에 제작된 것이다. 金·俞兩人是 지금도 文化財委員會의 專門委員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 방면의 中進들이다. 이 實測調査를 통하여 기와에 새겨진 銘文과 三層에서 발견된 墨書銘과 종이에 써넣은 上樑文이 밝혀졌다.

기와에 새겨져 있는 瓦銘 중에서 암막새의 銘文들 중 흥미있는 내용의 것

은 이렇다.

① 崇禎八年」(「표는 一行을 의미함) 乙亥四月日 雙峰」大施主金八莊方莫士兩主」(下略)

② 崇禎」八年九月日」雙峯寺造瓦」(下略)

③ 飯主海云」康熙二十五年」丙寅二月□海」(下略)

④ 雍正伍年」丁未三月日」(左畵) (下略)

⑤ 乾隆」四十五年三月日」大部監」(下略)

이들 글 중의 崇禎八年은 仁祖13年(1635)이고 康熙二十五年은 淸나라 聖祖의 年號로 우리나라 肅宗12年(1686)에 해당하며 雍正伍年은 淸의 世宗年號로 英祖3年(1727)이다. 乾隆四十五年은 庚子年인데 우리나라 正祖4年(1780)에 해당한다. 쌍봉사에서 만들어진 기와들인 것이다.

三層殿 三層의 宗道里에는 「雍正二年歲在甲辰三月日上樑竣之觀者開而感焉」라고 먹으로 단정하게 쓴 墨書銘이 있었다. 이 도리에 길이 9.6寸·폭 1.8寸·깊이 2.9寸의 홈을 파고 竹筒을 넣었다. 上樑文은 竹筒 속에 密封되어 있었다. 狀紙(길이 167cm·폭 22.2cm)에 楷書體로 반듯하게 썼는데 첫머리에 「三層殿記」라 하였다. 102行으로 쓴 全文은 『考古美術』誌(3卷12號)에 「雙峰寺大雄殿上樑文(三層殿)」이라 하여 내가 소개한바 있으므로 여기에서 또 옮겨 쓸 겨를이 없는데 그 末尾에 「雍正武年甲辰」이라 써서 이 기록이 조선조 景宗4年(1724)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 내용으로 보아 이때에 三重創(다시 지었다는 뜻, 重修하였다는 의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기록은 寺傳하는 「雙峰寺事蹟記」의 내용과도 부합되고 있어 지금의 三層殿은 1690년대의 作品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雙峰寺 三層殿의 조사와 工役始末에 대하여는 「雙峰寺通信 1~3」이라 하여 역시 『考古美術』에 연재한바 있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이 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루어 오면서 修理報告書를 刊行하지 못하고 있다. 좋은 기회가 있어 이의 간행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다.

建築設計事務所의 經營〔完〕

營 業

참고: (I) 經營의 基本問題 (82年 9月号 게재)

(II) 組織의 役割 (82年 10月号 게재)

(III) 情報收集과 選別 (82年 11月号 게재)

자료: 田中 清著 〈建築設計事務所의 經營〉에서

營業의 意味와 目的

企業組織에 있어서 경영과 영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營業活動은 경영의 중요하고도 불가결한 요건이다.

프로페션의 경우 영업부문은 〈하는 방법〉 이외에는 전혀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프로페션의 형태도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適應을 요구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기업의 영업에서는 반드시 觀點에서부터 영업적 대응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오늘날 설계사무소의 運營機能으로서, 이러한 점을 사회로부터 요구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예로 戰後 조직화된 설계사무소에서는 企劃室 또는 業務部라는 명칭으로 조직화된 영업·기획부문을 설치하여 약간의 專任者를 둔 사례가 많았다. 그리고 그러한 경향은 서서히 정당한 것으로서 관념되기에 이르렀다.

또 大・中事務所 가운데에는 업무의 확대를 꾀할 목적으로 지사나 출장소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영업자세에 있어서도 企業과 구별해서 존재하는 것이 오늘날의 실태이다.

종합적인 시야에 입각해서 볼 때 건축가는 제1급 프로페션으로서의 신뢰를 얻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金力追求의 업계는 물론 프로페션으로서의 의사나 변호사의 세계에서 까지도 의심스러운 인물은, 반드시 소수에 의해서 발견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건축가의 세계에서는 자신의

직업에 성실과 신념을 가지고 창조적인 의욕을 불태우는 선배가 우리를 주변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

設計事務所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전망을 근본 토대로 하여 業務의 質量和安定을 꾀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 목적을 위한 제반방향이 현재 행해지고 있다. 일반적인 예를 든다면 우선 다음의 범위가 프로페션으로서의 업무의 영업행위라고 볼 수 있다.

1. 업무정보·자료의 수집
2. 人脈 및 他業界에의 접촉·확대
3. 關係優先의 P.R과 진밀화
4. 官公署에의 指名登録 수속
5. 독자적인 기술개발에 의한 시장 개척

이상의 根幹이 되는 것은 專門能力에 의한 신뢰관계의 확대 및 연장이다. 그리고 兩行爲로서 덤벼드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다음은 치출한 방법에 의한 프로페션으로서의 영업(이것은 모두 상행위로서 權謀術策의 범주에 속한다) 행위로서 그 예를 들어본다. 더구나 유감스러운 일은 이러한 사실이 극히 적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1. 성치권력을 이용하는 수주활동
2. 금융권력을 이용하는 수주활동
3. 압찰수주에의 적극적인 참가
4. 同業他社에 대한 약점 이용방법
5. 가격경쟁도 불사하는 상업적인 영업
6. 발주자(건축주)와 수주자(설계사무소)간의 利權契約

이상의 사례는 非建築家인 영업맨을 배치하여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設計事務所에 그러한 예

가 많으며 건축가들 자신 가운데에도 결코 적지 않다고는 할 수 없다. 진실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非文化的인 亂世 속에서 苦闘하는 건축가들 중심으로 하여 공동의 敵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 이에 반하여 자기반성의 기회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

이상의 예를 전제로 하여 생각하는 것은, 정상적인 建築家營業에 대한 자기 자신에 있어서의 實行可能性, 즉 발하자면 그 결과에 의해서 自社の 경영수지가 성립되지 않으면 營業맨으로서나 경영자로서도 실격이다.

알기 어려운 것은 자신을 상실한 쪽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며 진실은 언제나 현명하면서도 단순하다.

다음은 私見을 제시함으로써 參考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것은 곧 諸賢의 노력과 인격과 판단에 관계되는 문제일 줄로 믿는다.

1. 경영규모의 설정—자신의 경영능력과 영업능력에 대한 철저한 분석 단 성장에의 탄력적인 축적을 내포한 體質을 진력해나갔다는 평소의 마유가짐이 중요하다.

2. 업무의 質로서 승부를 판가름해야겠다는 마음이 앞시야 하며, 부응해서 전문가로서의 실력을 확립할 것. 그리고 자신의 적성·특질을 발견하고 그 방향으로 同業他社와 대결하여 승리할 것.

3. 업무의 성과(실적·작품의 質)에 대해서 사회 여러분야로부터 평가받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질 것.

4. 情報收集·選別能力을 항상 제진화시킬 것.

5. 자신의 생존권, 人脈의 구성,

교제의 범주에 있어서, 그 성격과 種別을 본질적으로 정확히 파악하여 행동하는 것.

일본의 社會構造는 집(家)·학벌·문벌·郷土關, 기타 파벌·地緣·血緣 등에 의해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신념을 선택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6. 사회 및 뉴스에 대한 적극적인 提案行爲야말로 이른바 P. R 活動의 본질이다.

업무의 성실한 실천+P. R活動에 의해서 建築家職能에 대한 일반사회로부터의 평가와 신뢰를 얻어진다.

7. 潛在的需要的 預測研究와 저기에 따른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은 것. 즉 연구성과와 정보자료의 質·量이 중요한 무기로서 역할한다.

8. 광범위한 건축가 업무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독자적인 고도의 專門能力을 쌓기 위해 공부한다. 노력과 시간에 의해 實績의 정도가 나타나는 것이며 總合的 능력에 스페셜티(Specialty)가 합쳐질 때 강력한 무기가 된다.

9. 자신의 인간적 매력과 전문적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광범위한 解者와 자원자를 확보할 것. 專門能力의 레벨 업이 뉴스의 레벨 업을 초래한다.

10. 이상의 예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은, 결국 건축에 대한 성열, 專門業務에 대한 실력, 인간으로서의 성실성, 사회인으로서의 교양, 그리고 人脈의 풍요로운 集積에 의해서만이 보다 훌륭한 영업활동이 보장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경쟁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거나 고의로 핑개쳐 버리려는 것은 오직 상술매매에 현혹된 마음에서이며, 同業他社에게 미혹을 끼치고 업계의 타락을 부채질하는 행위일 뿐이다. 그 예로서, 業界에도 정경있는 <예의바른 사무소> 보다는 불명예스러운 레테르가 붙은 사무소가 수도권에 많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며, 그 가운데에는 몇개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 그것은

*政治權力的 중심지에서 정치·행

정의 관련정보가 빈약하는 가운데 다수의 사무소가 과당경쟁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

*대도시에서 존재하는 설계사무소는 상호간 연대감이 사실상 부족하다는 것 등이다.

이상은 설계사무소의 영업에 있어서 明暗兩面을 말해주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경쟁자의 프로페션으로서의 倫理感에 의한 문제이며, 인간성의 인식을 痛感하는 데에 있다.

오늘의 問題點과 그 原因

建築設計界의 오랜 병폐로서 입찰 및 疑似관계에 대한 적극참가의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辰野金吾나 長野宇平씨가 국회의사당 건설 계획에 참여하여 공명성대한 물의 확립을 꾀하기 위해 정열과 노력을 경주하기 전까지는 본질적인 진보개선이 없었다.

형식적으로는 일본건축가협회·일본건축사회연합회·일본건축학회에서 제정한 <建築設計競技基準>이 존재하여 설계경기에 대한 운영방식으로서 어느 정도 정비된 내용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을 활용하는 건축수족이나 응모하는 건축가측의 쌍방에 의한 장애가 있어 사실상 만족한 상태로서 채용된 사례는 극히 적었다.

오늘날 설계사무소의 영업이 프로페션으로서 적합한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커다란 원인은 결코 단순하게 지적할 수는 없으며, 역사적인 근거 또는 다각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의 諸條件이 있다.

1. 일본에 있어서의 건축가 업무는 프로페션으로서의 이해가 대단히 부족하여 클라이언트측도 건축가의 報酬에 대하여 <안정한 것이 좋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2. 수요공급의 경제원칙을 무시한 설계사무소의 난립에서 기인하는 과당경쟁과 일부 사무소의 상업주의적 영업행위에 의한 혼란

3. 개인의 재능에만 의존하려 드는 습성이 강한 건축가·스스로의 함정, 그리고 업계의 병폐인 연대감의 희박성, 그것에 의한 외지의 불일치와 사회성과의 遊離

4. 설계사무소의 세계 자체에도 건

축가가 바라는 <價値>있는 자와 실제업자가 원하는 자의 존재가 混在하여 프로페션으로서의 윤리관이 철저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입찰행위를 기피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 영업적인 수단으로서 생각하는 사무소가 적지않은 것이 현실이며 또한 그러한 행위에 대해 죄악감을 갖지않는 데에 원인이 있다.

5. 입찰제도를 안이하게 채용하는 건축주(주로 지방자치제)측에도 문제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의 리더십의 방위에 의한, 지방자치 정신에 따른 환경과괴의 결과를 자각하고 비통해하는 당사자들이 회박하다는 데에 문제가 많다.

6. 設計競技基準를 개조하여 그것을 악용하는 건축주와 편승하는 사례가 많다.

여기에는 그 문제를 발생케 하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정치권력개입

*심사의 불공정 또는 불명치 않은 심사내용

*참가자에게 부당한 희생을 강요하는 안이한 參加報酬

*作爲의으로 생각하는 비상식적인 단기간의 期限設定

*저작권의 경시 또는 무단사용

이상의 각 항목들은 일본의 문화적 風土性의 문제, 프로페션의 사회적 미성숙에서 기인하는 현상, 정치·행정의 부조리에서 기인하는 현상, 전문가측의 윤리감과 연대감의 결핍에서 오는 현상 등이 주원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設計事務所측의 問題

건축가에 대한 諸問題로서 설계사무소 경영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다. 그 문제들로 인하여 사회에 어떤 형태로 파급되고 건축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건축가로서 또는 건축가를 지망하는 자로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반성하여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다. 그 문제점을 다음에 열거하여 諸賢의 비판과 검토를 기대하여 본다.

1. 악질적인 건축주와의 편승으로 인한 동업자간의 연대감의 희박성.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사회인으로

서 어울리지 않는 사람, 교양인으로서의 윤리감과 연대감의 결여를 인식하고 반성해야 한다.

2. 입찰·疑似콘페 등, 불명량한 업무의 지명에 참가하는 사무소가 當落에 개외치 않고 자신들의 입장에만 몰두하여 피해를 입지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면 건축주에 대한 불신감, 사무소간의 불신감, 경제적, 시간적 손해, 프라이드의 상실 등이 있는데도 말이다.

3. 덩빙입찰에 의한 수주의 결과는 대폭적인 적자를 부채질하여 업무상의 책임을 불투명하게 한다.

大赤字를 각오한 것은 신실한 업무를 요구하는 사회에 대한 반역이며 同業間에 迷惑만을 끼칠 뿐이다.

4. 덩빙수주를 일삼는 조작한 영영내용과 충실성이 결여된 사무소의 경영내용이 주는 악순환은 프로페션의 사회적 정착을 무엇보다도 배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5. 설계사무소간의 무분별한 경쟁은 건축주·일반사회로부터의 불신과 친시를 조장하는 결과이며, 일본 국민의 文化性을 파괴하는 방향에 건축가 자신의 힘을 빌려주는 일이 된다.

6. 설계사무소간의 상호불신을 증대하는 것은 건축가의 사회적 평가를 하락시킬 뿐이다. 사회의 신뢰를 잃는다는 것은, 동시에 업무에 대한 경제적 평가를 필연적으로 하락시키는 결과가 된다.

7. 건축가라는 직업이 매력을 잃게 되면 설계사무소는 당연히 경영맨이나 사회적으로도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 운명에 놓이게 된다.

8. 우선 혼란스러운 것은, 넓은 시야에 입각한 사회적 제언이나 프로페션으로서의 건축가에 대한 일반사회에의 P. R의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

이 점은 건축가 개인이나 建築設計諸團體를 불문하고 태만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는 없다.

競争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章에서 취급하고자 하는 경쟁은 전전한 설계사무소의 경영을 저해하는 不當·不明郎한 영업적 경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문가로서의 건축가 프로페션을 전

제로 한 경쟁은, 건축가 업무에 대한 전문능력과 성실도·적성 등에 의해서 승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오늘날의 建築設計界의 현황은 결코 그와 같이 단순명쾌한 흐름이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종합적인 전망으로 볼 때 설계사무소 자체가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른지도 모른다. 외부의 사회적 상황, 시대의 推移에 의해서는 各項의 연관이 다른 각도로 부상되었으나 여기에는 사무소의 내부적 문제, 사무소간의 경쟁과 협력의 부족함이 더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戰後復興期로부터 高度經濟成長期 동안 일본의 건축계는 달콤한 시대가 장기간 계속되었다. 경제원칙을 독점했던, 정말로 이상한 감미로운 밀월의 시대였었다.

경계가 調整期로부터 低成長의 시대로 移行하는 오늘날, 설계사무소도 당연히 内部調整의 필요가 절실하게 되었다.

먼 장래를 경원시 한 현재의 설계사무소는 需給의 언밸런스에 고심하여 經營失速의 현상을 노출시키고 있다.

報酬덤핑, 疑似콘페 등의 증가도 病根의 커다란 원인이다.

오늘날의 참채, 經營失速의 내부적 원인으로서 몇가지의 예를 생각하여 본다.

1. 需給原則을 무시한 사무소의 난립, 그리고 안이한 경영자세

2. 새로분열적인 弱小事務所의 기생, 弱小라 함은 경영능력·조직력·전문능력의 결핍을 의미한다.

3. 과거의 高度經濟成長期로부터 低成長期에의 대응, 經營轉換의 미숙, 즉 虛弱肥滿兒의 상태

4. 연간 實勤務月數의 條件惡化

5. 수주에 있어서 報酬條件의 악화

6. 업무의 多角化·高度化에의 대응노력 부족

7. 감미로왔던 과거에서 탈피하지 못한 未熟兒型의 人材溫存

8. 本來的인 전문능력의 부족

현실적으로 사회의 뉴스에 대한 공급과잉의 설계사무소가 今後 장기간에 걸쳐 현상유지로서 허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다. 이

경우, 이상의 어느 쪽, 혹은 그 가운데에서 몇개의 예에 해당하는 사무소부터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오늘날 설계사무소가 처한 운명이며 상식인 것이다. 그리고 설계사무소의 존립을 위협케 하는 사회의 제반 外部的要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설계사무소의 위기적 양상과는 달리 일부 대형사무소는 기업적으로 조직화되어 전국적인 영업규모를 가지고 대량의 업무를 정밀하게 소화시키고 있으며, 시장독점의 방향으로 사실상 전진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한 강력한 힘과 기업적 체질이 좋은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일부 설계사무소는 정치권력·금융권력에 접근하여 설계사무소, 세계에서도 약속강식의 경향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은 실로 놀랍다.

더군다나 質·量的으로 장대한 일부 大型建設會社와 설계부는, 그 營利組織의 庇護를 배경으로 하여 강력한 자본력을 가지고서 경쟁의 자세를 노골적으로 취하고 있다.

하여간 어느 業界에 있어서도 라이벌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는 없으며, 특히 설계사무소의 오늘날과 같은 입장은 엄격하게 말해서 環境條件이라는 것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전전한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설계사무소는 약 20퍼센트,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설계사무소가 약 30퍼센트(78년도 建築知識社의 조사에 의한 자료에서 抽出함)이며 나머지의 약 50퍼센트가 현상유지마저 곤란한 설계사무소이다.

이상의 제반 여건이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현실을 토대로 하여 今後 중·小設計事務所の 발생을 유도케 하는 길은 없는 것일까? 물론 즉각적으로 약효가 나타나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건축을 창조하는 매력을 갖지 않은 이상, 무엇으로든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추구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가 자신의 노력과 마음에 의해서 그 환경조건을 개척·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먼저 영업의 의미와 목적에 있어서의 모든 항목을 再讀하기 바란다. 왜

나하면 가까운 장래에 설계사무소가 半減하고, 혹은 3분의 1로 도태될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의 문제점과 그 원인에 있어서의 모든 제반 장애에 대하여 현명하게 대처하고 그러한 함정으로부터 벗어나 知性과 能力을 體得하는 것이 그 시점에서 굉장히 유익하고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설계사무소는 개성적인 전문능력과 충분히 정비된 조직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아무 것도 뛰어난 것이 없는 特性을 갖는다면 살아남기 위한 경쟁에서 낙오될 운명에 처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이어서 자신은 어느 쪽의 대열에 가담할 것인가, 어떠한 작전에 의해서 무엇을 무기로 하여 어떤 목표를 향하여 겨눌 것인가 하는 근성을 갖고 실천하기 위한 熟考가 필요하다.

● 살아남기 위한 수단

1. 당연히하면서도 절대적인 것은 어떠한 일에 있어서나 전문능력과 정보능력을 고양시킨다.

그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것은 대외적으로는 人脈, 대내적으로는 人材이다. 그것과 동시에 경영자의 신념과 정열이 明暗의 分岐點으로서 작용한다.

2. 경영의 합리화는 설계사무소의 경우에서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예술가적으로 또는 職人的으로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선택하여 나아가는 것은,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봉사를 해야 할 건축안으로서 마땅한 양심이며 그것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경영조직 또한 필요하다.

3. 사회적 뉴스에 의해서 설계사무소의 職能·업무의 영역과 수비범위가 변화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업무의 專門領域

과 클라이언트와의 대응에 의해서 펼쳐지는 3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㉑ 遠心型-擴大指向으로서의 總合化의 방향. 이미 세계 제1의 대형사무소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일본의 실상을 보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당사자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참고하는 예가 많다. 그러나 今後에는 대형사무소 자체에도 優勝劣敗·변형성쇠의 법칙이, 피할 수 없는 법칙으로서 작용하는 시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감이 없지 않다. 천연자원이 충분치 못한 일본의 기업이 工業力에 의해서 세계무대를 석권하다시피 한 오늘의 성장을 보더라도 활약의 무대를 국제화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㉒ 求心型-集中指向과 전문화의 방향. 건축의 用途機能種別을 선택하여 특정한 전문영역의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

고도의 전문능력에 의한 우수한 작품과 실적, 獨自의 受注體制에 의한 업무량의 安定化, 그것에 의한 他社와의 부의미한 경쟁 회피 등, 엘리트로서의 健全한 經營體制를 형성한다.

㉓ 특정한 조사·연구·기획업무 등, 컨설턴트能力을 전제로 하여 그것과 관련된 設計監理 업무체제의 확립. 다시 한번 말해두고 싶은 것은 컨설턴트·매니지먼트(Management)에서부터 사업의 總合企劃·推進代行業務에 대한 전문능력의 개발에 까지 職能의 변화가 가까운 장래에 출현할 것이 분명하다.

4. 少數精銳主義에 철저할 것.

설계사무소의 최대의 자산은 人材이며, 최대의 필요없는 것은 無能·無氣力적인 人間이다.

현재 일반적으로 연간 100일이 넘는 휴일이 있으며, 정당의 迎合政策에 의해서 今後에도 연간 實勤務日數

가 감소의 경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휴일이 증가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의 지성·교양·건강에 플러스 요인으로서도 작용하지만, 반면에 무가력·나태 등 半遊民의인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하여 정신적으로 풍부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풍부할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5. 경영조직이 硬直化를 방지하여 탄력적인 조직체질을 保持할 것.

예를 들면 ㉔ 協力事務所와의 긴밀한 유대관계 ㉕ 同種 및 관련(구조·설비·積算·造園 등) 사무소와의 팀워크(Team Work)의 정비 ㉖ 건축과 관련된 전문가(도시계획·인테리어·가구·공예 등)와의 유대 ㉗ 他地域 사무소와의 協業化. 또 人材的인 면으로는 프리랜스의 활용, 연관계약 職員制의 채용(2년단위 정도를 표준으로 한 방법이 좋다. 또한 우수한 인재는 정규사원으로서 스카웃하는 방법도 있다), 소장 代行者の 양성과 조직상의 정비(종합적인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분적인 권한위임을 생각할 수도 있다) 등.

6. 사이드 워크(Side Work)에 의해서 경제면을 보강하는 것도 이상적이다.

프로페션으로서의 건축가가 非營利的으로 존재하는 이상은, 그 理想을 경제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전문분야를 확보하는 노력과 능력에 관계없이 모두의 과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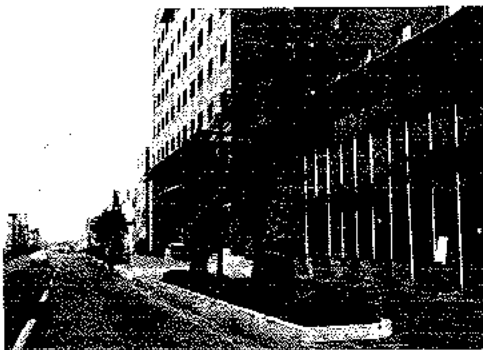
7. 物心兩面을 갖춘 페이트트론(Patron)을 가질 것.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같은 人天才도 로마法皇이나 大家門의 庇護 속에서 그들의 재능을 화려하게 발휘하였다.

그러나 현대의 페이트트론은 먼저 인기를 지독히 좋아하며 학벌·企業閥을 중요시한다.〈*〉

濟州島 / 건축기행

朴 商 浩

석림건축 / 본誌편집위원장



□ 탐라국 / 이국적풍경 간직해

지부총회를 제기로 모처럼 제주도를 찾게 되었다. 난생 처음 찾은 곳이라서 사뭇 가슴마져 설레었다. 제주가 아니더라도는 전할 수 없는 풍물들로 해서 흡사 다른 나라에 와 있는 것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이 기회에 제주를 처음 보는 사람으로서 느낀 인상을 제주의 새로운 건축과 관광개발의 관점에서 몇가지 적어보는 것도 뜻있는 바라 여긴다.

수년전만 해도 배편으로 부산에서 16시간씩이나 걸려야 닿을 수 있었던 이곳이 이제는 서울에서 인천이나 수원을 가는 시간보다 더 짧은 50여분이면 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세삼 문명의 혜택에 놀라움을 갖게 한다. 이런 시간개념으로 우리나라 지도를 바꾼다면 이 땅덩어리는 얼마나 작아질까...

제주가 육지와 떨어진 큰섬이었기에 한때는 "탐라국"이라는 독립된 나라였던 적도 있었으며 지역적 특성으로 해서 언어, 풍습, 기후, 지세, 영조물 등이 육지와는 다른 독특한 문화의 꽃이 피게 되었다. 또 그 기후풍토에 알맞는 생활문화를 형성해 왔으며 특히 자연과 싸워왔고 때로는 산과 바다와 불에 대한 신앙을 키워온 것이다.

그래서 연중 제사를 지내고 축제를 통하여 도민이 화합하고 지혜를 모아 생활을 영위해 왔던 것이다. 이제 오늘날과 같이 생활양상이, 새로운 환경, 다른 풍물이나 풍정(風情)을 찾아 다니는 여가생활 패턴의 관점에서 같은 나라 땅이면서도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곳이 바로 탐라의 나라 제주가 아닌가 한다.

□ 특성 살린 도시계획 필요

생각해보면 관광은 풍물과 풍정 등 자연을 보고 즐기는 것이라 생각하며 따라서 관광개발은 자연을 훼손하고 인위적인 조형물을 과다하고 잡다하게 많이 나열하는 것보다는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민속이나 전

통을 비롯하여 물질과 정신문화적인 모든 것을 보존 유지해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 건축사의 역할 책무 커

제주를 관광적인 면에서 보면 비행기로 쉽게 오갈 수 있어 차츰 육지화, 서울화, 국제화 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숙박시설면에서는 현대화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 없겠으나 중소도심지의 경관이나 농촌의 존락까지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며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인한 문화설비를 제외한 건축외장적인 특성면에서 외형 디자인과 자재선택은 제주의 특산재료를 반드시 선택하고 조사연구해서 보존과 개발에 힘써야 하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특히 이 방면에 있어 지역사회의 선봉적인 역할을 해야 할 우리 회원인 건축사의 역할과 책무가 크다고 믿는다.

과학이 발달된 현대에 있어서도 인간은 자연의 이치나 리듬에 따라가지 않으면 살기 어렵고 또 한편 이 지역으로 보아서는 수시로 변하는 기후, 노한 파도, 비바람 등에 대한 강한 인간의 인내와 의지와 지혜가 필요하리라 믿는다. 이러한 의미의 상징과도 같은 용무암은 노동와 싸우면서 인내하고 의연히 그 용태를 보여 주고 있어 흙사 제주인의 불가사의한 자연과의 숭고한 투쟁정신과 인내 희생정신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는 듯 하다. 그 실상을 보여 주듯이 한라산 중턱에는 세계 최고봉인 히말라야 정상울 정복한 고 상돈의 동상이 상징적으로 세워져 있다.

사방이 바다인 제주도는 섬전체가 중앙에 솟은 한라산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 열대와 온대, 한대의 삼대식물이 고루 분포되어 있어 과학적 연구대상으로도 주목되고 있다.

바다 속에서 솟은 산이라 사실 그대로 물과 구름에 휩싸인 만큼 조망도 특이하며 언제나 봉우리는 물을 못잊어 구름으로 덮혀있는 때가 많은 것이다.

산과 바다가 한마음이란 뜻은 평소 수석을 좋아하는 필자의 생각인데 바닷가에서 파도의 모양은 산형을 되풀이하고 파도의 마지막 모태 사장에 그리는 것도 또한 같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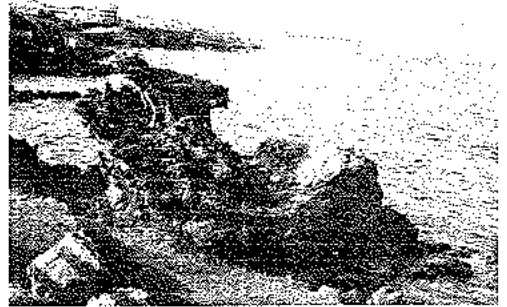
이외갈이 산과 바다는 한줄기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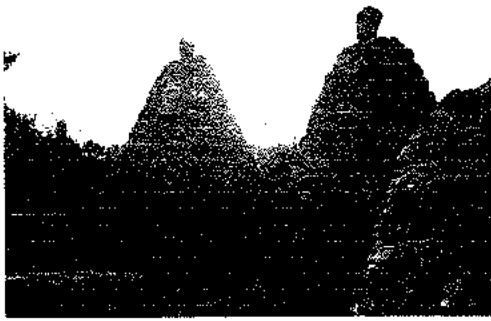
잠시 한라산을 보고 문득 노산의 시조 한수가 생각난다.

“물밖에 구름밖에 제주한라산
백록담 옛선선은 만날길없고
지는해 넘는벌에 굴테벗은말
한바다 내다보며 건계우노라”

필자는 이렇게 적어 보았다.

“가까우면서도 먼
높고도 낮은 것 같은
외로운 한라산은
물에서 태어났음인지
물에서의 향수불 못잊어





때로는 구름과 비바람을
눈과 서리를
엿친구 모시듯이 불러 들이고
화창한 날이면 잊은 듯이
계절을 따라 색동옷 입고
고고한 왕좌를 지키는구나
그때도 못잊을 때는
섬의 곳곳에 굴과 독포를
그림 그리듯 만들어 놓고
멀리서 사람들을 불러 들이고
축제를 지낸다.”

□ 천혜의 자원 / 재평가해야

들, 바람, 여자가 많아 삼다도로 일컬어지는 제주에는 그외에도 말, 굴, 복포가 많아 이 천혜의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재평가해서 개발보존에 힘써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점에서 살펴보면 먼지 신제주개발은 구제주시가에서 불과 10분 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이 지역에 관청과 호텔, 중층형 아파트, 상가, 독립주택이 군락을 이루워 공존하고 있고 이는 도시계획적 배려였다고 생각되며 주거전용지구인 아파트군과 호텔 등의 거리가 멀지 않은 점은 미풍양속을 보존한다는 점에서 재고해야 할 것이다.

신제주의 새로운 건축물과 관광서, 공공시설 건축물들은 제너룸대로의 특색을 지닌 작품으로 이들 건축물들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을 때 건물상호간과 높이, 후퇴선 등 도시미관의 전체적인 문제와 지역적 특색을 갖춘 건축의장적인 면에서 다시 생각해 하는 장단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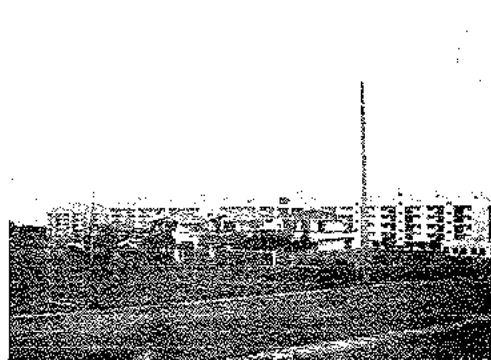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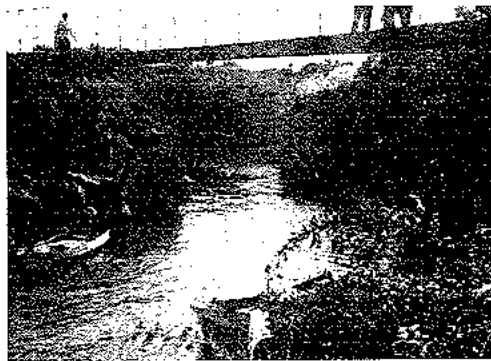
개성의 다양화에 따른 변화성에 대하여 통일조화 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지역 특색에 맞게 찾아 내어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을 것이다.

더우기 지역, 지구용도의 혼합은 무성격한 결과를 낳기 쉬운 것이다.

이곳의 특성을 살린 제한된 복합적인 용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미관지구의 건축상의 중요성은 새삼스럽게 이지역 도시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건축심의 위원회 구성은 정확히 확인한 바는 없으나 건축전문가는 물론이고 그밖에 미술, 조각, 민속, 조경, 관광개발, 역사, 철학, 도시계획 등의 전문인이 포함된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더우기 80년대의 생활패턴의 변화는 잃어버렸던 전통과 행사를 찾게 되고 찾아야 할 것이다. 레저형태도 차츰 대형화되어 가고 해외여행이나 장기휴가와 같은 것이 정착되어 갈 것이며 건강을 위한 레저도 성행할 것이다. 이렇게 80년대에는 여가이용생활이 눈부서게 발전할 것을



에상해서 이러한 패턴에 맞는 수용태세와 이에 맞는 개발방치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워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제주에는 80년대에 가장 각광을 받을 만한 선택의 자원을 가지고 있다.

제주 특유의 조가집을 내부설비만 현대화한 준락형식의 숙박시설이나 민박같은 형식의 가족래저도 바람직하다. 또 독특한 말씨와 춤을 쇼무대에서 보고 듣게 해서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북돋게 하는 것도 하나의 진흥방안이거되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바람을 이용한 발전에너지 개발과 풍차를 만들어 이국적인 풍치를 조성하는 것과 해상숙박시설도 바람직한 계획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특히 신사가지에는 현재도 일부는 계획되어 있으나 녹지대와 조경으로 전면도로나 보도쪽에 이곳 특유의 수종으로 가로수를 심어 옥지에서 볼 수 없는 제주도의 특성을 살리고 또 제주특산물인 다공질의 경석(화산석)을 외장재로 이용한다.

외벽이나 보도 등 기타 제주산 재료를 이용한 건축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현상설계나 대학졸업생작품 등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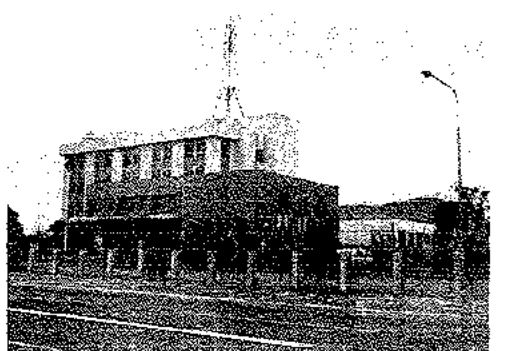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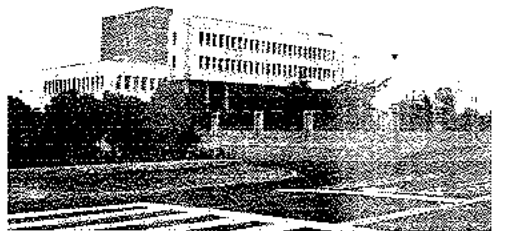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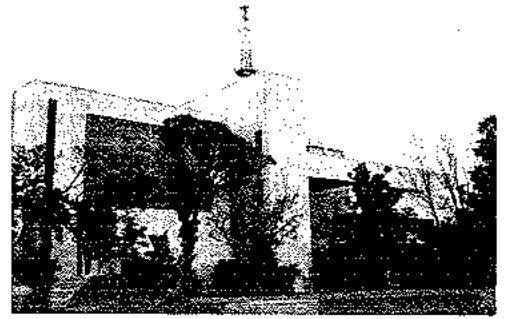
□ 민속촌·박물관등 많이 세워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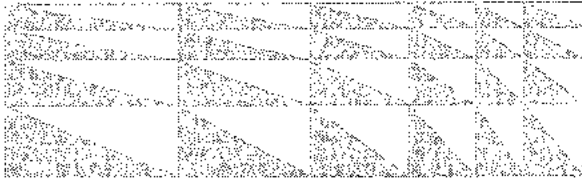
잊혀져 가는 민속, 신앙, 전설, 민요를 비롯 미술, 종교, 음악, 무용 등의 발굴과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으로 체스티빌 등 연중행사화하는 것 등을 고려해 봄직하다. 아울러 필요한 곳에 이러한 특색을 살린 박물관, 수집관, 열람실 등 시설을 충분히 세우는 것도 좋을 것이다.

특히 아열대성 식물원, 해양 혹은 해저식물이나 해저어물 등 해저의 자연현상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해저수족관, 박물관 등을 해안선의 절경지대를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계획함직하다. 특히 해안선의 개발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배를 타고 제주도의 해안선을 일주한다면 얼마나 그 경관이 아름다울까 상상만 해도 즐겁다. 이러한 해안선을 조사연구하는 전문기관과 논문이 많이 발표되고 있으며 필자가 입수한 책자 중에는 MIT의 것으로 「용융해안지질지형학」 「해안선 개발」 「공익을 위한 해안선」 등 몇권을 친구로 부터 최근에 기증 받은 바 있다. 윤들이 이곳 행정관서에서는 국토개발원에 의뢰하여 종합개발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당국자의 이야기를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전국 제주도 전체의 광원화불 위해 한국의 보물섬을 가꾸는 마음으로 제주의 특성을 살린, 자연과 인공이 조화된 수준높은 개발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말하자면 조닝(ZONING)의 기본이 되는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의 이용, 입지, 규모, 형태, 밀도, 공공시설의 정치(配置)와 정비의 정도 경관 등의 요소가 이지역 특성에 맞아야 하고 또한 있어야 할 모습을 이 비지화해서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 <*





建設業에 있어서의 設計VE〔Ⅱ〕

□ 다음에 소개하는 VE資料는 일본VE協會 소속 建設VE研究會 보고서로서 모두 8章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번 호에는 3章과 4章을 소개하며 회원의 設計業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편집자 주〉

Ⅲ. 設計段階에서의 코스트配分

1. 現狀에서의 目標코스트 設定上の 問題點

本研究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各社의 協력을 득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하였으며, 目標 코스트의 설정, 브레이크다운(Brakedown)의 現狀은 대부분 과거의 類似工事の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積算方式에 의한 체크·수정을 거쳐 결정하였다.

목표 코스트의 設定段階로서의 문제점을 정리하는 것은 다음에 의한 방법이 있다.

① 건축주의 요구사항(뉴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企劃段階에서 특히 건축주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구상하여 준비하고 구체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 방법이 미숙한 나머지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② 건축주로부터 요구 코스트를 지시받아야 한다.

본래 요구사항의 하나인 요구 코스트(건축주로서의 희망예산)는 설계자측에 제시되어야 한다.

③ 프로젝트로서의 목표 코스트 설정을 위한 구체적인 순서가 확립되어야 한다.

2. 設計코스트 목표의 設定

① 目的·意義 —— 설계에서는 고객이 요구하는 기능을, 건물을 구성하는 각 요소 시스템으로 분할하여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圖畫를 완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설계도서에 담아야 하는 여러가지 내용은 요구기능과 동시에 요구 코스트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설계를 달성하기 위한 코스트 목표가 제시됨으로써 코스트 달성의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목표가 명확하게 된다. 建設의 코스트는 설계업무에 의해서 대다수가 결정되고 있으며 施工段階에서는 코스트 진드물에 한계가 있다. 코스트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의 방법을 미리 배워둘 필요가 있다. 설계의 목표 코스트를 着手前에 설정하는 의의는 다음의 이유에 있다.

〈미리 목표 코스트를 설정하여 그 달성목적에 대한 조직을 보존하는 경험·지식의 집결이 設計VE의 기본이다. 목표가 없는 개선활동은 어떤 방법으로부터든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② 目標 코스트의 설정방법 —— 목표 코스트의 설정은 보통 各社와 自社內的 類似工事 실적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競合他社의 가격 등에 의해 산출하는 케이스가 많다.

일반적으로 목표 코스트의 패스는 다음에 의하여 생각한다.

① 회사의 利益計劃으로부터 분해된 것.

② 코스트 요구로부터 분할된 것.

③ 코스트를 集積하여 그것을 개선하는 것.

④ 유사품을 분석하여 비용을 산출하는 것.

⑤ 代替 코스트에 의한 것.

이 章에서의 設計VE의 목표 코스트 설정방법은 기본적으로 다음에 의해서 생각하고 진행하기로 한다.

① 요구사항의 機能交換

② 기능평가

③ 기능별 코스트配分

④ 積算方式에 의한 체크

⑤ 兩者를 감안하는 것에 의하여 목표 코스트를 설정한다.

3. 目標 코스트의 브레이크다운(Brakedown)

① 고찰방법 —— 프로젝트로서의 목표 코스트가 결정되면, 다음은 실제로 설계를 진행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코스트 분할이 필요하다. 건설의 경우에서 브레이크다운은 크게 기능분야별과 構成블럭별로 생각할 수가 있다.

② 構成分野別 코스트 배분의 고찰방법: 구성분야별 코스트 배분은 건축주가 요구하는 機能이 불투명하여 코스트로서 달성하기 어려울 때 기획단계(설계착수 전)에서 미리 파악하는 방법이다. 먼저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기능별로 분석하여 그것에 의하여 요구 코스트를 분할하고 전체예산이 건축주의 요구에 만족할만한 금액(적정이익을 확보하는)인가를 확인한다.

③ 構成블럭別 코스트 배분의 고찰방법: 構成블럭別 코스트는 건축주가 요구하는 기능이 요구 코스트 내에서 확인되어 실제로 設計作業을 하는 데에 이용된다.

건물은 몇개의 블럭에 의해서 구성되고 완성되는 것이며, 건축주가 요구하는 기능도 構成블럭에 의해서 만족시킬 수 있다.

② 브레이크다운의 방법 —— 지금까지의 브레이크다운에 대한 근거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類似見積을 기준으로 하여 %配分 등에 의해서 분할되었고 대략적인 積算에 의한 결과에 수정을 가하여 결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要求機能間の 關係를 고려할 수 없을뿐 아니라 목표 코스트의 분할에 위험이 따른다. 따라서 건축주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절대적인 조건과 회방적인 조건이 있다. 트레이드업을 행할 경우에는 회방적인 조건을 대상으로 하여 변경한다. 따라서 요구사항을 분석할 때에는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2) 트레이드업의 순서 (표 1 참조)

(3) 트레이드업을 행할 경우의 데이터

트레이드업을 행할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데이터)을 준비한다. (표 2 참조)

(4) 트레이드업을 행할 경우에 주의해야 할 점

㉠ 트레이드업에 대한 可否의 판정 평가자의 선정 및 그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준비할 것.

㉡ 目標性能 등, 트레이드업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그것을 피이드백하여 목표설정의 精度向上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5. 코스트配分の 실시에 따른 문제점

코스트配分을 행할 때 다음에 의한 하나의 문제점이 남게 된다.

㉠ 지금까지는 VE 効果의 실적과악이 불충분하여 코스트 데이터로서 다음번 他工事に 까지 사용할 수가 없었다 (피이드백體制의 문제).

㉡ 요구 코스트와 특수항목과의 연관이 불명확하다.

㉢ VE 効果의 실적과악이 불충분하여 코스트 데이터로서 다음번 他製品에 사용하기가 곤란하다.

㉣ 설계자를 위한 전적용 코스트 데이터와 코스트 데이터가 부족한 것 등.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한 設計VE를 행할 때 코스트配分은 곤란하다.

IV. 設計者が 사용하는 코스트 데이터의 方法

1. 目的

건축설계를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우선 건물의 성질에 따라 규모・室面積・空間 등을 결정하고 충분한 내력을 지지할 수 있는 기초・구조 등을 확정하여 그것에 의해 필요한 설비를 결정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計劃者는 이것에 코스트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흔히 말하는 建築코스트 성립의 원

트레이드업의 항목	코스트 타켓트	요구사항	달성코스트	트레이드업의 내용	달성코스트	달성조건	평가
구성분류등 트레이드업을 필요로 하는 항목	목표코스트	요구형태・성능・일정 등	달성코스트	코스트 타켓트를 위한 변경 제안의 내용	견적된 코스트	달성목적의 필요조건으로서의 제시	트레이드업의 가부를 평가한다.

점은 ㉠ 건축주측의 투자가능 금액 ㉡ 설계자의 추정 공사비 ㉢ 단위 면적당의 예산 등이며, 어느 것의 경우에서도 설계자는 코스트에 대응할만한 가치・성능과 코스트의 밸런스를 얻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設計VE의 경우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상이며, 종래의 예를 보면 설계원로서부터 공사비의 精算을 하는 경우가 심하였다. 건축주에게 충분한 만족을 부여함과 동시에 업자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이며, 따라서 DTC나 LCC적인 생각에까지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미국의 GSA에 있어서의 CM方式과 근본적으로 같은 양상을 띄고 있지만 현재 일본의 建設業者는 이것까지는 행하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에 참가한 대다수의 멤버가 소속하는 건설업체는, 그 건축부문의 全工事 시공량 중 극히 적은 20~30%를 自社の 설계시공 형태로서 수주하고 있다. 그 경향은 今後 GSA方式의 침투가 점점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앙케이트에 의한 各社の 實態調査

설계자로서 코스트 데이터에 바라는 것, 또 데이터 수집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각 담당자에게 앙케이트를 의뢰하였다. 各社の 설계부문까지는 VE담당 부서에 의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코스트 데이터와 제작 중의 데이터, 그리고 今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코스트 데이터 등의 해답을 구해 보았다. 해답은 생각대로 극히 지조하였다.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앙케이트

설계자가 사용하는 코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현재 貴社가 설계부문에 채용하고 있는 점에 관하여 下記の 물음에 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귀사가 설계단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산출의 목적을 위한

코스트 데이터

㉠ 上記의 경우에 是非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코스트 데이터 및 그 형태에 관한 의견 등

㉡ 코스트 데이터의 작성방법

㉢ 현행 코스트 데이터에 있어서의 문제점

㉣ 항에 대해서

현재 회사전체로서 결정하고 있는 코스트 데이터는 없으나 어떠한 형태로든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다. — (5)

自社에 의해서 시공된 類似建物の 人科目・科目別 데이터를 주제로 하여 사용하고 있다. — (3)

용도별・규모별・구조별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 (1)

공간구성별(壁・開口率 등의 분류) — (1)

地域別指數를 가미하고 있다 (지점 및 지사별). — (1)

㉤ 항에 대해서

EC(견적된 가격)와 AC(실제가격)와의 비교 데이터가 바람직하다. — (1)

AC가 直接設計에 피이드백된 형태 — (1)

㉥ 항에 대해서

單一壁體를 분해하여 壁本體・바다・지하 및 其他物을 분류한 데이터를 작성 중 — (1)

㉦ 항에 대해서

바닥의 부분별 코스트에 관한 브레이크다운이 없다. — (1)

해답은 이상과 같으며 어느 항목으로 보아도 각사의 설계부문에 있어서 이러한 종류의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計劃과 코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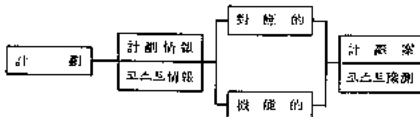
㉠ 計劃에 필요한 情報

建築計劃의 출발은 우선 직접 필요한 정보수집부터 시작한다.

모든 디맨드 시트의 형태로서는 건

측주로부터의 요구사항, 외부로부터의 수주에 의한 모든 제한, 더불어 法的條件을 포함한 諸規定 등을 精査시키는 데이터를 작성한다. 건축공사의 경우, 이 단계에서 직접 코스트意識을 계획 가운데에 삽입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VE的인 방법으로서의 설계가 건축 코스트의 70%를 지배하고 나머지 30% 가운데 購買가 20%, 시공이 10%를 차지하고 있다.



② 코스트 목표의 발생

① 코스트情報 —— 着手段階에 있어서의 코스트 목표를 위한 자료나 그 이전에 지정된 諸條件에 대응하는 정보는 <표 3>에 표시되어 있으며, 보통 코스트 컨트롤에 사용되는 각종 정보를 단계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선택한 시, 우선 계획하는 건물의 용도·규모·구조의 종별·건물의 程度 등이 類似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여 검토되는 것이 편리하고 유효하다.

② 코스트 플랜닝 (Cost Planning) —— 計劃用 데이터로서 수집된 디맨드 시트(Demand Sheet)와 그것들로부터 抽出된 워크 시트(Work Sheet)에 의해서 코스트 플랜닝用的 정보가 얻어진다.

<표 2>는 그 기초가 되는 항목들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것은 계획이 기본설계로 移行하는 일보 전으로서 그 내용을 분석하여 코스트 예측, 즉 코스트 플랜닝用的 종류를 만드는데에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서 <표 1>에 표시된 정보가 코스트 리서치(조사)를 위한 것이라면 <표 4>는 코스트 플랜닝用이다. 이 표로부터 출발하여 건물의 기능 및 부분별과 工種別과의 매트릭스(Matrix)를 작성하여 그 코스트 배분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다.

③ 코스트 목표의 달성 —— 원래 建築코스트의 방법으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 건축주의 요구에 의한 결정 • 공사의 推定 필요액 • 정보에 의한 코스트 등의 경우가 생각되며, 제

<표 3> 코스트 컨트롤에 사용되는 코스트情報의 종류

단 계	착 수 기 획	기 본 계 획	기 본 설 계	실 시 설 계	
코스트 정보의 종 류	• 시장조사 분석 • 立地조사 분석 • 幅員·지질조사 보고서 • 관련법규 • 경영·관리시스 템모델 • 경영·관리코스 트분석 • 자금조달 모델 • 물가지수	* 사업계획서 * 건축비용별 코스트 한계 • 근린대책·보 상모델 • 건물의 타입 · 모델 • 규모 코스트 · 분석	* 기본 스케치 * 당초의 코스 트 계획서 • 경영·관리사 스팀·모델 • 규모·수량 코스트 분석 • 건설방식 모 델 • 인근대책 코 스트·분석	* 기본계획도서 * 코스트 기본 계획서 • 수량코스트· 분석 • 메인티넌스· 코스트·분석 • 활동비 분석 • 복합가격	* 기본설계도서 * 설계코스트 계획서 • 재료별 가격

<표 4> 計劃·設計段階別의 코스트情報

기획단계에서 구하는 일반적 코스트예측을 위한 정보	기본계획 단계에서 구하는 일반적 코스트 예측을 위한 정보	기본설계로부터 구하는 코스트예측을 위한 정보	결정된 중요한 업무사항
• 建物種別 - 設置主體分類 - 收容人員 - 主要室數 - 主體室部分面積	- 目的別分類 - 建物の 品格 - 내방자수·관리자수	- 각실명칭 - 각실수	
• 延面積 - 건물높이 - 形狀預想	- 각계단면적 - 계단수·지하층의 유무 - 외곽형상 - 간막이벽의 配 - 발코니설치유무 - 필로티설치유무 - 지붕과 옥상의 형상	- 각실면적 - 지상계단수·지하계단수 - 각계단별 평면형상 - 외벽면적 - 外部開口·非開口면적 - 각실 평면형상 - 內壁周長·내부출입구수 - 발코니면적과 형상 - 필로티면적과 형상 - 지붕과 옥상의 면적	- 각실 바닥성도 - 외부 바닥성도
• 構造種別 - 架構形式 - 地築形式	- 예상하중 - 지축의 방법	- 기둥·내진벽의 배치와 수 - 부지면적	- 施工難易 - 地耐力·施工難易 - 기존건물·철거 건물
• 부지위치 - 부지형상 - 주변상황	- 造成預想 - 施工用시설과 양생·수당	- 부지조성면적·土量 副室 등 외부시설배치 外構바닥면적 - 門등의 길이	- 仮設의 정도 - 外構各部 바닥 정도 - 운반·시공방법
• 설비조건 - 주요설비설치에 상 - 관련집기·비품 - 방	- 필요한 설비종목 - 특수한 설비성능요구 - 주변도시설비 상황	- 주요 기계설의 스페이스 배치 - 引込設備 및 처리시설위치	引込·自家設備源
• 發注形式 - 발주시기	발주형식		工期·支拂條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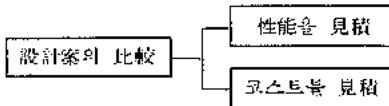
획하는 측으로부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 건물의 용도 • 요구되는 범위 • 설계의 내용 등이 있다.

이와같은 조건과 앞의 코스트 플랜닝(<표 2>의 코스트情報를 거쳐 최종 코스트 목표를 결정하는 것이 있다.

4. 設計者와 코스트 데이터

① 설계자가 코스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의미

건축계획을 행할 경우, 예를 들어 하나의 대마에 대해서 하나의 뚜렷한 해답을 얻을 수 없는 것은 보통이다. 대응하는 해답 —— 디자인이 각양각색으로 떠오르는 것은 상식이며 여기에 코스트條件을 가미해 보는 것도 좋다.



종래의 건축가는 설계에 대하여 디자인(意匠)이 우선인 것처럼 생각하였으며, 코스트는 설계의 결과에 관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미스이며, 최근에는 建築企劃의 경우에서도 당초부터 성능과 코스트의 밸런스를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다. 또한 코스트 컨트롤의 책임자는 어디까지나 설계자 자신이라는 사고방식이 정착되어 오고 있다.

② 現狀에 있어서의 설계자의 코스트 데이터

설계자로서 어떠한 코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가, 또는 현재 바라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앙케이트 조사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며 건축계획의 단계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대체로 다음에 의한다.

㉠ 계획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코스트 데이터

㉡ 각종의 성능, 혹은 그 변화에 대한 코스트 데이터

㉢ 부분적인 부위를 볼 수 있는 코스트 데이터

㉣ 空間的인 各室을 단위로서 나타낸 코스트 데이터

㉤ WBS로부터 도입된 각종의 기본적인 코스트 데이터

설계자는 이 데이터를 구사하여 자기의 제안하는 바를 행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공사비 분할까지의 本業務를 생각할 수 있다. 더구나 WBS에 의해서 일정한 下位레벨까지 분석된 코스트 데이터는, 당연히 이 레벨로서 사용한 코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도리이며 그것에 대해서는 後述의 설명을 참고하기 바란다.

*종합 코스트 데이터 —— 노련한 경험을 가진 설계자가 <표 4>에 표시된 코스트 예측을 위한 데이터와 건물의 개략적인 레벨을 알고 있다고 하여도 어느 정도 정확한 평방미터까지의 공사비 예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들어 건축전체의 공사비를 부분별로 분할하여 基礎 및 軀體, 내외부 바닥, 그리고 그것에 부속되는 설비 등처럼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다(물론 이것 이외에도 가설공사비·경비 등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이것을 코스트의 100분비로 표시하면 <표 5>의 형식이 있다. 이 原數字는 建設工業經營研究會의 建築工事原價分析情報에 의한 것이며, 自社の 설계시공에 의해 既完成된 同種建築의 데이터, 또는 他社에서 실시한 유사건축의 데이터 등을 참고로 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규모별로 분류하여 그 시점의 物價指數表와 대비하여 수정한 것에 의해서 정확한 수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좋다.

일반적으로 건축공사비는 그 건물의 성격에 의해서 나타난다.

*性能別 코스트 데이터 —— 經濟調查會의 鈴木正策씨는 건축의 經濟價値式으로서 경제평가 = 성능 / 코스트를 일일이 보여주고 있다.

원래 성능의 평가로서 그 기능을 발휘하는 有形的 品質이 존재하는 한은 간단치가 않으며, 건축의 예술성, 디자인性 등처럼 直接數值的 평가의 대상이 곤란한 경우에는 하나의 기준

구분	種別	構造	내외부바닥	複合빌딩	事務所	病院	店舗	호	校	構	내외부바닥	複合빌딩	事務所	病院	店舗	호	校
建築	假設	S	7.5			5.4			8.4	R							
	基礎			7.1	7.9		9.6	7.5			7.6	7.2	7.6	7.5	7.2	6.4	7.3
	軀體																
	바	R	34.8	28.1	27.4	37.1	26.0	24.2	37.5		25.7	25.2	24.7	23.2	27.9	21.8	29.7
設備	電氣			24.0	26.1		24.7	26.1				31.8	27.9	28.3	26.3		32.9
	衛生							33.8			36.7						
	空調															36.0	
	昇降																
經費	기타		20.5			33.7			1.98								
	屋外																
	總		7.6	34.1	29.8	7.8	32.0		8.2		20.9	27.3	30.7	31.9	29.9	28.5	23.1
	費			6.8	6.8		7.7	29.1			7.1	8.5	9.2	9.1	8.7		7.5
全工事費		C	100	"	"	"	"	"	100							7.7	
										C	100	"	"	"	"	"	100

을 결정하기 위한 데이터화가 곤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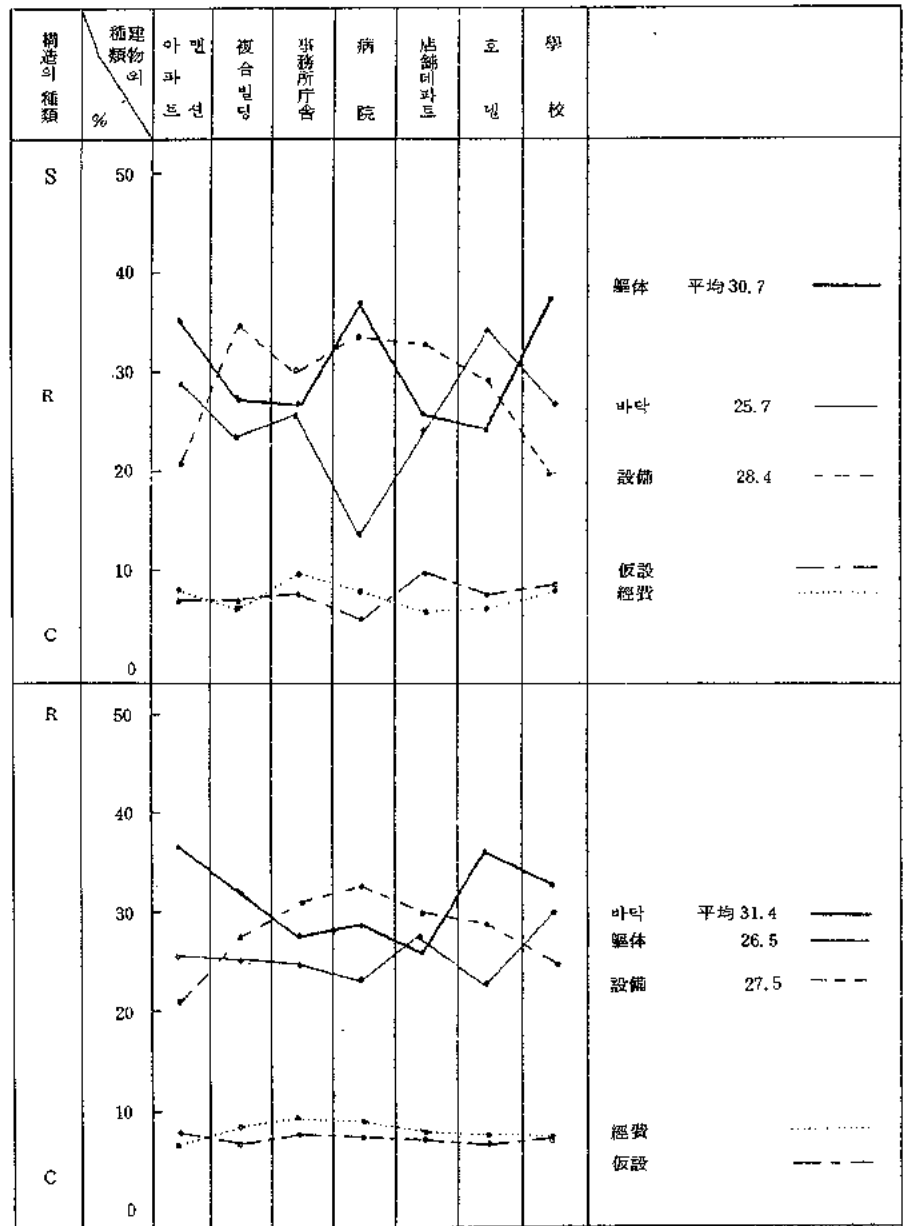
따라서 건물전체의 형태, 각실의 형태, 그 레이아웃 및 빌딩 엘리먼트(BE)의 성능, 구조시스템, 설비시스템 등, 각각의 표준 코스트를 패턴 모델과 비교하여 계수로서 표시하는 것이 저질적인 설계에 의한 무성의한 코스트 투입을 피하게 한다.

〈표 6〉는 하나의 성능평가——성능별 코스트 데이터 작성의 전본으로서, 여기에 의하면 건축의 구조·규모·형상, 바꾸어 말하면 BE와 그리고小空間의 성능에 대하여 각각의 성능 코스트 및 표준 포인트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 가치를 결정하고 있다.

이 포인트 자체에는 계획자에 의한 각양각색의 판단기준의 相違가 있으며, 여기에서는 기준을 표시하기 위한 하나의 例示로서 해석하여, 계획설계자가 적당히 생각하여 修正을 가함과 동시에 獨自의인 포인트를 결정하기 위한 것임에는 별 차이가 없다. 요는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優劣의 순위, 또는 가치평가의 정도가 명확히 표시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空間的 코스트 데이터 —— 각종의 건물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예를 든다면, 몇개 종류의 室을 채택하여 등급 등에 대한 유닛 코스트를 산출하는 방법도 있다.

〈표 5-2〉



〈表 6-1〉 病院建築의 그레이드表(假定)

① 構造別 그레이드					② 規模別 그레이드					③ 形狀別 그레이드				
區分	性能	코스트	區分	性能	코스트	區分	性能	코스트	區分	性能	코스트	區分	性能	코스트
◎ R C 造	1.00	1.00	大規模 (延1萬m ² 以上)	1.00	0.85	◎ 替通	1.00	1.00	◎ 替通	1.00	1.00	◎ 替通	1.00	1.00
S R C 造	1.05	1.30	◎ 中規模 (延0.1萬~1萬m ² 未滿)	1.00	1.00	◎ 替通	1.05	1.15	◎ 替通	1.05	1.15	◎ 替通	1.05	1.15
H P C 造	1.05	1.25	小規模 (延0.1萬m ² 未滿)	1.00	1.15	◎ 替通	1.10	1.25	◎ 替通	1.10	1.25	◎ 替通	1.10	1.25
S 造 (耐火)	1.05	1.20				◎ 替通	1.15	1.35	◎ 替通	1.15	1.35	◎ 替通	1.15	1.35
S 造	0.95	1.00												
R C & S 造	0.95	1.00												
④ 立地條件別 그레이드					⑤ 바닥程度別 그레이드					⑥ 設備方式別 그레이드				
區分	性能	코스트	區分	性能	코스트	區分	性能	코스트	區分	性能	코스트	區分	性能	코스트
市街地地下있음	1.00	1.15	上級	1.20	1.30	上級	1.20	1.20	上級	1.20	1.20	上級	1.20	1.20
◎ " 地下있음	1.00	1.00	中級上	1.10	1.15	中級上	1.10	1.10	中級上	1.10	1.10	中級上	1.10	1.10
郊外 地下있음	0.95	1.05	◎ " 中	1.00	1.00	◎ " 中	1.00	1.00	◎ " 中	1.00	1.00	◎ " 中	1.00	1.00
" 地下없음	0.95	0.90	" 下	0.90	0.90	" 下	0.90	0.90	" 下	0.90	0.90	" 下	0.90	0.90
辟地 地下없음	0.90	0.85	下級	0.80	0.80	下級	0.80	0.80	下級	0.80	0.80	下級	0.80	0.80

註: ◎ 표시는 병원건축 모델건물의 설계조건을 표시한 것임.

표 ②의 異形은 건물전체의 평면형·입면형·단면형의 異形을 말함.

〈表 6 - 2〉 B. E의 單位性能計算表(說明用)

B.E 명칭	B.E 構 成 材	(上行) 모델合成細目명칭 (下行) 프로젝트 명칭	性 能 項 目								性 能 差	
			耐 火	發 煙	防 水	충 격	耐 久	斷 熱	遮 音	吸 音	예 算	小 計
옥상 바 닥	옥상 방수제入·모르타르 로켓 경량콘크리트 厚板 70·増築餘地 아스팔트防 水 3 층, 下地모르타르			①		②	③			④		
		옥상 클링거타일 182角. 경량콘크리트厚板70, 増 築餘地. 우레탄塗膜防水 下地모르타르			평정 0.4×0=0		0.3×0=0	0.2×① =②0.2			0.1× ②= ②0.2	②0.4
	중 간 軀 體	② 옥상슬래브 보강 콘크 리트厚板150	②				①	③	④			
		옥상슬래브 경량 콘크리 트厚板150	0.3×0=0				0.4×0=0	0.1×② 1=②0.1	0.2× 0=0			②0.1
최상계단 천 정 바 닥	③ 천정비닐벽지(중급) 석고보드厚板9		④				①		②	③		
		천정 알미늄 성형厚板 1.0. 글라스월 부착		0.1×① =②0.1				0.4× ①= ②0.4		0.3× ①= ②0.3	0.2× ①= ②0.2	②0.2
합계(프로젝트의 對모델 B.E 성능차)			0	②0.1	0		0	②0.2	0	②0.3	②0.4	②0.7

註: ②표는 모델건물의 水平 B.E(옥상)의 B.E構成材에서 대표적인 合成細目임.

①~④는 ②표 合成細目の 성능순위임.

B.E의 성능차는 프로젝트 B.E의 對모델 B.E性能差倍率임.

(上記 표에서 프로젝트의 옥상성능은 모델의 1.7배임)

〈表 6 - 3〉 小空間의 성능과 코스트의 계산표(說明用)

주 공 간	B.E구성재	合 成 細 目	성 능				코 슷 트		
			성 능 차	단위성능×면적=전체성능	합성단가×면적=전체코스트				
일 반 사 부 실	바 닥	②리노삼厚板3표준색, 下地모르타르	0	1.0	100	100	4,400	100	440,000
	모 천 정	②암면흡음후판12, 석고보드후판9부착	0	1.0	100	100	4,700	100	470,000
	외 주 벽	②바라이트모르타르, 소라코드	0	1.0	55	55	4,200	55	231,000
	칸막이벽	②難燃비닐벽지(中), 석고보드	0	1.0	55	55	5,800	55	319,000
	모 델 室 합 계					310			1,460,000
	프 바 닥	②비타일후판2, 下地모르타르	-0.6	(1-0.6)	50	20	3,000	50	150,000
로 제 트 室	모 천 정	②조인트보드후판12, 餘地	-0.6	(1-0.6)	50	20	4,300	50	215,000
	외 주 벽	VP 3회, 下地모르타르	-0.4	(1-0.4)	40	24	5,200	40	208,000
	칸막이벽	불연보드후판15, VP 3회	-0.2	(1-0.2)	40	32	5,800	40	232,000
	프로젝트室 합 계					96			805,000

*WBS로부터 導入된 기초적인 코스트 데이터 —— 건축하기 위한 코스트를 WBS의으로 보는 것은 재료비·노임·운반비·器機損料 및 가설비 등을 분해하기 위함이나, 그리고 이때 벨에 의한 데이터 자체는 설계의 VE 또는 코스트 컨트롤의 기준선정시와 실제로 설계자가 계획용 체크하는 단계의 데이터로서는 크게 필요한 것이나 외문이다.

건축전체를 WBS의으로 분해하여 구조·바닥·설비 등의 각 분야에 대한 데이터를 작성하는 것은 기초적인

로 필요하다.

③ 設計案에 의해서 좌우되는 코스트要素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건축전체의 구성을 분해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과 구조·바닥 및 설비의 3 요소에 의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다(표 3-1 참조). 먼저 構造 —— 軀體(기초 포함)에 대해서는, 그 건축이 사용되는 장소 —— 부지가 결정되면 土質·주위상황·기초의 종류·공법 등이 확정되며 규모·구조의 종류 등이 각각의 法規制·강도·방재설비 등과 함

게 확정된다.

설비도 같은 형식으로서, 기대하는 기능조건(공조·조명·급배수·위생 등, 방제도 포함하여)을 전체로 하여 확정된다.

따라서 이상의 兩者에 관해서는 설계안에 의해서 코스트要素가 지나치게 좌우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暖冷房機器의 성능차이, 조명능력의 차이 등이 多少코스트, 특히 LCC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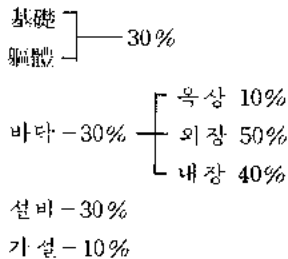
④ 비교하는 데이터

이미 건설된 유사건물이 있으면 이 코스트 데이터와 비교하여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상위점이 발견될 때에는 軀體에 관한 부분을 동일 레벨에 놓고 기타를 확산하여 보는 것도 좋다.

5. 결 론

코스트 데이터 확립의 주목적은 어디까지나 설계자가 계획의 初期段階에 있어서 적절한 공사 코스트를 예측하여 건축주의 희망·계획 등을 만족시켜줄과 동시에, 시공자에 대하여는 적당한 이윤을 보장해 주는 데에 있다.

건축의 코스트要素가 비교적 固定部分(예를 들면 기초·구체 등)과 不確定部分으로 구분되는 것은, 고정부분 및 이론적 확정부분(예를 들어 설비 등)에 의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서지않는 한 VE나 트레이드업의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표준적인 수자를例示하여 보았으며 코스트分析의 한 방법을 설명하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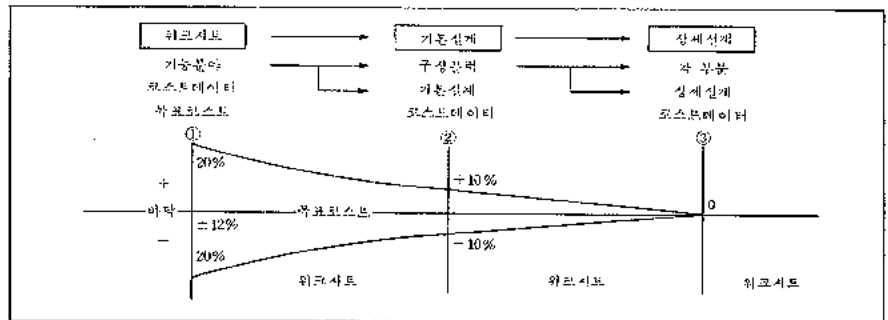


※ 여기에서 100% 가운데에는 이익·경비 및 설계료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준의 工事코스트로서 上記의 비율에 가까운 방법을 표로서 표시해 보는 것도 괜찮다. 따라서 이 관계를 변경된 圖式으로서 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워크 시트상의 데이터로 부터 채택된 유사건물의 데이터에 의하면, 당초에 假定된 工事原價中の 바닥에 해당되는 부분에 $\pm 20\%$ 정도의 오차가 생기는 것으로서도 전체 코스트를 생각할 수가 있다.

결국 建築工事に 있어서 오리지날 코스트 정도로는 그 건축의 종류·규모·지반의 상황, 설비 및 바닥의 정도가 서로 비슷하게 되며, 디멘드 시트상에 표시된 극단적인 제약상의 차이가 없는 한은 그렇게 커다란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상 설계자의 입장에서 코스트를 파악하는 방법을 기술하여 보았다. 중요한 것은 앞서서도 기술했

시 설계의 시점에서 공사 코스트의 대부분이 확정되며, 또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코스트 데이터의 방법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省에너지 建築의 実績과 技術

(자료 : 일본 建築技術 82년 7월호)

省에너지 建築으로서 業界最大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주·竹中工務店は 82년 1월부터 (제8차 省에너지 建築開發 프로젝트)에 착수하여 省에너지와 自然에너지(태양열·온천열·풍력 등)를 組合한 경제성이 높은 省에너지 건축개발을 추진하여 왔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건물들로 인해서 절약되는 총 에너지량은 연간 전력환산으로 11,621만KWH, 기름환산으로 하면 28,761KL로서 이는 200L짜리 드럼으로 환산하여 14.4만 통에 달하는 분량이다.

■ 受注内譯

同社가 省에너지 건축을 취급한 것은 75년 4월의 제 1차 개발착수를 시초로 하여 제 7차 개발까지 마쳤으며, 그 결과 同社가 受注 및 受命한 省에너지 건축은, 81년 12월말 누계에 의하면 194件에 이르고 있고 연면적 또한 271.2만 m^2 에 달하고 있다. 내역을 분류해 보면

76년도	10건	24.7만 m^2
77년도	15건	23.8만 m^2
78년도	23건	36.8만 m^2
79년도	46건	56.6만 m^2
80년도	44건	54.4만 m^2
81년도	56건	74.9만 m^2

이며, 특히 81년도의 연면적 74.9만 m^2 의 수자는 同社가 81년도에 設計施工한 全프로젝트의 연면적 합계의 약 반에 상당한 수자이다.

194건의 용도별 내역을 보면 오피스 빌딩 107건, 호텔·여관·요양시설 15건, 공장 14건, 병원·노인주택 12건, 점포 16건, 창고 2건, 교육시설 8건, 기타 20건으로서 점포와 교육시설 등의 복수용도의 건물이 점차

■ 導入技術

同社가 76년 4월 이후 81년 6월까지 실시한 省에너지 건물 가운데 100건 이상의 건물에 도입한 省에너지 요소로서는

● 단열재 설치 ● 窓面積比 ● 適正照度 실시 ● 실내 온도조건의 適正值 실시 ● 외기량 억제 ● 블라인드의 설치 ● 콘덴서의 개선 ● 공조에 있어서의 단일 덕트方式 ● 低連덕트 등이다.

이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어쨌든 공사비를 밖으로 절감할 수 있어 建築主로부터 이의 도입을 승낙 받는다는 데에 있다.

또한 60~99건의 건물에 도입되어 있는 省에너지 요소로는

● 개구부에 있어서의 熱板·페어 글라스 등의 사용 ● 외기냉방의 중간·冬期使用 ● 外氣量 억제에 있어서 預冷預熱時 외기차단 ● 排熱回收에 있어서 全熱交換器 사용 ● 히트 펌프 ● 節水시스템의 사용 ● 節水器具의 사용 ● 植樹 등으로서 이는 省에너지 효과를 높이는데 적절한 요소들이다.

(*)



都市재개발 건폐율 완화

각종 規制대폭 풀어

서울시내의 도심재개발사업을 위촉시키는 각종 규제들을 완화시켜 재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조치가 취해진다.

이같은 조치들은 86아시아게임과 88 올림픽 유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정한 여러 규제들로 인해 도심재개발사업이 저해받아 극히 부진하다는 판단에 따라 취해지는 것이다.

서울시는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재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지구에 대해 개발시행자를 지정하는 등으로 내년부터 도심재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개발촉진 지침에 따라 전폐율(대지면적 대 건물바닥면적)을 현재 45%에서 50%로, 용적률(연건평 대 대지면적)을 6백70%에서 1천%로 완화하고, 옥내외 각 50%씩 확보하도록된 주차장면적을 옥내(지하) 75%, 옥외 25%로 조정해 대지이용률을 높여줌으로써 도시재개발사업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또 시행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면허세 등 조세감면 혜택을 주어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강북지역에서는 백화점 극장 위락시설 신축을 허가치않던 것을 재개발지구에만해 허용키로 했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에 지방자치단체에만 인정하던 토지수용권을 모든 시행자에게 인정하는등 도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하는 도시재개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를 시조례로 보완, 그동안 극히 저조했던 서울도심 재개발사업을 활발히 펴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아시아게임과 올림픽에 대비, 재개발지구를 개발해 도시미관을 높이고 도시 기능과 토지이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오는 85년까지 모두 60개 지구 10만 7천 7백25평을 개발키로 했는데, 이 사업에는 민자 약 1조1천억원과 도로등 공공시설확보에 8백9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현재 재개발지구내의 토지면적을 절반이상 소유한 자,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들의 추천을 얻은 자,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예치한 자를 「재3개발자」로 지정, 재개발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다른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반대할 경우 세3개발자의 사업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앞으로 제3개발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서울시가 제3개발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사업을 맡기기로 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내 4대문안 도심부는 약 2백41만평으로, 서울시는 지난 76년 이 가운데 재개발 되지 않은 56만평(4백20개 지구)을 재개발지구로 지정, 지금까지 3만 2천 7백77평(24개 지구)에 대한 개발을 끝내고 4만 3천 5백여평(20개 지구)에 대한 공사를 진행 중이다.

獨立기념관부지 확정

내년 6월경 착공키로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안축生)는 11월 26일 오후 「한국의 집」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어, 충남天原군 木川면 黑城山 지역을 독립기념관 건립대지로 만장일치로 의결, 공식 발표했다.

추진위원회는 2개월동안 전국 14곳 후보지를 답사, 지형이 좋고 교통이 편리한 천원의 흑성산 지역을 선택했다고 밝히고, 지형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1백만평을 넘더라도 정부가 매입하여 제공해 달라고 당국에 건의했다고 발표했다. 추진위원회는 또 독립기념관 건립대지외에도 境外가 될 광활한 평지와 구룡임야는 민족교육도장

이 될수 있는 「독립공원」으로 조성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기존주택 및 耕地소유주에게 충분히 보상해주며 특히 주민들에게는 自意에 의한 移住대책을 세워 기념관설립이 주민들에게 손실이 아닌 이득과 기쁨이 될수 있게 조치해 줄 것을 당국에 건의했다.

安축生위원장은 「그동안 정성어린 성금과 史料를 헌납해준 국민 여러분과 대지 선정등 추진업무전반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金斗煥대통령에게 감사한다」고 말하고, 내년 1월 하순 첫 공청회를 열어 건립기본계획(마스터플랜) 成案을 위한 기본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安위원장은 내년 3월까지의 배치도 토지이용계획 動線계획도를 완성, 83년 6월~7월쯤 착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다짐했다. 독립기념관 성금은 11월 25일 현재 2백84억 5천 8백만원이 모아졌다고 밝힌 사무처는 이 성금을 3개투자신탁회사에 예치, 연16%의 이자소득을 보장받고 있으며, 기념배지는 27일부터 일만판매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지 土地확보 쉽게

2/3 확보한 사업자 유리

도시재개발지구 안에서의 사업시행자는 내년부터 전체 토지의 3분의 2만 확보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건물 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세 취득세등 세제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달 16일 건설부가 마련, 차관회의를 통과한 도시재개발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지구에서 사업시행자가 전체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면 나머지 地主가 가격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매도를 거부할 경우 토지수용법에 따라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3분의 2를 확보해도 나머지 地主가 판기를 거부하면 협의매수 외에는 땅을 사들일 수 없어 재개발사업을 제대로 시행할 수가 없었다.

都市건물 외양규제키로

地區계획제 도입검토

건설부는 무질서한 도시 개발을 막고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물의 모양 색깔까지도 강력하게 규제하는 地區計劃制를 도입,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설부는 지구 계획제를 도시재개발용 기준시가지 개발에 적용하는 사례 및 새시가지 개발에 적용하는 사례 등을 묶어 유형별로 엮은 地區計劃制 정부案을 연말까지 확정, 내년 2월 공청회를 거쳐 3월 국회에 도시계획법 개정案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지구계획제는 連鎖開發制와 함께 「싱가포르」등 국토면적이 협소한 나라에서 오랜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도시개발방식으로 공공시설의 배치는 물론 건설되는 모든 건축물의 규모 모양 색깔 건물배치까지도 모두 사전에 규제, 도시미관과 도시환경의 질적향상을 꾀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시설의 평면배치에만 치중돼 도시계획법으로 용도별 지구를 지정하고 건축물은 다시 건축법으로 전폐율과 용적률 정도를 제한, 입체적인 면은 거의 행정통제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건설부는 지난해부터 지구계획제 도입을 검토, 이미 지난 3월 건설부, 서울시, 住宅公社 실무진을 「싱가포르」에 보내 현장사찰과 함께 관계자료를 수집해왔다.

건설부는 내년부터 住宅公社가 서울동지의 도시재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계기로 이 지구계획제를 재개발지구에 우선적으로 도입,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지구계획제가 도입되면 같은 지구에 건설되는 학교나 상가등 같은 용도의 건물이라도 주위의 여건, 도로와의 인접거리등에 따라 외부의 모양이나 색깔이 달라지게돼 조형미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있다.

그러나 현행보다는 그만큼 행정력의 통제가 더 강하게돼 건축주의 자유의 사는 상대적으로 제한을 받게된다.

'82 서울시 건축상 발표

金賞에 金正湜씨 수상

本會전시장에서 일반전시

우수 건축물을 선정 포상해서 도시미관조성에 대한 사명감 고취를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82년도 서울시 건축상 수상작품이 결정되었다.

본회를 비롯한 한국건축가협회, 건축학회 등의 추천에 의해 지난 10월31일 마감한 출품작품은 모두 16개 작품으로 그간 심사를 거쳐 모두 6개 작품이 수상케 되었다.

최고상인 금상에는 지난 7월 본회 회원작품 순회전시회에서 건설부장관상을 받은 金正湜(주·정림건축)씨의 작품인 "MBC 여의도스튜디오"로 결정되었으며 은상은 吳雄錫(신조건축)씨의 "말레시아대사관"과 禹南龍(가나건축)씨의 "효성빌라"가 각각 차지했다. 또 동상은 金重業(김중업합동건축)씨의 "쇼핑센터 태양의 집"과 金榮洙(김영수건축)씨의 "낙산정가든 레지던스", 黃一仁(종합환경연구소 일전)씨의 "평창동주택" 등 3개 작품이 영예를 안았다.

한편 서울시는 이들 작품을 전시를 통해 일반에 공개, 지난 1일 본회 1층전시장에서 10일동안 전시에 들어갔다.



□ 82년도 서울시건축상전시가 본회전시장에서 열렸다.

출품된 작품은 다음과 같다.

〈비주거용〉

△金重業(쇼핑센터 태양의 집) △李康植(고속버스 터미널) △吳雄錫(말레시아대사관) △鄭源深(구의동에식장) △尹泰雄(잠실우성아파트상가) △金正湜(MBC 여의도스튜디오) △李起範(역삼동결혼회관) △金正澈(사립학교교원복지회관) △李昌燮(석촌동은행·상가) △金淸烈(성산동사무실) △成河柝(중소기업은행사원합숙소·연수원)

〈주거용〉

△金榮洙(낙산정가든 레지던스) △吳鳳錫(방배동신동아아파트) △黃一仁(평창동주택) △吳鳳錫(이태원동정화아파트) △禹南龍(효성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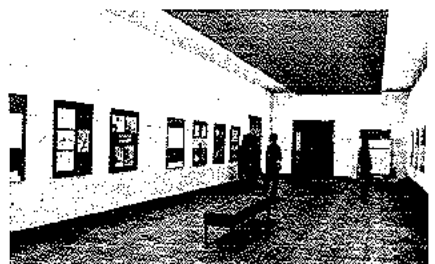
伊太利 현대 建築展 개최

국립현대 미술관에서

『70년대 이태리 현대건축전』이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7일까지 덕수궁 현대미술관에서 열렸다.

주한 이태리 대사관과 국립현대미술관 공동주최, 그리고 한국건축가협회가 협찬한 이번 전시회는 특정국가의 건축작품전으로 많은 건축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프랑크·알바니의 SNAM(스남) 사옥을 비롯한 24개 작품이 선을 보인 전시회에는 현대 이태리 건축의 조형



□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건축전

미를 체계적으로 보여 주고 있으며 특히 고대로마시대의 건축과 비견되는 우수한 건축물들이 소개되었다.

漢江개발 본격착수

8개공구 기공식 가져

서울시가 추진중인 金浦大橋에서 江東구 岩寺洞까지 전장 36km의 한강종합개발사업 10개공구중 아직 착공하지 못한 8개공구 기공식이 지난달 15일 오전 11시 각 시공회사별로 일제히 거행,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한강종합개발공사를 10개 공구로 나눠 西江大橋~元曉大橋간의 3공구 3.9km와 동작大橋~제3漢江橋간 5공구 2.9km등 2개구간은 지난 9월 28일 이미 착공한데 이어 나머지 8개공구에 대한 공사도 시공회사를 선정, 이날 일제히 착공했다.

13일 실시된 입찰에서 각 공구마다 평균 4개 회사가 참가, 경쟁끝에 ▲金浦大橋~楊花橋간 7.9km의 1공구는 동아건설 ▲楊花橋~汝矣島하류간 3.5km의 2공구는 대림산업 ▲汝矣島상류~동작大橋간 2.6km의 4공구는 진흥기업 ▲제3漢江橋~聖水大橋간 3.8km의 4공구는 남광토건 ▲聖水大橋~清潭橋간 2.3km의 7공구는 미룡건설 ▲清潭橋~蠶室大橋간 2.4km의 8공구는 라이프주택 ▲蠶室大橋~千戶大橋간 2.8km의 9공구는 삼성종합건설 ▲千戶大橋~岩寺洞간 3.9km의 10공구는 삼환기업이 맡았다. 8개공구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1공구=저수로정비 6천 9백 89m 고수부지조성 57만 1백 90평 ▲ 2공구=저수로정비 4천m 고수부지조성 7만 4천 2백 21평 강변도로 확장 1천 7백 67m ▲ 4공구=저수로정비 2천 3백 70m 고수부지조성 10만 5천 7백 69평 강변도로확장 2천 7백 62m ▲ 6공구=저수로정비 4천 5백 70m 고수부지조성 15만 5천 7백 21평 강변도로확장 4천 64m ▲ 7공구=저수로정비 2천m 고수부지조성 7만 6천 8백 31평 강변도로확장 2천 45m ▲ 8공구=저수로정비 2천 70m 고수부지조성 24만 3천 3백 47평 강변도로확장 2천 4백 84m ▲ 9공구=저수로정비 2천 9백 31m 고수부지조성 15만 6천 2백 24평 강변도로확장 3천 1백 83m

▲ 10공구=저수로정비 4천 2백 50m 고수부지조성 20만 4천 5백 47평 강변도로확장 1천 6백 79m

住公 都市재개발 참여

복합상가 주택 건설 계획

내년부터 도시재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住宅公社は 첫사업으로 서울 乙支路 2가의 불량건물을 철거하고 연면적 2만 5천평의 사무실용 빌딩을 겸한 복합상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住公은 이를 위해 5백억원을 국민주택건설기금에서 지원받는 대신 복합상가주택에는 4백가구의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를 건설, 무주택 서민에게 분양할 방침이다.

住公이 1차로 사업을 착수할 곳은 삼일빌딩 건너편 乙支路 2가 연면적 2천 6백평으로 住公은 이 사업에서 확보되는 지금을 토대로 도시재개발사업을 확대해 갈 예정이다.

한편 지금까지는 재개발 지구의 건물용적률을 최고 600%로 제한해 왔으나 도시지역의 심각한 택지난을 감안, 앞으로는 700%까지 확대, 住公이 이곳에 짓게 될 건물도 용적률을 700%로 계획하고 있다.

住公의 도시재개발방식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대상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완전히 매수, 건물을 지어놓고 기존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재개발에 정지구의 주민을 이곳에 입주시키고도 같은 방법으로 다른 지역을 재개발하는 「싱가포르」의 連鎖開發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83년 公共건설 조기집행

1·4分期中 50%이상

정부는 국내경기회복의 가속화를 위해 83년도 공공기관 시설공사의 50%이상을 1/4분기중에 조기발주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83년도 공공기관 조기발주공사는 지난 12월 10일부터 계약요

청케 된다.

지난달 15일 정부는 83년도 공공기관 시설공사 조기발주 및 집행에 관한 국무총리지시를 통해 경기회복을 촉진하고 건설공사기간의 단축등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을 비롯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의 명년도 발주공사 50%이상을 83년 3월말 전까지 조기집행하도록 시달렸다.

83년도 공공발주공사의 조기집행과 관련, 12월 10일까지 재무부장관은 83년도에 적용할 노임단가를 건설부장관은 표준품셈을 확정하여 시달하도록하고 각기관장들은 시설공사 집행계획서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게 했다.

명년 조기집행분 시설공사는 12월 10일부터 계약요청하고 이 조기발주공사의 집행을 원활히 수행되도록 예산 및 자금배정을 조치토록 지시했다.

정부는 특히 조기발주공사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당공사 선정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며 선급금이 계약후 1주일 이내에 지급되도록 하라고 시달렸다.

이밖에 경제기획원은 기관별 월중 시설공사 조기집행 추진현황을 종합하여 12월 15일까지 국무총리행정조정실에 보고하도록 했다.

내년住宅건설 확대

경기活性化위해

정부는 내년도 주택건설계획을 당초 공공부분 9만호, 민간부분 15만호 등 24만호에서 30만호 이상으로 확대, 조정할 방침이다.

관계당국에 의하면 이같은 건설계획의 확대조정은 최근 빚었던 아파트 투기가 그동안 경기침체에 따른 주택건설부진으로 공급이 수요를 뒤따르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 이의 필요성이 검토되고 있는데 곧 경제기획원, 재무부, 건설부등 관련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재정형편상 공공부문의 투자확대가 어려운 점을 감안,

소형중심으로 아파트 등 집단주택을 집중적으로 건설하고 토개공으로 하여금 택지개발을 확대, 민간주택업자에게도 싸게 공급하는 등 민간부문 주택건설을 늘려 나가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 관계당국자는 명년도 7% 내외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내경기여 관련효과가 큰 주택경기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최근들어 주택전국허가면적이 크게 증가하는 점을 들어 정부의 주택건설확대계획은 잘못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들어 주택건설은 지난 9월 말 현재 20만호 공급계획의 70%에 해당되는 13만 9천 6호의 실적을 보였다.

住宅景氣 차츰 활기보여

수주량증가 · 在庫 감소

주택건설경기가 차차 나아지고있다. 금리인하의 신속적인 통화운용등으로 지난 3·4분기에 이어 4·4분기에도 실수요층의 구매력이 다소 회복되고 있으며 내년 1·4분기에는 민간부문의 주택투자가 계속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住宅銀行이 전국의 2백20개 주택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택건설 경기전망에 따르면 지난 2·4분기 100.7 수준이던 주택경기지수(BSI)가 3·4분기에는 102.4로, 4·4분기와 내년 1·4분기에는 각각 109.5와 109.3으로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업체의 주택건설 수주량이 3·4분기 92에서 4·4분기 105.3으로 높아졌으며 미분양 주택재고지수는 지난 2·4분기 104.3에서 4·4분기 109.7(逆지수)로 높아져 재고량이 다소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최근들어 주택가격이 소폭에 비해 높게 형성되어 본격적인 주택경기활성화의 장애요인이 되고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국제경기회복지연으로 수출이 뚜렷한 회복세를 안보여 주택에 대한 수요기반이 아직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현재 형성돼 있는 주택가격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자금마련을 위한 소득증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실수요자의 구입이나 신축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으로 주택가격안정과 주택자금대출규모의 확대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도시지역에서는 택지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건설업체의 주택건설활동에 애로가 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住宅 5 만 가구 보급키로

83년 아파트 · 연립등

서울시는 내년부터 모두 5만 가구분의 주택을 보급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에 고덕지구에 시영아파트 3천가구를 짓고 그밖의 지역에 민영아파트, 연립 및 단독주택등 4만 7천가구를 짓도록 한다는 것.

서울시는 또 부지확보와 주택건설을 한해동안에 동시에 추진하던 방식을 내년부터는 바꿔, 첫째에 부지를 확보하고 이듬해에 주택건설을 하도록 했다.

이는 갈수록 부지확보가 어려워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부지를 물색키 위한 것인데, 이에따라 내년에 시영아파트 5천가구가 들어설 10만평의 부지를 확보한뒤 84년에 건설키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대규모의 부지확보난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영아파트건설을 현재 한 단지에 1천가구가상 짓는 대형화가 아닌 1백~5백가구씩 여러개 지역에 소규모로 지어나갈 계획이다.

下水淨化시설 의무화

신축아파트 · 연립에

국무회의는 아파트나 연립주택등 공

동주택을 건설할때는 생활하수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오물청소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환경청이 마련한 개정안은 아파트 및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역과 각시가 계획하는 도시계획구역에는 하수정화시설을 반드시 설치케 했으며, 연건평 5백평 이상의 건물은 별도로 하수정화시설을 설치토록했다.

생활하수에 대한 정화시설은 오물청소법에 정해져 있으나 이번 시행령에서 대상 건물과 지역을 명시함으로써 의무화되게 된 것인데, 개정된 시행령은 연내에 발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이밖에 ▲해안으로부터 10km 이내의 해역 ▲수산물의 보존·생산을 위해 지정한 구역 ▲육로변 또는 관광지로서 환경청이 교통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한 구역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환경청장이 문공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한 구역등은 오물금지구역으로 정해 이곳에서는 오물을 버리지 못하도록 했다.

연탄아궁이 기능사가

施工토록

창문 · 굴뚝등 의무규정 마련

서울시는 연탄가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축주택의 연탄아궁이는 반드시 온돌기능사가 시공토록 의무화하고 연탄 온돌방에는 방뚝이의 10% 이상되는 창문을 내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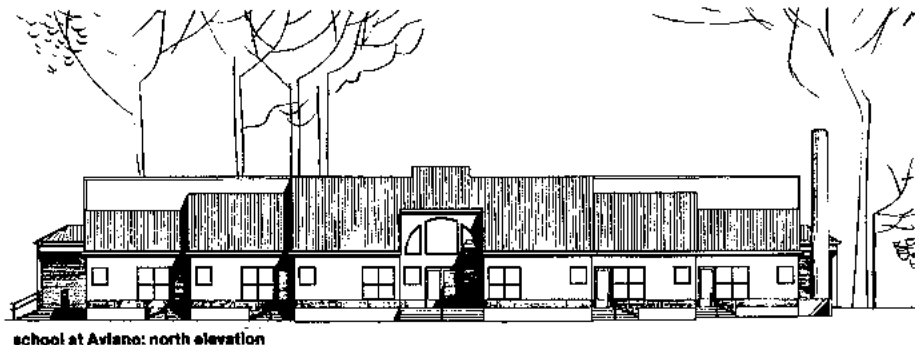
이와함께 아궁이의 유도관은 20~45도 경사가되게 설치토록 하고 굴뚝은 원통형의 경우 지름 7cm 이상 4각주는 단면적이 1백50평방cm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시는 이같은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서울시의 조치는 이제까지 현장사항으로 돼 있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연탄아궁이의 안전관리 수칙을 의무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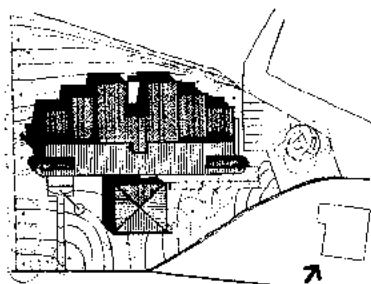
ARCHITECTS:
MITCHELL/GIURGOLA

Romaldo Giurgola는 올해
美건축가협회가 준 금상을
받았다.



school at Aviano: north elevation

GIURGOLA IN FRIULI



school at Aviano: site plan

1976년 5월 6일 저녁, Friuli의 북부지역에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 1천여명이 사망했고 10만여명의 이재민과 20여개 이상의 마을이 파괴되었다. 복구작업은 잘 진행되어 갔으나 9월 15일 보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 두번에 걸친 지진은 그 지역에 막대한 물질적인 피해를 안겨줘 주택, 학교, 교회, 공공건물과 작업장이 파괴되었다.

위험적인 지진으로 인한 손실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수세기동안 붕괴될 이 없이 발전되어온 한 지역의 주체성, 공동사회, 전통의 상실이었다.

재난에 따라 미국 의회는 5천3백만달러를 원조비로 증당하기로 하고 이를 AID에서 공급키로 했다. 이태리 정부와 협의하여 AID는 그 기금을 학교와 기숙사, 일반주택을 짓는데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히 학교는 그 지역의 "생존과 영속의 중요한 상징"이 되고 있다.

프로그래밍의 일부로서 AID는 이태리계 미국인 Romaldo Giurgola로 하여금 2개의 학교와 기숙사 하나를 설계하도록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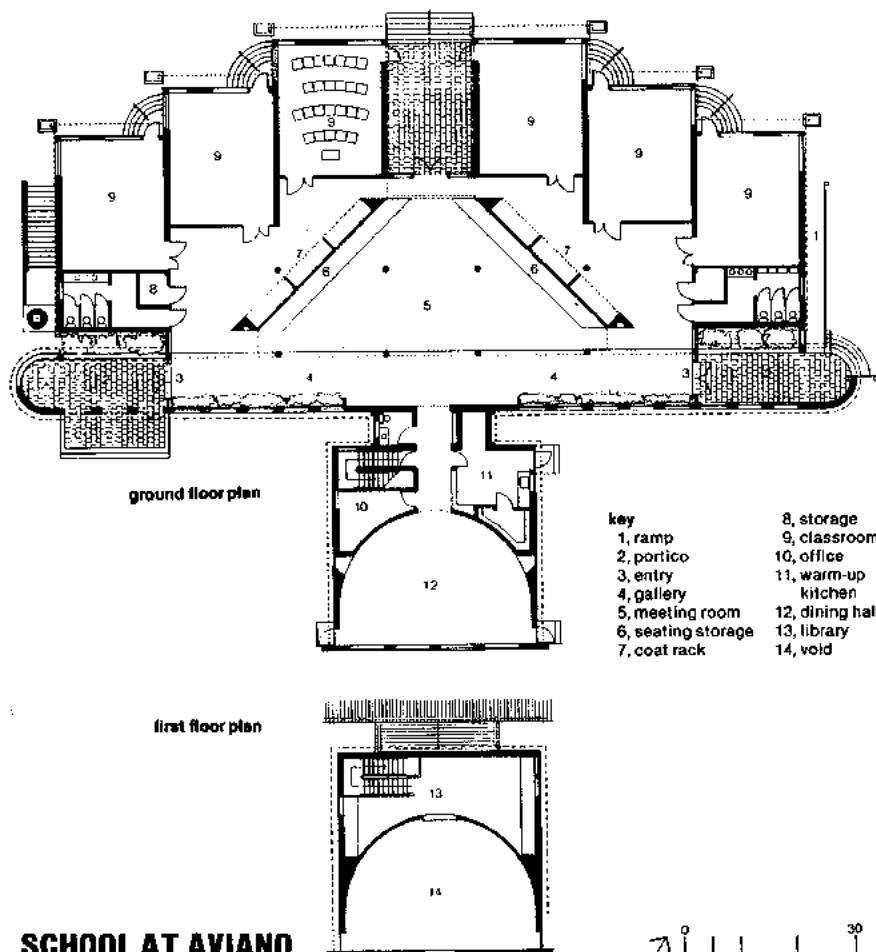
Mitchell과 Giurgola공동으로 만들어진 간단하면서도 견제를 이룬 작품은 조그만 마을에 주체넘지 않으면서도 전통미를 살린 작품으로 했다.

Aviano에 있는 작은 국민학교는그의 3개의 작품들이 지니고 있는 특별한 개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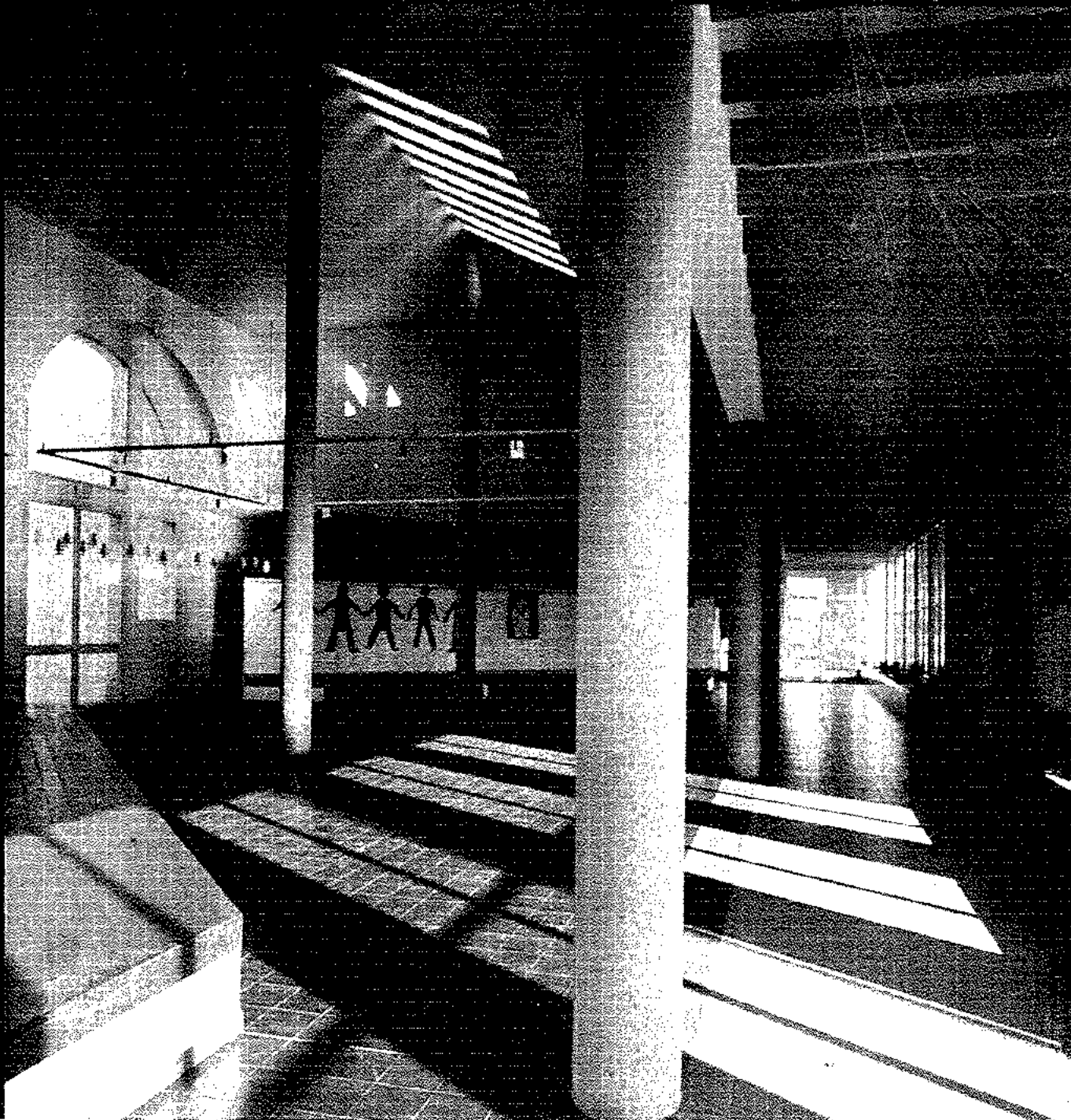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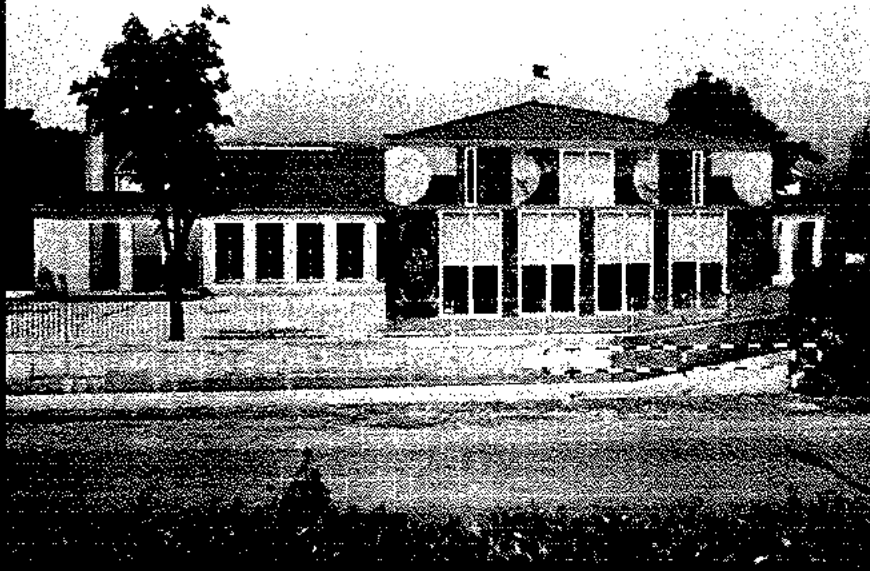
Aviano는 알프스가 보이는 계곡에 자리잡고 있고 지진으로 심하게 파괴되었다. 3개의 작품 중 학교만이 유일하게 마을 중앙에 자리잡고 있으며 다른 건물과 더불어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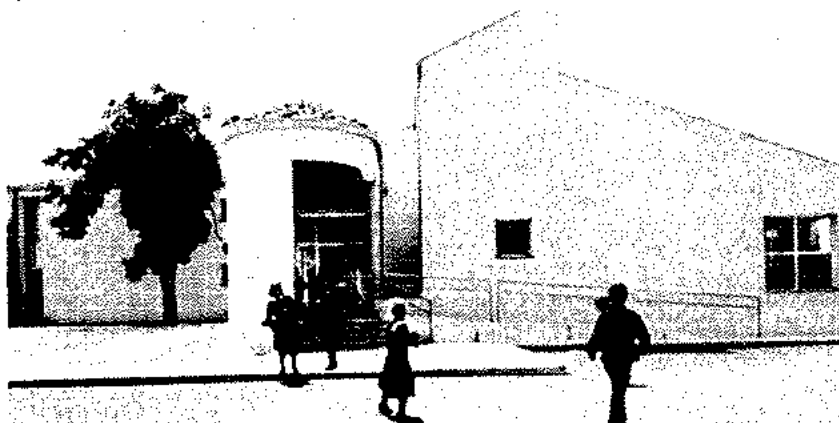
인도(人道)는 표면이 다색의 돌과 대리석으로 되어있어 지방의 특산물과 수공업의 전통을 나타내고 있다.

간단한 기하학적인 디자인 역시 어린이들 자신의 그림과 색칠을 반영한 것이다. 외부형태는 모두 간단하고 거의 다 어린이답게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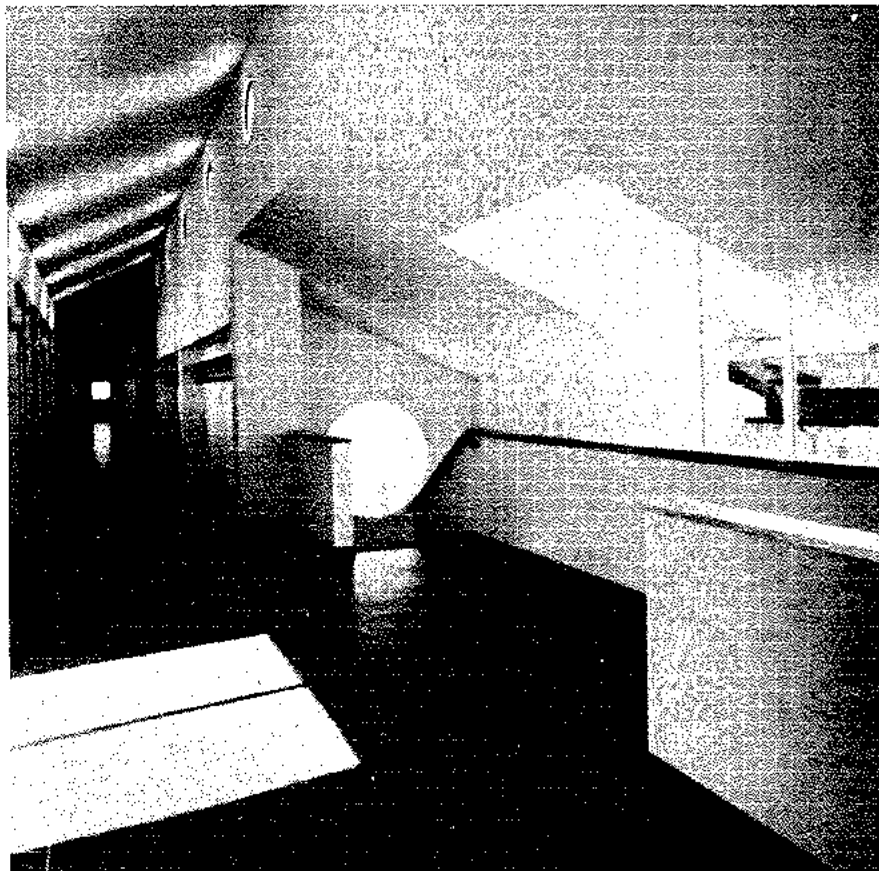
SCHOOL AT AVIANO





SCHOOL AT AVIANO

- ① 정연한 격조를 이룬 복도가 식당의 유식 대티석 정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 ② 거리 쪽에서 본 식당
- ③ 직선의 복도는 푸른색 타일의 바닥으로 경계를 이루며 저쪽 끝과 나무대튼보를 한 천정까지 볼 수 있게 했다. 중앙 부분은 두 배 높이의 천정과 3면에서 비치는 빛에 의해 구별된다.
- ④ 복도입구의 이물이 학교의 단조로운 부분에 돌출해 있다.
- ⑤ 중앙부에서 각 교실에 들어가는 곳에는 밖으로 출구가 있다.



SCHOOL AT MANIAGO

- ⑥ 뿔기 모양의 홀에는 사각형의 홀창문과 원형의 통풍창에서 빛이 들어온다.
- ⑦ Maniago에 있는 학교의 수영장이 있는 육상 경기장같은 중앙 뜰

건축은 벽을 쌓은 콘크리트 블록과 철근 콘크리트로 이루어졌다.

Mitchell과 Giurgola는 한정된 건축비로 따뜻하고 사람의 마음을 끄는 내부환경과 외부는 주위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에 전력을 기울였다.

이태리의 작은마을인 이곳에선 교회와 마을회관에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다. 학교는 순박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고 보여진다.

대티석으로 만든 정면의 뒷쪽으로 가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격조높은 복도가 있다. 푸른 타일바닥은 시각적으로 경계선을 이루며 학교의 주요한 구성요소가 되고 있다. 이 복도를 따라 건물의 중앙부나 식당으로 들어가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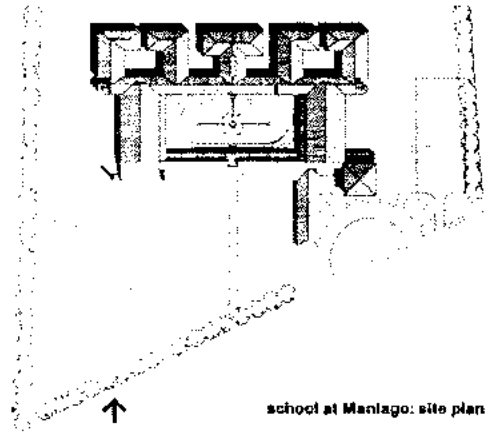
되어 있다. 바깥 현관에서 입구로, 또는 내부복도에 이르는, 복도를 따라 펼쳐진 야외와의 매력적인 조화는 내부와 외부로 효과적이며 부담없이 연결하고 있다.

진동은 여러 방향에서 내부로 비쳐주며 환상적이면서 광활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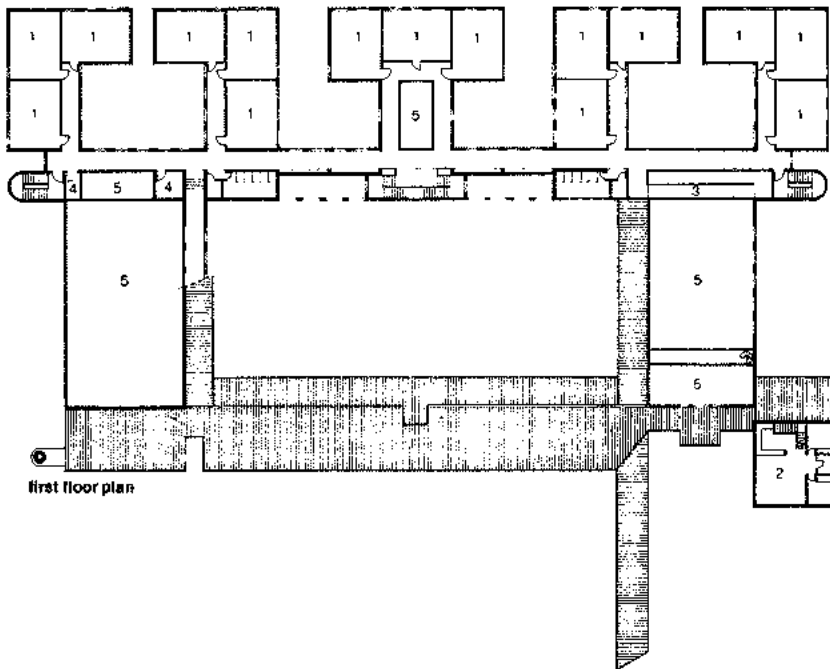
중앙부는 레크레이션이나 회의, 비공식모임에 사용되는 곳으로, 산쪽으로 면한 크고 둥근 아아치형 창문으로 부터 빛이 스며든다.

중앙부는 또한 교실과 이동교실, 식당 사이의 완충지역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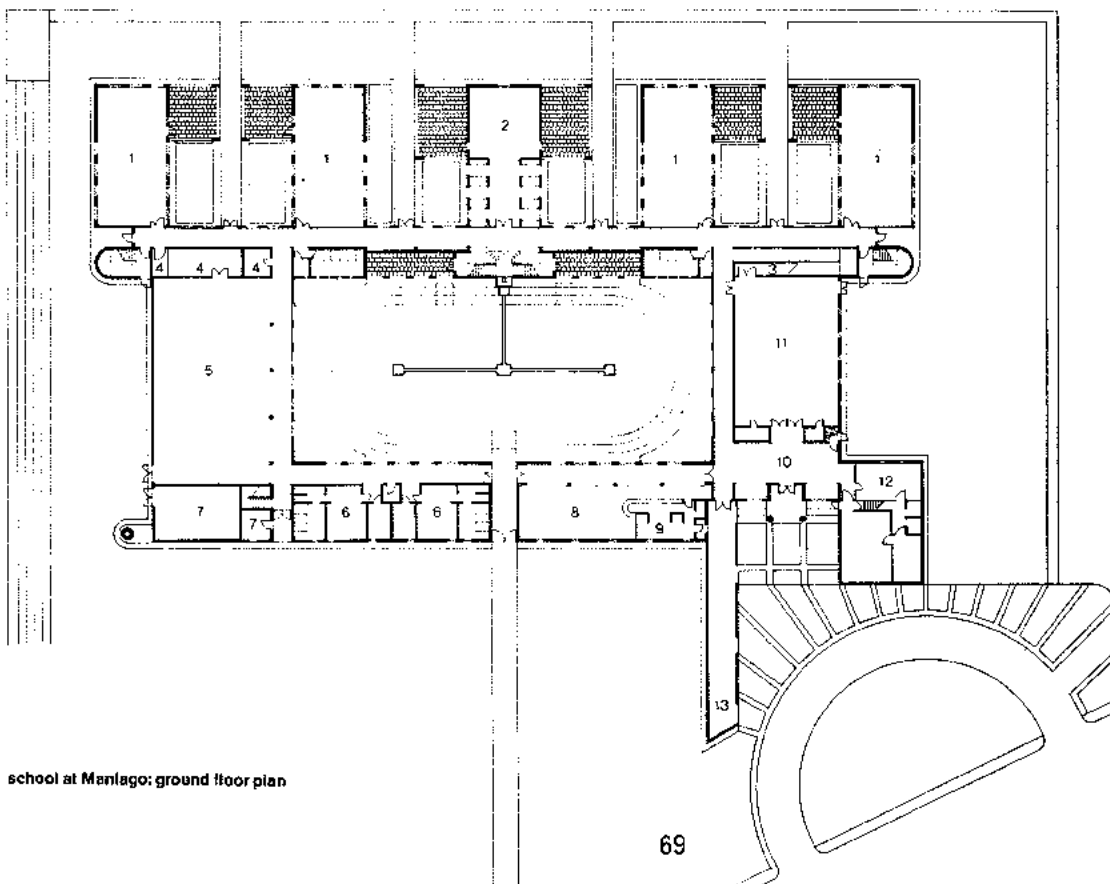
중앙부를 돌아 교실에 갈 때 각자는 두 방향으로 가게되며 운동장이나 복쪽으로 편리하게 출입하게 된다.



school at Manlago: site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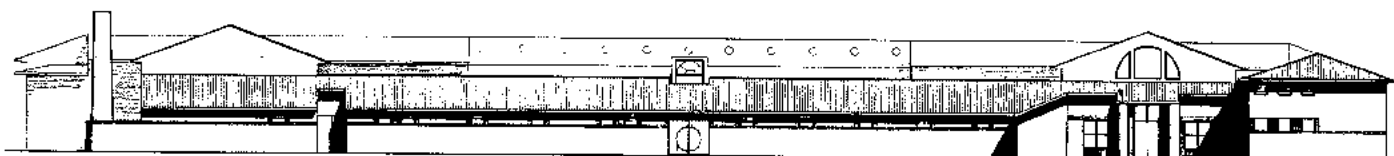


key to first floor
 1, classroom
 2, caretaker's flat
 3, ramp
 4, storage
 5, void



key to ground floor
 1, technical classroom
 2, library
 3, ramp
 4, storage
 5, gymnasium
 6, locker room
 7, mechanical
 8, dining hall
 9, warm-up kitchen
 10, atrium
 11, auditorium
 12, administration
 13, bicycle storage

school at Manlago: ground floor plan



school at Maniago: above, south elevation; below, north elevation



SCHOOL AT MANIA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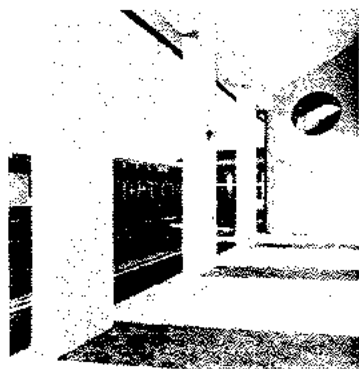
㉠ 아이치로 둘러싸여 나쁜 날씨에는 밖으로 출입할 수 있다.

㉡ 체육관에서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중앙 뜰을 바라볼 수 있다.

㉢ 경사로는 불리한 출입구이지만 그 개방성이 오히려 홀의 건너편에서부터 자연적인 빛이 흘러 들어오도록 한다.

㉣ 강력하면서도 기본적인 형태가 Maniago 주위의 소박한 경치에 필요한 잊새집 장식은 만들어 내고 있다.

㉤ Maniago의 학교 입구는 문간임을 암시하는 것들이 주의깊게 연쇄되어 있는데 그 것들은 추상적인 도릭원주, 붉은색 기둥들, 원근법의 디자인, 반원창들이다.



8

중앙부의 다른 한쪽인 중앙축(軸)은 식당으로 연결되어 있다. 벽이 반원으로 굽어져 공간에 효용된 듯한 안락한 느낌을 준다. 식당에서 내려다 보면 도서관과 독서실이 있는데 벽이 특이하게 볼록하게 되어 있다.

Aviano의 조그만 학교에 특수하면서도 단순한 분위기를 안겨준 이 모든 특징이 Maniago의 큰 공립학교에서는 보다 확대되고 정돈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Maniago의 이 학교는 넓은 밀밭 옆에 위치하고 있어 고립된 위치이며 북쪽은 웅대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주어진 배경 때문에 이 학교는 둥근 계단의 탑, 정사각형의 건물, 경사진 타일지붕 등으로 기본형태가 결정되며 강렬한 산경치의 배경 속엔 이러한 것들이 효과적으로 가장 잘 드러나는 위치가 된다는 것이다.

입구 옆에는 회랑현관, 자전거차고, 수위실이 있다.

추상적인 콘크리트 원주가 입구앞에 보조를 서듯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두개의 붉은 기둥이 가리키고 있다.

문간을 더욱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 입구 정면은 밝은색을 칠한 원근법으로 디자인하고 야외공간과 건물내부에 있는 뜰을 보여 주는 역할을 한다.

내부는 중앙순환과 서비스축(軸)이 함께 연결된 건물방식으로 구성되었다.

Aviano의 단순한 설계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보다 복잡한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다.

Maniago의 커다란 뜰은 Aviano의

중앙공간과 비슷하다. 이곳의 체육관, 식당, 강당은 제 4 면을 형성하는 순환축(軸)과 함께 경기장 주위에 그룹을 지어 있다. 중심부의 북쪽으로는 교실과 도서관이 조그만 뜰을 중심으로 모여 있고 사방을 둘러싼 산들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 회랑현관과 아이치들이 학교 여기저기에 있어서 날씨가 험악할 때도 신선한 공기가 드나들게 한다.

빛을 사용하여 내부공간을 따뜻하고 쾌활하게 한다.

홀에는 원형 고창층(高窓層)이 위로부터 빛을 받아들이고 홀에 난 큰 사각형의 창문들은 산이나 안뜰을 바라보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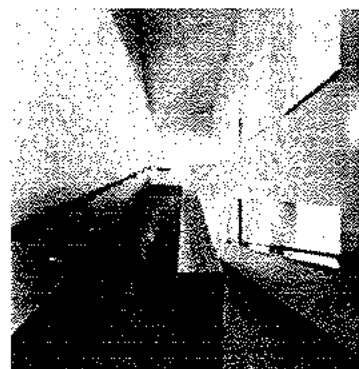
뜰은 시각적으로 일정한 축점거리에 있어 체육관, 식당에서 커다란 창문을 통해 밝은색의 북쪽벽과 수영장(Louis Kahn의 훌륭한 작품에 경의를 표해 마지않는)이 있는 수풀이 우거진 정원을 일련하게 한다.

보나 큰 규모의 Maniago 학교는 Aviano보다 세부적인 면에서는 소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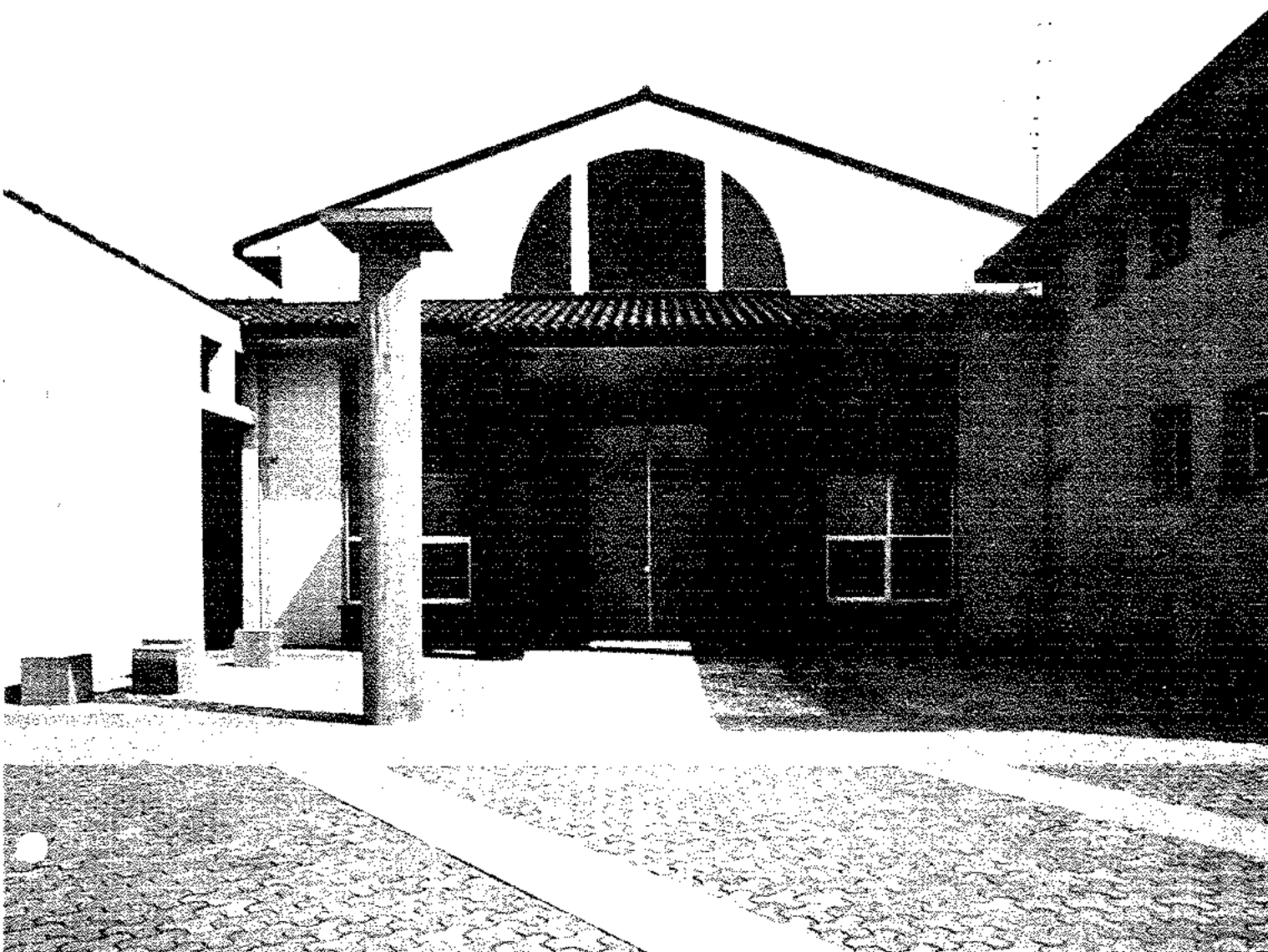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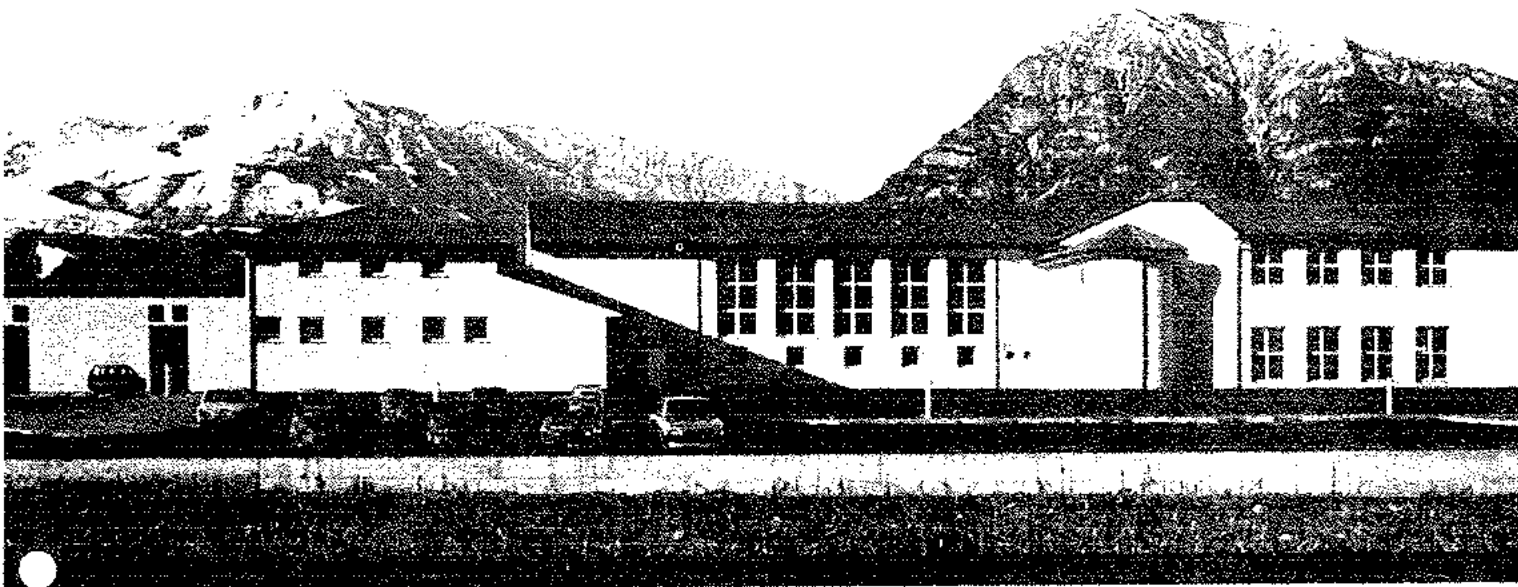
조그만 학교에서는 기본도형만으로 통일된 구성을 이루기에 충분하지만 Maniago의 체제에는 이해되기 어려운 점이다. 그래서 내부 목조부에 소나무를 일괄적으로 사용한다거나 방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율로 직사각형 형광등을 교실에 신중하게 배치하는 일, 일괄적으로 사각형 창문을 다는 것 등으로 학교의 여러 각기 다른 부서들에 일괄성을 부여하는데에 기여한다.*



9



10



건축행정상담

- **㉠** (1) 건축사 업무의 연대책임은 합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그 건축사 사무소 업무범위중 건축사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공사감리 업무의 경우, 그 업무에 관련된 건축관계 법령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에 한해서만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사료되며 (2)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사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한 건축물 범위에 대하여는 건축행정에 필요한 조사 및 검사업무등의 의무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가질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바(합동으로 등록한 상태의 경우) 이에 대한 귀부의 견해? (협회·기술부)

답 건축사법 시행령 제26조에서 합동으로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자가 동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한 경우에도 그 업무에 관련된 건축관계법령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그 업무”라 함은 건축사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설부·건축과)

- **㉡** 주차장의 “진입로의 폭”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주차형식 및 출입구의 수에 따른 주차장내 차로의 폭에 관한 기준”과는 각각 구분되는 것으로서 주차장의 진입로 및 출입구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폭(3.5미터 이상)이 확보되도록 설치함으로써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귀견은? (부산직할시 지부)

답 (1) 노의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의 주차장 설치계획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며 노의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동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2) 질의의 노의 주차장내 차로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형식 및 출입구의 수에 따라 동규칙 제4조 제2항 제3호 나목과 같이 그 최소폭이 규정되는 것이며 진입로는 노의 주차장의 출구 또는 입구(노의 주차장의 노면과 도로의 노면이 접하는 부분)와 접속된 도로이므로 동규칙 제3조 제3호

의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폭이 6미터 이상 이어야 하고 종단 구배가 10%이하이어야 할 것인바 진입로의 폭과 출입구 및 주차장내 차로의 폭은 각각 그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회·기술부)

- **㉢** 토지의 분할에서 일정면적 이상·미만이라 함은 건축법 제39조의 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의 최소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이상·미만을 말하는 것인지의 여부? (경상남도지부)

답 건축법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분할의 최소면적 기준이 정해진 것이며,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최소 대지면적은 동법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안에 대한 토지분할의 최소면적 기준임을 구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협회·기술부)

- **㉣** (1) 녹지지역으로서 1,800제곱미터의 전(田)에 건축허가를 받아 124제곱미터의 농촌주택을 건축하여 준공을 필한후, 1,800제곱미터중 720제곱미터를 대지로 지목변경 하였던바

(2) 본 대지는 도로와 주택이 인접하여 도로의 높이가 주택 슬랩지붕과 거의 같은 관계로 미관상 좋지않고 위험성이 있어 2층을 근린생활 시설로 증축코자함에 증축에 따른 구조상도등 제반 제한규정에 저촉함이 없으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도 저촉됨이 없는바 이의 증축 가능 여부? (전라북도지부)

답 자연(생산)녹지지역 안에 있어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3 및 별표4에 계기한 건축물이라면 그 건축이 가능할 것인바 위 질의의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겸용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규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이며 다만 녹지지역 지정 목적에 상충하지 않고 보건위생, 공해방지등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라면 건축이 허용될 것입니다. (협회·기술부)

- **㉤** (1) 일단의 대지위에 교육목적 시설물로 A동(교사), B동(기숙사), C동(공용시설), D동(선원연수원)을 K건축사에게 설계용역 의뢰하여 A, B, C동은 현재 시공중이며

(2) D동은 계획설계만 K건축사에게 용역의뢰한 상태에서 본교 계획 변경으로 D동의 대지에 실험실습실을 건축코자 하는바 당초 K건축사가 아닌 R건축사의 설계로 건축허가를 출원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인천선원학교)

답 (1) 일단의 대지위에 수개동의 건축물을 축조함에 있어서 건축허가 처리된 각동의 건축물중 1개 동이라도 미준공된 상태에서 별도의 건축물을 축조함에 있어서는 이를 설계변경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2) 설계변경 행위에 대하여는 반드시 현재 시공중에 있는 건축물의 설계자가 건축행정 처리를 하여야 하며 타 설계자가 설계 및 감리코자 할 경우에는 기회 시공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설계자의 설계 및 감리포기에 따른 동의를 받아 이를 승계함으로써 최종 행정적 처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협회·기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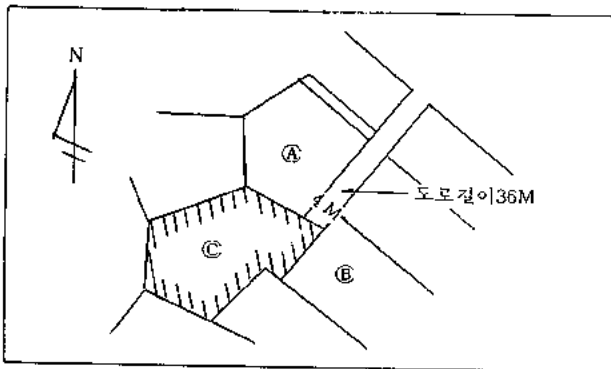
● **㉠** ① 대학 졸업후 건축사보 경력 3년이 있고, 졸업이전 공병병과에서 사병으로서의 군복무경력이 있으며 당해 복무를 마치고 3학년에 다시 복학하여 졸업하였을 경우 건축사법 시행규칙(별표2) 경력인정기준 제2등급에 의한 군복무기간의 80%를 가산한 전체 실무경력을 5년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② 경력인정기준 제1등급에서 건축사 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란 “건축사보”로서 신고한 이후의 실무경력을 말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야간 공과대학 3학년에 재학중인 자(건축기사 2급 자격소지자)는 즉시 “건축사보”로서 신고가 가능한지의 여부?(호남합동건축사사무소)

㉡ ① 건축사법 제1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기준은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요하므로 졸업이전의 경력은 인정받을수 없는 것임.

② 건축사 사무소 근무 경력은 건축사보의 경력을 말하며 단순한 사도공으로서의 인정받을수 없으며, 건축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사 2급자격취득자는 곧 “건축사보”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협회·기술부)

● **㉢** 그림과 같이 현재 도로의 폭이 4미터이고 그 길이가 35미터이상 되는 막다른 도로에 접하고 있는 ㉢대지에 주택을 건축코자하는바 대지의 여건상(㉠ ㉡대지는 타인소유임) 제규정에 의한 도로 확보가 어려운 경우 건축가능여부?(서울종합건축)



㉢ 질의에 대하여는 ㉠ ㉡대지등 막다른 도로연변의 대지에 건축할 당시 당해도로의 중심선에서 소요폭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이므로 ㉢대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로의 소요폭이 6미터 이상 확보되어야 건축이 가능할 것입니다.(협회·기술부)

● **㉣** 건축법 제41조 제5항에서 주거전용 지역내의 건축물은 2층을 초과하거나 높이가 8미터 이상이어서는 안되나,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제3호에서 주택이외의 용도에 쓰이는 높이 11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높이 11미터 이하로서 8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고 볼 때 층수 또한 2층을 초과 3층을 건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귀견은?(대구 새한건축)

㉣ 건축법 제41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같은법

시행령 제91조 제3호의 규정 적용은 주택이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일뿐 층수의 완화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협회·기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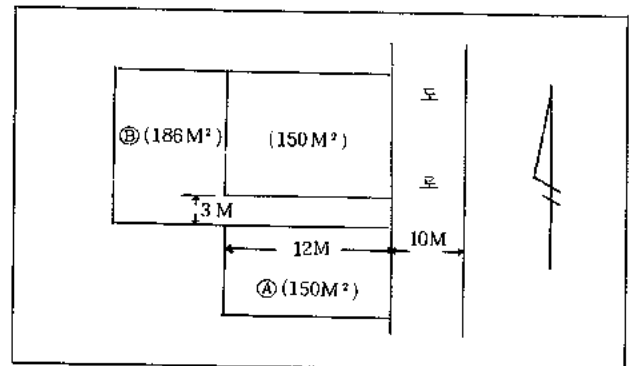
●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호의 건축법 제27조와 동법 제31조 적용에 있어서 1975년 12월31일 이전에 건축완료된 기존 건축물일 경우에는 법률 제2852호(1975. 12. 31) 부칙 제2항에 의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경과조치에 해당될 것으로 간주 양성화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귀견은?(대구직할시지부)

㉤ 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대상건축물” 구제기준이 건축법 제27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 하여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는바, 이는 반드시 현행 규정에 의하여 도로와 접하여야 하는 대지의 폭과 건축선의 지정에 따른 제한조건을 충족하는 “대상건축물”이어야 하며 피난상·통행상 지장이 없는 도로이어야 함.

② 법률 제2852호(1975. 12. 31)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는 동법을 시행당시 (막다른 도로의 적용이 규정되지 아니한 때 — 기준미달도로)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건축허가시 지정한 도로를 뜻하는 것입니다.(협회·기술부)

● **㉥** ① 주거지역내 그림과 같은 조건의 ㉠대지에 건축할 경우 일조권 적용은?

② ㉠대지에 건축할 경우 36제곱미터(3.0M × 12.0M)를 도로로 공제해야 하는지의 여부?(경상남도지부)



㉥ ① 주거지역안의 ㉠대지에 대한 일조권 규정적용은 건축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라 높이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대지 건축물의 각부분 높이는 ㉡대지와 경계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② 따라서 ㉠대지의 (3.0M × 12.0M) 부분은 당해대지의 출입을 위한 대지안의 통로인바 대지면적에서 도로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협회·기술부)

● **㉦** 건축사법 제22조의 2 제1항의 등록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업무 계속에 관한 질의임.

① 공동주택의 종합감리 업무를 담당하는 종합 건축사 사무소가 등록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기수탁되었거나 착공신고 처리된 건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계속하여 준공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② 이경우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종합사무소가 보유하여야 할 건축사보를 단독사무소에서 확보하여야 하는지의 여부?(협회·기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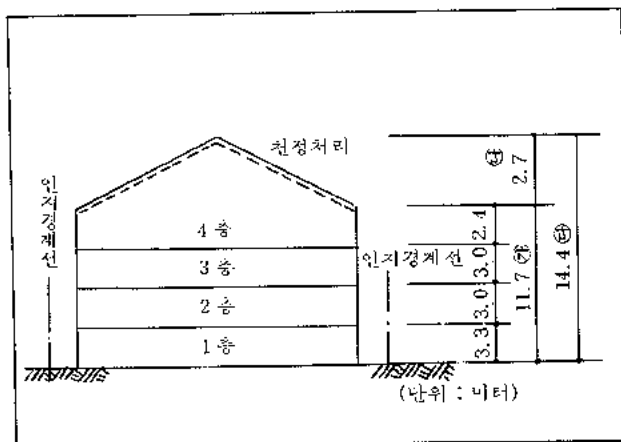
㉔ 종합건축사 사무소로 등록된 건축사가 단독으로 등록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가히 수탁한 공사감리 업무는 계속 수행하여 종료하거나 건축주와 협의하에 종합으로 등록된 건축사에게 인계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합 공사감리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는 종료시까지 그에 필요한 건축사보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건설부·건축과)

● ㉕ 건축사가 형사상의 문제로 구속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 상태에 도서신고가 있을 경우 이의 여하한 처리 여부?(충청남도 지부)

㉕ 건축사의 구속문제로 인한 설계도서의 신고 여부에 대하여는 구속이전에 건축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행위를 한 경우라면 도서신고가 가능할 것인바 이를 악용하여 건축사인감을 소지한 그 대리인이 이법에 의한 표시행위를 하였다면 불가할 것입니다.(협회·기술부)

● ㉖ ① 상업지역안의 방화지구내 건축물을 건축시 건축물의 높이나 층의 수등 외적 상태와 관계없이 건축법 제53조의 2의 규정에 외거 민법 제24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접지 경계로부터 반미터이상의 이격거리 규제를 배제하고 있는바 이의 적용과 동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한 방화지구 아닌 상업지역내 건축물의 인접지와와의 높이 규제 운용은 별개의 것으로 적용하여야 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방화지구라 할지라도 동법 제41조 제4항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지의 여부?

② 대지가 상업지역 또는 상업지역 방화지구인 경우 그 립과 같은 건축물의 ㉕의 높이는 건축법 제41조 제4항 및 동 시행령 제90조 제2항 규정 적용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규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한림·유일합동 건축연구소)



㉕ ①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일조·채광·통풍등 위생적 측면에서 각 지역에 대하여 그 기준을 달리하여 정하고 있으나 상업지역안의 방화지구에서 인접지와와의 경계에 방화벽을 축조할 때는 건축법 제53조의 2의 규정에 외거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②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외거 상업지역내 높이 12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대

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피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적용의 경우 사실상 높이 12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질의 2에 대한 건축물 높이는 건축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타당할 것입니다.(협회·기술부)

● ㉗ ① 영세식품 제조업(단무지) 공장으로서 공업용수 1일 사용량 1톤이하이며 바닥면적이 110제곱미터 일 때 공해배출시설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위와같은 조건일 때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주거지역내에서의 건축가능 여부?(경남·건축주)

㉗ ①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장이라 함은 공업배치법 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의 공장(제재업 및 연탄제조업은 제외)으로서 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질의의 단무지 제조공장은 동별표2에서 제외되고 있는 업종이므로 배출시설의 설치규모에 관계없이 근린생활시설이 아닐뿐더러 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협회·기술부)

● ㉘ 민법 제242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을 축조할 때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는바,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이 반 미터를 피우지않고 건축 하였다면 인접대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령제 90조 및 령제 92조에 저촉되지 않는한 인접대지에 접하여 건축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귀견은? (경상남도 지부)

㉘ 건축법 제41조의 2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피어야할 최소거리를 규정하고 있는바 인접기존 건물이 소요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은 위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협회·기술부)

● ㉙ 건축법 제5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건축허가에 대한 사전신고)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절차에 있어 우선 기본 설계도 및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심의 신청할 시는 도서신고를 하지 않고 승인을 득한 후 건축사법 제22조의 규정에 외거 건축사 협회에 도서신고를 필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귀견은? (경기도 지부)

㉙ 건축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대하여는 회원이 저작한 설계도라 할지라도 건축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신고의 성격으로는 볼수 없는바 이는 협회 경유없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신고를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협회·기술부)

三大不正 심리를

추방하자!

* 부정부패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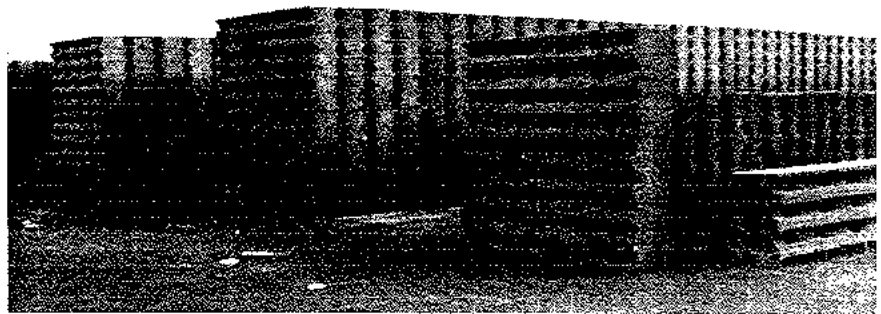
* 물가오름세심리

* 무질서심리

RASTRA

단열 · 경량 · 조립식 콘크리트 벽체

라스트라



최근 주택수요의 부족과 핵가족화로 인하여 세대수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절대적으로 많은 양의 주택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안의 하나로 주택건설의 공업화가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공업화된 조립식 주택부재

는 내구성 · 시공성 · 경제성 및 나아가서는 열관리 효율성능이 좋은 양질의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조립부재의 시공성 향상을 위한 경량 재료의 사용과 열효율의 향상을 위한 방안과 더불어 이러한 자재에 의한 공기단축 및 공사비절감을 위한

새로운 주택건설공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성능을 기대할 수 있는 건축자재의 한 종류로 오스트리아 PIAG사와 기술 제휴로 제작된 THERMO-ACCUSTIC STYROL-CONCRETE 인 RASTRA 에 대한 개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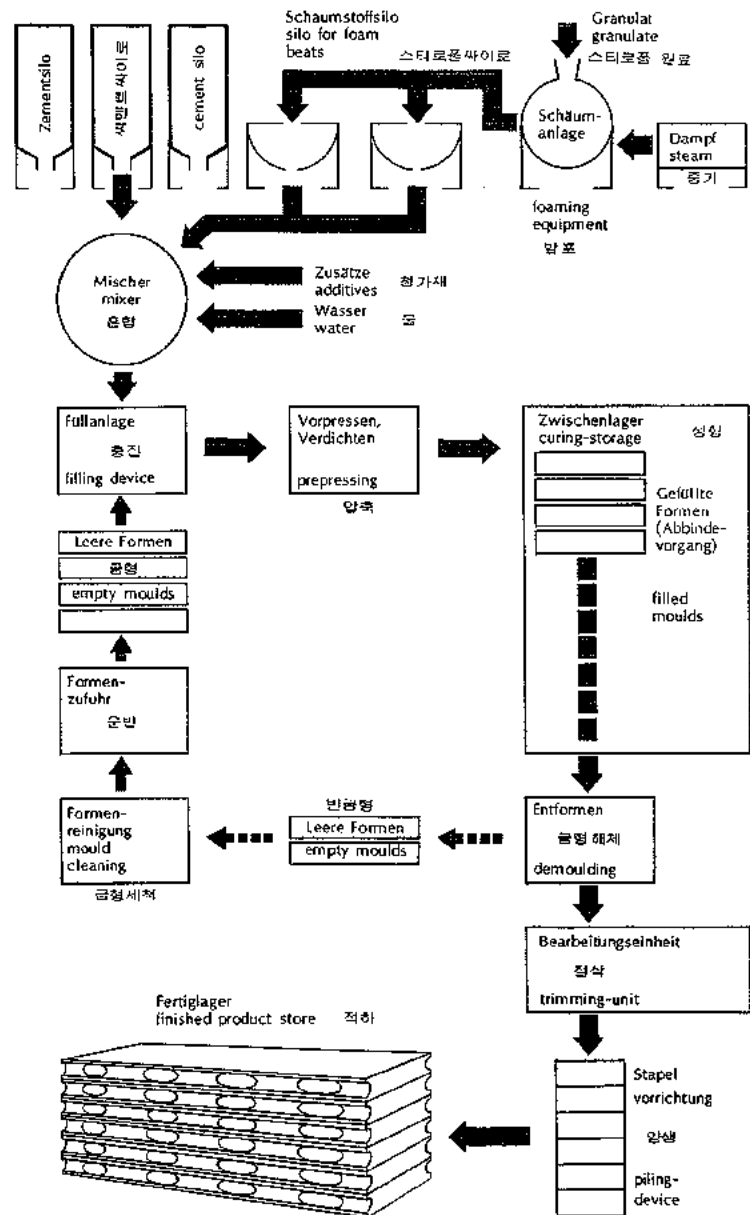
RASTRA 식벽체·슬래브用 자재 및 공법은 스위스의 POWER INDUSTRIEPLANUNG AG사와 오스트리아의 POWER INDUSTRIEANLAGENPLANUNGSGES. M.B.H.사에서 공동개발되어 1969년 이래 11년에 걸친 거듭된 연구와 실험으로 최근 완성 실용화된 조립식 경량콘크리트 판넬이다. 스티로폴 원재인 Polystyrol 입자를 발포하여 이를 건조시킨다를 통과시킨 후 여기에 시멘트와 용수 및 첨가제를 혼합하여 형틀에 혼합된 자재를 주입한 후 압축성형하여 양생출하한다.

2. 규격과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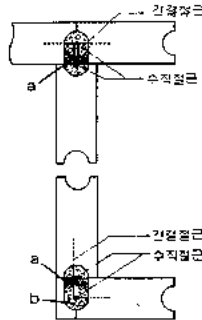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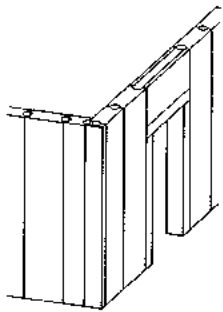
라스트라 부재는 벽용·슬래브용 등의 다양한 형태로 생산되며 가장 표준적인 부재의 크기는 폭 30cm 또는 60cm, 높이 270cm, 두께 25cm의 치수로 생산된다. 규격화된 부재를 이용함으로써 빠르고 정확한 설계로 자재의 절약, 높은 시공정도, 시공의 균질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절대적으로 공기가 단축되어 제전의 영향을 받지않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3.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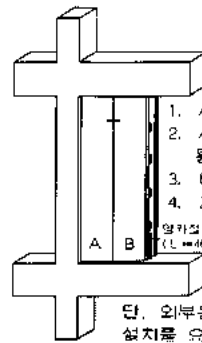
① 경량성 : 라스트라 자재는 주원료인 시멘트 · 스티로폴 및 첨가제가 적



●시공방법



1. a부분을 돌출로 절단
2. 절단배근
 - 수직철근 : 하부와 정착
 - 긴철철근 : 동공내로 삽입
3. 콘크리트 (1 : 2 : 4) 사출
4. 모 양
1. b부분 굽너 사용
2. a부분을 돌출로 절단
3. 절단배근
 - 수직철근 : 하부와 정착
 - 긴철철근 : 동공내로 삽입
4. 콘크리트 (1 : 2 : 4) 사출
5. 모 양



1. A라스트라를 밀착함
2. A라스트라 최하부 수평동공을 통하여 콘크리트 사출
3. B라스트라를 밀착함
4. 2의 방법으로 콘크리트 사출
5. 마지막 부재는 전체 종진출문으로 마감
6. 상부 양쪽에 롤형프 설치

단, 외부용은 양카철근의 설치를 요함

절히 배합된 경량콘크리트로서 단위용적 중량이 400kg/m^3 정도로 경량성을 지니고 있다.

② 단열 및 흡음성 : 벽체구성품(두께 25cm)으로 열전도율이 $0.0714\text{Kcal/mh}^\circ\text{C}$ 정도로 높은 단열의 성능을 지닌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형 자재이며, 또한 차음효과도 있어 27cm의 벽에서 1db 정도 차음성을 지니고 있다.

● 타 재료의 단위용적 중량과 열전도율과의 비교

종 류	단위용적중량(kg/m^3)	열전도율($\text{Kcal/mh}^\circ\text{C}$)
콘크리트	2,300	1.30
슬레이트	2,240	1.09
회 나 부	344	0.075
석면시멘트판	1,150	0.129
라스트라	400	0.0714

③ 공기의 단축 : 일반 P·C제품과 동일한 모형을 시스템으로 조립되기 때문에 건립이 단순하고, 제철과 작업 환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여러 공법에 비하여 상당히 빠른 공기물지니며, 자중의 경량화로 사공현장까지의 수송 및 잔재처리가 용이하다.



④ 시공성능 : 미장성능이 양호하며 각종 부착물을 못이나 나사못을 이용하여 용이하게 접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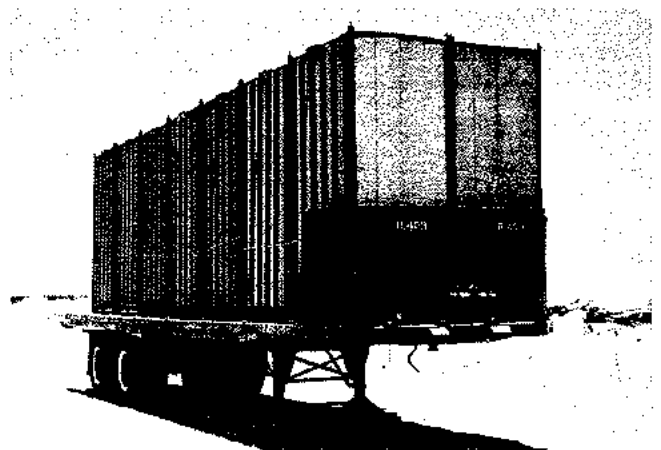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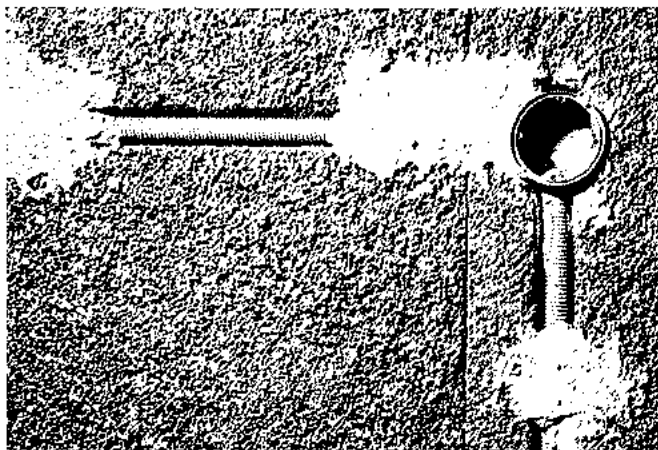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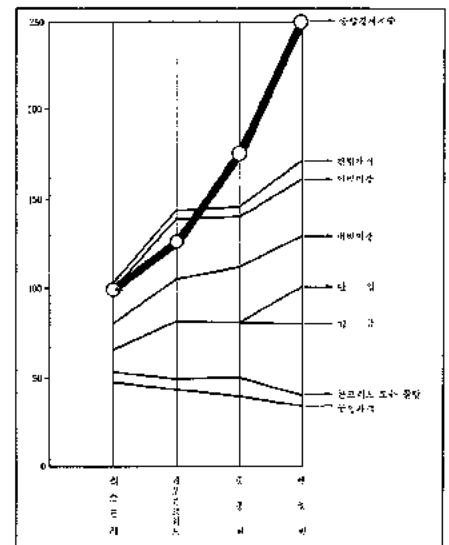
⑤ 안정성 : 라스트라 구조는 콘크리트블 동공에 격자형태로 사출함으로써 하중 부담에 따라 적이하게 설계할 수 있으며 철근의 보강이 가능하다.

이상과 같은 특징과 전립에 있어서 복잡하고 고가인 시공기계의 불필요, 규격화된 시스템의 표준설계도 이용가능과 표면 상태 양호로 인한 미장재료의 절감으로 종합적인 경제성은 양호하다.

4. 용도

경량콘크리트의 한 종류인 라스트라는 단독주택을 비롯하여, 연립주택 및 공동주택, 매소 빌딩의 건축물, 학교, 막사 및 보온과 방음을 요하는 공장 창고 등의 내외벽재·슬래브재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설건물에도 사용될 수 있다.

●라스트라와 타재료의 종합비교



“바뀌는 都市재개발사업”

□올림픽 등 앞두고

“아름다운 서울”목표

10만 7천여평의 총면적에 1만 4천여평의 도로와 3천 4백여평의 주차장, 4천 4백여평의 공원과 녹지 그리고 8만 5천여평의 택지가 5년 동안에 1조 1천 500억 원의 민간자본으로 꾸며 진다.

이상이 서울시가 마련한 도심 60개 지구(4대문안 및 마포지구)의 재개발사업계획 규모다.

88올림픽대회와 86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아름다운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는 그동안 부진한 도심재개발사업에 활력소를 불어넣어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키로 했다.

따라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심의 중인 도시재개발법 개정안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에 큰 혜택줘

이 개정안의 목적은 도심재개발사업이 현재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의 골자를 보면 ▲ 모든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주고 ▲ 사업시행 동의자수(同意者數) 산정기준을 완화하고 ▲ 재개발사업에 한국토지개발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 재개발사업을 도심지 재개발사업과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으로 구분 시행하는 한편 ▲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구역 안에서도 재개발사업에 의하지 않고도 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이 토지수용권과 동의자수 산정기준의 완화이다.

현행법상으로 토지수용권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사(公社) 또는 특수

법인에게만 주어졌던 것으로 공공시설물 건설사업에 있어 소유주가 해당 지역 안의 토지나 건물을 팔려하지 않을 경우 감정가격을 근거로 한 땅값은 지불하고 강제로 사들여 사업을 추진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인·조합에도 토지收用權

이같은 권한을 앞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주겠다는 것으로 개인이나 조합도 대상이 된다.

동의자수 문제는 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同意)와 토지소유자 총수(總數) 및 건물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사업시행자가 유리하도록 고쳤다.

동의를 얻은 사점을 앞당겨 계산한다는 것이다. 시행자가 사업계획결정일 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은 종전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결정일 이후에 여러 필지로 분할된 토지와 건물은 모두 1인소유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사업시행을 막기 위해 지주들이 고의로 토지를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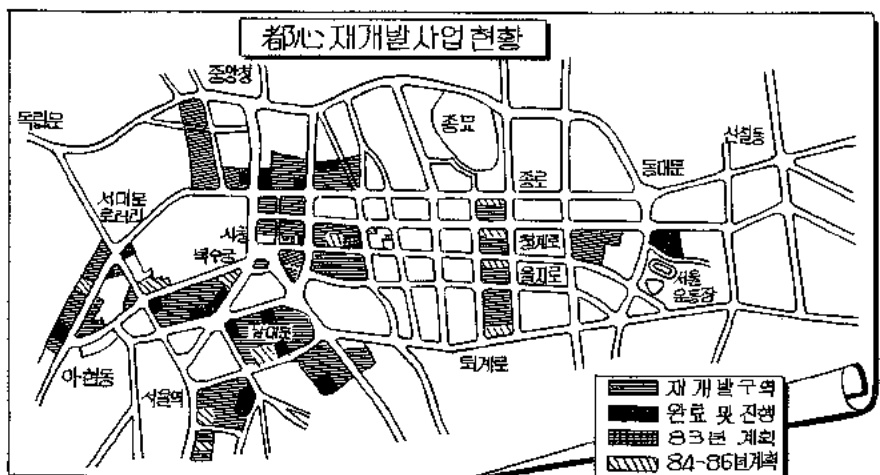
할하는 등의 폐단을 막자는 계산이다.

□지방세면제, 건폐율 등 높여

이같은 촉진책 외에 서울시는 또 건축조례 등 관계조례를 개정해 사업시행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즉 건폐율과 용적율을 크게 올려주고, 지방세 감면혜택의 폭을 넓혀주며 지금까지 허용하지 않던 용도의 건물도 지을 수 있게 해줄 방침이다.

이같이 사업시행자에 대한 폭넓은 혜택을 주는 것은 재개발사업을 촉진함으로써 도심지의 면모를 일신해 보겠다는 구상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의 도심재개발사업은 지난 71년 도시계획법개정 때 도시재개발사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후 73년 9월 재개발구역 지정하면서 만 10년 동안 도심지의 불량건물을 철거 새건물과 공공시설물을 세우는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계획대로 완결하지는 못했다. 이같은 부진을 씻고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COE 研修를 마치고

— 디자인 투 코스트의 요체 —

손 영 진 — 공영토건(주) 해외공무부

가. 서 론

COE (Corps of Engineers)는 미육군 성 산하기구로서 미국전역의 11개 디비전(Division)을 비롯하여 한국건설업체 진출의 주력 지역인 중동 디비전 등, 해외에 3개 디비전을 갖추고 있는 고도의 기술과 세계적인 조직, 그리고 독자적인 시스템을 갖춘 가장 精練된 건설터트의 하나이다. 본 研修는 한강개발사업의 피저빌리티 스터디(Feasibility Study)의 COE측 참가, 그리고 중동지역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COE시스템을 보다 근접한 위치에서 파악하고자 실시된 것으로서 해외사업에 종사하는 32개 건설업체가 일시에 참여하여 한국건설업체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음은 물론, 尙後 각 업체간의 건설정보 교류 및 나아가 한국건설시장의 커뮤니케(Communique) 형성을 위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본 연수는 스페셜 컨스트럭션 엔지니어링 매니즈먼트 코스(Special Construction Engineering Management Course)로 이름지워지며, 본 연수를 수료함으로써

① COE 시스템

② 해외공사의 기술 및 관리차원의 노우 하우(Know How)

③ 건설분야 엔지니어링 리서치(Engineering Research)에 관한 세계적인 추세

등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타임 / 코스트 / 아키텍처(Time/Cost/Architecture)에의 시스템 어프로우치의 성숙된 모습에 많은 감명을 받았다.

나. 커리큘럼 (Curriculum)

82년 3월12일부터 82년 6월18일까지 진행된 본 연수는 실교육일수 약 70여일간이며, 미국 앨라배마(Alabama)

주 Huntsville 등 28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강의·워크숍 등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교과과정은 전반적으로 6개 부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COE 시스템

* Organization / Huntsville Training Center (COE 기구·조직 및 Huntsville 기술훈련소 현황)

* COE Guide Spec / Edit Spec System (COE 자체보유 사양서 및 추가보완 시스템과 신규공사 사양서 자동제작 시스템)

* A-E Contracting Procedure & Negotiation (설계용역 계약의 절차 및 Nego)

* COE Laboratories (COE 실험실 현황)

WES (Waterways Experiment Station: 수리실험실)

CERL (Construction Engineering Research Laboratory: 시공기술개발 실험실)

* Construction Quality Management (시공품질관리)

* Construction Modification (시공 중의 설계변경)

② Construction System Approach (시공체계정립)

* Construction Contracting Procedure (시공계약과정)

* Value Engineering (가치공학)

* NAS (Network Analysis System)

* Architecture & Building Engineering Design Adjacency Analysis (공간별 근접도분석) / Performance Based Design Approach (기본 요구조건에 맞는 기능에 착안한 설계)

* Construction Contract Estimating

(시공 제약전적)

Life Cycle Cost & Economical Analysis (工費와 유지관리비 합산의 측면에서의 경제성 검토) / Computer Aided Estimating System (컴퓨터를 이용한 시공전적체제)

③ Construction Expertise

* Earth & Rockfill Dam Course

* Flexible Pavement Design (아스팔트 포장)

* Con'c & Precast Con'c

* Welding Technology (용접)

* Hydropower Plant & Construction (수력발전소)

④ Latest Facilities (건설기술에 투여된 최신기계)

* Computer Graphics

⑤ Related Organization Visit (COE 관계기관 방문)

* University of Illinois

* SOM (Skidmore Owings & Merrill) 사무소 (SOM 설계사무소)

Computer - aided Engineering & Design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

⑥ Site Tour (현장방문)

* Tennessee-Tombigbee Waterway Project 등 8개 공사현장

전반적인 교과과정으로 볼 때 建築界의 세계적인 추세는 디자인 투 프로젝트 (Design To Project)에서 나아가 디자인 투 코스트 (Design To Cost)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단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갖가지 어프로우치 방향을 시스템화해 나가고, 또한 일반화해 나가는 일련의 연구활동이 당면 과제라 하겠다.

미국의 경우 월남전 이후 국방성(DOD: Department of Defense)은 재정난에 직면하였고 議會는 210억불에 달하는 그동안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디자인 투 코스트 어프로우치를 하나의 정책적인 대안으로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로부터 실천을 위한 대안으로 VM(Value Management) / LCC(Life Cycle Cost) 검토가 본격적으로 건설분야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DTC(Design To Cost)는 LCC를 망라한 주요한 코스트 컨트롤 기법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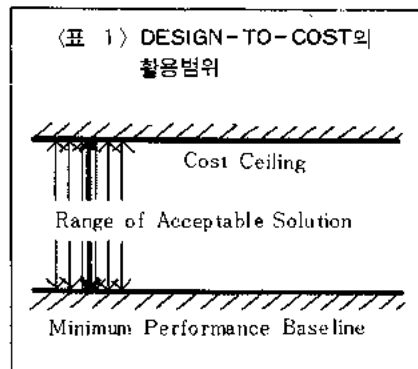
COE는 이미 자체시스템을 보유하고 이를 실제로 운용하고 있는 세계 초유의 조직이라 할 수 있으며, 전 교과

과정을 통하여 가장 인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강의내용을 중심으로 엮은 디자인 투 코스트에 관한 개념 전개이다.

다. 디자인 투 코스트 (Design To Cost)

하나의 프로젝트를 놓고 볼 때 오너 (Owner)의 관심은 코스트(Cost)·퀄리티(Quality)·타이밍(Timing)에 있다. 디자인 투 코스트는 그 프로젝트의 LCC(최초 투입 비용과 向後 건물 수명에 이를 때까지의 비용의 합계)에 액셉터블(Acceptable) 퍼포먼스(Performance) (사용자 또는 소유주를 위한 형식주의(Formalism)를 탈피한 기능주의(Functionalism) 위주의 기본요구 조건), 스케줄(프로젝트의 소요시기) 등 세 팩터(Factor)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엔지니어링 크리에이티비티(Engineering Creativity) (밸류 매니지먼트(Value Management) 기법)를 수단으로 표 1과 같이 한도 예산(Cost Ceiling)을 초과하지 않고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최소예산(Performance Baseline) 이상의 범위 내에 드는 가장 적정한 예산을立案해 내는데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디자인 투 코스트 프로세스는 LCC 검토와 연계되어 기본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코스트 측면으로 가장 효율적인 적정안을 挑出해 내고 이에 외거 디자인을 전개해 나가는 기법이다.

그렇다면 전술한 세가지 인자와 VM 방법론에 관하여 기술해 보고자 한다.

① 팩터 (Factors)

* LCC 검토

* 액셉터블 퍼포먼스 (Acceptable Perform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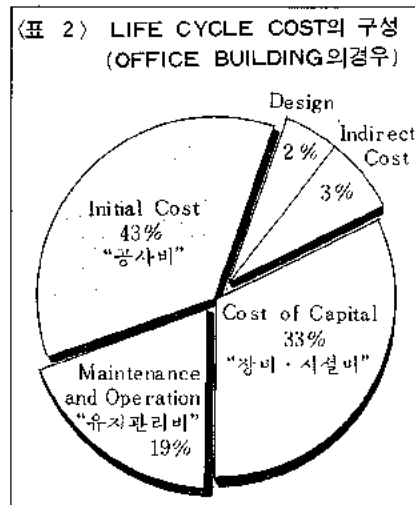
* 스케줄

② VM 방법론

① 팩터 (Factors)

* LCC 검토

한 프로젝트의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이란 오너(Owner)가 그 프로젝트의 소요를 설정한 시점에서부터 시작하여, 프로젝트의 수명이 다하는, 즉 오너의 소유가 완전히 끝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



따라서 라이프 사이클은 디벨롭먼트(Development)→디자인(Design)→컨스트럭션(Construction)→오퍼레이션(Operation)→메인테넌스(Maintenance) 등의 局面으로 나누어 진다.

이러한 국면에 따라 한 프로젝트의 토달 코스트 어브 오너십(Total Cost of Ownership), 즉 LCC(Life Cycle Cost)는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은 비용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빌딩 프로젝트 측면에서 보면 $LCC = \text{이니셜 코스트(Initial Cost)} + \text{리커링 코스트(Recurring Cost)} + \text{논리커링 코스트(Non-Recurring Cost)}$

● 이니셜 코스트(초기투입비용)

디자인(설계비)/컨스트럭션(시공비)/이크위프먼트 인 플레이스(Equipment in Place: 장비 및 시설비)

공사감리비(Supervision & Inspection)/예비비(Contingencies)

● 리커링 코스트(유지관리비용): 유지보수비(Maintenance)/관리비(Custodial)/광열비(Uilities)

전기·에너지 비용 등, 보통 年단위의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

● 논리커링 코스트(개수비용): 부 정기적인 改修 혹은 장비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

LCC검토는 공사초기에 도입안으로서의 설계대안(Design Alternatives) 각각의 LCC의 합을 구하여 이를 비교, 그 중에서 적정안을 채택함으로써 가장 원가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내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LCC검토는 대개 디자인 局面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나 경우에 따라 초기입안단계(Development) 혹은 시공단계(Construction Phase)에 있어서도 선크 코스트(Sunk Cost), 즉 既投入預算을 제외하고 투입예산 예산을 LCC측면에서 분석하면 효율을 볼 수 있다.

* 액셉터블 퍼포먼스(Acceptable Performance)

퍼포먼스의 개념에 대해 일리노이스大學의 Rudard A Jones教授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The essence of the performance concept is that the building shall be designed on the basis of what it shall do rather than what it shall be〉, 즉 디자인의 3개 유형을 형식주의(Formalism)·표현주의(Expressionism)·기능주의(Functionalism)로 大別한다면 퍼포먼스 베이스트 디자인(Performance Based Design)은 기능주의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액셉터블 퍼포먼스는 단순히 기본 요구조건을 지붕과 벽으로 엮은 형태에 치우치지 않고 사용자의 사용목적에 맞는 보다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空間設計에 착안하는 것이며 퍼포먼스 스펙시피케이션(Performance Specification) 개념으로 기능(Functionality)/구조적 안정 및 시공(Structural Safety & Services)/소방(Fire Safety)/안전(Accident Safety)/건강과 위생(Health & Hygiene)/환경(Atmospheric Environment)/조명(Illumination)/음향(Acoustics)/미학(Esthetics)/수명(Durability)/유지관리(Maintainability)/장래확장(Flexibility) 등의 한 프로젝트의 퀄리티 속성을 공간구성의 변수로 交互作用을 시킴으로써 각 공간의 기본 요구조건을 구체화된 퍼포먼스 밸류(Performance Value)로 형성화해 나가는 작업이다. 예를 들면 퍼포먼스 베이스트 디자인은 합리적 공간구성에 이어, 한

공간을 위한 소요 BTU·벽두께·내장재료 요건까지도 디자인 단계에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Rudard A Jones 教授는 이미 전술한 퀄리티 측정과 공간구성(혹은 Building Activities)을 상호시켜 퍼포먼스 베이스트 디자인을 해결하는 골격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참조)

*** 스케줄**

한 프로젝트가 완성될 때까지는 일련의 작업이 소요된다. 그리고 명확한 시점과 외공점이 전제되기 마련이며, 이에 따른 많은 변수가 작용하게 된다. 이를 열거하여 보면

㉠ 공사규모의大小

㉡ 인력·자재·장비·자금운용

㉢ 시공의 질·절차·시공난이도

㉣ 공사의 긴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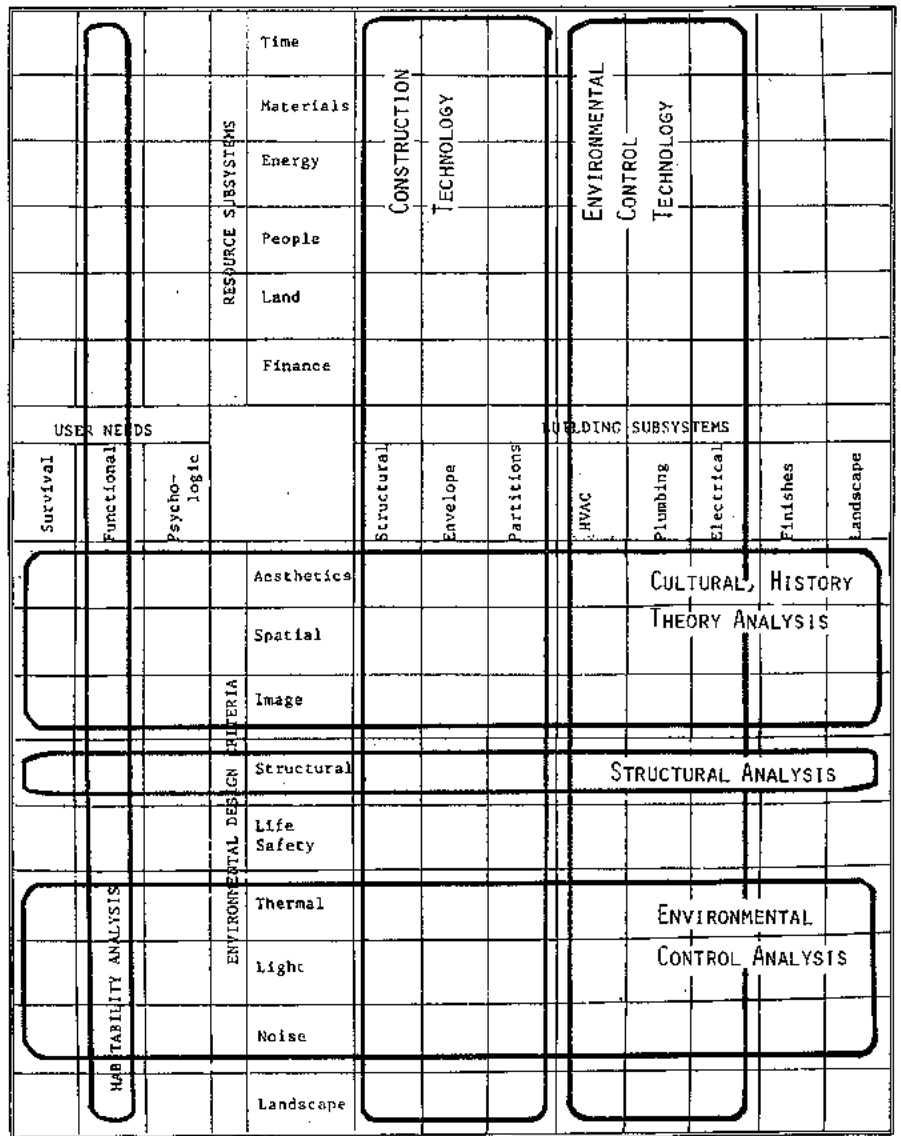
㉤ 시공자의 이용보장과 기타

이러한 변수는 공사초기 계획단계에서 절대적으로 작용하며 처음부터 구체적인 CPM을 성안하지는 못하더라도 흔히 초기단계에서는 표 4 와 같은 CPM 마일스톤 스케줄 (Milestone Schedule)로 디자인의 타당성을 구하고 예산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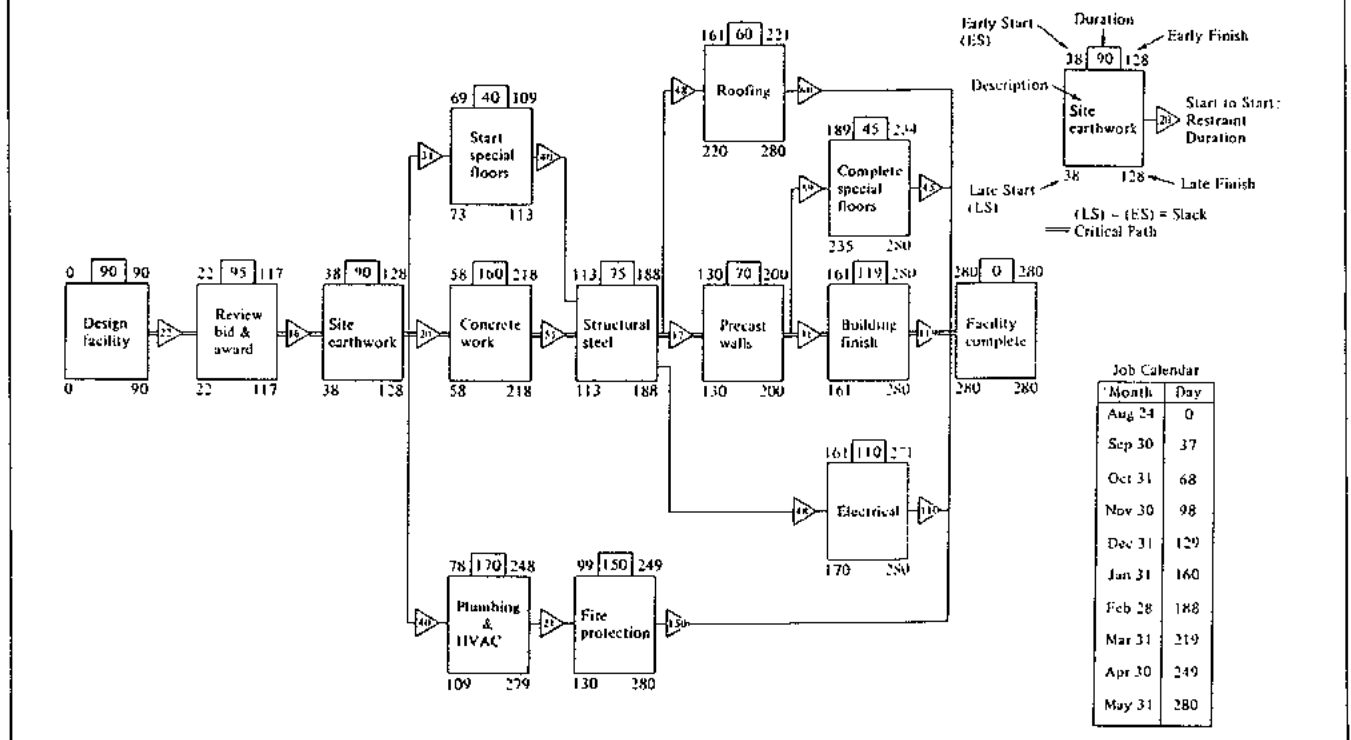
② 밸류 매니지먼트 (Value Management)

1938년 제네럴 일렉트릭 (General Electric)사의 설계기사인 Mr. Larry

(표 3) PERFORMANCE-BASED FRAME WORK 개념



(표 4) C. P. M MILESTONE SCHEDULE



Miles가 생산원이 절감에서의 창안 발의 이후 생산 제조공장에서 시작된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종래의 천편일률적인 디자인 패턴에서 벗어나 보다 기능적이고 또한 경제적인 대안을 구하는 실용학문으로 시스템화되어 있다.

1962년 미국방성 규범인 ASPR(Armed Services Procurement Regulations)에서는 VE를 명령조건(Mandatory Requirement)으로 채택하였고 建設界로 확산되면서 제계를 갖추어 VM(Value Management)으로서의 프로젝트 관리 진반에 걸친 시스템 어프로치로 발전되었다.

*VE의 정의

COE와싱턴본부 OCE(Office Chief of Engineers)의 벨류 스페셜리스트(Value Specialist)인 Mr. Paul V Dobrow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VE란 한 프로젝트의 운영·제재·장비·시설물·공사의 절차·공법·자재(이들은 앞으로 目標라고 부른다) 등의, 그 프로젝트를 위한 기능(Function)을 면밀히 분석하여 프로젝트에 있어 공사수행의 신뢰도 양질의 공사 완공 후 시설물 운영의 발전을 보장하는 기본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공비절감을 기하여 LCC면에서의 최소의 가장 효율적인(Lowest Total Cost of Effective Ownership)工費를 찾아내는 조직적인 노력을 말한다.> 따라서 VE는 일단의 조직의 노력으로 프로젝트에 있어서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가 가지고 있는 잠재 절감가능비용(Potential Saving)을 추적해 내는 창의적인 방법론인 것이다.

*가치(Value)

가치에는 네가지가 있다. 즉 실용가치(Use Value)·소유가치(Esteem Value)·금액가치(Cost Value)·교환가치(Exchange Value)가 있다. 가치는 시간·장소·상황·회귀도·대체가 능성 등에 달려 있어 소유자 혹은 사용자에 따라 다른 개념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가치를 측정하고 또한 적절한 가치를 판단하는 데에는 코스트와 워스(Worth)를 분명히 구분하여야 하며, 우리는 그중 코스트 개념에서 무어 벨류(Poor Value) 요소를 배제하여 베스트 벨류(Best Value)로 끌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펑크션(Function)

모든 목표는 가치(Value)를 가지고 있으며, 그 가치는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능에는 主機能(Basic Function)과 副機能(Secundary Function)으로 나뉘어진다. 예를 들면 드라이버의 주기능은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것이지만 때로는 부기능으로 광통을 열 수도 있고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

VE는 전술한 워드(Worth)를 위한 주기능 외에 코스트가 투입된 부기능을 찾아내고 부기능을 위해 투입되는 工費를 절감하는 노력이다. 따라서 드라이버의 경우 봉질을 짧게 하더라도, 또는 봉의 재질을 저렴한 고강도 플라스틱으로 교체한다 하더라도 주

기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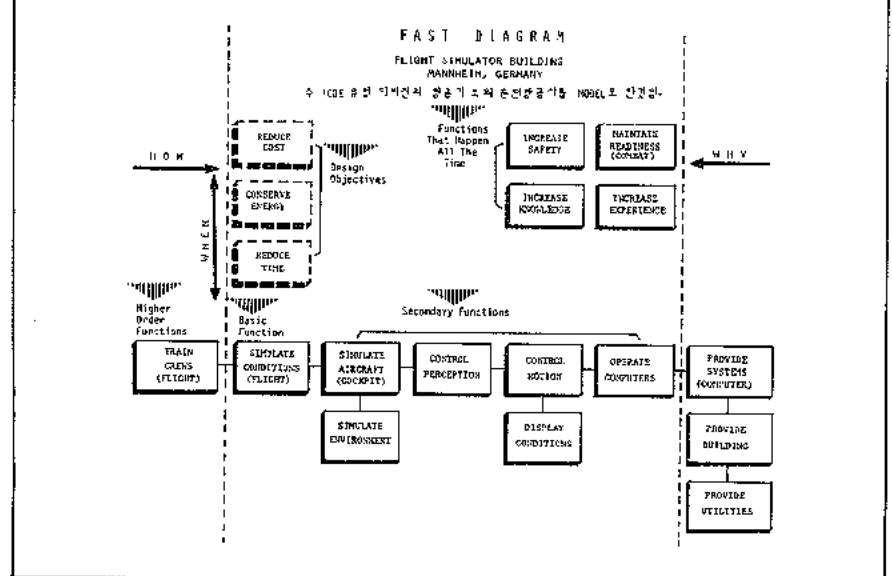
이러한 개념은 보다 시스템화되어 표 5에서 보는바와 같이 기능 상관도(Fast Diagram: Functional Analysis System Techniques)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목표의 주기능과 부기능을 圖解로서 정리한 다음 본격적인 조직적 사고절차(Value Engineering Job Plan)에 들어가 절감방안을 검토해 나가게 된다.

*조직적 사고절차(Value Engineering Job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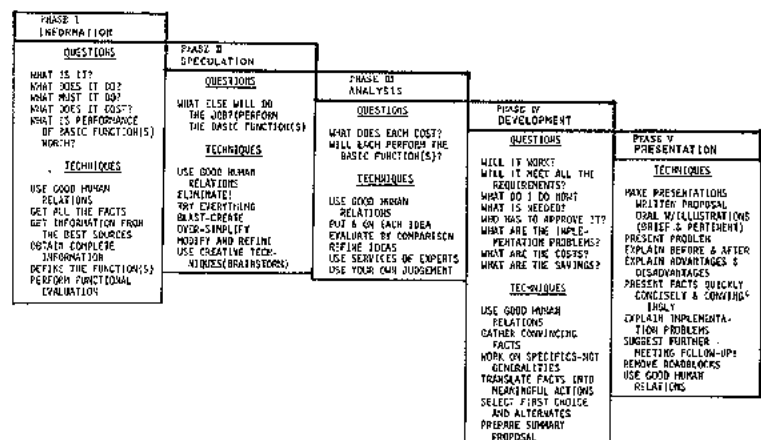
COE의 조브 플랜(Job Plan)은 표 6에서 보는바와 같이 5단계의 팀 어프로치(Team Approach)로 진행된다.

보통 팀의 構成員은 목표의 성격에

(표 5) FAST DIAGRAM의 예



THE VE JOB PLAN



(표 6) VE JOB PLAN

따라 달라지겠으나 실무진(Middle Manager)으로 하여금 VM에 관한 개념을 인지하면서, VM으로 도출된 대안을 향후 실제로 준용할 수 있는 위치의 사람들이 충분한 인간관계(Human Relation)를 유지하는 人脈으로 구성된다.

통상적으로 건설계는 재무(Finance) · 기술(Engineering) · 설계(Design) · 구매(Procurement) · 계획(Planning) · 견적(Estimating) 등의 부문에 종사하는 5 ~ 6 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중 1 명은 최종적인 결정권자로 끊임없이 이러한 팀 어프로치에 관심을 쏟고 이를 승인하는 책임을 진다.

조브 플랜의 진행에 관한 자세한 절차나 방법상의 문제는 지면관계상 생략하고 각 단계별 방향설정만 설명하고자 한다.

㉑ 자료수집 및 검토단계(Information Phase)

- 관련된 실사자료를 수집하여 예의 검토하고 목표의 체계(System) · 구조(Structure) 기타 항목별로 파악해 나간다.

- 전술한 기능 상판도 방식에 의거 목표의 워드(Worth)를 위한 주기능과 코스트가 소요된 무기능을 규정해 나간다.

㉒ 회의 및 대안마련단계(Speculation Phase)

- 거능에 관한 판단 후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 자유분방한 토론 방식의 회의진행 방법) 방식으로 주기능을 달성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무기능을 배제할 수 있는 모든 대안(Alternatives)을 구체화 시킨다. 이때 참가자의 수평사고적 사고방식이 요구된다. 대개 목표의 예산 점유율이 높은 부분(High Cost Item) 위주로 진행한다.

㉓ 분석 및 대안확정단계(Analysis Phase)

- 구체화된 대안에 대한 반론선개 · 평가 · 시험 등의 방법으로 실현가능한 대안을 확정한다.

기준 : 최대한도의 절감, 최소한의 위험부담 (Greatest Potential for Cost Savings / Lowest Risk to the Decision Maker)

- 공법 기타 필요요건을 충족시키

고 기준안에 대비, 각 대안의 절감액을 전적한다.

㉔ 발전 및 성안단계(Development Phase)

- 각 대안의 실제 운용을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해 나가 사업계획서로 성안한다.

㉕ 보고 및 사업확정단계(Presentation Phase)

- 최종 결정권자에게 대안의 타당성을 보고하여 결정받고 실행사업으로 확정한다.

한 단계를 더 추가한다면

㉖ 추진단계(Follow up & Implementation)

융통성(Flexibility)을 가지고, 추진 중에 발견되는 각종 문제를 보완해 가며 추진완료 후 최종 실사 · 대안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 VE의 적용

COE는 VE를 실제로 공사의 설계 변경으로 적용하고 있다. VECP(Value Engineering Change Proposal)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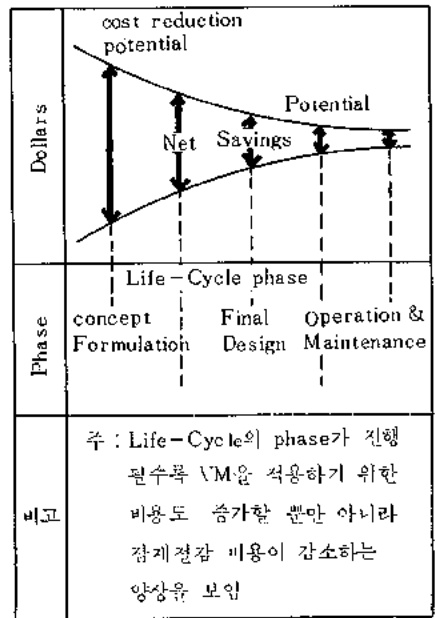
- 새로운 공법의 등장
- 추가공사
- 사용자의 용도변경
- 시험 등의 QC(Quality Control)에 따른 변경공사(Feed Back)
- 시방서의 확대해석
- 설계상의 결함
- 파다한 공비계상공종

등의 사유에 대하여 VECP를 위한 시공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이에 파생된 공비절감금액의 일부를 시공자에게 보상(Incentive)으로 供與하는 시스템을 대부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아직 여타 건설터트는 적용하고 있지 않으나 VE의 보편화 추세에 따라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의 타당성을 인지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표 7에서 보는바와 같이 프로젝트의 라이프 사이클 중, 가장 VE로 인한 절감폭이 큰 시기는 프로젝트의 추진초기에 있다는 점이다.

개념결정(Concept Formulation)이 끝나고 시안마련(Design Tentative)을 거쳐 최종안(Final Design)이 끝난 후 시공에 들어가기 직전에 파감히 VE를 적용한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

다고 Mr. Dobrow는 추천하고 있다.

〈표 7〉 LIFE-CYCLE의 PHASE에 따른 POTENTIAL SAVINGS의 추이



결론적으로 말해서 디자인은 한 프로젝트의 장기적 안목에서의 가장 저렴한 예산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디자인 두 코스트의 요체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디자인은 공사비를 결정함과 동시에 운영에 따른 예산(Operating Cost)을 결정하고, 원가관리(Cost Control)를 위한 첩경의 최후단계라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도 디자인 두 코스트를 위한 VM 스타디의 도입을 구체화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한다.

라. 결 어

이제 한국 건설업계도 세계시장에서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며 ENR誌(Engineering News Report)에서도 한국의 성장을 두드러지게 보도하고 있다.

이미 서공기술수준은 세계 정상에 올라 있으며 세계 어느 곳에서나 技術韓國의 위세를 떨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COE 연수를 수료하면서 본인은 다음과 같은 과제가 우리나라 건설계의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닐까 하고 느꼈다.

- 건설기술분야별 전문가를 양성
- 건설업체간의 기술위원회 구성으로 기술정보를 교류하고 건설전반을 시스템화하여 尙後 건설분야의 전산화에 대비 (*)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의 준공검사기준
- 아파트지구 개발촉진대책 시행지시
-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수립 규정
-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 기준규칙 개정령

건축허가와 관련된 복합인원에 관한 규정 제 5조 제 3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내통신선로설비에 대한 준공검사기준을 별첨과 같이 제정함

1982. 11. 23일

체 신 부 장관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의 준공검사 기준 (82·11·23일)

1. 목적

건축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용어의 정의

가. "관능검사"라 함은 기기의 특성 및 설비등을 숙련과 경험에 따라 오관으로 판별하고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나. "실측검사"라 함은 설비의 규격이나 성능, 및 상태등을 측정 기기등으로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적용구분

가. 33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전기적 규격검사 대상 항목중 회선의 통화감쇠량, 누화감쇠량, 회선의 평가 잡음전압에 대한 검사를 제외한 전 해당항목

나. 33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전 해당항목

4. 검사 및 판정

가. 검사요령

- 1) 사용된 장치 기기부품 및 선조등이 한국전기통신공사 시험검사소의 소정시험에 합격한 용품 또는 한국공업표준규격품 이상의 수준인지를 확인한다.
- 2) 시공공법의 적정여부, 시스템의 종합적인 동작 및 연결시험등 검사기준에서 정한 사항등을 점검한다.

나. 판정의 구분

- 1) 합 격 : 설비에 사용한 장치, 기기 및 부품등이 한국전기통신공사 시험검사소의 소정시험에 합격한 용품 또는 한국공업표준규격품 이상의 수준이고 별첨검사 기준에 합당한 때
- 2) 불합격 : 위의 합격 수준에 미달인때, 단, 불합격시는 개선후 재검사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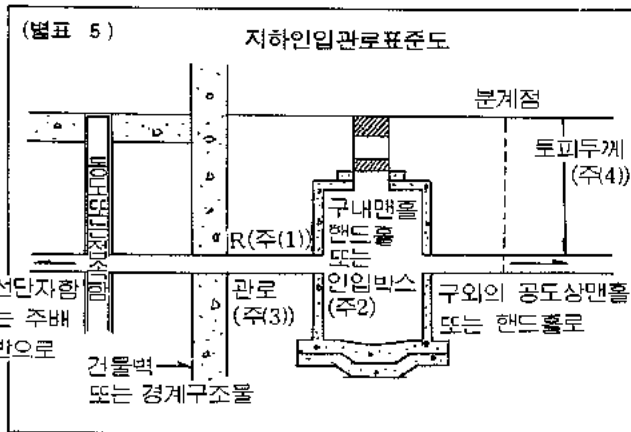
검사항목 및 방법

검 사 항 목		기 준 치	근 거	검 사 요 령
전	절연저항	회선상호간 회선과 대지가 상호간	10메가옴이상	기술기준 제86조
	회선의 통화감쇠량	1.5dB이하 (구내교환설비포함시 2.0dB이하)	"	테일메타를 사용하여 800헤르츠로 실측검사
	누화감쇠량 (회선 상호간)	68dB이상	"	누화측정기를 사용하여 800헤르츠로 실측검사
적	회선의 평가 잡음 전압 (공중회선 비정속 상태에서)	1.0밀리볼트 이하	"	채신부교시 제107호 (79. 2. 26) 참조
국	소요회선수설비 의 적정	주거용 비주거용	단위세대당국선용 1 회선과 필 요한 회선 기술기준 별표 3	적정설치 및 예비회선 확보여부를 실측검사
	구내인입방법	적부	기술기준 제88조	관능 및 실측검사
인	지 하 인	인입관로의 포설 (보파의 부패 및 관의 규격등)	기술기준 별표 5 참조	기술기준 제89조
		구내맨홀, 맨드홀, 인입관의 설치위치	적 부	"
	관	관로의 공수 및 예비공의 확보	2공이상 (예비공 1공이상포함)	"
		인입방법 및 인입용시설물 설치	기술기준별표 6 참조	관능 및 실측검사
	인	인입관의 내경	수용선로 외경의 2 배이상	"
		인입관의 설치	적부	관능검사
	관	관로의 공수 및 예비공의 확보	지하인입참조	기술기준 제89조
		국선인입 · 수용구조물과 구조 및 주위환경 여건	적 부	기술기준 제90조
	인	국선인입수용구조물의 설치위치	"	"
		관의공수 및 예비공의 확보	육내인입참조	"
공	관	루트선정 및 장애물 (수목, 가옥 등과의 이격)	적 부	"
		통신선 높이	도로상 노면으로부터 4.5미터이상 보도상 노면으로부터 3미터이상	기술기준 제63조
	인	전력선과의 이격거리	적 부	기술기준 제1장 제2절
				관능 및 실측검사

검 사 항 목			기 준 치	근 거	검 사 요 령		
국 선 수 용	인입회선수 에 따른 국 선수용	5 회선 이하	국선단자급이상	기술기준 제90조의 2	실측검사		
		5 회선초 파 300회 선이하	국선수용단자함				
		300회선 초과 및 구내교환 설비설치	주배선반				
	국선수용단자의 용량		적 부	“	국선과 구내선의 배 선에 필요하고 충분 한 용량인지를 실측 검사		
	국선수용단자의 설치 위치 (확장조건등)		“	“	관능검사		
	단자함의 단자수	기 본 종 가	10단자 10의 배수	“	실측검사		
국 외 선	선 조	배선의 적정 사용선초의 적정	적 부	기술기준 제91조	관능 및 실측검사		
	전 수	권 이	6 미터이상	기술기준 제92조	실측검사		
		주 간 거 리	케이블설치시	40미터이하	“	관능검사	
			목외선설치시	50미터이하			
		말 구 경	4 조이하의 선조 설치시	12센티미터이상	14센티미터이상		
	선조 4 조이상 및 케이블 설치시		매설깊이	전주의 1/6 이 상			
	지선 및 저주의 설치요건		적 부	기술기준 제93조	관능 및 실측검사		
	조가선의 설치 및 요건		“	“	실측검사		
	인입용 애자등의 설치		여 부	기술기준 제94조	전화선 지지개소에 애자 또는 크램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실측검사		
	전 물 등 에 접 가	선조와 전물등과의 이 격	30센티미터이상	기술기준 제95조	실측검사		
		선조의 지지물 상호간 이격	40센티미터이상				
	국 외 선 시 설	사 용 케 이 블	관로석의 경우	비 외 장	기술기준 제96조	관능검사	
직매식의 경우			외 장	기술기준 제96조및 99조	사용장소의 적정, 보호조치 및 직매표 시설치 여부등을 관 능검사		
표 준			차	콘크리트관의 경우	90센티미터이상	기술기준 제96조	위약성이 있는 위치 에서 실측검사(보수 상 지장이 없고 압 박지대에서 보호 조 치를 하는 경우 50 센티미터이상으로할 수 있음)
			도	피, 브이, 씨 관의 경우	100센티미터이상		
		토	보도의 경우	60센티미터이상			
관 로		가-타	120센티미터 이상				
		사 용 장 소 의 적 정	사용장소의 적정	적 부	기술기준 제97조및 제98조	주위환경에 적합한 관의 설치여부를 관 능검사	
			관설치의 적정	“	기술기준 제97조	관능검사	
시 설		맨홀 또는 핸드홀 설치의 적정	“	“	케이블의 곡률 반경 이 케이블 외경의 6 배이상이고 케이블 의 접착작업등이 용 이한 크기인지를 관 능검사		
		단자함 상호간의 포설, 선조	파이케이블이상	기술기준 제100조	관능검사		
타 타 호	강전류전선용 관로등 과의 분리	여 부	기술기준 제101조	“			

검 사 항 목			기 준 치	근 거	검 사 요 령
와 외 관 계	강전류전선용 락트와 병행포설시 인출구의 이격거리		15센티미터이상	"	실측검사
보 안 용 접 지 시 선	주배선반의 접지저항		10옴이하	기술기준 제102조	접지저항측 정거를 사용하여 실측하고 접지극의 안전매설 여부를 관능검사
	단자함의 접지저항		300옴이하		
	보완기용 접지저항		100옴이하		
	접지선의 규격		1.6밀리미터 이 상의 피, 브이, 씨선		
관 로 시 설	릭 브		적 부	기술기준 제103조	설치장소, 선보포설 작업 지장여부, 접속 의 적정등을 관능검 사하고 선조 고정용 지지물 누비여부, 관 의 두께
	구속대	다습 또는 비해 우려지역	2밀리미터이상		
		기타지역	1.2밀리미터 이상		
	합 성 수 지 관	주위온도가섭씨60 도 이하의 장소에 설치	여 부		곡률반경, 관로의 외곽개소등을 실측 검사
		성의 내부설치	두께2밀리미터 이상		
		기계적 충격이나 충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여 부		
		전력유도선을 받은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여 부		
	관 로 개 소	1구간 관로의 경 우	3개소 이내 (180도이내)		
		목배선화선관이 수용되는 경우	5개소 이내 (270도이내)		
		관로의 곡률반경	관내경의 6배이 상		
적 단자함 사이의 매관 요건			인입선조 외경 의 2배이상	기술기준 제104조 및 제89조 제 2항 제2호	관능검사
수 작 업 요 건	크기 및 비열매등의설 치		적 부	기술기준 제105조	관능검사
	터널과정 설치		30~40센티미터	"	실측검사
	선조포설용 지지물의 설치		60~150센티미터		
	내부배관의 중단높이 및 케이블 지지물설치 높이		1미터 (각층상 면으로부터)		
수 평 단 면	조명등 및 콘센트설치		여 부	"	관능검사
	실내단자함·출단자 또는 연결한 설치		적 부	기술기준 별표10	관능검사
	락트배의 유내선 포설		관로단면적의 50퍼센트 이내	기술기준 제106조	피복을 포함하여 유내선의 전래면 적을 실측검사
	포 설		심형 또는 방향	"	설의 규모와 이용로 를 고려했는지를 관 능검사
	연결한 및 인출구의 설치상태		적 부	기술기준 별표12	설치개소의 적부를 관능검사
	연결한간의 간격	완곡 7.5미터이내 직선 12.5미터이내	기술기준 제106조	실측검사	
선속학의 설치상태			적 부	기술기준 제107조	관능검사
단 자 함 및 단 자 반 설 치	단자반의 단자수		국선수용시와 동일	기술기준 제108조	실측검사
	단자함의 설치장소		배선구역의 중심부	"	관능검사
	단자함의 용량		적 부		
	중간단자함		적 부	기술기준 별표14	관능검사
	주배선반		"	기술기준 제108조	설치상태 및 배선정 리상태를 관능검사
	선내단자함		"	"	설치장소의 적정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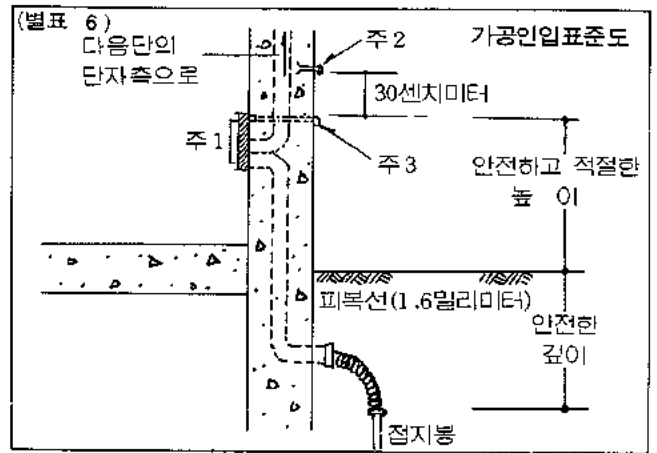
검사항목	기준치	근거	검사요령
목위단자함	"	"	부와 배선상태를 관능검사
전파가용케이블의 설치 상태	적 부	기술기준 제108조의2	설치 및 배선상태를 관능검사
배선	각단자함등으로부터 배선의 분기상태	"	기술기준 제109조
선계통	실내단자함과 단말기 기간의 배선	국내전화선	
용선	국내선 노출시의 보호 조치	각 부	
배선용선	국선수용단자 및 각단자함과 전화기용 콘센트간의 배선	0.8밀리미터 국내전화선 또는 피, 브이, 씨 쌍심케이블	기술기준 제110조
소선	국내단자함 사이의 배선	0.5밀리미터 이상의 피복케이블, 피브이씨 국내케이블 또는 동등이상	
	구내교환기와 주배선반 사이	피, 브이, 씨 국내케이블	
	노출선로의 고정상태	적 부	
	동일구간의 배선이 5 회선 이상인 경우	케이블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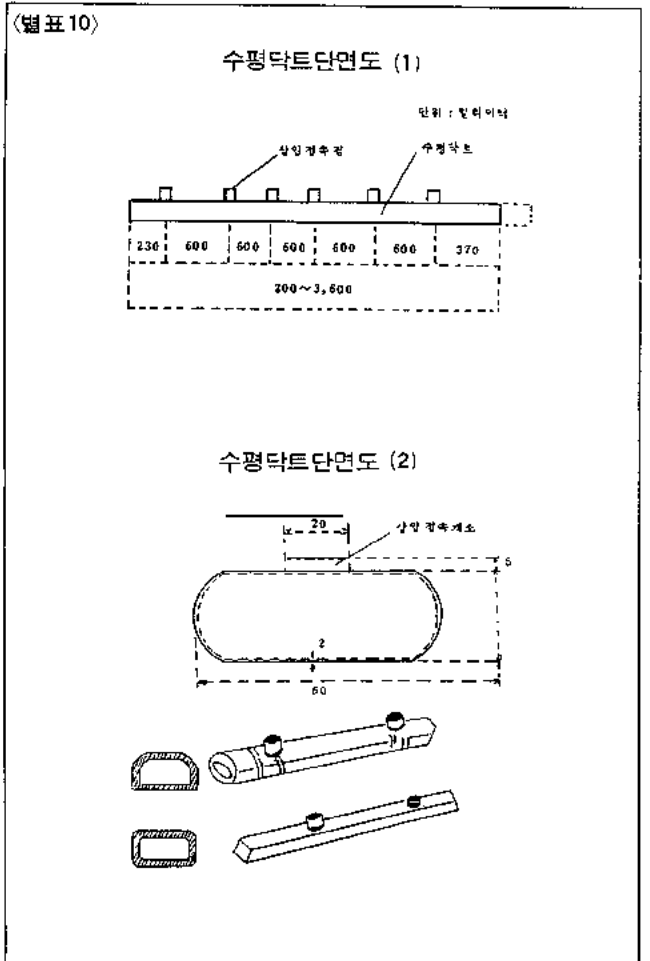
- “주”(1) R = 6φ (φ는 관내경)
 (2) 구조는 공중통신용규격에 준하고, 작업이 용이하도록 할 것.
 (3) 철관 또는 합성수지관으로서 다음의 규격에 의할 것.

인입회선수	관의내경	관의두께
901 이상	100밀리미터 이상	2밀리미터이상
301 이상 900이하	80밀리미터 이상	2밀리미터이상
300 이하	50밀리미터 이상	2밀리미터이상

- (4) 토피의 두께는 60센치미터 이상일 것. (차도의 경우에는 100센치미터 이상일 것)



- “주”(1) 국선용단자·단자함 또는 주배선반으로 보안기능과 양측배선을 수용하는 것임.
 (2) 인입배선지지용 용융아연도금양카볼트(직경 16밀리미터)임
 (3) 인입케이블 또는 인입선로의 관으로 양측에는 절연붓성이 있어야 하고, 인입측은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꼭처리되어야 함.



타트양단의 230밀리미터, 370밀리미터 접속함(140밀리미터) 및 삽입접속개소 간격을 600밀리미터로 설계된 수평타트포설에 있어 타트상호간일 때는 230밀리미터+370밀리미터 단을 조합하고 중간에 박스가 있을 때에는 230+140+230 = 600밀리미터로 하여 삽입접속개소 간격을 600밀리미터로 유지한다.

30 밀리미터 공기총

실내연자합;
(10 ~ 30 미터)

연결합

수직 당크
(발의중앙부 또는 유력상측)

7.5-12.5 미터

(세이플)
수단자합

1. 크 등

상단기

상단기 (500mm)

연결장

계기실

원인이 된 (중간) 지점 또는 '실내' (지하구조)

2. 수직기둥 상보단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11층

12층

13층

14층

15층

16층

17층

18층

19층

20층

21층

22층

23층

24층

25층

26층

27층

28층

29층

30층

31층

32층

33층

34층

35층

36층

37층

38층

39층

40층

41층

42층

43층

44층

45층

46층

47층

48층

49층

50층

51층

52층

53층

54층

55층

56층

57층

58층

59층

60층

61층

62층

63층

64층

65층

66층

67층

68층

69층

70층

71층

72층

73층

74층

75층

76층

77층

78층

79층

80층

81층

82층

83층

84층

85층

86층

87층

88층

89층

90층

91층

92층

93층

94층

95층

96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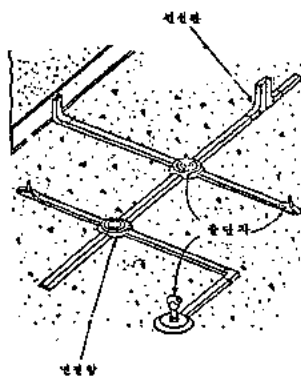
97층

98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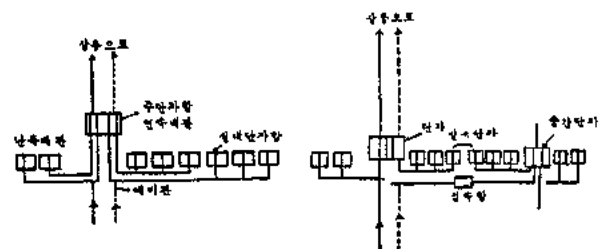
99층

100층

1. 수평박트 진단자 및 연결함



2. 단어함의 배관



(별표 16) 전화회선의 기준설비수

업종별	10평방미터당 표준전화회선수	
	국선인입회선수	실내회선수
상사회사	0.5	1.3
은행	0.4	0.8
일반사무소	0.4	0.8
백화점	0.5	1.0
관공서	0.4	1.0

업종별	10평방미터당 표준전화회선수	
	국선인입회선수	실내회선수
신문사	0.4	1.0
병원	사무실	1.0
	입원실	0.5
증권회사	0.5	1.0
인쇄점	0.5	1.0

아파트지구 개발촉진을 위한 대책 시행지시

1. 기본계획수립 촉구 및 기본계획에 위반되는 건축허가(사업승인 포함)불허: 기본계획 미수립지구는 조속히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며, 기본계획에 위배되거나 기본계획 미수립지구에서의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구의 계획적인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허가(승인)할 것.

2. 아파트건설 부적지는 지구해제 또는 제척: 지반또는 지형조건상 아파트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양호한 주택밀집지, 소음 등으로 주거환경 불량지 또는 재개발사업으로 시행함이 타당한 불량주택지 등 여건상 아파트지구로서의 개발이 부적합한 지구는 재검토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지구해제 또는 제척을 하되, 기존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거나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로 보아 제척하기 곤란한 경우는 개발잔여지로 처리할 것.

3. 아파트건설이 불가능한 개발잔여지에 대한 건축허용: 개정된 규정부칙에 해당하는 개발잔여지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건축허가를 할 것.

4. 일부 기개발된 지구에서의 기본계획수립 또는 변경허용: 지구지정 이후에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일부 기개발됨으로써 규정에 맞게 지구개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부칙에 따라 지구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것.

5.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것: 지구개발계획상 주택용지로서 공동주택의 건설이 불가능한 잔여지가 발생하게 되는 사업계획은 잔여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도할 것.

6. 지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 시행할 것: 조합구성이 곤란하여 근린주구 단위별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맞춰 소규모 단위(300세대 이상)로 개발하는 것도 허용하고, 장기간 미개발로 방치된 지구는 타지역에 우선하여 대한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주택건설지로 활용되도록 유도하며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타지역에 우선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7.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을 관계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킬 것: 본지시 및 개정된 규정과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을 관계자(주택, 도시, 건축관계 공무원 등)에 철저히 주지시켜 본지시 및 개정된 규정과 지구개발 계획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1982. 11. 17

건설부장관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규정

제정 1979. 10. 31 건설부훈령제 464 호
전문개정 1982. 5. 17 건설부훈령제 573 호
개정 1982. 11. 17 건설부훈령제 588 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하 "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린주구"라 함은 당해 주민의 주거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도보공간내에 설치되도록 구획된 일단의 범위를 말한다.

2. "주구중심"이라 함은 근린주구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기타 생활편익시설을 집합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범위를 말한다.

3. "지구중심"이라 함은 아파트지구(이하 "지구"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생활편익시설을 집합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범위를 말한다.

4. "분구중심"이라 함은 근린주구내에서 주구중심 이

외에 일용품의 소매점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집합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범위를 말한다.

5. “저층아파트”라 함은 5층 이하의 아파트를 말한다.
6. “고층아파트”라 함은 6층 이상의 아파트를 말한다.

제 3 조 (지구개발계획수립의 원칙) 지구개발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의 고도화
2. 충분한 녹지공간의 확보
3. 도시경관의 제고
4. 근린주구체계의 확립
5. 동선·녹지·공공시설·공급처리체계의 효율성 극대화
6. 일조·통풍·사생활권보호·공해방지등을 고려한 생활환경의 향상
7. 지구의 조속한 개발유도

제 4 조 (지구개발계획의 도서) 지구개발계획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서류 및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도서명	축척	표시내용	비고
1. 지구현황도	1 / 1,200 — 1 / 6,000	· 위치·구역·면적 · 지형 · 용도지역지구등 도시계획사항 · 도시계획시설등 중요한 시설	
2. 종합개념도	임의	· 토지이용 · 시설의 배치 · 동선의 처리 · 녹지공간체계 · 기타 중요한 계획내용	계획구상도의 작성으로 지구개발계획의 목표 및 종합적이고 개략적인 상황과 그 상호관계를 표시
3. 토지이용계획도	1 / 1,200 — 1 / 6,000	· 지구내의 토지이용의 세분화 · 토지용도별 면적 및 구성비율 · 도시계획시설 · 공원·녹지시설 · 세대밀도	
4. 가로망	1 / 1,200 — 1 / 6,000	· 계획도로의 종류 및 배치 · 주차장	

도서명	축척	표시내용	비고
제 5. 건축규제계획도	임의	· 용도제한의 범위 · 건축선의 지정 · 전폐율 · 용적율 · 밀도규제 · 건축물의 높이 · 안동거리 · 대지안의 공지등	
6. 지구중심계획도	1 / 600— 1 / 1,200	· 중심시설의 건축범위 · 중심시설의 규모 · 중심시설 이외의 건축물의 건축계획	
7. 공급처리시설계획도	1 / 1,200 — 1 / 6,000	· 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시설등의 간선 · 난방시설의 방법 및 간선(지역난방에 한함) · 오물처리시설 · 공동구	간선시설을 표시하고 기존시설 및 계획시설을 구분하여 표시
8. 기존건축물의 처리계획	임의	· 기존건축물조서 · 기존건축물의 분포상황 · 기존건축물의 처리계획	
9. 개발사업의 시행계획		· 공공투자계획 · 연차별시행계획 · 지구별시행계획	

제 5 조 (토지이용계획의 기준) ① 근린주구는 반경이 400미터 이내이고 공동주택의 계획전실세대수는 1,000세대 내지 3,000세대를 기준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② 근린주구내에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지구중심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근린주구면적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③ 근린주구가 3개소 이상 되는 지구에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구의 중심에 1개소의 지구중심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당해 지구면적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3 미만이어야 한다.

④ 지구중심의 경계로부터 200미터이상 떨어져 있어서

주구중심 시설의 이용이 불편한 단지에는 분구중심을 설치할 수 있으며 당해 주구내의 분구중심을 합한 면적은 근린주구면적의 100분의 3 미만이어야 한다.

- 제 6 조 (지구내의 도로설치)** ① 지구내의 도로는 목적에 따라 간선도로·국지도로·근린주구내도로·보행자전용도로등 종류별로 구분하여 계통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② 간선도로는 근린주구내를 관통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의 도로계획에는 도시계획시설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 7 조 (지구내의 건축물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범위)** ① 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다음 표의 범위내에서 계획하여야 한다.

구 분	건 축 범 위
지 구 중 심	• 근린생활시설 • 근린공공시설 • 노유자시설 • 의료시설 • 교육 및 연구시설(학교제외) • 종교시설 • 일반숙박시설 • 판매시설 • 위락시설(지구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상업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관람집회시설(관람장제외) • 전시시설 • 운동시설
주 구 중 심	• 근린생활시설 • 근린공공시설 • 노유자시설 • 의료시설(종합병원제외) • 교육 및 연구시설(학교제외)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동시설
분 구 중 심	• 일용품(식품·일용잡화)의 소매점 •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주 택 용 지	• 공동주택 • 어린이놀이터 • 운동시설(건축물을 수반하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 • 유치원·탁아소·경로당 • 공동주택 관리용시설 • 공급처리시설
학 교 용 지	• 학교시설
공 원 용 지	• 근린공원시설
도 로 용 지	• 도로시설

② 지구내에는 도시계획시설중 유원지·도살장·공동묘지(묘지공원을 포함한다)·화장장·쓰레기 및 오물처리장·가스공급설비(배관은 제외한다)·유류저장(난방용 유류저장시설은 제외한다) 및 송유설비·자동차검사시설은 계획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지구내에 동사무소, 파출소 및 우체국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구중심 또는 지구중심에 그 설치할 대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지구중심내의 건축물과 공동주택과의 인동거리는 3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마주 보는 각 외벽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구중심과 주택용지는 폭12미터 이상의 도로로 구획하여야 한다.

- 제 8 조 (건축물의 규모)** ① 지구내의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구 분	건 폐 율	건축물의 높이	세대수/주구면적10,000평방미터
연립주택	30%이하	3층 이하	40내지 80
저층아파트	25%이하	4층 내지 5층	80내지 200
고층아파트	20%이하	6층 이상	150내지 300
기 타	50%이하	5층 이하	

② 제 1 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구내에서 건축물의 배치·인동거리·도로와의 관계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구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제 9 조 (공원의 설치기준)** ① 근린공원은 주구당 1개소 이상을 계획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유치거리 500미터 이내에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근린공원 규모 이상의 공원(설치할 계획이 도시계획으로 고시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거나, 녹지면적이 당해 주구면적의 30%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 1 항의 공원계획에는 도시계획시설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 10 조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은“학교시설·설비기준령”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 11 조 (경미한 변경)** ① 주택전설축진법 제20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지구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음 표에서 정하는 사항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동일항목에 대하여 2 회 이상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 분	내 용	범 위
근린주구	면적의 증감 또는 위치변경	5 / 100이내
분구중심	면적 또는 위치변경	제한 없음
주구중심	면적의 증감 또는 위치변경	10 / 100이내
지구중심	면적의 증감 또는 위치변경	10 / 100이내
공동주택	세대수의 증감	10 / 100이내
기 타	공동주택의 종류변경	10 / 100이내

② 도지사는 지구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지구개발계획의 고시) ① 지구개발계획을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승인된 도서(또는 사본)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1. 지구개발계획의 명칭
2. 지구개발대상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지구개발계획의 개요
 - 가. 토지이용계획(용도별 면적·구성비 및 계획세대수)
 - 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
 - 다. 건축물규제사항
 - 라. 기존건축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필요한 사항
4. 지구개발계획도서의 비치관서 및 열람방법

② 제1항의 고시를 한 때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고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개발사업의 시행계획) ①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은 주구단위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의 특수성으로 주구단위별 개발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계획건설세대수를 300세대이상의 규모로 나누어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은 개발 잔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단위별 및 주구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82·5·1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구개발계획승인을 신청한 지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82·11·1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구의 일부가 이미 개발된 경우의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지구의 일부가 개발(지구지정 이후에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개발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됨으로써 이 규정에 맞게 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미 개발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개발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개발잔여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당시 개발잔여지로서 그 면적이 1,000평방미터 미만이거나 대지최소폭이 3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대지최소면적 : 200평방미터이상
2. 건축물의 용도 : 주택, 근린공공시설, 건축물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
3. 건축범위

구 분	건 폐 율	건축물의 높이
주 택	30% 이하	3층 이하
기타건축물	40% 이하	3층 이하

② 이 규정 시행당시 개발잔여지로서 소용도가 75제셀 이상인 철도, 고속도로, 공장, 도로등과 접하여 주거환경상 공동주택의 건설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대지최소면적 : 1,000평방미터이상 다만, 공공시설 설치용 대지인 경우에는 200평방미터이상
2. 건축물의 용도 : 공공시설, 업무시설
3. 건축범위

구 분	건 축 범 위
건 폐 율	40% 이하
건축물의 높이	5층 이하
녹 지 시 설	대지면적의 30% 이상
공동주택과의 인동거리	30미터 이상
수 립 대	지구내의 공동주택과의 사이에는 폭 6미터 이상의 수림대 설치(상록수 50% 이상 식재)

토지의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규칙중개정령 (1982·11. 22개정)

◎건설부령제343호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와 제5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2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란중 “1. 위치도 1부”및 “2. 도시계획증명서 1부”를 삭제하고, 동란의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 조 (운동장등 시설에 대한 결정) 운동장(종합운동장에 한한다)·유원지 및 유통업무설비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조성하게 되는 중요한 세부 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 6 조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2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의 지상·지하 및 공간이나 같은 건축물안에 함께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의 상호이용에 지장이 없고 장래의 수요가 예측되는 확장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토지이용에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야 한다.

③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같은 토지나 건축물안에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시장 및 운동장의 경우에 한하되,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설치로 인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설치가 토지이용에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10 조의 2 및 제 10 조의 3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0 조의 2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결정기준)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결정하여야 한다.
2. 도심지역·부도심지역·주거지역·학교 또는 하천 주변지역등에서는 일반도로와 그 기능이 서로 보완관계를 유지하도록 결정하되, 보행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지체계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주된 통행발생지점과 버스·택시·지하철역·철도역등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의 규모는 보행교통량·환경여건·보행목적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하되, 장래의 통행량을 예측하여 통행행태, 도시의 사회적 특성, 토지이용밀도, 토지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10 조의 3 (보행자 전용도로의 설치기준) 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같다.

1. 보행자 전용도로가 차도와 접하거나 해변 또는 절벽등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신체장애자·노약자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고, 보행자의 안전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변소·공중전화·우체함·벤취·차양시설과 녹지등의 시설을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 21 조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자동차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부대시설: 간이주유시설·변전실·보일러실·공해

방자치시설·간이정비시설·방송실·배차실·안내실·차고·세차장·종업원용휴게실·종업원용목욕실·종업원용기숙사·승무원대기실등 자동차정류장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편의시설: 식당·다방·매점·약국·이미용실·휴게실·소화물취급소등 여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 47 조제 9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유원지안에서 유원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유원지면적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결정하여야 하고, 건축물중 숙박시설의 대지면적은 당해 유원지면적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제 48 조제 1 항제 4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유원지의 기능별 종류에 따라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가. 공통시설

(1) 유흥시설(어린이이용위주 및 가족이용위주의 유흥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어린이열차·어린이전차·어린이자동차·어린이비행기·무한케도차·회전보트·회전목마·요술집·전차오락실·그네·미끄럼틀·사소등의 시설 기타 기계등으로 조작하는 각종 유흥시설

(2) 운동시설: 육상경기장·정구장·골프연습장·탁구장·화터·권투경기장·수영장·보트놀이장등 각종운동시설

(3) 휴양시설: 휴게실·놀이동산·낚시터·숙박시설

(4) 특수시설: 동물원·식물원·온실·수족관·극장·진열관·조각등

(5) 편의 및 관리시설: 도로·주차장·삭도·관망대·매점·식당·다방·무도장·음악감상실·목욕탕·약국·간이의료시설·관리사무소·변소·안내표지등

나. 스포츠위주의 유원지

(1) 스키장: 등행기(리프트)·점프대·구호소등 스키장에 갖추어야 할 각종시설

(2) 경마장: 마사·먹이창고등 경마장에 갖추어야 할 각종시설

다. 해변·호수등에 설치하는 유원지

(1) 보트장

(2) 부교·잔교·계류장등

제 55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5 조 (시장의 종류) ① 이 규칙에서 “시장”이라 함은 시장법 제 2 조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상설시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축산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을 말한다.

② 시장의 기능별구분은 다음과 같다.

1. 도매시장 : 최종소비자에 대한 물품등의 판매가 행하여지는 시장
2. 소매시장 : 최종소비자에 대한 물품등의 판매가 행하여지는 시장

제5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사무소·주차장
2. 기타 시장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시설

제59조 제7호를 삭제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 (통신시설) 이 규칙에서 “통신시설”이라 함은 전기통신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기통신설비와 전파관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를 말한다.

제5장의 제목 “공공문화시설”을 “공공문화복지시설”로 한다.

제79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제경기종목으로 채택된 운동종목의 각종 운동장
2. 골프장(9홀이상인 것에 한한다)
3. 종합운동장(제1호의 운동장에서 육상경기장과 1종목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 (학교의 종류) 이 규칙에서 “학교”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제91조의 5 (사회복지시설) 이 규칙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제91조의 6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결정기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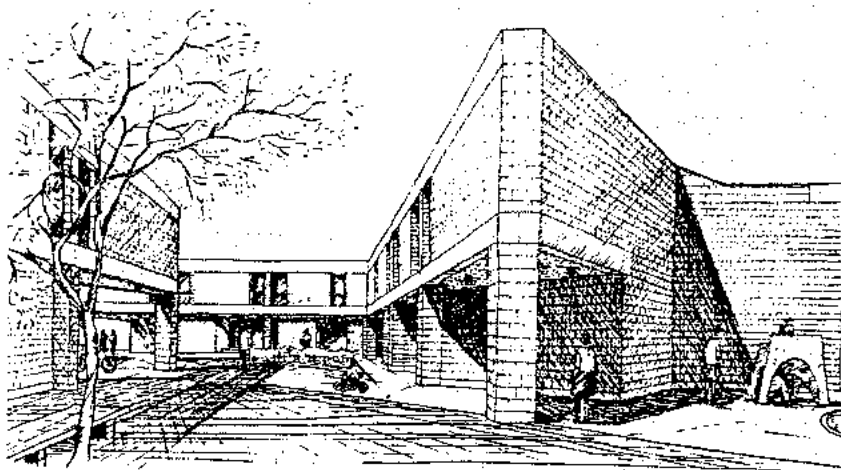
1.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에 따라 인근의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시설중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성질의 시설이나 주거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적합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설은 도시의 번두리지역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91조의 7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기준) 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91조의 2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문화시설 또는 문화공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설치하는”으로 한다.
제5장에 제91조의 5 내지 제91조의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거나 설치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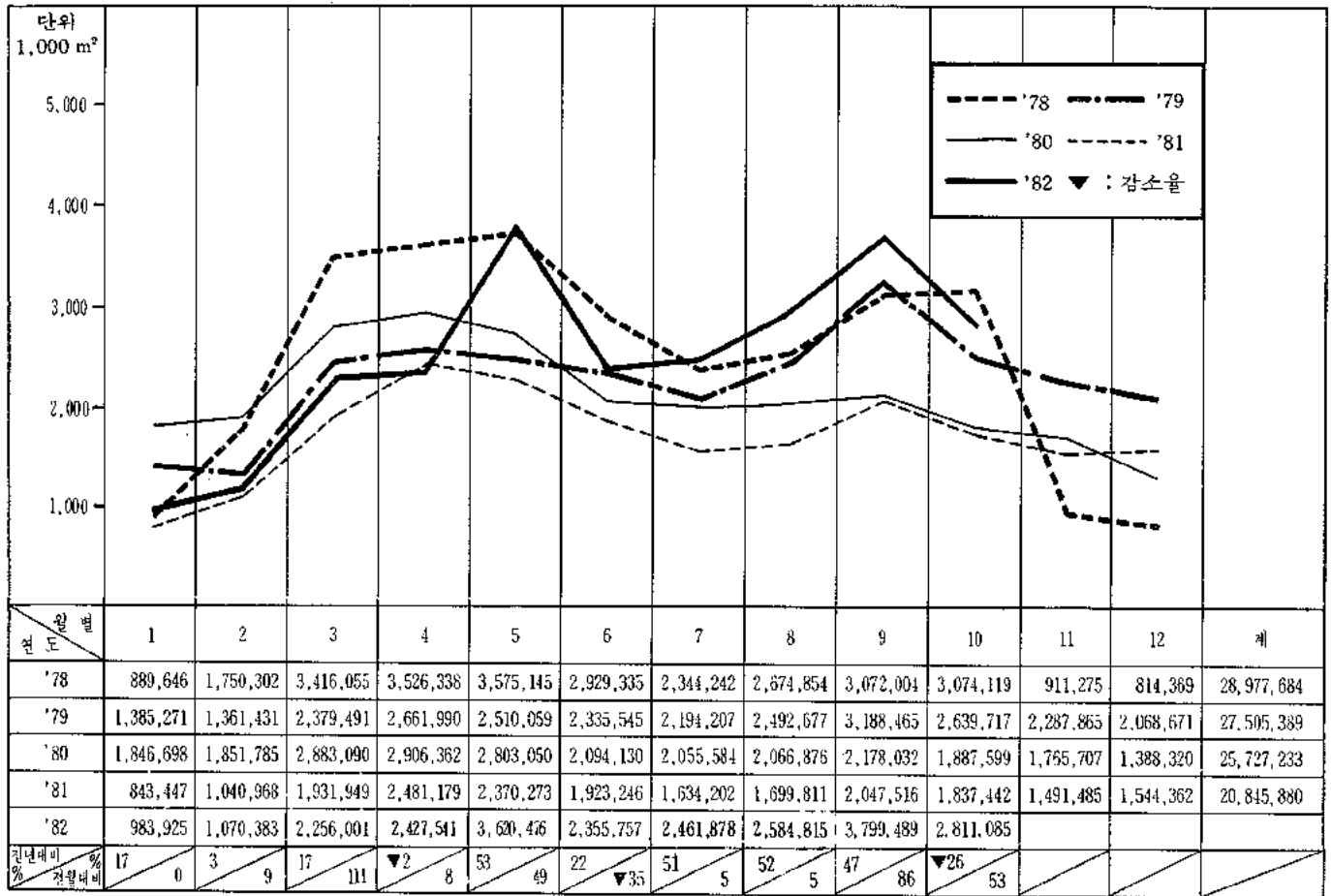


□ 金泰修 作 (在英 건축가)

건축허가(도서신고) 면적 변동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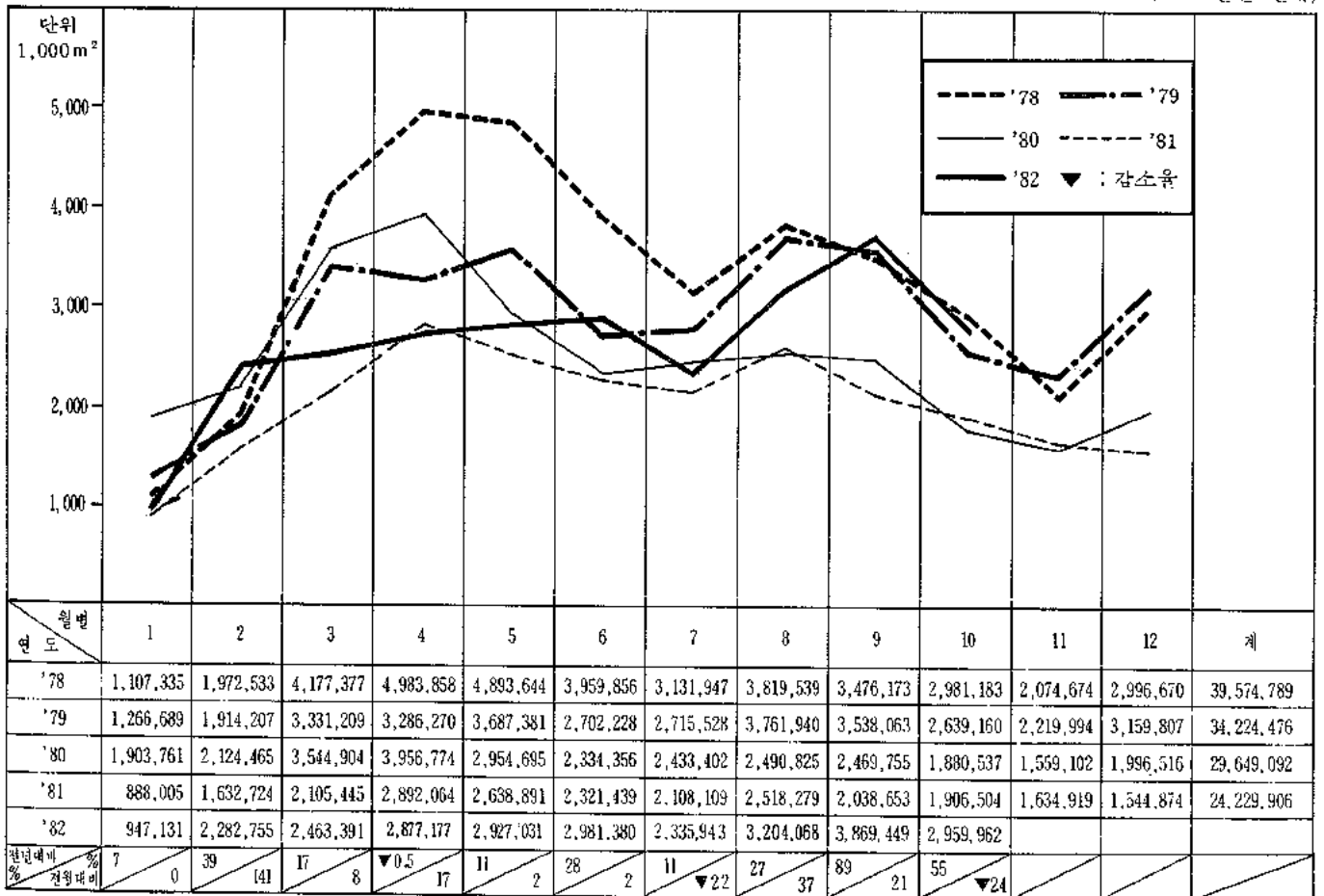
건설부 집계 / 건축허가현황

〈82. 10월말 현재〉



건축사협회 집계 / 도서신고현황

〈82. 10월말 현재〉



會員動靜

23-10 / 2-2263 △최종배(제일건축)
회원 / 포항시 죽도 2동 48-2 / 2-
2421 △이택중(근대건축) 회원 / 김천
시 감호동34 / 2-3350 △최병민(청
산건축) 회원 / 경산읍 중방동879-18/
8-2638 △최성팔(경산건축) 회원/경
산읍 중방동335 / 8-0387

결혼

□경북지부 = △김용성회원
/ 장남결혼 / 11월 6일 / 진주
예식장 △권영구회원 / 장녀결혼 / 11월
20일 / 경주서강예식장 △박장울회원/
4남결혼 / 11월28일 / 포항경동예식장

□부산지부 = △이승관회원 / 영애
결혼 / 11월 6일 / 새마당예식장 △조
성래회원 / 영애결혼 / 11월14일 / 행복
예식장

□서울지부 = △함정호회원 / 장남
결혼 / 11월 7일 / 신촌예식장 △이광
웅회원 / 4녀결혼 / 11월23일 / 서울명

동성당

□충남지부 = △원동규회원 / 영애
결혼 / 11월 7일 / 조치원백년예식장
△정은섭회원 / 영애결혼 / 11월28일 /
대전제일예식원

회갑

□부산지부 = △한응숙회원
/ 회갑 / 11월17일 / 자택 △
황재효회원 / 회갑 / 11월21일 / 자택

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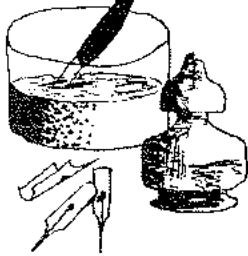
□부산지부 = △구기룡회원
/ 모친별세 / 11월 1일 / 자택
△김진철회원 / 부친별세 / 11월 5일 /
자택 △이동길회원 / 부인별세 / 11월28
일 / 자택

□서울지부 = △이준익회원 / 모친별
세 / 11월15일 △박인호회원 / 모친별세
/ 11월20일

□충남지부 = △박태우회원 / 모친별
세 / 11월14일 / 자택

□경북지부 = △손재수(손
재수건축) 회원 / 경주시 노동
동 9-61 / 2-2526 △권영구(경주
제일건축) 회원 / 경주시 노동동 9-6
/ 2-3234 △도정기(대도건축) / 김
천시 평화동 280-1 / 2-2541 △김
영철(현대건축) 회원 / 김천시 남산동

◆編輯後記◆



□또 송년호의 後記를 쓴다. 쓰면서
해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삭막한 계절
의 표정에 걸맞지 않는 새해의 새모습
을 분수에 넘게 그려보는 것이다. 하
긴 그 반대의 것만을 생각하는 것도 좋
은 일은 아닐테니까...

송년의 감회를 모아 특집을 꾸며보
았다.〈用〉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도
보넨리아처럼 말이다. 貧과 富를 동
시에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사람 몸 속
에 갖추어져 어느 시기는 서민으로서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면 일정기간 동
안 부자로서 살게끔 규정지어 졌으면
참 멋지겠다. 시험판 아기까지 탄생하
는 마당에 까짓 조금만 참으면 그럴
날도 오겠지. 웬지 찌든 서민으로서
살아온 것, 또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징그럽기만 하다.

연말이 주는 과대 선행증 탓일까?
〈京〉

□산간지방의 기온이 영하 20도를 내
려간 가운데서도 세도의 정을 나누려
는 상가에 불비는 세밀인파는 훈훈한
정을 느끼게 하지만 한해를 보내는 아
쉬움은 어쩔수 없나보다. 보라, 모든
게 잘 됐잖은가! 라고 말할 수 없으며

언제나 이때쯤이면 한해의 마무리를
다사다난으로 얘기하기 때문이기도 하
리라. 세밀경기가 3년의 침체를 벗어
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니 반가운 일
이다. 모두의 마음 속에 따스한 정과 신
의 축복이...〈基〉

□한해의 마지막 달, 해마다 맞고
보내는 달이지만 이번에는 웬지 더 아
쉽고 착잡한 기분이다.

연초에는 계획해 놓은 것이 이것저
것 많기도 하지만 이제사 뒤돌아 보면
모래성마냥 모두 다 와르르 무너져 버
리는 것만 같다.

아쉬움, 시원함 다 뒤로 하고 또 한
해를 위한 설제를 하면서 크고 하얀
눈송이라도 하늘에서 펄펄 내려왔으면
좋겠다.〈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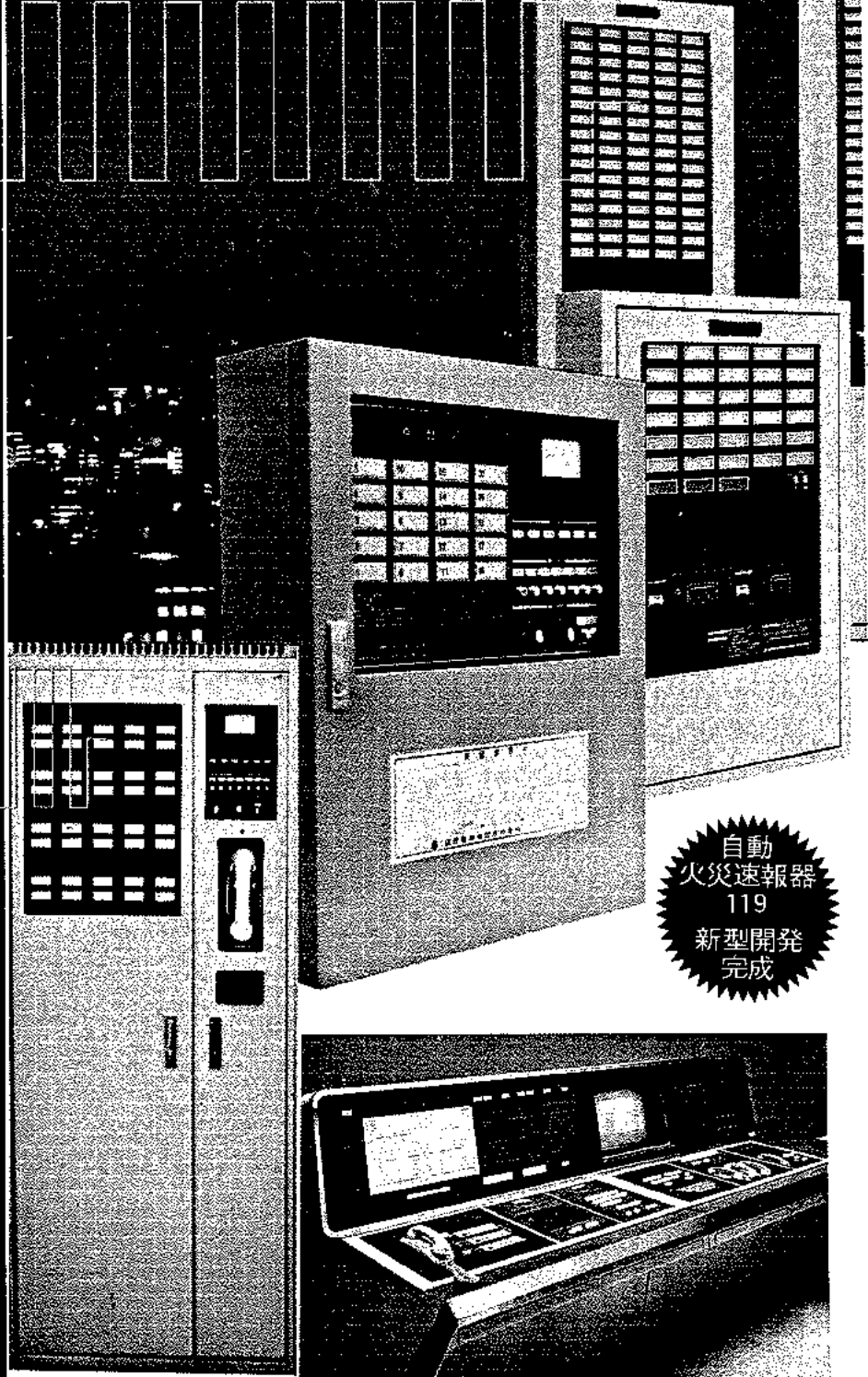
GUM SEONG FIRE PREVENTION

자동 화재 속보기 최신형



○生産

- 自動火災警報器
- 受信機 (Wall Hanging & Console Type)
- 発信機
- 煙感知器 (이온화식 및 광전식)
- 熱感知器 (자동식, 경운식)
- 인탄가스探知器
- LP 및 도시Gas探知器
- 電氣火災警報器
- 綜合防災Control盤
- 非常誘導燈 (백일등 및 형광등용)
- 自動火災속보기
- 設 備
- 自動火災警報設備
- 消火設備一切
- Sprinkler, Foam設備



중합방재CENTER



항상 연구 전진하는 기업
金聖防災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남동 39의 20
 본사/대리점 : 966-1161, 2000, 4111, 7177
 팩스/통화 : 444-8117
 연구개발실 : 91-1011, 94-8836

플로트 공법의 도입으로 우리나라도 플로트 유리시대가 열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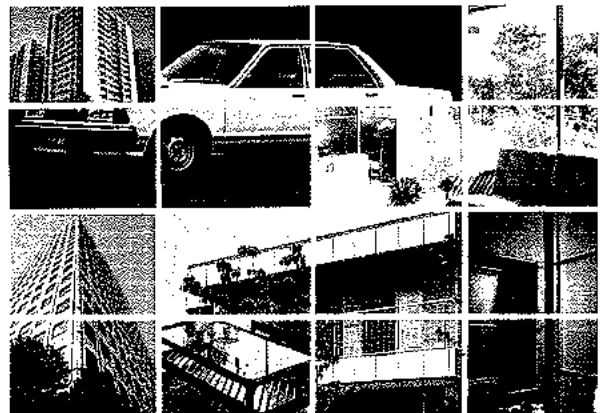
플로트 유리(Float Glass)란 인류가 발명해 낸 유리 중 가장 고급스런 품질의 유리로, 플로트 공법으로 만든 유리를 말합니다.

종래 멋진 환경을 꾸미시는 분, 품위있는 건물을 짓는 많은 분들이 찾았던 英國製 유리, 그것이 바로 플로트 유리로 韓國유리가 새로이 생산 공급하는 제품입니다.

영국의 필킹톤社(Pilkington Brothers Co.)가 개발한 세계적 특허를 갖고 기술을 보급한 이 플로트 공법은, 금속욕조(Tin Bath)에 朱錫(Tin)을 녹여 그 위로 유리물을 水平으로 흘러보내 만드는 製造方法을 말합니다.

따라서 플로트 유리는 表面이 아주 고르며, 大型化가 가능하고 또 모든 工程을 컴퓨터로 조정하므로 결점없는 최고의 品質이 보장됩니다.

이 플로트 유리는 세계에서 10여개 국가만이 생산할 수 있을뿐인 세계적 제품입니다.



플로트 유리의 장점

1. 視覺 장애가 전혀 없습니다.
2. 모든 工程을 컴퓨터化 하여 품질이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價格이 저렴합니다.
3. 모든 加工유리(복층유리, 강화유리, 접합유리, 鍍銀유리, 기타)에 이상적입니다.
4. 厚板유리는 그 자체로서 防音, 防熱의 효과를 냅니다.
5. 두께와 規格의 대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제품특성

두께 (%)	특 과 특 성					열관류율 Kcal m ² hr ⁻¹ °C
	가시광선 (%)	투과율 (%)	반사율 (%)	흡수율 (%)	열점투과율 (%)	
3	90.1	8.0	7.4	84.9	7.7	5.88
5	89.1	7.9	11.5	81.1	7.4	5.78
6	88.6	7.9	13.5	79.3	7.2	5.75
8	87.6	7.8	17.2	75.8	7.0	5.59
10	86.7	7.7	20.6	72.6	6.8	5.56
12	86.7	7.6	23.8	69.6	6.6	5.46

두께별 최대규격

두께 (mm)	길이×폭 (mm)	길이×폭 (inch)
3	2438×1220	96×48
5	3048×2134	120×84
6	3048×2438	120×96
8, 10	8380×3048	330×120
12, 15, 19	8380×3048	330×120

※ 15mm이상의 유리제품은 주문생산합니다.



韓國유리工業株式會社
HANKUK GLASS INDUSTRY CO., LTD.

본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54

783-0311·0911-3711·3911

※ 자세한 문의는 당사 상니부나 대리점에 문의해 주십시오.